

# 2020년 동두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016. 6



동두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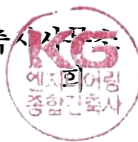
# 제 출 문

동두천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 용역” 중 도시관리계획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6. 6.

(주)케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천 병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조 영







# CONTENTS

---

---

<b>I . 계획의 개요</b> .....	<b>/3</b>
1. 도시관리계획의 개념 .....	/3
2.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	/4
3. 계획의 범위 .....	/5
4. 계획수립의 절차 .....	/6
5. 계획수립 추진경위 .....	/7
<b>II . 도시의 특성과 성격</b> .....	<b>/11</b>
1. 국토 공간상의 동두천 .....	/11
2. 역사·문화적 특성 .....	/11
3. 자연환경적 특성 .....	/14
4. 인문환경적 특성 .....	/25
<b>III . 상위 및 관련계획</b> .....	<b>/41</b>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41
2.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	/44
3.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	/46
4.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	/48
5. 경기 2020 : 비전과 전략(21세기 경기발전 구상) .....	/52
6.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2013.11.) .....	/54
<b>IV . 도시개발의 장기구상</b> .....	<b>/63</b>
1. 계획의 목표 .....	/63
2. 도시지표 설정 .....	/63
3. 도시지표 설정 .....	/64
4.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	/72
5. 용도별 토지수요 추정 .....	/74
6.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	/77
7. 교통처리계획 .....	/79
8. 정보·통신계획 .....	/88
9. 기반시설계획 .....	/91

# CONTENTS

---

---

## IV.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 /63

- 10.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 /92
- 11. 경관구상 ..... /97
- 12. 공원·녹지계획 ..... /99
- 13. 방재 및 안전계획 ..... /103
- 14. 경제·산업개발계획 ..... /106
- 15. 사회·문화개발계획 ..... /107

## V.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113

- 1. 용도지역 ..... /113
- 2. 용도지구 ..... /147
- 3. 용도구역 ..... /162
- 4. 도시계획시설 ..... /165

## VI. 단계별 집행계획 ..... /243

- 1. 계획의 개요 ..... /243
- 2. 미집행시설 현황 ..... /243
- 3. 사업비 추정 ..... /248
- 4. 단계별 집행계획 ..... /257
- 5. 재원조달계획 ..... /263

## VII. 부록 ..... /271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271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275
- 3.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278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279

# CONTENTS

---

---

## 표 목 차

---

【표Ⅱ-1】 도시발전 연혁 .....	12
【표Ⅱ-2】 도시계획 연혁 .....	13
【표Ⅱ-3】 표고분석 .....	15
【표Ⅱ-4】 경사도 분석 .....	16
【표Ⅱ-5】 하천 현황 .....	17
【표Ⅱ-6】 소하천 현황 .....	18
【표Ⅱ-7】 하천개수 현황 .....	20
【표Ⅱ-8】 기상개황 .....	21
【표Ⅱ-9】 월별 평균기온 .....	21
【표Ⅱ-10】 월별 강수량 .....	22
【표Ⅱ-11】 화재발생건수 .....	23
【표Ⅱ-12】 재난사고 발생 현황 .....	23
【표Ⅱ-13】 동두천시 풍수해 발생현황 .....	24
【표Ⅱ-14】 2011년 동두천시 풍수해 피해현황 .....	24
【표Ⅱ-15】 인구변화추이 .....	25
【표Ⅱ-16】 성별·연령별 인구현황(외국인 제외) .....	26
【표Ⅱ-17】 동별 인구 및 밀도분포 .....	27
【표Ⅱ-18】 동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	28
【표Ⅱ-19】 농가 및 경지면적 현황 .....	28
【표Ⅱ-20】 제조업 현황 .....	29
【표Ⅱ-21】 유통업체 현황 .....	29
【표Ⅱ-22】 관광사업체 현황 .....	30
【표Ⅱ-23】 관광객 현황 .....	30
【표Ⅱ-24】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현황 ..	31
【표Ⅱ-2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현황 .....	31
【표Ⅱ-26】 산업단지 지정 현황 .....	32
【표Ⅱ-27】 지목별 현황 .....	33
【표Ⅱ-28】 용도지역 현황 .....	33
【표Ⅱ-29】 주택보급률 현황 .....	34
【표Ⅱ-30】 주택유형별 현황 .....	35
【표Ⅱ-31】 주택 점유유형별 현황 .....	35

# CONTENTS

---

---

【표Ⅱ-32】 용도별 전력사용량 .....	35
【표Ⅱ-33】 가스종류별 공급량 .....	36
【표Ⅱ-34】 도시가스 이용가구 .....	36
【표Ⅱ-35】 상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	37
【표Ⅱ-36】 하수처리인구 및 하수도 보급률 .....	37
【표Ⅲ-1】 행정구역별 수도권정비계획 권역구분 .....	45
【표Ⅲ-2】 공간구조 형성 .....	49
【표Ⅲ-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54
【표Ⅲ-4】 중심지 체계 .....	55
【표Ⅲ-5】 단계별 인구지표 .....	57
【표Ⅲ-6】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57
【표Ⅲ-7】 시가화예정용지 단계별 배분계획 .....	58
【표Ⅳ-1】 모형식에 의한 인구 추정치 .....	64
【표Ⅳ-2】 자연적 증가인구 .....	65
【표Ⅳ-3】 경기도 외부유입률 가이드라인 .....	65
【표Ⅳ-4】 사회적 증가에 의한 유입인구 추정 .....	65
【표Ⅳ-5】 개발가능여부 분석 .....	67
【표Ⅳ-6】 가용토지량 .....	68
【표Ⅳ-7】 인구산정 .....	69
【표Ⅳ-8】 단계별 인구지표 .....	69
【표Ⅳ-9】 생활환경지표 .....	69
【표Ⅳ-10】 여가환경지표 .....	70
【표Ⅳ-11】 복지환경지표 .....	70
【표Ⅳ-12】 생활권별 인구 및 발전전략 .....	72
【표Ⅳ-13】 단계별·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	72
【표Ⅳ-14】 단계별·생활권별 인구밀도계획 .....	73
【표Ⅳ-15】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 수요추정 .....	74
【표Ⅳ-16】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수요추정 .....	75
【표Ⅳ-17】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수요추정 .....	76
【표Ⅳ-18】 공업용지 수요추정 .....	76
【표Ⅳ-19】 주택 수요량 추정 .....	78
【표Ⅳ-20】 주택 유형별 배분계획 .....	78

# CONTENTS

---

---

【표Ⅳ-21】 도로현황 .....	79
【표Ⅳ-22】 주요 가로망 현황 .....	79
【표Ⅳ-23】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 증가 추이 .....	81
【표Ⅳ-24】 침두시 주요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현황, 18:00~19:00) ..	83
【표Ⅳ-25】 장래 총 통행량 예측 .....	84
【표Ⅳ-26】 동두천시 간선도로망 계획 .....	86
【표Ⅳ-27】 공공시설 및 매장시설 공급계획 .....	91
【표Ⅳ-28】 계획급수량 원단위 .....	95
【표Ⅳ-29】 급수량 산정 및 지표 .....	95
【표Ⅳ-30】 계획하수량 원단위 .....	96
【표Ⅳ-31】 오수량 추정 .....	96
【표Ⅳ-32】 권역별 경관구상 .....	97
【표Ⅳ-33】 소요산역 승하차 인원 .....	106
【표Ⅳ-34】 보건·의료시설 계획 지표 .....	107
【표Ⅳ-35】 복지시설 계획 지표 .....	108
【표Ⅳ-36】 학교시설 계획 지표 .....	109
【표Ⅴ-1】 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 .....	113
【표Ⅴ-2】 용도지역 지정현황 .....	119
【표Ⅴ-3】 계획 유형별 관리지역 재정비 검토기준 - 경기도 .....	123
【표Ⅴ-4】 기준 적용방안 .....	124
【표Ⅴ-5】 계획 유형별 관리지역 재정비 검토기준 - 동두천시 ..	125
【표Ⅴ-6】 용도지역 총괄표 .....	126
【표Ⅴ-7】 용도지구별 지정목적 및 검토기준 .....	148
【표Ⅴ-8】 용도지구별 밀도·규모·용도 .....	152
【표Ⅴ-9】 용도지구 지정현황 .....	154
【표Ⅴ-10】 용도지구 변경 총괄 .....	156
【표Ⅴ-11】 고도지구 변경계획 .....	158
【표Ⅴ-12】 방화지구 변경계획 .....	161
【표Ⅴ-13】 취락지구 변경계획 .....	161
【표Ⅴ-14】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계획 .....	163
【표Ⅴ-15】 기반시설의 종류 .....	165
【표Ⅴ-16】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	166
【표Ⅴ-17】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	167

# CONTENTS

---

---

【표 V-18】 도로 재검토 기준 .....	169
【표 V-19】 도로 총괄표 .....	170
【표 V-20】 주차장 현황 .....	212
【표 V-21】 주차장 변경계획 .....	213
【표 V-22】 도시공원의 세분 .....	215
【표 V-23】 도시공원 현황 .....	216
【표 V-24】 공원 재검토 기준 .....	216
【표 V-25】 4개 근린공원 축소 기준 .....	217
【표 V-26】 근린공원 축소 기준에 따른 면적 (중앙근린공원) .....	217
【표 V-27】 근린공원 축소 기준에 따른 면적 (생연근린공원) .....	218
【표 V-28】 근린공원 축소 기준에 따른 면적 (송내근린공원) .....	219
【표 V-29】 근린공원 축소 기준에 따른 면적 (상패근린공원) .....	219
【표 V-30】 공원 변경계획 .....	220
【표 V-31】 녹지의 세분 .....	224
【표 V-32】 녹지 결정 기준 .....	224
【표 V-33】 녹지 현황 .....	225
【표 V-34】 녹지 재검토 기준 .....	225
【표 V-35】 녹지 변경계획 .....	225
【표 V-36】 광장 결정 기준 .....	228
【표 V-37】 광장 현황 .....	229
【표 V-38】 광장 재검토 기준 .....	229
【표 V-39】 광장 변경계획 .....	229
【표 V-40】 학교 결정 기준 .....	231
【표 V-41】 학교 현황 .....	232
【표 V-42】 학교 재검토 기준 .....	232
【표 V-43】 학교 변경계획 .....	232
【표 V-44】 방수설비 변경계획 .....	234
【표 VI-1】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 .....	244
【표 VI-2】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 - 상세 .....	245
【표 VI-3】 경과기간별 현황 .....	246
【표 VI-4】 소유자별 현황 .....	246
【표 VI-5】 지목별 현황 .....	247

# CONTENTS

---

---

【표VI-6】 기준면적당 공사비 산정 .....	248
【표VI-7】 건축물보상비 기준 .....	249
【표VI-8】 미집행시설 개략공사비 추정 .....	250
【표VI-9】 보상비 추정 .....	251
【표VI-10】 총 사업비 추정 .....	251
【표VI-11】 총 사업비 추정-경과연도별 .....	252
【표VI-12】 미집행시설 사업비 .....	252
【표VI-13】 평가인자 및 가중치 .....	257
【표VI-14】 평가기준 .....	257
【표VI-15】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	258
【표VI-16】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	259
【표VI-17】 재정규모 변화 추이 .....	263
【표VI-18】 1인당 세액 변화 추이 .....	263
【표VI-19】 일반회계 세입구조 .....	264
【표VI-20】 일반회계 세출구조 .....	264
【표VI-21】 세입구조 전망 .....	266
【표VI-22】 기반시설 설치 예산 추정 .....	266
【표VI-23】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	267

# CONTENTS

---

---

## 그림 목 차

---

【그림 I-1】 계획의 위계 .....	3
【그림 I-2】 위치도 .....	5
【그림 I-3】 계획수립 절차 .....	6
【그림 II-1】 지형·지세 및 수계 분석도 .....	14
【그림 II-2】 표고분석도 .....	15
【그림 II-3】 경사분석도 .....	16
【그림 II-4】 소하천 현황도 .....	19
【그림 II-5】 평균기온 그래프 .....	22
【그림 II-6】 강수량 그래프 .....	22
【그림 II-7】 동별 인구밀도 .....	27
【그림 II-8】 도시개발 현황도 .....	32
【그림 III-1】 유라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 .....	41
【그림 III-2】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41
【그림 III-3】 광역경제권·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	43
【그림 III-4】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도 .....	45
【그림 III-5】 수도권 공간구조 골격구상도 .....	47
【그림 III-6】 공간구조 형성 전략 구상도 .....	50
【그림 III-7】 경원권 전략계획 구상도 .....	51
【그림 III-8】 공간구조 구상도 .....	56
【그림 III-9】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구상도 .....	59
【그림 IV-1】 개발가용지 분석도 .....	68
【그림 IV-2】 생활권별 인구계획 .....	73
【그림 IV-3】 주요가로망 현황도 .....	80
【그림 IV-4】 교차로 조사지점도 .....	82
【그림 IV-5】 교통체계 구상도 .....	87
【그림 IV-6】 경관 구상도 .....	98
【그림 IV-7】 공원·녹지계획 기본방향 .....	99
【그림 IV-8】 공원·녹지 종합배치 구상도 .....	101
【그림 IV-9】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원조성 예시 .....	102



# CONTENTS

---

---

【그림 V-1】 1996년 동두천 도시재정비계획 총괄도 .....	117
【그림 V-2】 2003년 동두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도 .....	117
【그림 V-3】 2015년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도 .....	118
【그림 V-4】 도시지역의 단계별 계획내용 및 검토기준 .....	120
【그림 V-5】 관리지역의 단계별 계획내용 및 검토기준 .....	124
【그림 V-6】 용도지역(도시지역) 변경 총괄도 .....	127
【그림 V-7】 용도지역(비도시지역) 변경 총괄도 .....	132
【그림 V-8】 용도지구의 개념 .....	147
【그림 V-9】 용도지구 변경 총괄도 .....	157
【그림 V-10】 용도구역 변경 총괄도 .....	164
【그림 V-11】 도로 변경 총괄도 (1/2) .....	171
【그림 V-11】 도로 변경 총괄도 (2/2) .....	172
【그림 V-12】 주차장 변경 총괄도 .....	213
【그림 V-13】 공원 변경 총괄도 .....	220
【그림 V-14】 녹지 변경 총괄도 .....	226
【그림 V-15】 광장 변경 총괄도 .....	230
【그림 V-16】 학교 변경 총괄도 .....	233
【그림 V-17】 방수설비 변경 총괄도 .....	235
【그림 VI-1】 사업비 세부 항목 .....	248



#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의 개념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3

계획수립의 절차

4

계획수립 추진경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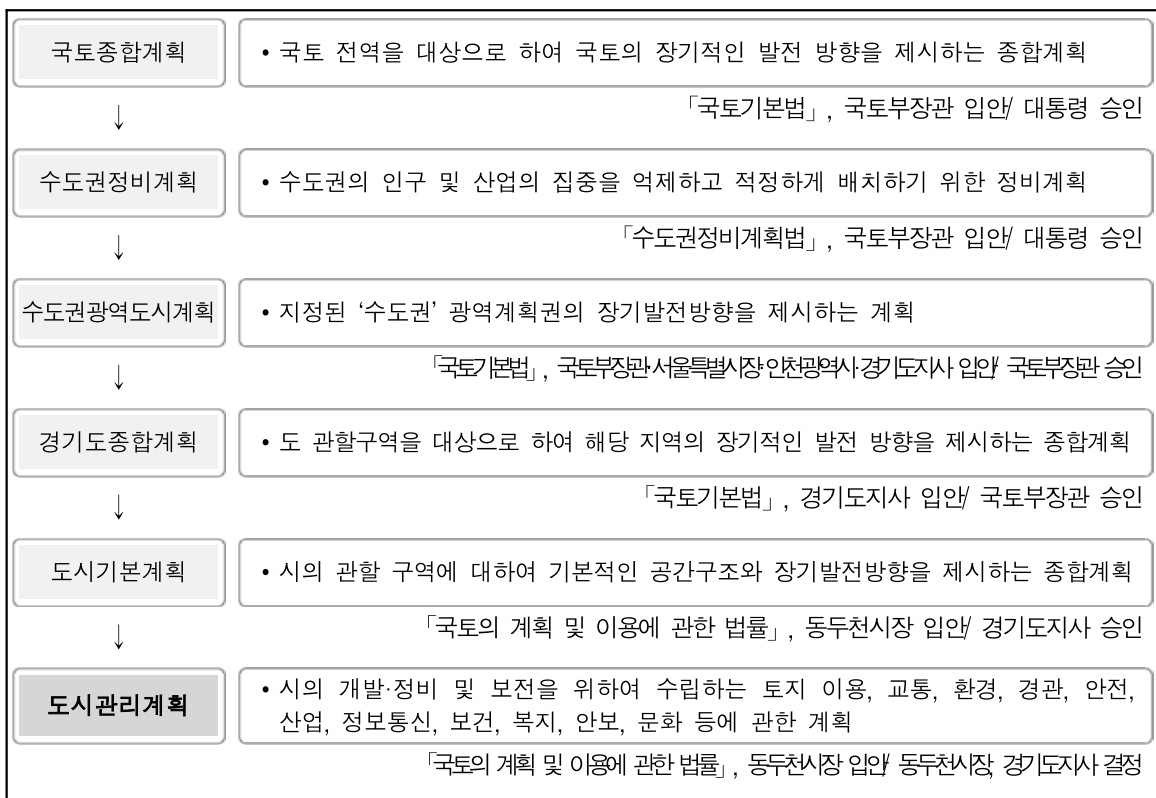
# I 계획의 개요

## 1. 도시관리계획의 개념

### 가. 계획의 지위와 성격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그림 I -1】 계획의 위계



## 2.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 가. 계획의 배경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2013.10.23, 경기도 도시주택과-17902)」에 따른 구체화 계획으로서 향후 동두천시가 지향할 계획의 전략과 방향 설정 필요
-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성 필요
- 「2015년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이후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개통, 미군반환 공여지인 캠프 캐슬에 동양대학교 개교 등 도시제반여건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 설정 필요

### 나. 계획의 목적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도시지역 내 근린공원 변경 및 역사공원 신설 등 구체화된 계획수립을 통해 도시역할 재정립, 장기발전 방향제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향 제시
-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통, 동양대학교 개교, 평택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미군의 반환 공여지 인근 난개발 방지 등 도시제반여건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획적 도시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 동두천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 등을 통하여 동두천시 도시개발에 「선계획·후개발」의 기틀 마련
- 「2015년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이후 여건변화 등에 따라 누적된 주민민원 해소

### 3. 계획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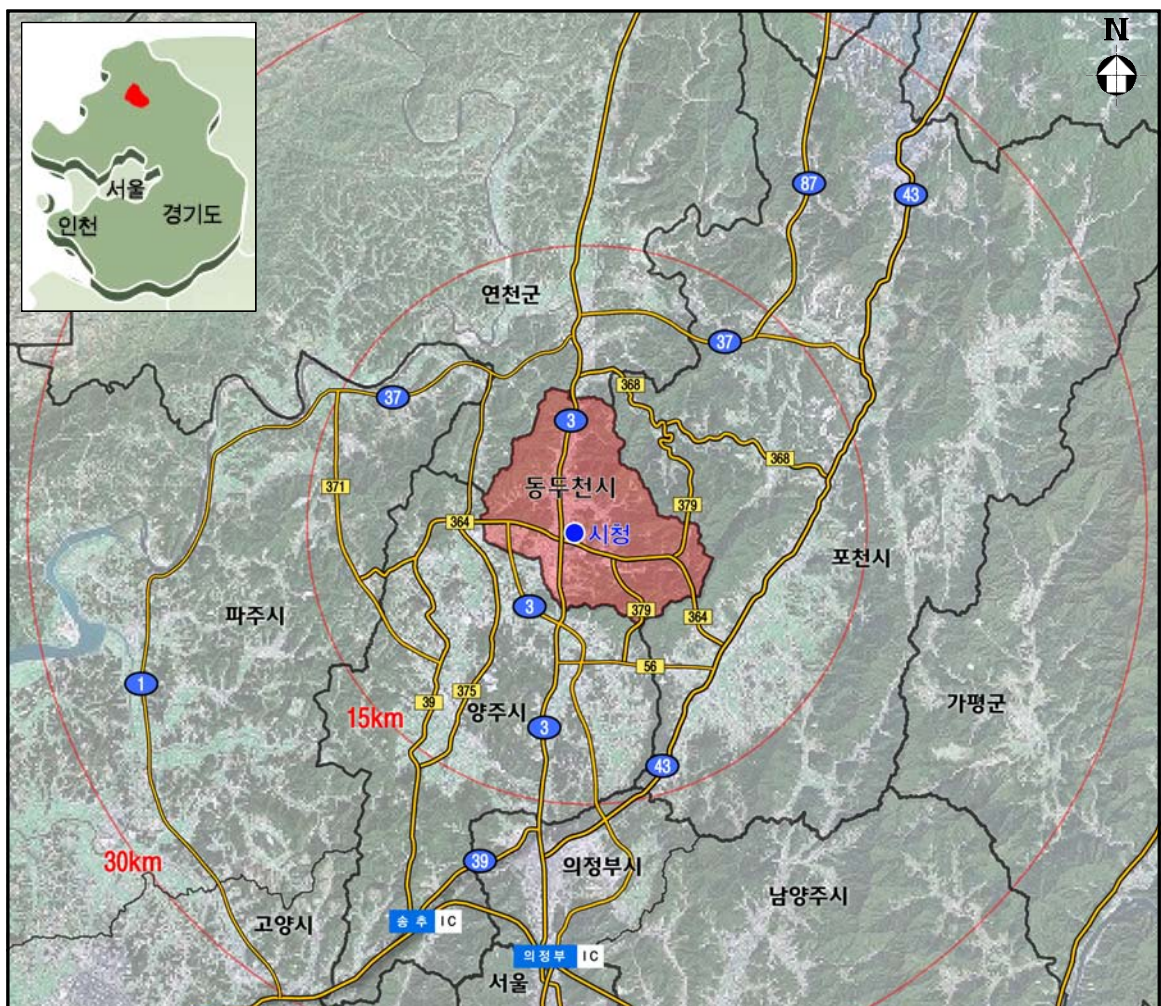
#### 가.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0년
- 목표연도 : 2020년

#### 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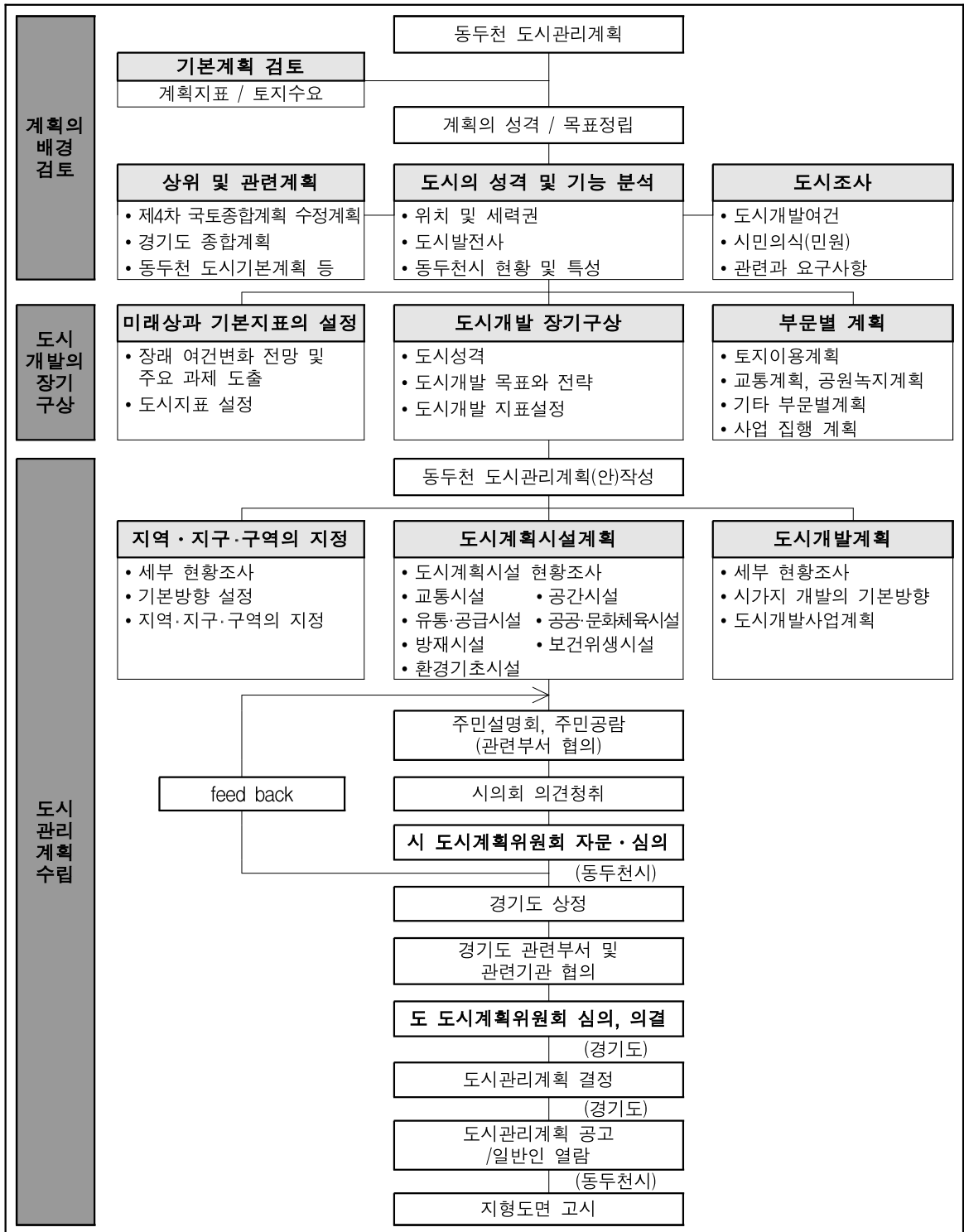
- 위치 : 동두천시 행정구역 전역
- 면적 : 95.68km<sup>2</sup>

【그림 I -2】위치도



### 4. 계획수립의 절차

【그림 I -3】계획수립 절차





## 5. 계획수립 추진경위

- 2011.06.07 :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
- 2013.10.23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경기도 도시주택과-17902)
- 2014.08.07 ~ 12 : 2020년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초안 주민설명회(1차) 및 의견수렴
- 2014.09.1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의회 정례회보고
- 2014.10.0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의회 해제권고서 수령
- 2014.12.19 ~ 2015.01.06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1차)
- 2015.01.13 ~ 16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동별 주민설명회(2차) 및 의견수렴
- 2015.02.09 ~ 27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2차)
- 2015.03. ~ 0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 2015.04.24 : 시 의회 의견청취
- 2015.05.28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권한사항) 및 심의(시 권한사항) →조건부 의결
- 2015.06.12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 권한사항 - 용도지구, 시설)(동두천시 고시 제2015-42호)
- 2015.07.0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 신청(동두천시→경기도)
- 2015.07 ~ 08. : 경기도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 2015.11.13.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위원회) 심의(도시지역)  
→ 재심의(분과위원회 수권위임)
- 2016.01.22.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위원회) 심의(비도시지역) → 조건부 의결
- 2016.03.18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도시지역) → 조건부 의결
- 2016.04.0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비도시지역-용도지역)(경기도 고시 제2016-53호)

- 2016.04.2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1차)  
(도시지역-용도구역, 시설)(경기도 고시 제2016-62호)
- 2016.05.23. :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두천시 고시 제2016-41호)
- 2016.06.2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차)  
(도시지역-용도지역)(경기도 고시 제2016-104호)
- 2016.06.2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지역-시설(도로, 주차장, 녹지))(동두천시 고시 제2016-51호)
- 2016.11.1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동두천시 공고 제2016-905호)

## 도시의 특성과 성격

국토 공간상의 동두천

역사·문화적 특성

자연환경적 특성

인문환경적 특성



1

2

3

4





## II 도시의 특성과 성격

### 1. 국토 공간상의 동두천

- 국토 공간상 북한과 가까운 국토 복단에 위치한 동두천은 경기도 남북축의 내륙 연계 거점도시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동두천은 북쪽으로 연천군, 동쪽으로 포천시, 남쪽으로 양주시와 면하고 있으며, 국도 3호선 및 경원선 철도로 의정부시, 서울시와 연결됨
- 수도권 북부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이 집적되어 있으며, 서울 북부지역으로부터 1시간권 내에 입지한 환경친화적인 전원도시임
- 서울시와 의정부시 개발압력의 직접 영향권에 속하며, 현재 경원선 철도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음
- 행정동은 생연1·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송내동, 소요동, 상패동의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정동은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광암동, 결산동, 보산동, 동두천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상패동 등 12개동으로 구성됨
- 동두천시의 형상은 동서간 12.9km, 남북간 15.3km의 타원형으로 펼쳐져 있으며, 총 면적은 95.68km<sup>2</sup>임

### 2. 역사·문화적 특성

#### 가. 도시발전 연혁

- 동두천은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내을매(內乙買)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통일신라시대인 경덕왕16년(757년)에 사천현(沙川縣)으로 승격하여 견성군(堅城郡, 현 포천시)에 속하였다가 고려시대인 현종9년(1018년) 견주군(見州郡)이 양주군(楊州郡)으로 편입되고, 견성군(堅城郡)의 영현이었던 사천현(沙川縣)도 양주(楊州)에 속하게 됨
- 조선시대 세조12년(1466년) 양주(楊州)가 목(牧)으로 승격되고 방리(坊理) 32개면 중 하나인 이담면(伊淡面)이 동두천의 기원이 되었고, 이담면(伊淡面)은 가정자리(柯亭子里)의 9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제강점 당시 중심지인 가정자리(柯亭子里)가 동두천리(東豆川里)로 개칭되어 이것이 시명의 기원이 됨

- 해방 이후 1963년 동두천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1년 동두천시로 승격된 후, 1983년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가 편입되어 현재의 행정구역이 형성됨

【표 II-1】도시발전 연혁

시 대	연 혁
고구려시대	• 내을매(內乙買)에 속함
신라시대	• 사천현(沙川縣)으로 승격하여 견성군(堅城郡, 현 포천시)에 속함
고려시대	• 견주군(見州郡)이 양주군(楊州郡)으로 편입되고, 견성군(堅城郡)의 영현(領縣)이었던 사천현(沙川縣)도 양주에 속함
조선시대	• 양주목(楊洲牧)으로 승격 • 방리(坊理) 34개면 중 이담면이 동두천시의 기원 • 이담면(伊淡面)은 가정자리(柯亭子里)외 9개리로 구성 • 한일합방당시 중심지인 가정자리가 동두천리(東豆川里)로 개칭
1963. 1. 1	• 동두천읍으로 승격(법률 제1177호)
1969. 8.15	• 과대읍 준시체제로 직제 개편(2과, 1소, 10계)
1973. 7. 1	• 대통령령 제6543호(1973. 3.12 공포)로 포천군 포천면 탑동리 편입
1979. 5. 1	• 과대읍 기구개편 및 출장소 증설(4과, 13계, 4출장소)
1981. 7. 1	• 동두천시로 승격(법률 제3425호)
1983. 2.15	• 대통령령 제1107호(1983.1.10공포)로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 편입

## 나. 도시계획 연혁

- 1963년 3월 1일 도시계획구역으로 승인된 후, 1965년 11월 13일 최초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이후 3차례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졌음
- 1983년 12월 5일 최초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1991년과 1992년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승인 되었고, 2000년 12월 14일에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인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 9월 8일 승인되었으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20년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등 국토 공간의 정책변화, 삶의 질, 저탄소 녹색성장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2013년 10월 23일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

【표 II-2】도시계획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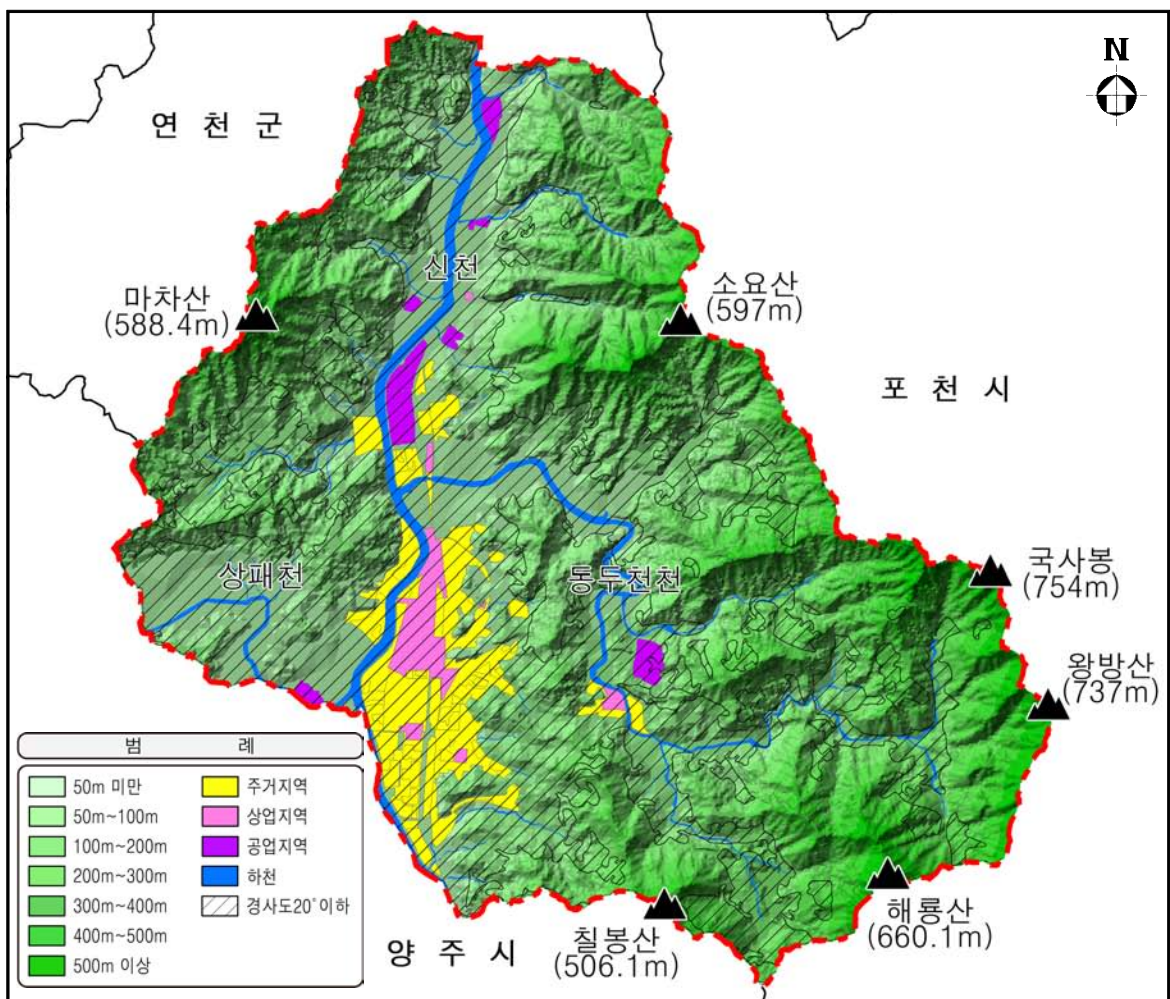
연 도	도 시 계 획 연 혁
1963.03.01	• 도시계획구역 승인
1965.11.13	• 도시계획 결정(건설부고시 제1983호, 계획구역 : 25,268km <sup>2</sup> )
1967.12.26	• 도시계획 지적고시(경기도고시 제3479호)
1976.12.07	• 농지보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건설부고시 제194호 : 25,268km <sup>2</sup> )
1983.12.05	• 도시기본계획 승인
1986.09.12	•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건설부고시 제435호)
1987.08.10	•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건설부고시 제393호)
1988.03.07	•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건설부고시 제106호)
1991.12.06	•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
1992.11.23	•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1996.05.16	•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경기도고시 제114호)
1996.12.30	•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경기도고시 제376호)
2000.12.14	• 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58410-1238)
2006.09.08	• 2020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승인(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10082)
2008.08.13	• 2015 도시관리계획 결정(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8-5102호)
2010.11.30	• 동두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10-5222호)
2011.01.13	• 2020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806)
2012.04.19	• 2020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경기도 도시주택과-3042)
2013.10.23	• 2025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승인(경기도 도시주택과-17902)

### 3. 자연환경적 특성

#### 가. 지형, 지세 및 수계

- 동두천시는 소요산(597m)이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의 국사봉(754m), 왕방산(737m)과 서쪽의 마차산(588.4m), 남쪽의 칠봉산(506.1m), 해룡산(660.1m) 등 수려한 산지에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임
- 동두천시의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신천이 도심 중앙을 관통하고 있으며, 동쪽에서 동두천천, 서쪽에서 상패천이 신천과 합류하여 한탄강을 거쳐 임진강으로 유입됨
- 하천변을 따라 선상평야를 형성하며 시가지는 신천과 국도3호선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음

【그림Ⅱ-1】지형·지세 및 수계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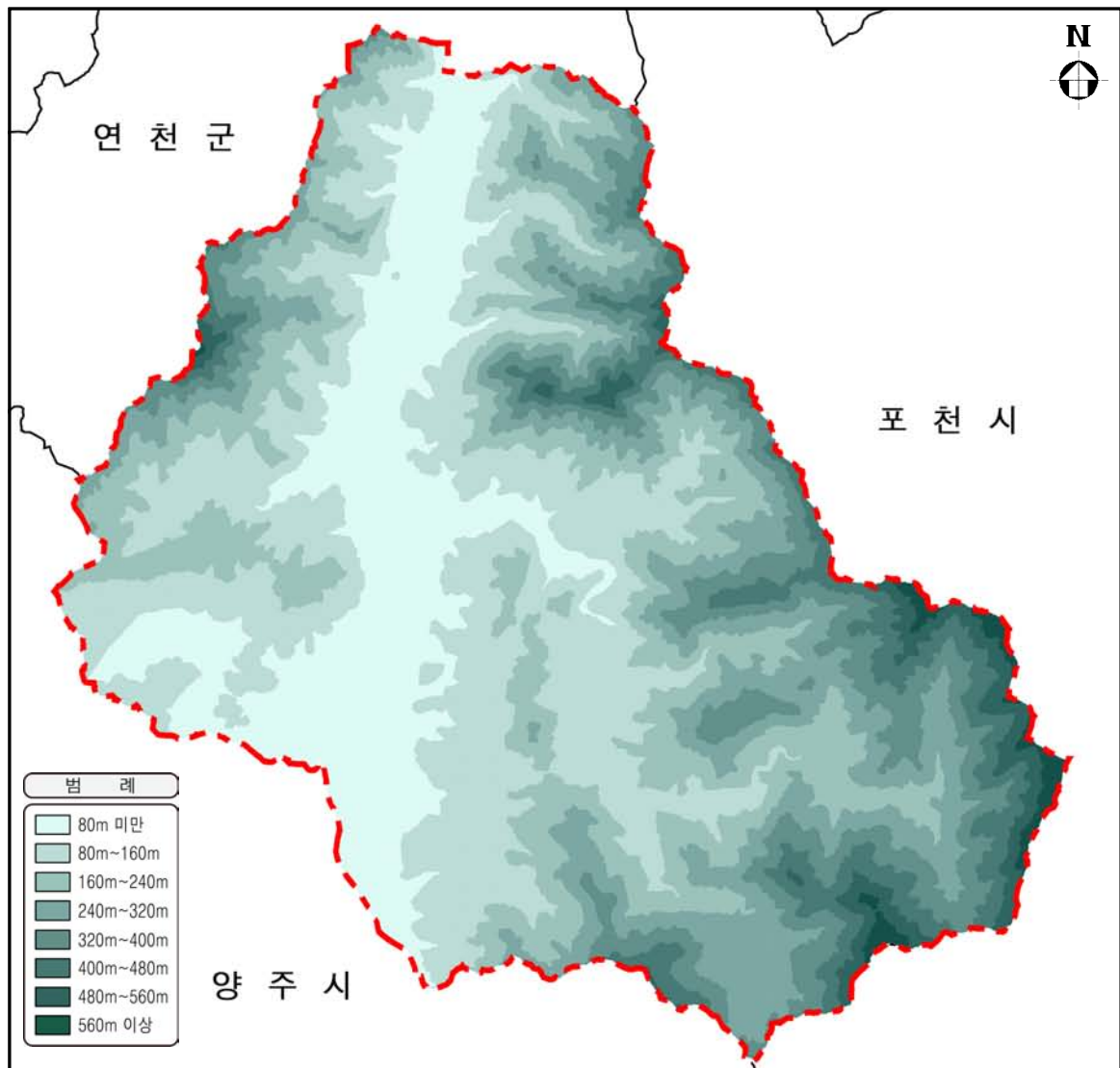
1) 표고분석

○ 산악이 많은 지형여건에 따라 시외곽으로 고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두천시 도시 계획 조례상 개발이 억제되는 표고 160m 이상이 52.87km<sup>2</sup>로 전체면적의 55.2%를 차지함

【표Ⅱ-3】표고분석

구분	계	80m 미만	80~160m	160~240m	240~320m	320~400m	400~480m	480~560m	560m 이상	비고
면적 (km <sup>2</sup> )	95.68	16.25	26.56	19.67	14.19	9.93	5.57	2.52	0.99	
구성비 (%)	100.0	17.0	27.8	20.6	14.8	10.4	5.8	2.6	1.0	

【그림Ⅱ-2】표고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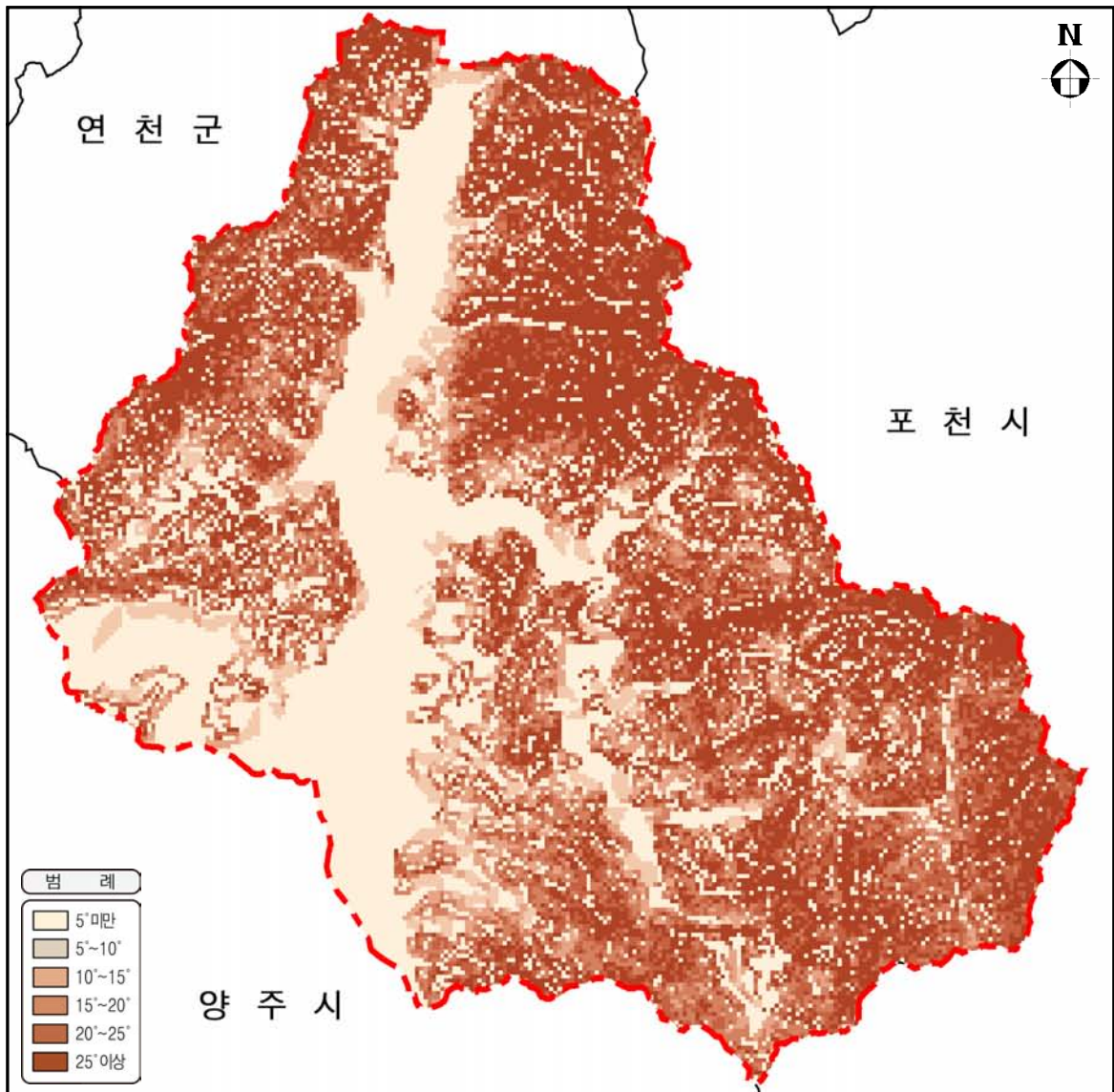
2) 경사분석

- 신천, 동두천천, 상패천 등 주요 하천 주변으로 평탄한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산악이 많은 지형여건으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이 억제되는 경사도 25°이상의 급경사지가 33.94km<sup>2</sup>로 전체면적의 35.5%를 차지함

【표 II-4】경사도 분석

구 분	계	5° 미만	5°~10°	10°~15°	15°~20°	20°~25°	25° 이상	비 고
면적(km <sup>2</sup> )	95.68	21.05	7.02	8.31	11.78	13.58	33.94	
구성비(%)	100.0	22.0	7.3	8.7	12.3	14.2	35.5	

【그림 II-3】경사분석도



### 3) 수계현황

#### 가) 지방하천

- 동두천시 행정구역 내 하천 중 임진강을 본류로 하여 흐르는 지방하천은 신천, 동두천천, 상패천 등 3개소가 분포되어 있으며, 동두천천과 상패천이 신천으로 합류하여 한탄강으로 복류하고 있음
- 신천은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호명산(EL.423.0m)에서 발원하여 방성천, 홍죽천, 연곡천, 우고천, 석우천 효촌천 등이 합류하면서 복류하다가, 효촌천 합류 후 동측으로 변경하여 사행을 하며 유하하다 청담천과 합류하면서 다시 복류하여 상패천, 동두천, 수동천, 대전천 등을 합류시킨 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지점에서 한탄강 좌안측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으로,
- 임진강의 지류인 한탄강과 합류하며 유역면적은 343.74km<sup>2</sup>, 유로연장은 38.30km의 하천임

【표 II-5】하천 현황

하천명	하천연장 (km)	유역면적 (km <sup>2</sup> )	시 점			종 점			
			시, 군	면, 동	리	하천합류점	시, 군	면, 동	리
계	58.57	406.71	시, 군	면, 동	리	하천합류점	시, 군	면, 동	리
신천	38.30	343.74	양주	백석	복지	한탄강	연천	청산	초성
동두천천	12.85	42.73	동두천	탑동	-	신천	동두천	동두천	-
상패천	7.42	20.24	양주	남	한산	신천	동두천	상패	-

자료 :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경기도, 2011. 2

#### 나) 소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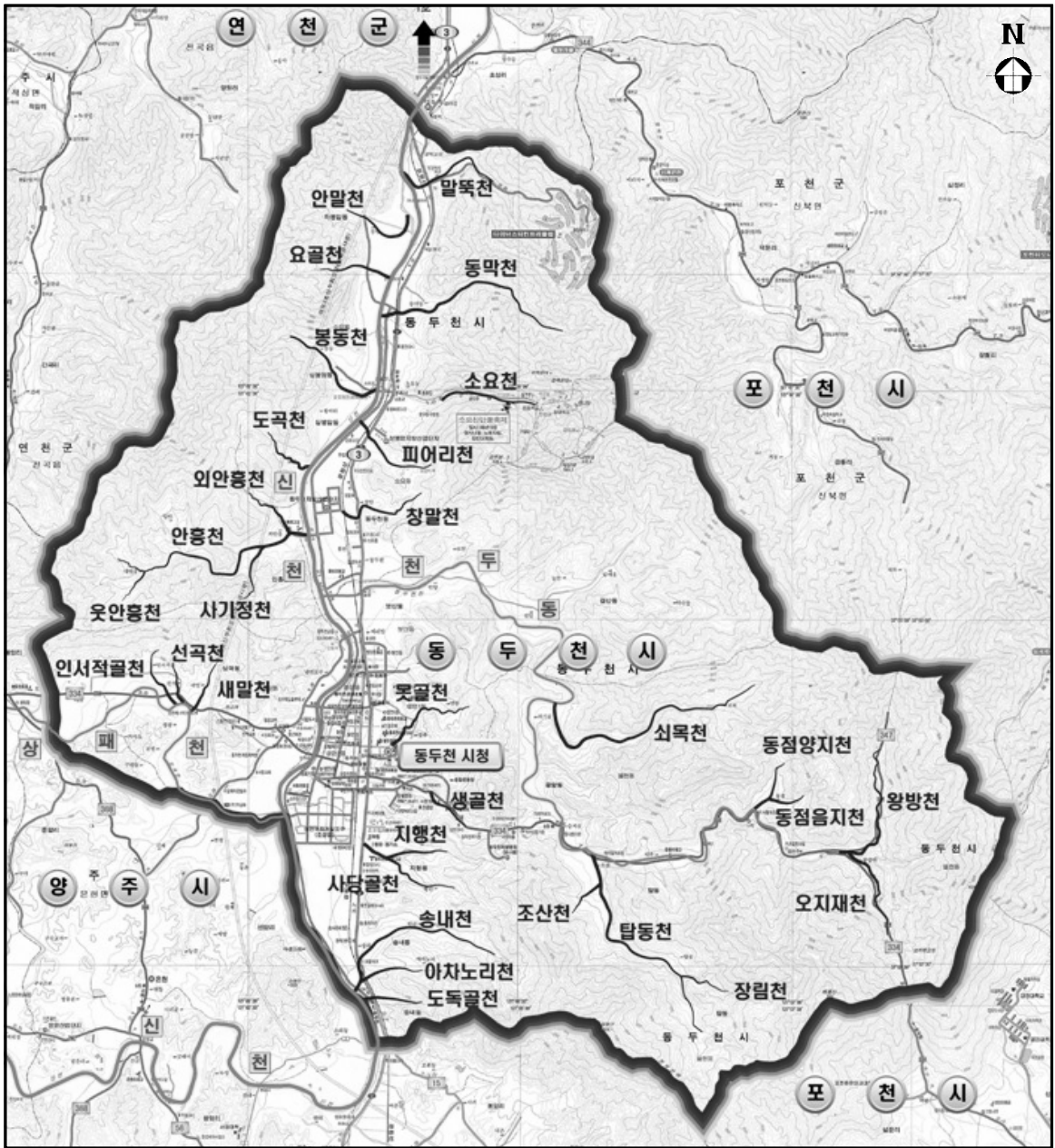
- 동두천의 소하천은 총 31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도독골천, 송내천, 사당골천, 생골천, 못골천, 창말천, 피어리천, 소요천, 동막천, 말뚝천, 안말천, 요골천, 봉동천, 도곡천, 안흥천이 제1지류로 신천으로 합류하며, 탑동천, 오지재, 왕방천, 동점양지천, 쇠목천, 지행천, 인서적골천, 선곡천, 새말천, 아차노천, 외안흥천, 사기정천, 웃안흥천이 제2지류로, 동점음지천, 조산천, 장림천이 제3지류로 신천과 합류함
- 소하천의 유역 총 면적은 64.14km<sup>2</sup>, 유로 총 연장은 67.37km임

【표Ⅱ-6】소하천 현황

하천명	분류명	유역면적 (km <sup>2</sup> )	유로연장 (km)	하천연장 (km)	시 점	종 점
계	신천	64.14	67.37	39.27	-	-
도독골천	신천	0.67	1.42	0.65	송내동 187	송내동 446-7
송내천	신천	3.12	3.83	2.63	송내동 63	송내동 472-2
사당골천	신천	0.66	1.7	0.52	지행동 112-1	지행동 212-1
생골천	신천	0.62	1.18	0.6	생연동 46-3	생연동 317-21
못골천	신천	0.87	1.76	1.37	생연동 139	생연동 436-4
창말천	신천	0.58	1.49	0.5	동두천동 산37-2	동두천동 128
피어리천	신천	0.87	2.18	1.46	동두천동 36-1	동두천동 429-3
소요천	신천	2.29	2.49	1.28	상봉암동 산1-3	상봉암동 산1-6
동막천	신천	3.99	3.84	2.9	하봉암동 산39-3	상봉암동 65-17
말뚝천	신천	3.03	2.53	1.39	하봉암동 산33-11	하봉암동 151-1
안말천	신천	1.61	1.92	0.87	하봉암동 427-1	하봉암동 90
요골천	신천	1.03	1.62	0.92	하봉암동 441	하봉암동 303-1
봉동천	신천	2.80	3.21	1.47	상봉암동 산53-1	상봉암동 225-8
도곡천	신천	1.24	1.64	0.81	안흥동 산3-1	안흥동 12-1
안흥천	신천	6.59	4.07	3.2	안흥동 398-2	안흥동 41-3
탑동천	동두천	6.82	4.6	3.4	탑동동 512-3	탑동동 814-5
오지재천	동두천	7.56	2.06	1.5	탑동동 산45-1	탑동동 208-2
왕방천	동두천	4.39	3.02	1.83	탑동동 산6-3	탑동동 110-1
동점양지천	동두천	1.59	1.46	0.78	탑동동 295	탑동동 330-1
쇠목천	동두천	4.99	5.11	3.63	광암동 9	광암동 314-1
지행천	사당골천	0.79	1.59	0.6	지행동 66-1	지행동 256
인서적골천	상패천	0.41	1.09	0.91	상패동 550-1	상패동 636-1
선곡천	상패천	0.41	1.38	0.56	상패동 522-1	상패동 637
새말천	상패천	0.95	1.53	0.8	상패동 산53	상패동 403-2
아차노리천	송내천	0.54	1.49	0.82	송내동 213-1	송내동 467-1
외안흥천	안흥천	1.03	1.85	0.82	안흥동 196-1	안흥동 50-9
사기정천	안흥천	0.51	1.34	0.82	안흥동 산76	안흥동 50-1
웃안흥천	안흥천	1.20	1.22	0.51	안흥동 468-2	안흥동 368-1
동점음지천	동점양지천	0.8	1.58	0.5	탑동동 257	탑동동 336
조산천	탑동천	0.57	1.16	0.52	탑동동 908	탑동동 812-1
장림천	탑동천	1.61	2.01	0.7	탑동동 산96-1	탑동동 557

자료 :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동두천시, 2011

【그림 Ⅱ-4】소하천 현황도



자료 :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동두천시, 2011

#### 다) 하천개수현황

- 동두천시에 위치한 지방하천 3개소(신천, 동두천천, 상패천)는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경기도, 2011.2)』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외 소하천은 2008년 수립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

○ 하천정비계획에 따른 개수율은 신천 97.0%, 동두천천 96.8%, 상패천 100%, 그 외 소하천이 100.0%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안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공되어 신천은 전구간이 개수되었음

【표 II-7】하천개수 현황

하천명	하천정비계획	개수율(%)	비고
신천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경기도,2011)	97.0	
동두천천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경기도,2011)	96.8	
상패천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경기도,2011))	100.0	
도독골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송내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사당골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생골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못골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창말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피어리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소요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동막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말뚝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안말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요골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봉동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도곡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안흥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탑동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오지재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왕방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동점양지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쇠목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지행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인서적골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선곡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새말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아차노리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외안흥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사기정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웃안흥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동점음지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조산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장림천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동두천시, 2011)	100.0	

## 나. 기상 및 기후

### 1) 기상개황

- 동두천시는 한반도의 중앙내륙에 위치하고 소요산 등의 산악으로 위요된 분지지형으로 겨울철은 한랭·건조하고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대륙성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10년간 년평균 최고기온은 17.6℃, 최저기온은 6.8℃이며 년평균 기온은 11.1℃임

【표 II-8】기상개황

구분	기온(℃)			강수량(mm)	상대습도(%)	비고
	평균최고	평균최저	평균			
2001년	17.6	5.2	10.8	1,278.0	65.0	
2002년	17.5	5.8	10.7	1,261.1	66.0	
2003년	17.3	6.1	11.1	1,853.5	68.0	
2004년	17.8	5.8	11.2	1,534.5	64.0	
2005년	16.9	5.1	10.3	1,378.2	64.0	
2006년	17.8	6.1	11.2	1,360.1	67.0	
2007년	18.0	6.6	11.5	1,286.3	67.0	
2008년	18.2	6.6	11.7	1,518.2	67.9	
2009년	17.9	6.7	11.7	1,527.8	67.0	
2010년	16.7	6.2	10.9	1,939.5	67.0	
<b>평균</b>	<b>17.6</b>	<b>6.8</b>	<b>11.11</b>	<b>1493.7</b>	<b>66.3</b>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 2) 평균기온

- 동두천시는 8월이 가장 높고 1월이 가장 낮은 평균기온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고평균기온과 최저평균기온 모두 8월이 가장 높고 1월이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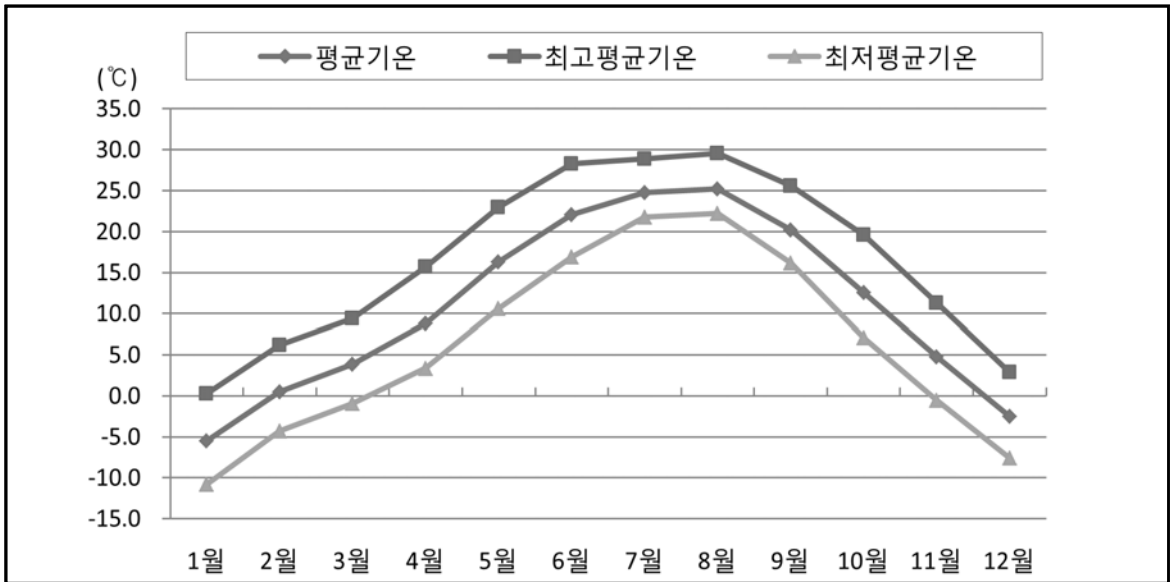
【표 II-9】월별 평균기온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5.5	0.5	3.9	8.8	16.3	22.1	24.8	25.2	20.2	12.6	4.8	-2.5
최고평균기온	0.3	6.2	9.4	15.7	23.0	28.3	28.9	29.6	25.6	19.6	11.3	2.9
최저평균기온	-10.8	-4.3	-0.9	3.4	10.6	16.9	21.8	22.2	16.2	7.1	-0.5	-7.6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그림 II-5】평균기온 그래프



3) 강수량

○ 2010년 동두천시의 강수량은 1,993.3mm로 평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렸으며, 6~8월 외에 9월에 많은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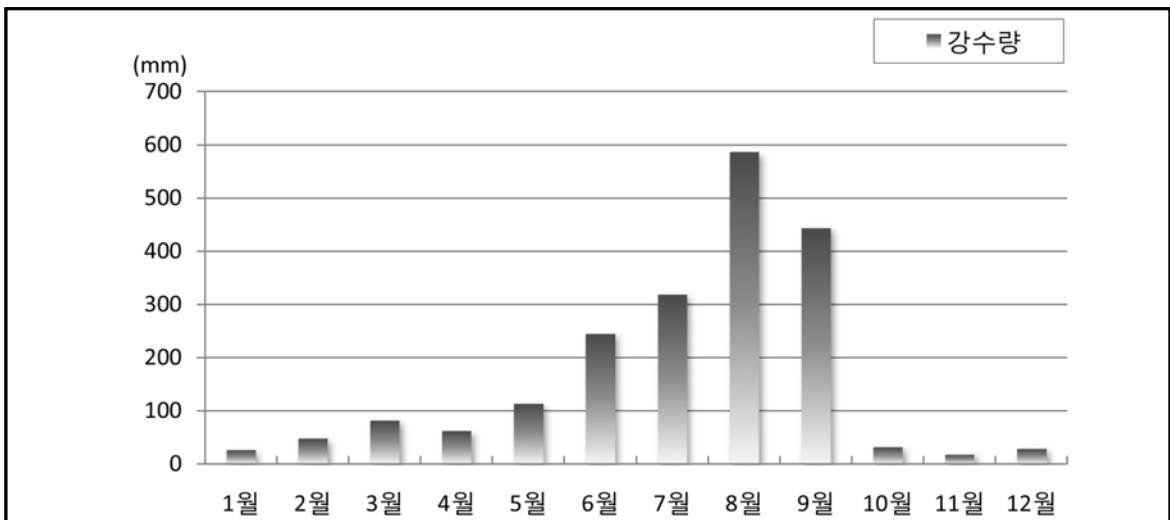
【표 II-10】월별 강수량

(단위 : mm)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수량	1,993.3	25.2	46.7	81.1	61.1	112.2	243.8	318.2	586.0	443.0	31.0	17.0	28.0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그림 II-6】강수량 그래프





## 다. 재해현황

### 1) 화재

○ 동두천시의 화재 발생건수는 1996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109건에 약 3억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됨

【표 II-11】화재발생건수

구 분	발생건수	소 실 규 모		피해액(천원)			인명피해(인)		
		동수	면적	계	부동산	동산	계	사망	부상
2003년	64	55	3,567	482,184	236,613	245,571	13	3	10
2004년	82	66	3,731	443,501	196,014	247,487	10	6	4
2005년	95	79	6,581	464,074	159,884	304,190	18	2	16
2006년	71	19	5,298	482,435	185,530	296,905	3	1	2
2007년	70	45	3,823	360,389	200,680	159,709	8	-	8
2008년	105	51	20,645	531,593	358,241	173,352	13	2	11
2009년	106	76	23,869	3,251,031	1,217,316	2,033,715	6	-	6
2010년	109	50	1,238	317,979	107,595	147,384	5	1	4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 2) 재난사고 발생현황

○ 재난사고는 2010년 현재 도로교통사고가 515건(인명피해 773인), 화재, 산불 및 폭발에 의한 피해가 109건(인명피해 5인)으로 조사됨

【표 II-12】재난사고 발생 현황

구 분	합 계		화재, 산불, 폭발		도로교통		기 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03년	1,970	3,147	65	15	1,904	3,132	-	-
2004년	1,076	1,028	82	10	574	901	420	117
2005년	747	926	173	25	574	901	-	-
2006년	78	6	72	3	-	-	6	3
2007년	626	883	70	8	552	875	-	-
2008년	568	788	105	13	456	769	7	6
2009년	935	630	115	9	820	624	-	-
2010년	624	778	109	5	515	773	-	-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3) 풍수해

○ 동두천시는 과거 10년간 수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는 없었으나,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음

【표 II-13】동두천시 풍수해 발생현황

구분	사망 및 실종	이재민 (명)	침수 면적 (ha)	피해액 (천 원)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2003년	-	-	-	-	-	597	-	-
2004년	-	-	-	-	-	-	-	-
2005년	-	-	-	-	-	-	-	-
2006년	-	-	3.0	-	-	339	30,000	2,821
2007년	-	-	-	-	-	-	31,737	-
2008년	-	-	-	-	-	-	38,867	-
2009년	-	-	-	-	-	-	-	-
2010년	-	-	-	16,000	-	-	-	2,500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표 II-14】2011년 동두천시 풍수해 피해현황

인명 피해	주택·침수(호)				이재민 (명)	상가 침수 (호)	산사태 등			농지 유실 등	가축 폐사 (두)	묘지 유실 (기)	도로 유실 (개소)
	소계	전파	반파	침수			소계	산사태	기타				
사망 6명	1,744	2	22	1,720	122	932	251	163	88	235농가 447필지 529천㎡	3,930	43	51

자료 : 동두천시 내부자료

## 4. 인문환경적 특성

### 가. 인구 및 가구현황

#### 1) 인구추이

○ 동두천시의 2010년 현재 인구는 98,3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수와 인구 밀도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가구당 인구는 1990년 3.73명에서 2010년 2.4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표 II-15】인구변화추이

연 도	가 구 수	인 구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
1990년	19,144	71,448	750.35	3.73
1991년	20,012	68,114	715.26	3.40
1992년	20,886	69,534	730.17	3.33
1993년	21,939	71,502	750.44	3.26
1994년	22,603	72,023	755.75	3.19
1995년	23,228	72,879	761.93	3.14
1996년	23,791	73,314	766.40	3.08
1997년	24,543	74,165	775.30	3.02
1998년	24,209	74,173	775.22	3.06
1999년	25,014	75,509	789.27	3.02
2000년	25,599	76,758	802.24	3.00
2001년	25,884	75,699	791.17	2.92
2002년	26,172	74,739	781.14	2.86
2003년	27,495	76,505	799.43	2.78
2004년	29,520	81,117	847.62	2.75
2005년	31,261	82,623	884.00	2.64
2006년	32,919	87,810	917.55	2.66
2007년	34,671	90,915	950.00	2.56
2008년	36,727	93,207	950.00	2.54
2009년	37,832	95,779	1,001.24	2.53
2010년	39,915	98,311	1,028.00	2.46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 2)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 2010년 동두천의 성별 인구구조(외국인 제외)는 남자 47,798인, 여자 47,855인, 남녀 비율은 100.52 : 100으로 남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5세 이상의 남녀비율은 77.3 : 100으로 여성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의 계층별 구성 중 가장 많은 계층은 청장년층이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이는 연령대는 35~39세로 전체인구의 9.45%인 8,648인으로 나타남
-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는 67,553인으로 전체의 70.62%이고 유년인구(14세 이하)는 15,685인(16.4%), 노령인구(65세 이상)는 12,415인(12.98%)으로 나타남

【표 II-16】성별·연령별 인구현황(외국인 제외)

구 분	합 계		남 자		여 자	
	인구(인)	구성비(%)	인구(인)	구성비(%)	인구(인)	구성비(%)
총 계	95,653	100.0	47,798	100.0	47,855	100.0
0~4	4,786	5.0	2,400	5.0	2,386	5.0
5~9	4,944	5.2	2,543	5.3	2,401	5.0
10~14	5,955	6.2	3,115	6.5	2,840	5.9
15~19	6,119	6.4	3,225	6.7	2,894	6.0
20~24	5,091	5.3	2,631	5.5	2,460	5.1
25~29	6,531	6.8	3,334	7.0	3,197	6.7
30~34	7,349	7.7	3,689	7.7	3,660	7.6
35~39	8,648	9.0	4,506	9.4	4,142	8.7
40~44	8,574	9.0	4,586	9.6	3,988	8.3
45~49	7,953	8.3	4,176	8.7	3,777	7.9
50~54	7,503	7.8	3,877	8.1	3,626	7.6
55~59	5,386	5.6	2,655	5.6	2,731	5.7
60~64	4,399	4.6	1,989	4.2	2,410	5.0
65~69	4,291	4.5	1,828	3.8	2,463	5.1
70~74	3,849	4.0	1,588	3.3	2,261	4.7
75~79	2,266	2.4	929	1.9	1,337	2.8
80세 이상	2,009	2.1	727	1.5	1,282	2.7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 3) 동별 인구 및 인구밀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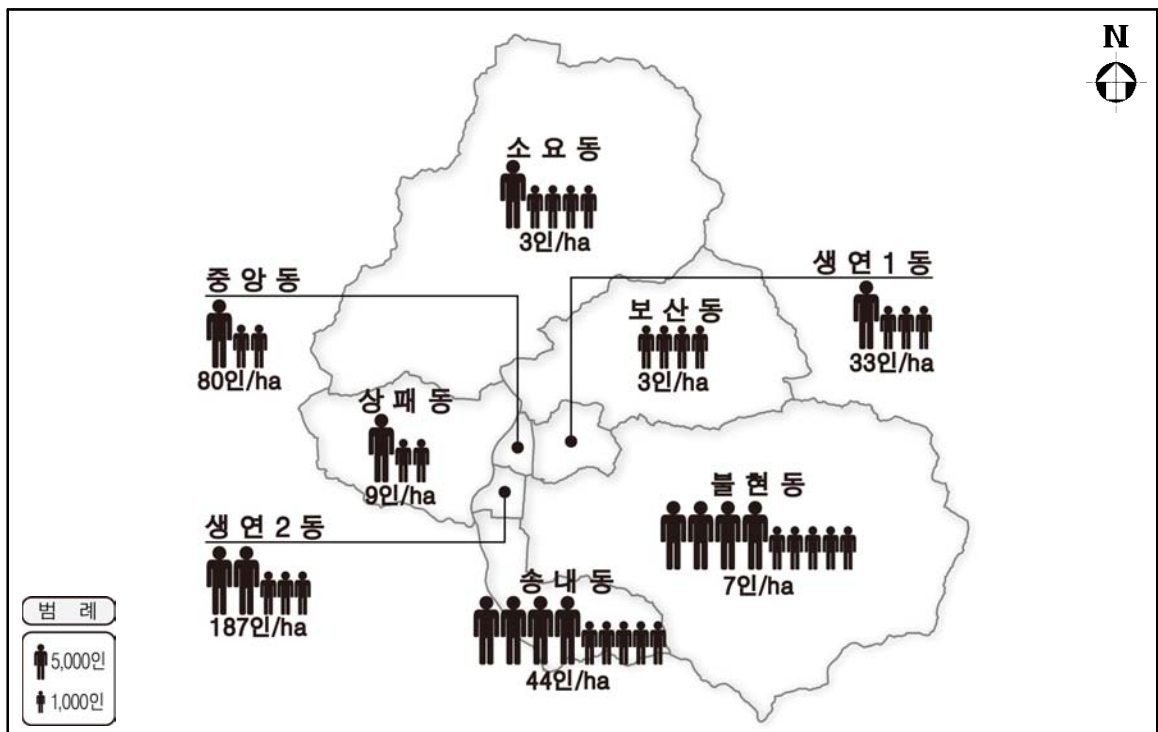
- 동별 인구는 불현동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송내동, 생연2동이 1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산동의 인구가 가장 적음
- 가구당인구는 생연1, 2동, 불현동, 송내동이 동두천시 가구당 인구 평균인 2.46보다 높고, 구시가지인 중앙동의 가구당 인구가 가장 적음

【표 II-17】동별 인구 및 밀도분포

구 분	가구(호)	인 구 (인)			가구당인구 (인/호)	비 고
		계	남 자	여 자		
계	39,915	98,311	49,088	49,223	2.46	
생연1동	3,010	7,706	3,708	3,998	2.56	
생연2동	5,252	13,196	6,555	6,641	2.51	
중앙동	3,369	6,551	3,321	3,230	1.94	
보산동	1,776	3,840	1,708	2,132	2.16	
불현동	10,050	25,539	12,648	12,891	2.54	
송내동	9,395	25,235	12,293	12,942	2.69	
소요동	3,953	9,495	5,268	4,227	2.40	
상패동	3,110	6,749	3,587	3,162	2.17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그림 II-7】동별 인구밀도



## 나. 지역경제 현황

### 1) 동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2010년말 현재 동두천시 전체 사업체수는 5,888개소, 종사자수는 23,518인으로 업체당 평균 3.99인이 종사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됨
- 사업체수는 송내동이 1,222개소로 가장 많고, 종사자수는 소요동이 5,233인으로 가장 많음

【표Ⅱ-18】동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구 분	사업체		종사자	
	개소	비율(%)	인	비율(%)
합 계	5,888	100.0	23,518	100.0
생연 1동	298	5.1	1,739	7.4
생연 2동	1,008	17.1	2,271	9.7
중 양 동	1,146	19.5	3,010	12.8
보 산 동	352	6.0	747	3.2
불 현 동	957	16.3	3,271	13.9
송 내 동	1,222	20.8	5,498	23.4
소 요 동	555	9.3	5,233	22.2
상 패 동	348	5.9	1,749	7.4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 2) 농업

- 2010년 현재 동두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766가구임
- 가구당 경지면적은 경기도 1.34ha, 경기북부 1.17ha로 가구당 1ha가 넘는 경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동두천시는 0.68ha에 불과하여 영세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Ⅱ-19】농가 및 경지면적 현황

구분	농가 (가구수)	경지면적(ha)			가구당경지면적(ha/가구)		
		계	전	답	계	전	답
경기도	135,332	181,676	79,780	101,896	1.34	0.59	0.75
북부	43,408	49,654	26,869	22,785	1.14	0.62	0.52
동두천시	766	520	372	148	0.68	0.49	.019

자료 : 경기도 통계연보, 2011

### 3) 공업

- 2010년 현재 동두천시의 87개 제조업체 중 섬유제품 제조업체가 27개소로 전체의 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체가 21개소로 전체의 24.1%를 차지하고 있음
- 업체별 종사자수는 전체 3,424인중 섬유제품 제조업체에 1,246인이 종사하여 전체종사자의 36.4%를 차지하고,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체에 510인이 종사하여 전체 종사자수의 14.9%, 기타 제조업에 751인이 종사하여 전체 종사자의 21.9%가 종사하고 있음

【표 II-20】제조업 현황

구분		계	섬유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기타
업체 수	개소	87	27	10	21	4	6	19
	%	100.0	31.0	11.5	24.1	4.6	6.9	21.8
종업원 수	인	3,424	1,246	617	510	91	209	751
	%	100.0	36.4	18.0	14.9	2.7	6.1	21.9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 4) 상업

- 2010년 현재 동두천시의 유통업체는 대형마트 2개소와 시장 4개소가 입지하고 있음
- 시장의 매장면적은 대형마트가 개점하기 전인 2008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대형마트 개점과 동시에 매장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표 II-21】유통업체 현황

(단위: 개소, m<sup>2</sup>)

구분	대형마트(할인점)			쇼핑센터			시장		
	개소	매장면적	연면적	개소	매장면적	연면적	개소	매장면적	대지면적
2003년	-	-	-	-	-	-	2	7,406	19,477
2004년	-	-	-	-	-	-	2	7,406	19,477
2005년	-	-	-	1	15,858	17,461	3	16,166	37,072
2006년	-	-	-	1	15,858	17,461	3	16,166	37,072
2007년	-	-	-	1	15,858	17,461	3	16,166	37,072
2008년	-	-	-	-	-	-	4	32,024	43,275
2009년	1	8,798	23,020	-	-	-	4	23,297	33,804
2010년	2	12,511	32,325	-	-	-	4	23,297	33,804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5) 관광

가) 관광사업체 현황

- 동두천시의 관광숙박업소는 2009년 3개소에서 2010년 2개소로 1개소가 감소하였음
- 외국인 전용업소는 2005년 최초 통계이후 큰 변화는 없음

【표 II-22】관광사업체 현황

구분	관광숙박업(호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호텔수	객실수	
2003년	3	112	-
2004년	3	112	-
2005년	3	112	83
2006년	3	112	84
2007년	3	112	84
2008년	3	112	81
2009년	3	112	84
2010년	2	-	86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나) 관광객 현황

- 동두천시의 관광객 수는 200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에 힘입어 약 57만명에 달했으나, 2000년대 중반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에 따라 약 12만명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신하여 내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 51만명의 관광객이 동두천시를 방문하고 있음

【표 II-23】관광객 현황

구분	관광객(명)		
	계	내국인	외국인
2003년	571,114	211,540	359,574
2004년	571,114	211,540	359,574
2005년	226,524	219,222	7,302
2006년	128,294	126,664	1,630
2007년	231,989	230,465	1,524
2008년	444,247	443,612	635
2009년	446,903	446,418	485
2010년	512,753	510,182	2,571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 다. 도시개발 현황

○ 동두천시의 도시개발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지구 2개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19개소, 일반산업단지 3개소 등 총 25개소의 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표 II-24】택지개발사업지구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현황

구 분	면 적(㎡)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최초결정일
합 계	1,478,481.9	35,550	11,850	-
생연택지개발사업	604,378	15,396	5,132	2001. 5.17
송내택지개발사업	691,873.9	18,990	6,330	1998.10.14
불현토지구획정리사업	182,230	1,164	388	2001. 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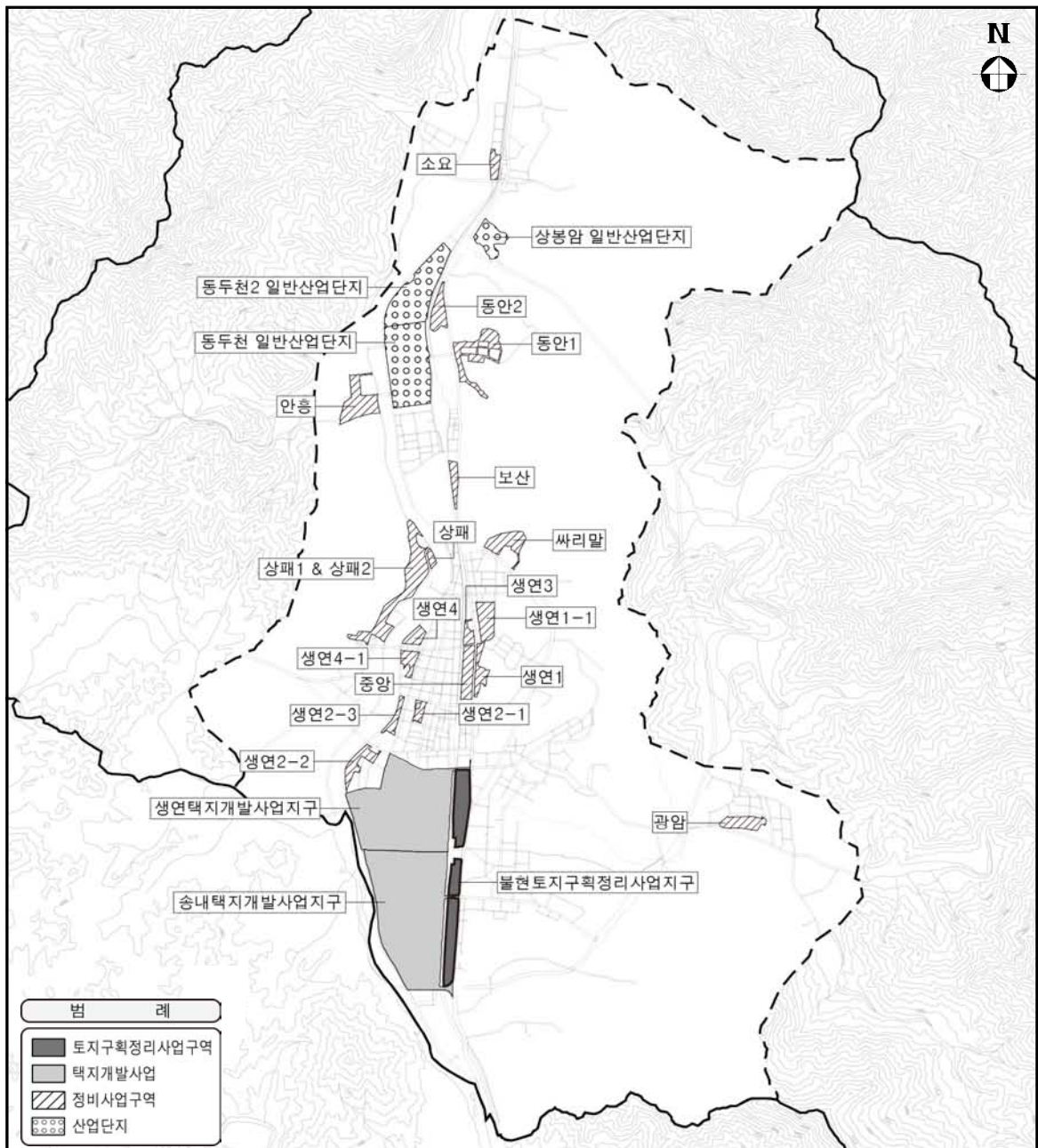
【표 II-25】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현황

구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합 계	19개소	727,539	-
생연2-1	생연동 664 일원	26,030	1991. 5.20
보산	보산동 495 일원	25,882	1993. 7.31
상패	상패동 11 일원	15,278	1993. 1.11
생연4	생연동 583 일원	20,608	1997. 1. 6
생연3	생연동 551 일원	13,907	1997. 7.14
소요	상봉암동 122-15 일원	19,089	2001.12.31
동안1	동두천동 285-13 일원	72,170	2002. 1.31
동안2	동두천동 349-15 일원	37,375	2001.12.31
생연1	생연동 480-39 일원	28,844	2001.12.31
생연2-2	생연동 788-87 일원	36,477	2001.12.31
상패2	상패동 23 일원	58,410	2003. 6.30
광암	광암동 194-10 일원	37,752	2003. 6.30
상패1	상패동 4-24 일원	74,718	2003. 6.30
생연4-1	생연동 525-74 일원	21,806	2003. 6.30
생연2-3	생연동 819-62 일원	18,210	2003. 6.30
싸릿말	보산동 315 일원	49,551	2008. 1.14
안흥	안흥동 57-2 일원	79,868	2008. 1.14
중앙	생연동 625-15 일원	45,139	2008. 2. 4
생연1-1	생연동 515 일원	46,425	2012. 3.16

【표 II-26】산업단지 지정 현황

구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합 계	3개소	503,312	-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동두천동 306-1 일원	262,160	1994.10.10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동두천동 일원	186,614	2007. 1.29	
상봉암 일반산업단지	상봉암동 146 일원	54,538	1995. 2.28	

【그림 II-8】도시개발 현황도



## 라. 토지이용 현황

### 1) 지목별 현황

- 지목별 토지현황은 임이 전체면적의 67.7%로 가장 많으며, 전, 대, 답의 순으로 나타남
- 대는 4.71km<sup>2</sup>로서, 동두천시 전체 행정구역의 4.9%에 해당함

【표 II-27】지목별 현황

구분	계	전	답	대	도	임	천	기타
면적(km <sup>2</sup> )	95.66	7.21	2.96	4.71	2.32	64.77	2.19	11.50
비율(%)	100.0	7.5	3.1	4.9	2.4	67.7	2.3	12.0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 2) 용도지역 현황

- 동두천시는 도시지역이 33.09km<sup>2</sup>, 비도시지역이 62.59km<sup>2</sup>로 비도시지역 면적이 도시지역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함
- 도시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 25.63km<sup>2</sup>가 지정되어 있으며 상업지역은 가장 적은 1.04km<sup>2</sup>가 지정되어 있음
-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7.45km<sup>2</sup>로 동두천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7.8%에 불과함
-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림지역이 40.49km<sup>2</sup>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28】용도지역 현황

구분	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면적(km <sup>2</sup> )	95.68	33.09	5.63	1.04	0.78	25.63	62.59	22.10	40.49
비율(%)	100.0	34.6	5.9	1.1	0.8	26.8	65.4	23.1	42.3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 마. 생활환경

### 1) 주거환경

#### 가) 주택보급률 현황

- 동두천시는 2004년 주택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주택보급률인 전년도의 117.2%에서 144.2%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주택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보급률 130%를 웃도는 수급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가구수의 지속적 증가로 주택보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10년 동두천시의 주택보급률은 108.6%로 안정적 주택수급이 가능한 상태임

【표 II-29】주택보급률 현황

구 분	가구수(가구)	주택수(호)	주택보급률(%)
2003년	19,516	22,877	117.2
2004년	19,725	28,438	144.2
2005년	21,330	29,180	136.8
2006년	21,988	29,244	133.0
2007년	22,461	29,191	130.0
2008년	28,051	31,338	111.7
2009년	28,371	33,563	118.3
2010년	32,413	35,195	108.6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 나) 주택유형 및 점유 현황

- 동두천시의 전체 주택수는 2003년 약 2만2천호에서 2010년 약 3만5천호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2010년 주택의 수가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은 108.6%로 초과공급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0년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05년 자가주택 소유비율은 43.7%로 2000년(52.9%)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도시의 개발여건이 향상될 경우 외부인의 투자·투기가 심화되어 서민들의 주택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표 II-30】주택유형별 현황

(단위 : 호)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아 파 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 타
2003년	22,877	8,255	9,750	4,176	696	288
2004년	28,438	8,296	15,246	4,176	720	299
2005년	29,180	7,115	16,507	2,541	2,591	-
2006년	29,244	7,537	16,507	2,604	2,596	485
2007년	29,191	7,039	16,507	2,616	2,603	426
2008년	31,338	9,061	16,507	2,616	2,728	426
2009년	33,563	9,129	18,332	2,616	3,060	426
2010년	35,195	7,858	20,008	2,583	3,116	350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표 II-31】주택 점유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 분	합 계	자 가	전 세	월 세	기 타	자가주택 소유비율
2000년	22,905	12,115	5,129	4,530	1,131	52.9
2005년	26,897	11,752	3,892	9,956	1,297	43.7
2010년	32,413	15,080	8,864	7,463	1,006	46.5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010

## 2) 전기·가스·수도

### 가) 전력사용 현황

○ 동두천시의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용도는 산업용으로 전체의 54.5%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정용은 11.9%가 사용됨

【표 II-32】용도별 전력사용량

(단위 : MWh, %)

구분	합 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사용량	점유율	사용량	점유율	사용량	점유율	사용량	점유율	사용량	점유율
2003년	1,535,535	100.0	168,002	10.9	150,104	9.8	348,989	22.7	868,440	56.6
2004년	1,429,747	100.0	159,930	11.2	141,027	9.9	323,712	22.6	805,078	56.3
2005년	1,513,818	100.0	171,609	11.3	149,361	9.9	360,087	23.8	832,761	55.0
2006년	1,593,567	100.0	179,513	11.3	159,314	10.0	376,146	23.6	878,594	55.1
2007년	1,601,913	100.0	181,217	11.3	160,844	10.1	377,089	23.5	882,763	55.1
2008년	1,703,164	100.0	204,364	12.0	172,112	10.1	395,885	23.2	930,803	54.7
2009년	1,747,316	100.0	210,438	12.0	167,069	9.6	412,979	23.6	956,830	54.8
2010년	1,866,875	100.0	223,024	11.9	164,364	8.8	462,928	24.8	1,016,559	54.5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나) 가스종류별 공급 현황

- 동두천시의 도시가스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0년부터 감소세로 바뀌었으며, 프로 판 판매량은 2005년 이후 급감하였음

【표Ⅱ-33】가스종류별 공급량

구 분	도 시 가 스		프 로 판		부 탄	
	판매소수 (개소)	판매량 (1,000㎥)	판매소수 (개소)	판매량 (1,000㎥)	판매소수 (개소)	판매량 (1,000㎥)
2003년	1	40,263	6	16,810	8	6,810
2004년	1	49,627	9	2,827	12	6,940
2005년	1	56,951	9	17,550	12	6,366
2006년	1	60,479	9	2,373	12	7,018
2007년	1	62,444	8	1,791	11	6,660
2008년	1	65,580	7	1,152	10	6,943
2009년	1	74,876	7	1,944	10	6,756
2010년	1	66,202	7	1,599	10	6,695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다) 도시가스 이용 현황

- 도시가스 이용가구는 2007년 최초 공급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0년 현재 34,734개소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 도시가스 이용의 대부분은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정용 이외에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수송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표Ⅱ-34】도시가스 이용가구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수송용	기타
2004년	-	-	-	-	-	-	-
2005년	-	-	-	-	-	-	-
2006년	-	-	-	-	-	-	-
2007년	27,283	26,201	468	412	129	-	73
2008년	29,951	28,125	592	511	133	-	82
2009년	32,824	30,830	672	576	144	1	94
2010년	34,734	32,640	760	580	142	1	104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라) 상수도 현황

- 2010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6.9%이며, 1일1인당 급수량은 332ℓ임
- 전체 상수도 시설용량은 60,000m<sup>3</sup>/일로 1일 급수량 31,611m<sup>3</sup>과 비교해 볼 때 충분한 여유용량을 갖추고 있음

【표 II-35】상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	시설용량 (m <sup>3</sup> /일)	급 수 량 (m <sup>3</sup> /일)	1일1인당급수량 (ℓ/일·인)
2003년	76,505	69,627	91.0	51,000	34,471	495
2004년	81,117	74,229	91.5	51,000	40,090	540
2005년	84,601	77,750	91.9	60,000	46,218	594
2006년	87,810	84,762	96.5	90,000	36,502	431
2007년	90,915	87,867	96.6	93,000	51,530	586
2008년	93,207	90,159	96.7	60,000 (광역용수제외)	49,344	547
2009년	95,779	92,731	96.8	60,000 (광역용수제외)	30,583	330
2010년	98,311	95,271	96.9	60,000 (광역용수제외)	31,611	332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마) 하수도 현황

- 2010년 현재 동두천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96.1%로 인구증가에 맞춰 시설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II-36】하수처리인구 및 하수도 보급률

구분	총인구	하수처리인구(인)				보급률 (%)
		합계	하수종말 처리인구	폐수종말 처리인구	마을하수도 인구	
2005년	84,601	81,124	81,124	-	-	95.89
2006년	87,810	84,201	84,201	-	-	95.90
2007년	90,915	87,187	87,187	-	-	95.90
2008년	93,207	89,385	89,385	-	-	95.90
2009년	95,779	92,073	92,073	-	-	96.10
2010년	98,311	94,477	94,477	-	-	96.10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 상위 및 관련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 경기 2020 : 비전과 전략(21세기 경기발전 구상)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2013.11.)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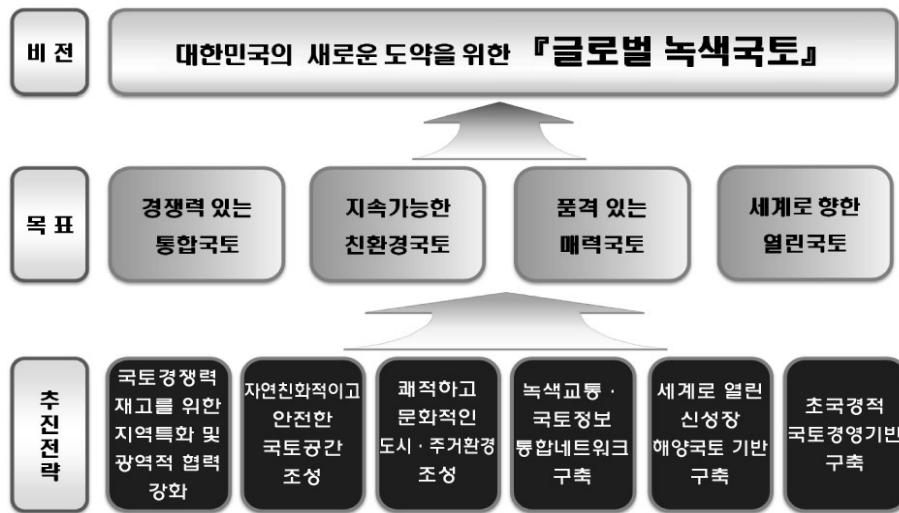




### Ⅲ 상위 및 관련계획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가. 수정계획의 기본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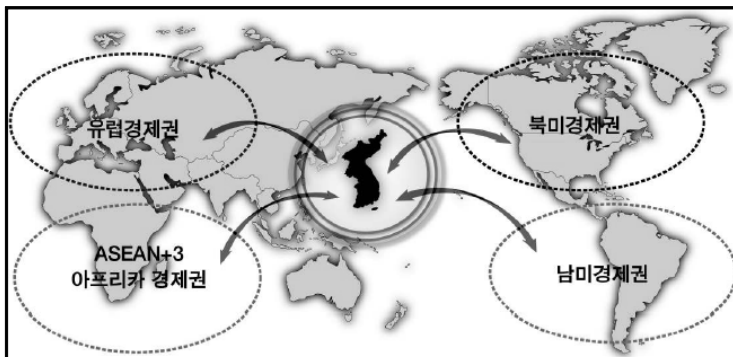
##### 나.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 1)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

○ 유라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문역할과 동아시아 주요 경제권(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평양권, 유라시아 대륙권)의 중추국가로서 위치를 확립

○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위한 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

【그림Ⅲ-1】유라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



【그림Ⅲ-2】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2)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

-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 육성,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연계형 국토구조로 개편
- 행정구역을 탈피하여 광역경제권 단위의 자체역량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각 권역의 중심도시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생산적·포괄적·지속적 성장을 추구
- 각 중심의 지역발전 및 하천생태 복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공간 구조를 구축
- 광역경제권간 교류·연계 강화 및 녹색 국토공간 형성을 토대로 유라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개방형 녹색국토」완성

## 다. 6대 추진전략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교통·교통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라. 경기도(수도권): 수도권을 동아시아 중심대도시권으로 육성

### 1) 동아시아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거점 및 지식산업클러스터 육성

- 문화콘텐츠, 디자인, 소프트웨어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로봇·바이오, U-헬스, IT 기반융합, 고령친화, 신재생에너지 등 지식기반제조업의 거점으로 육성
-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는 광역적 클러스터 추진주체를 조직하고 클러스터 촉진사업을 적극 추진

2) 교통인프라 기능 확충

- BRT,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도입과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도모
- 광역우회교통망 확충, 버스 및 지하철 연계교통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TOD)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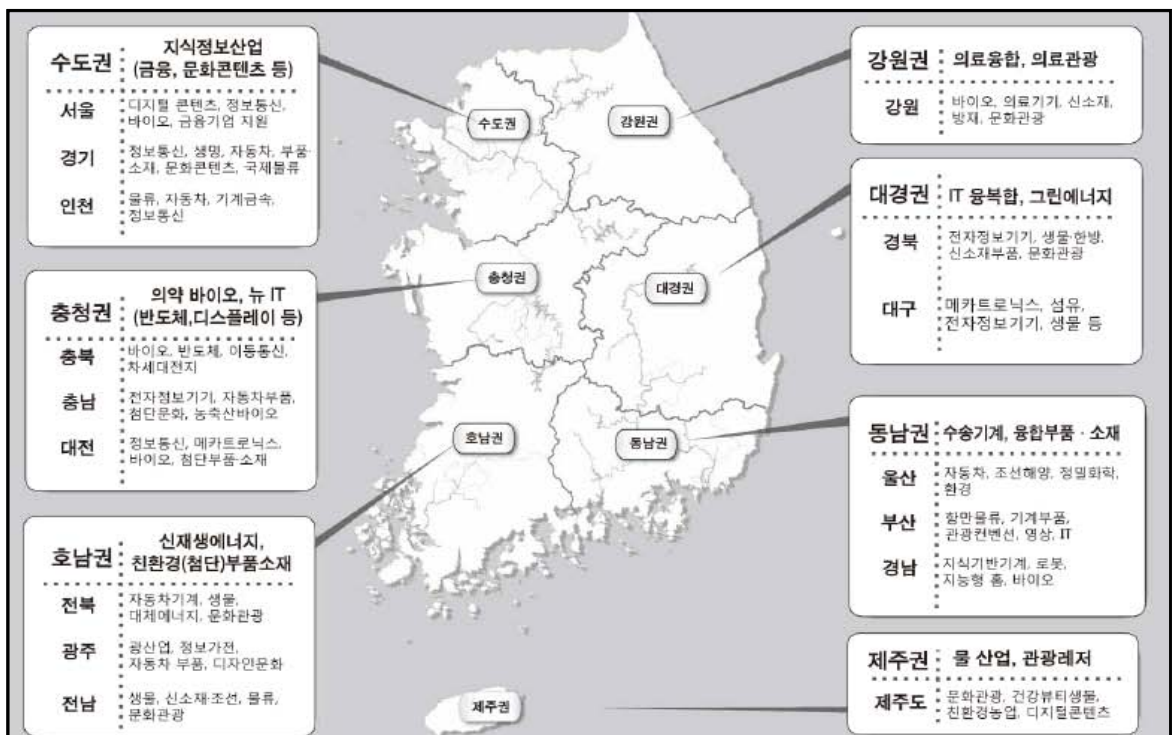
3) 다핵공간구조 형성과 낙후지역 지원

- 수도권 내 지역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자족도시권역을 형성하여 다핵공간구조 실현 및 주변 도시들과의 연계성 강화
- 경기 동북부지역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도서 개발, 접경지역 지원 등 분산된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정책을 종합적·체계적 지원 체제로 전환

4) 수도권의 광역행정 협조체제 구축 및 권역간 협력 강화

-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및 광역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광역적 행정협조체제 구축
- 각 부문간 통합적·광역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과 자연물순환체계 보전

【그림III-3】광역경제권·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자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대한민국정부, 2011.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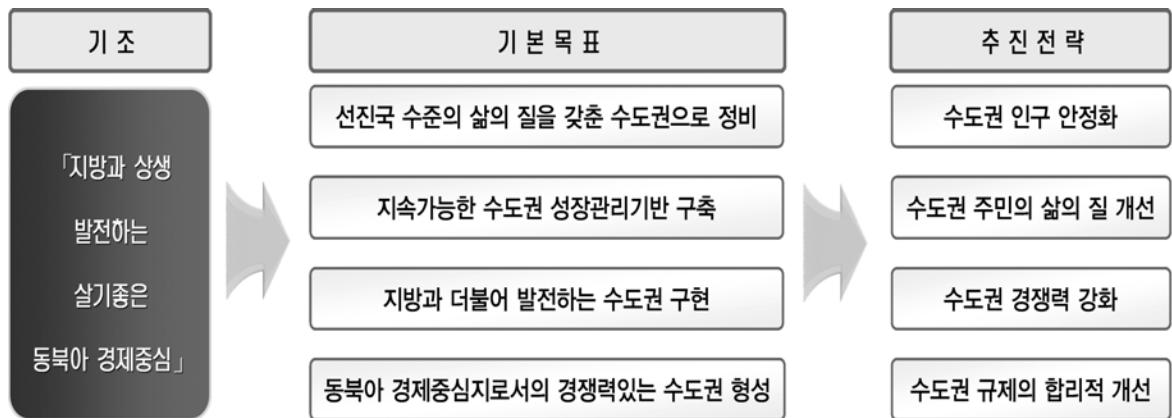
## 2.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 가. 계획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등 상위계획이 변경되고, 신수도권 발전 방안('04.8)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05.6)등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 틀

- 수도권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 발전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
-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



### 다. 공간구조 개편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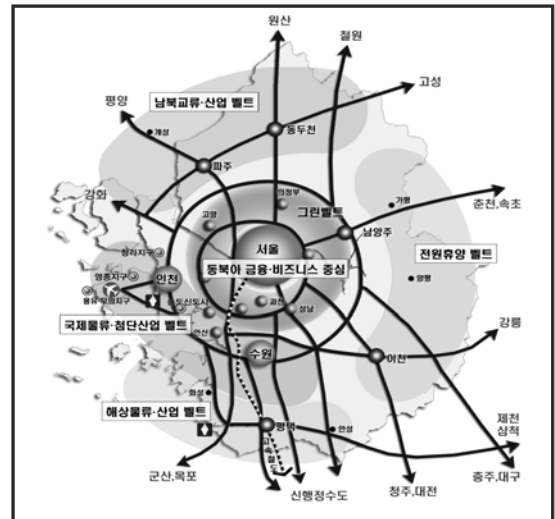
#### 1) 공간구조 개편

- 서울 일극집중형 공간구조를 다핵연계형 구조로 전환 및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를 순환격자형으로 개편
- 통근권과 생활권, 역사성을 고려하여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형성
- 지역 중심도시간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 유도

2) 5개 특성화된 산업벨트 구축

- 서울 및 주변지역  
: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
- 수원·인천지역  
: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
- 경기 북부지역(동두천)  
: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벨트
- 경기 동부지역  
: 전원 휴양벨트
- 경기 남부지역  
: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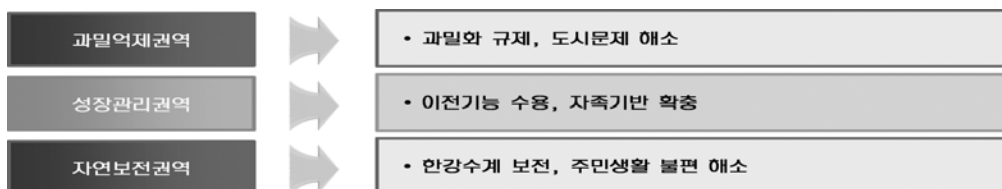
【그림III-4】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도



자료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건교부, 2006.07)

라. 권역구분 및 정비전략

- 지역특성에 따라 과밀억제,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
  -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의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표III-1】행정구역별 수도권정비계획 권역구분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정구역	서울, 인천, 수원, 안양, 구리, 고양, 부천, 과천, 광명, 의정부, 남양주(일부), 하남, 성남, 의왕, 군포, 시흥	동두천, 남양주(일부), 안산, 평택, 오산, 파주, 용인, 김포, 포천, 연천, 화성, 강화, 용진, 양주, 안성(일부)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마. 주요 관련내용

- 동두천이 속하는 경기 북부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파주의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벨트」 형성

### 3.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 가. 계획 변경의 배경

-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9)에 의해, 수도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여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키로 결정
- 도시 내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서민주택을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 제기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훼손된 녹지를 복구·정비하여 시민의 친환경적 여가공간을 확충할 필요성 증대 및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해제를 허용하는 한편 해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 필요

#### 나. 계획의 목표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 다. 계획의 전략

-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
-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 형성
- 공간구조구상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설정
- 광역 생태녹지축을 구성하고, 녹지 및 여가공간과 연결되는 생태여가·관광벨트 구축
-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 광역시설 서비스의 협력적 공급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 광역적 차원에서의 대기질·수질·생태계 보전 체계 구축

#### 라. 공간구조의 개편

##### 1) 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화

- 서울로의 통행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위치(서울로부터 35km권 이상)의 거점도시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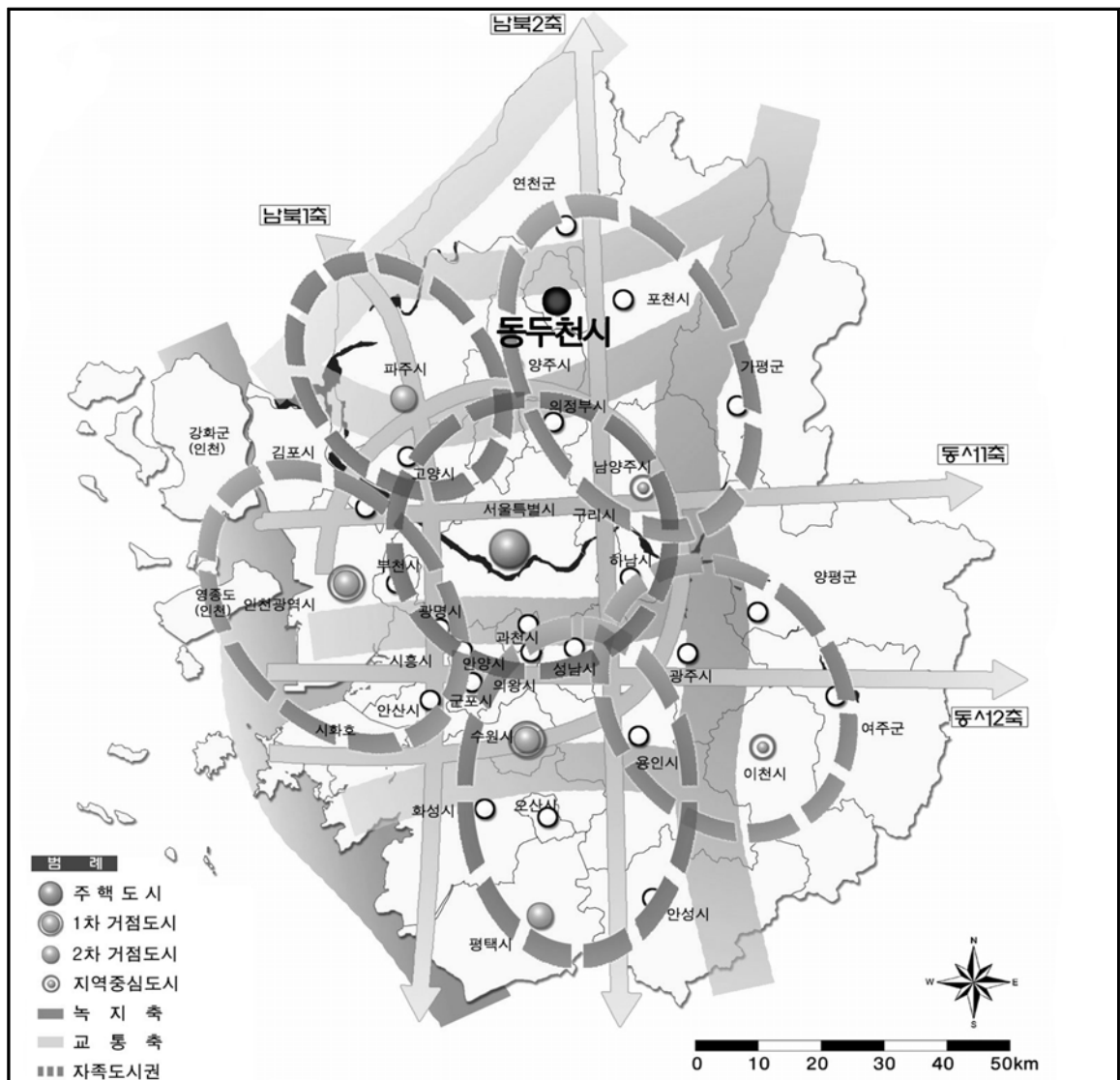


심으로 인접한 도시들과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산업 및 서비스기능을 보완하는 자족도시권을 형성

## 2) 권역별 다핵화

- 공간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동북권역, 서북권역, 동남권역, 남부권역, 중추관리권역 등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다핵화 추진
- 동두천은 남북2축 상에 위치한 2차 거점도시로서 동북권역에 해당하며 동부권역의 주요 기능은 기성시가지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인접 구리시와 의정부시 등 배후 지역의 생활중심지로 육성하고, 서울 외곽 거점도시인 동두천시와 남양주시와의 연계 강화

【그림Ⅲ-5】수도권 공간구조 골격구상도



자료 :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09.10)

## 4.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 가.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1) 계획의 수립 배경

- 국가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경기도의 비중과 역할을 수행하고, 경기도와 도민의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이 필요
- 수도권정비계획을 이유로 그 동안 경기도 자체적인 종합계획 부재

#### 2) 계획의 수립 목적

- 광역경제권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 지역개발·교통·산업경제·문화관광·환경생태 등 부문별 계획의 정합성 확보
- 경기도 도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참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 및 도민의 비전을 수립
- 경기도의 창조적 정체성 형성

### 나. 계획의 기본방향

#### 1) 비전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

#### 2) 4대 목표

-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역할
-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 건강한 녹색사회의 실현
-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조성

3) 8대 기본과제

- 국제교류협력과 남북공동번영 거점의 조성
- 동북아 신성장 산업의 거점 조성
-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체계 완성
- 교육과 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심지 육성
- 저탄소 녹색환경 기반 구축
- 수도권 광역·녹색교통체계 완성
- 품격 있는 문화, 창조산업의 선도 지역 실현
- 매력 있고, 살고 싶은 신생활 지역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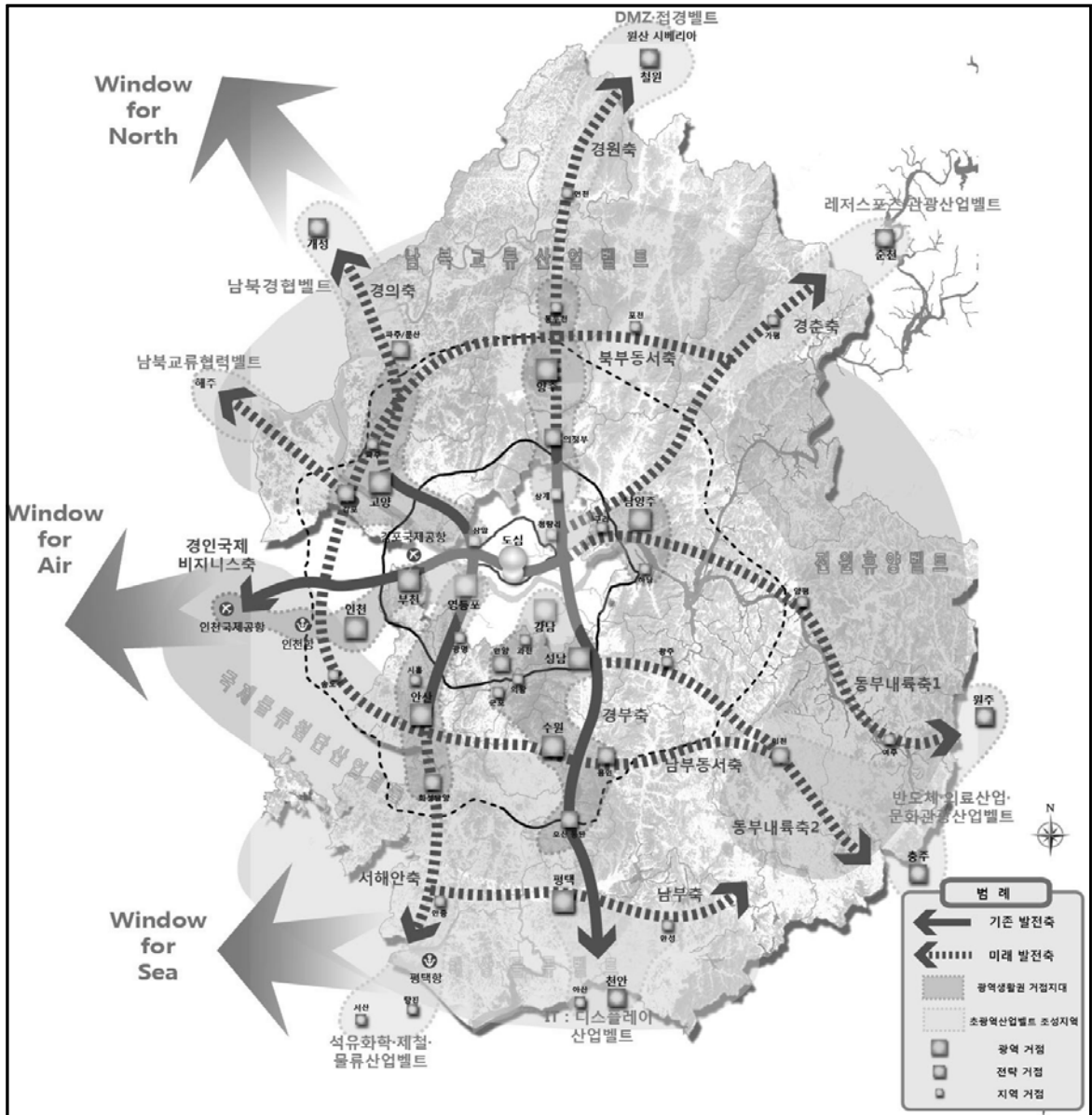
다. 공간구조 형성전략 수립

- 성장축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 형성 전략
- 경기도 내에서 “다중심화 전략과 연계형 광역생활권 형성 전략”추진
- 5+2 광역경제권 충청권, 강원권, 개성권과 연계 강화

【표Ⅲ-2】공간구조 형성

구 분	내 용
중심지체계 및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광역거점 :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li> <li>• 6전략거점 : 용인, 안양, 오산·동탄, 화성남양, 김포, 파주문산, 의정부, 이천</li> <li>• 17지역거점 : 안성, 과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 하남, 파주, 여주, 안중, 구리, 광주, <b>동두천</b>, 가평, 포천, 연천</li> </ul>
발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원축 : 의정부 ~ 양주 ~ <b>동두천</b> ~ 연천 ~ (철원·원산)</li> </ul>

【그림III-6】공간구조 형성 전략 구상도



자료 :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경기도)

## 라. 권역별 발전전략

### 1) 계획권역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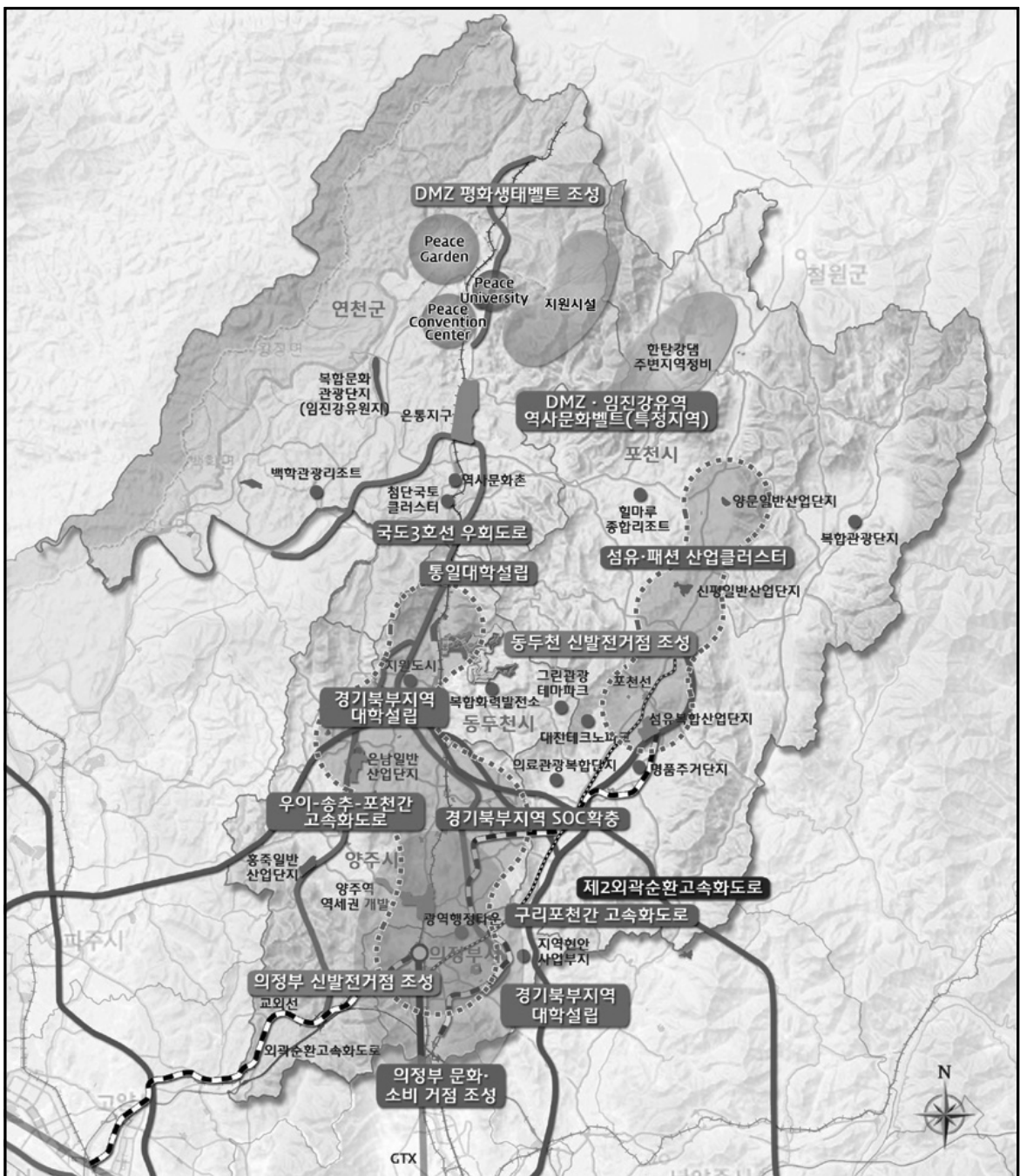
- 정부권역, 서해안권역, 경의권역, 정원권역, 동부권역 등 5개 계획권역 설정

### 2) 동부권 발전방향

- 지형적 여건 등으로 단절된 북부권의 상호보완 성장을 위한 동서축의 고속교통망체계 구축

- 미군공여지 반환, 군사시설보호규제 완화 등 개발 잠재력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공간 구조개편과 연계한 개발전략 추진
- 경원축의 미래 신산업 발굴과 경의축 등 배후 산업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성장동력 육성 및 대규모 신도시 배후의 일자리 창출

【그림Ⅲ-7】경원권 전략계획 구상도



자료 :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경기도)

## 5. 경기 2020 : 비전과 전략(21세기 경기발전 구상)

### 가. 목적

- 국가주역으로서 창조적 미래의 계획과 설계
-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광역화, 남북통일에 대비
-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목표 설정
- 지역 정책성 확립과 지방계획, 개발 자취권의 회복

### 나. 공간구조 개편구상

- 통일 후 국토 골격과의 통합적 공간구조 형성
- 고차기능의 집적화와 연계화를 동시에 충족
-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정비
- 자연공간의 적극적 보전

### 다. 정책과 기본전략

- 산업경제구조의 개편과 고도화
-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
- 도시 농촌의 발전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 환경보전과 환경친화적 발전
- 삶의 질 제고와 문화복지사회의 구현

### 라. 경기도 생활권역 구분

- 동북 내륙권 - 동북 1권 :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동북 2권 : 구리, 남양주, 가평
- 서북 해안권 - 고양파주권 : 고양, 파주  
김 포 권 : 김포, 강화

- 동남 내륙권 - 동남 1권 : 성남, 하남, 광주, 용인  
동남 2권 : 이천, 여주, 양평
- 남부 임해권 - 평택권 : 평택, 안성  
수원권 : 수원, 오산, 화성
- 서울 인접 - 위성도시권 : 부천,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의왕, 과천
- 서남 도시권 - 안산권 : 안산, 시화(시흥 일부)

## 마. 북부지역 개발전략

- 통일 후 발전잠재력이 가장 큰 북부지역
- 북부지역에 공공시설 정비수준을 격상
-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 바. 동북 내륙 생활권 발전구상

### 1) 구상 및 발전전략

- 간선교통축의 재편에 따른 지역개발 및 정비
  - 경기순환철도와 금강산철도의 개설, 기존철도 복선화 추진, 역세권 개발,
- 난개발방지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정비전략 강구
- 통일 전까지 쾌적성을 훼손하지 않는 고부가 기능 도입
  - R&D 기능의 적극적인 유치와 부대기능 도입 및 정비
  - 관광자원의 고품질화
- 수자원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철저한 관리

### 2) 동두천시 발전전략

-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역세권개발에 중점을 두어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정비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서간 연계도로망을 조기에 추진
- 산업단지, 피혁단지, 유통기지 등의 집단화와 시북단의 공업단지를 육성하고 환경시범 사업을 추진
- 통일 미군공여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종합발전구상을 수립하고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규제완화 추진

## 6.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2013.11.)

### 가. 도시미래상



### 나.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표Ⅲ-3】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계획목표	추진 전략
새로운 도약으로 시민이 일하고 즐길 수 있는 "풍요롭고 젊은 경제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반조성</li> <li>• 문화예술자원 육성</li> <li>• 경쟁력 있는 대학유지</li> <li>• 광역기반시설 확충</li> </ul>
사회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을 증진하는 "따뜻한 문화·복지·교육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복지환경 개선</li> <li>• 시민의 안전생활 도모</li> <li>• 문화인프라 구축</li> <li>• 휴양·레포츠 관광육성</li> <li>•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인프라 구축</li> </ul>
도시이미지 개선으로 시민에게 꿈을 주는 "녹색 희망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이미지 개선방안 수립</li> <li>• 녹색교통수단 도입</li> <li>• 정주환경 개선 및 역세권 개발</li> <li>• 제도적 규제 완화</li> </ul>



## 다. 중심지 체계

- 2도심, 6지구 중심으로 도심기능 강화 전략 마련
- 경기북부지역 광역 경쟁력 증진을 위한 연계체계 마련

【표Ⅲ-4】중심지 체계

구 분	중심지	주요기능	정비방안
도심	생연	• 도시행정, 상업·업무·서비스	• 기성시가지 리뉴얼, 기반시설 정비·확충
	보산	• 생명과학 복합 중심	• 산·학·연 복합개발
지구 중심	소요	• 남북교류, 미래산업, 관광	• 남북교류 유보지, 미래지향, 토지관리, 소요산 관광지 정비
	송내	• 정주기반, 생활권 서비스	• 합리적 수요관리에 기반한 계획적 시가지 개발
	상패	• 교육·문화, 산업, 물류	• 정책적 개발사업과 연계한 자족적 신시가지 형성
	안흥	• 영상단지, 휴양·주거	• 영상단지 및 고령화 시대 대비 Eco Green Valley 조성
	광암	• 테마·관광	• 테마마을 관련 관광지 조성
	탐동	• 레포츠, 체험형·코스형 관광	• 산악·계곡자원을 활용한 체험형·코스형 관광산업 육성

### 1) 도시성장벨트

#### 신성장발전벨트

- 대규모 가용토지 자원을 활용한 정책적 개발 추진
- 산업연계 개발을 통한 자족기능 확충

#### 레포츠 관광벨트

- 자연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 관광거점간 연계를 통한 다양한 관광루트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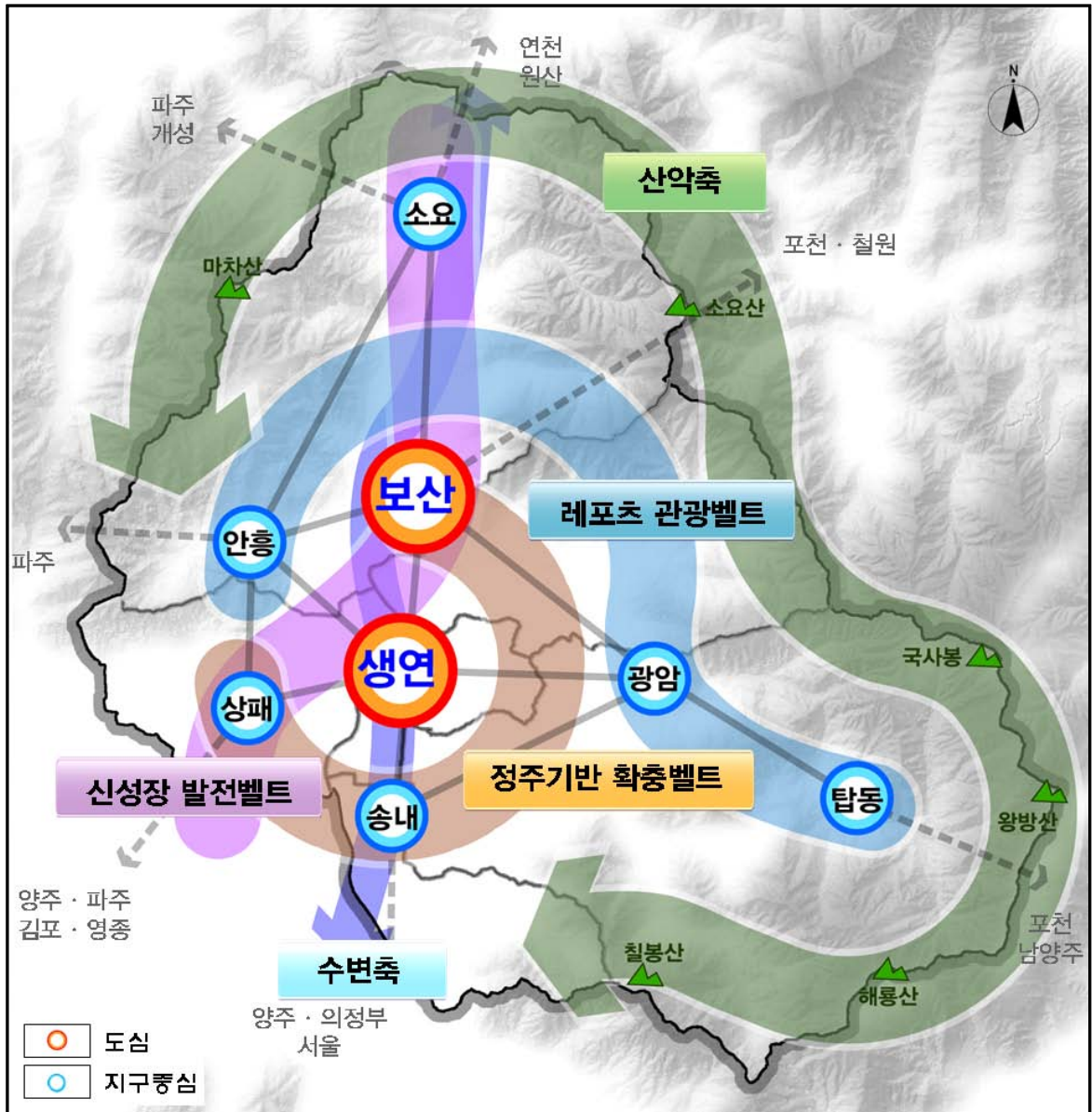
#### 정주기반 확충벨트

- 시가지 인접 가용토지자원을 활용하여 민간 주택수요의 계획적 수용
- 합리적 기반시설 분담·확충 방안 마련을 통한 난개발 방지

#### 자연환경 보전벨트

- 산악축 : 광역 녹지축 및 주요 산자락
- 수변축 : 신천 생태하천 중심

【그림Ⅲ-8】공간구조 구상도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동두천시, 2013.11.)

## 라. 인구계획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추세연장에 의한 인구 134천인, 도시정책에 의한 정책입지 인구 140천인, 가용토지량에 의한 인구 392천인으로 산정

- 추세연장 : 134천인
- 도시정책에 의한 정책입지인구 : 140천인
- 가용토지량에 의한 인구 : 392천인

○ 추세연장, 정책입지, 가용토지량에 의한 추정인구 중 도시정책에 의한 정책입지 인구 140천인을 2025년 계획인구로 설정

○ 추세연장에 의한 인구 134천인은 도시인프라 우선공급 고려인구로 설정

○ 가용토지량에 의한 인구 392천인은 장래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관리인구로 설정

○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목표연도인 2020년의 계획인구는 123천인으로 예측되었음

【표Ⅲ-5】단계별 인구지표

(단위 : 명)

연도	2010년(현황)	2015년	2020년	2025년
인구지표 설정	98,311	115,000	123,000	140,000
자연증가 인구	98,311	100,540	102,014	102,798
사회적 증가 인구	-	14,000	20,500	36,500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마. 토지이용계획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정계획보다 9.523km<sup>2</sup> 증가

○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목표연도에 해당하는 3단계에는 2.795km<sup>2</sup>의 시가화예정용지가 배분되어 있음

【표Ⅲ-6】토지이용계획 총괄표

(단위 : km<sup>2</sup>, %)

구 분	2020년(기정)		증 감	2025년(변경)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합 계	95.680	100.0	-	95.680	100.0	
소 계	7.100	7.4	증) 0.780	7.880	8.2	
시가화 용지	주거용지	5.380	5.6	증) 0.270	5.650	5.9
	상업용지	1.040	1.1	-	1.040	1.1
	공업용지	0.480	0.5	증) 0.510	0.990	1.0
	관리용지	0.200	0.2	-	0.200	0.2

기정 :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경기도 도시주택과 3042호, 2012.04.19.)

【표III-6】토지이용계획 총괄표(계속)

(단위 : km<sup>2</sup>, %)

구 분	2020년(기정)		증 감	2025년(변경)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소 계	16.900	17.7	증) 9.523	26.423	27.6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예정용지	15.400	증) 1.567	16.967	17.7	
	주거용도	5.720	감) 4.734	0.986	1.0	
	공업용도	0.800	감) 0.320	0.480	0.5	
	관리용도	8.880	감) 8.880	-	-	
	복합용도	-	증) 15.501	15.501	16.2	
	지구단위계획	1.500	증) 7.956	9.456	9.9	
	관광휴양형	1.500	증) 7.956	9.456	9.9	
보전용지	71.680	74.9	감) 10.303	61.377	64.1	

기정 :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경기도 도시주택과 3042호, 2012.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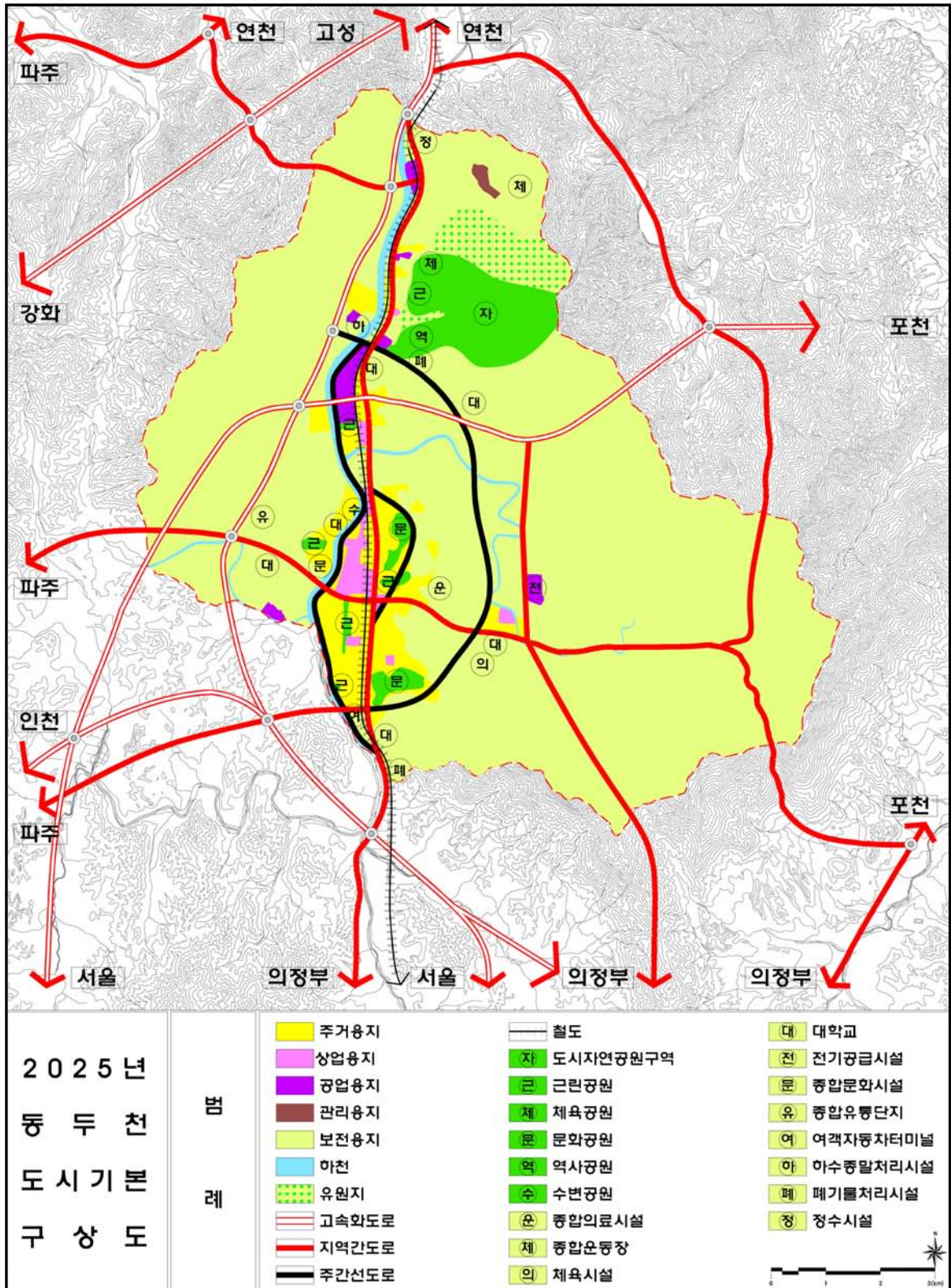
【표III-7】시가화예정용지 단계별 배분계획

(단위 : km<sup>2</sup>)

구 분	계	2단계 (2011~2015)	3단계 (2016~2020)	4단계 (2021~2025)	
동두천시	계	16.967	8.171	2.795	6.001
	주거용도	0.986	0.756	0.230	-
	공업용도	0.480	0.050	0.430	-
	복합용도	15.501	7.365	2.135	6.001
소요 생활권	계	8.969	4.096	0.580	4.293
	주거용도	0.496	0.346	0.150	-
	공업용도	0.430	-	0.430	-
	복합용도	8.043	3.750	-	4.293
생연 생활권	계	7.998	4.075	2.215	1.708
	주거용도	0.490	0.410	0.080	-
	공업용도	0.050	0.050	-	-
	복합용도	7.458	3.615	2.135	1.708



【그림Ⅲ-9】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구상도





##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 IV

계획의 목표	1
도시 미래상	2
도시지표 설정	3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4
용도별 토지수요 추정	5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정보·통신계획	8
기반시설계획	9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10
경관구상	11
공원·녹지계획	12
방재 및 안전계획	13
경제·산업개발계획	14
사회·문화개발계획	15







## IV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 1. 계획의 목표

#### 가.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2020년) 계획인구(123,000인) 수용을 위한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
-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생활권별 균형개발 유도

#### 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

- 지난 재정비 이후 주민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현실적 조정 검토
- 2008년 최초 관리지역 세분, 2010년 관리지역 추가 세분 이후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변경
-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토, 집행능력을 고려한 시설계획 및 제도 개정 에 따른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도시발전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 2. 도시 미래상

#### 가. 시 정책의 반영

- 동두천시의 시정목표와 장기비전을 토대로 도시공간상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 구축

#### 나. 도시 현안문제 해결

- 도시 문제점 극복, 잠재력·경쟁력 극대화로 도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상 정립

시정방침	현안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li> <li>• 미래를 약속하는 교육문화</li> <li>• 따듯이 감싸주는 서민복지</li> <li>• 희망을 펼쳐가는 지역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발굴</li> <li>•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개발동력 확보</li> <li>• 중심도시 위상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li> <li>•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li> </ul>

### 3. 도시지표 설정

#### 가. 인구지표

##### 1) 인구지표 산정방식

- 과거추세연장에 의한 방법 : 도시의 장래인구가 과거와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것을 가정하여 적합한 인구모형을 선정하여 장래인구를 예측
- 정책입지인구 :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가인구와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시의 정책사업(상위계획상 개발사업)에 따라 외부에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회적 증가인구의 합산을 통해 도시인구관리 목표치 설정
- 가용토지자원에 의한 방법 : 자연적·환경적 측면에서 가용 토지자원의 용량을 산정하고, 도시의 적정 밀도관리를 고려하여 장래 인구 설정

##### 2) 과거추세 연장에 의한 추정

###### 가) 검토 기준

-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은 과거 10년간 인구추이를 모형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며,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개 이상 모형식의 결과치를 산술평균하여 도출
- 분석방법은 회귀분석모형, 콤페르츠모형, 로지스틱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각 모형의 추정치를 산술 평균하여 목표연도 인구 추정

###### 나) 인구 추정치

- 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신뢰도가 높은 3개 모형의 산술평균값인 약 122천인으로 산정됨

【표IV-1】모형식에 의한 인구 추정치

(단위 : 명)

구 분	회귀분석	콤페르츠	로지스틱	평균
2010년	97,531	97,452	97,618	97,534
2015년	110,205	109,381	110,562	110,049
2020년	122,880	120,513	123,157	122,183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3) 정책입지인구에 의한 추정

#### 가) 자연적 증가인구

-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하되, 순수한 자연증가분만을 계상하기 위하여 인구의 전출입을 가감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만 고려하여 추정
- 출산율은 경기도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적용하고, 사망률은 경기도 생명표 적용
- 그에 따른 동두천시의 자연증가 인구는 2020년 102,014명으로 추정됨

【표IV-2】자연적 증가인구

(단위 : 명)

구 분	합계	내국인	외국인
2010년	98,311	95,653	2,658
2015년	100,540	97,814	2,726
2020년	102,014	99,233	2,781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나) 사회적 증가인구

- 동두천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전무한 상황으로 상위계획인 경기도 종합계획 및 동두천발전종합계획에서 구상한 미군공여지 및 상패신시가지 개발구상을 토대로 인구산정
- 그 외 민간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계획인구 반영
- 개발사업 등 사회적 증가인구의 외부유입률은 「경기도 도시계획업무편람(2012.3)」상 동두천시 사업별 외부유입률 적용

【표IV-3】경기도 외부유입률 가이드라인

(단위 : %)

구 분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기타
외부유입률	50	35	35	30	30	30	30

자료 : 경기도 도시계획업무편람(2012.3)

【표IV-4】사회적 증가에 의한 유입인구 추정

(단위 : 명, %)

구 분	계획인구	유입률	유입인구
합계	89,164	-	36,500
상패신시가지	25,250	50	13,000
미군공여지	캠프케이시	35	15,000
	캠프 호비	50	
캠프 캐슬 일원	2,820	35	1,000
안흥동 일원	5,423	30	2,000
송내택지 남측	4,233	35	1,500
주택건설사업 승인	10,600	35	4,000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다) 자연적, 사회적 증가에 의한 인구추정

- 생산모형에 의한 자연증가 인구는 2020년까지 약 3.7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행정절차 완료이행 중 및 정책개발 사업에 의한 인구는 유입률을 고려할 경우 약 36.5천명이 외부지역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단계별 개발에 따라 2020년에는 약 20.5천명이 외부지역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측
- 자연증가인구와 사회적 증가인구를 고려할 경우, 2020년 동두천시 인구는 약 123천명으로 추정됨

현재인구 (2010년)	+	자연증가인구	+	사회적 증가인구	=	2020년 추정인구
98.3천명		3.7천명		20.5천명		123천명

4) 가용 토지자원에 의한 추정

가) 인구산정 방식

- 기개발지와 공적규제사항, 물리적 요소 등을 바탕으로 가용토지자원을 산정하고, 가용토지자원의 세부 인구밀도 적용을 통해 인구 산정
  - 개발가용지 :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증밀도(150인/ha)로 인구 산정
  - 산지개발가용지 :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위한 경제성 제고방안'(국토개발연구원, 1998년)상 저밀개발밀도(104인/ha) 적용

나) 가용토지량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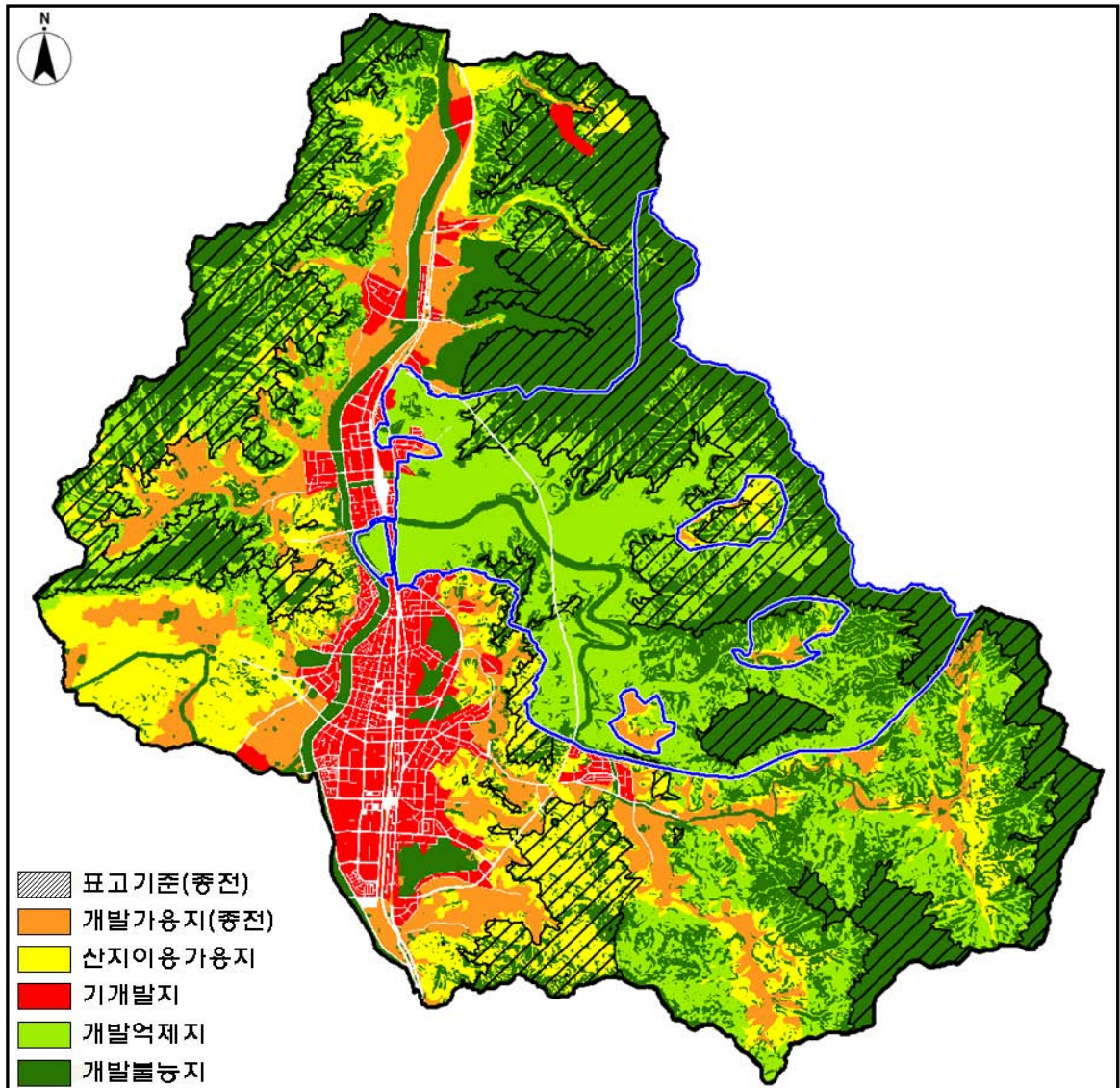
- 기개발지 : 현재 주거·상업·공업 용도로 이용 중인 토지와 개발사업 완료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개발억제지 : 보전산지, 미군공여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등 공적규제로 인해 개발이 억제되는 지역
- 개발불능지 : 급경사, 고지대, 공원, 하천 등 물리적 여건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 산지개발가능지 : 공적규제 지역 및 동두천 도시계획 조례완화 적용
- 개발가능지 : 미개발지 중 산지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와 개발불능지를 제외한 지역

【표IV-5】개발가능여부 분석

구 분	해당사항	개발가능여부	비고
표고	160m 이하	●	조례에 의함
	160m 초과	X	
경사도	25도 이하	●	산지전용허가기준
	25도 초과	X	
국토이용계획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X	
미군공여지	비 해당토지	●	
	공여지	X	
군사시설보호구역	비 해당토지	●	
	위임구역	●	
	해제요구지역	X	
	보호지역	X	
생태자연도	1등급	X	
	2등급	●	
	3등급	●	
	별도관리지역	X	
개발유무	기개발지	X	
	미개발지	●	
도시계획시설 등	비 해당토지	●	
	해당토지	X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그림Ⅳ-1】개발가능지 분석도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표Ⅳ-6】가용토지량

(단위 : km<sup>2</sup>, %)

구분	합계	기개발지	가용토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비고
			개발가능지	산지개발가능지			
면적	95.68	7.71	10.53	12.44	23.53	41.47	
비율	100.0	8.1	11.0	13.0	24.6	43.3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다) 인구 산정

- 개발이 가능한 개발가능지와 산지개발가능지의 면적은 2,297ha이며 용지별 개발밀도를 적용한 결과 총 29만명의 인구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IV-7】인구산정

구분	면적	개발밀도	인구	비고
계	2,297ha	-	약 290천인	
개발가용지	1,053ha	150인/ha	약 160천인	
산지개발가용지	1,244ha	104인/ha	약 130천인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따라서 자연증가인구 102천인, 개발가용지 내 유입인구 160천인, 산지개발가용지 내 유입인구 130천인을 합한 총 인구는 392천인으로 예측되었음

### 5) 2020년 계획인구 산정

○ 2020년 동두천시의 계획인구는 도시정책에 의한 정책입지인구 123천인으로 설정

【표IV-8】단계별 인구지표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인구지표 설정	98,311	115,000	123,000
자연증가인구	98,311	100,540	102,014
사회적 증가인구	-	14,000	20,500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나. 기타 도시지표

### 1) 생활환경지표

【표IV-9】생활환경지표

구분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비고	
주택	가구원수	인/가구	2.5	2.5	2.3	일반가구 기준
	가구수	가구	32,413	46,000	53,000	
	주택보급률	%	108.6	110.9	115.0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및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지표 적용
	인구천명당 주택수	호	344	426	475	주택보급률 적용 시 주택추정호수를 천명으로 나눈값
상수도	보급률	%	96.8	97.9	98.4	
	1인1일 평균급수량	ℓ/pcd	320	328	331	'2030 동두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평균급수량 원단위 적용
하수도	보급률	%	96.1	99.6	99.6	'동두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반영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주 : 주택보급률 = 주택수(다가구 구분거처 반영) / 일반가구수

## 2) 여가환경지표

【표IV-10】여가환경지표

구 분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공원녹지	공원 면적	km <sup>2</sup>	4.233	4.861	4.968	시가화에정용지에서 확보될 공원 포함(0.805km <sup>2</sup> )
	1인당 공원면적	m <sup>2</sup> /인	43.03	42.27	40.39	
	도시공원 면적 (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	km <sup>2</sup>	4.230	1.975	2.064	
	1인당 도시공원 면적	m <sup>2</sup> /인	43.03	17.02	16.78	
도시녹화	녹피율	%	85.57	85.80	86.40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3) 복지환경지표

【표IV-11】복지환경지표

구 분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교육	초등 학교	취학인구비율	%	6.2	6.0	5.9	학급당 학생수 및 학교당 학급수는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학급당 학생수 감축 관련 도지사·시장·군수에게 협조요청, '13.5.8)적용
		학급당학생수	인/학급	27.3	23.0	21.0	
		학교당학급수	학급/학교	20	28	36	
		학 교 수	개교	11	11	11	
	중학교	취학인구비율	%	3.4	3.3	3.2	
		학급당학생수	인/학급	33.9	25.0	23.0	
		학교당학급수	학급/학교	16	24	24	
		학 교 수	개교	6	6	7	
	고등 학교	취학인구비율	%	3.2	3.1	3.0	
		학급당학생수	인/학급	32.4	27.7	23.0	
		학교당학급수	학급/학교	20	22	24	
		학 교 수	개교	4	6	7	
대학(교)		개교	2	4	5	-	
사회 복지	아동복지시설		개소	10	12	13	
	여성복지시설		개소	1	1	1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	1	1	
	노인 복지 시설	여가복지	개소	108	110	113	
		주거복지	개소	1	1	1	
		의료복지	개소	31	33	33	
재가노인복지		개소	3	3	3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표IV-11】복지환경지표(계속)

구 분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의료 시설	종 합 병 원	개소	-	1	1	10만명당 1개소
	일 반 병 원	개소	2	2	2	0.5만명당 1개소
	의 원	개소	34	58	62	0.2만명당 1개소
	치 과 병 원	개소	17	17	18	0.8만명당 1개소
	한 의 원	개소	13	13	13	1.0만명당 1개소
	보 건 소	개소	1	1	1	10만명당 1개소
	특 수 병 원	개소	1	1	1	-
문화 시설	박 물 관	개소	1	2	2	-
	공 공 도 서 관	개소	2	2	2	-
	영 화 관	개소	4	5	5	-
	미 술 관	개소	-	-	-	-
	시 민 회 관	개소	1	1	1	-
	복 지 회 관	개소	1	2	2	-
	청 소 년 회 관	개소	1	1	2	-
공공 시설	시 청	개소	1	1	1	-
	경 찰 서	개소	1	1	1	-
	순 찰 파 출 소	개소	3	4	5	-
	세 무 서	개소	1	1	1	-
	법 원	개소	1	1	1	-
	등 기 소	개소	1	1	1	-
	교 육 청	개소	1	1	1	-
체육 시설	소 방 서	개소	1	1	1	-
	종 합 운 동 장	개소	1	1	1	-
	실 내 체 육 관	개소	2	2	2	-
	골 프 장	개소	1	3	3	-
	테 니 스 장	개소	1	2	3	-
실 내 수 영 장	개소	5	5	5	-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4.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 가. 생활권 설정

#### 1) 생활권 설정의 기본 방향

-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행정구역 기준의 중생활권 단위의 생활권 규모 설정
- 지역발전 과정 및 향후 발전 전망, 가용토지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2) 생활권 설정 및 발전전략

- 기정 6개 소생활권을 2개의 중생활권으로 개편하여 계획의 유연성 확보
- 인구배분이 생연생활권에 집중되나, 소요생활권과 생연생활권의 생활권별 특화전략 구상

【표IV-12】생활권별 인구 및 발전전략

중생활권	구 분	면적 (km <sup>2</sup> )	발전전략
	행정동		
소요생활권	소요동, 보산동	45.01	•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신시가지 조성
생연생활권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상패동, 송내동, 불현동	50.67	•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기존 시가지 리뉴얼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관광·휴양·주거단지 조성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나. 인구배분계획

#### 1)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 생활권 설정에 따른 인구배분계획은 각 생활권별 사회적 증가분을 고려하여 배분토록 하며, 자연증가분은 전단계 생활권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생연생활권에 인구가 집중되나 생활권별 특화전략으로 인구배분계획 수립

【표IV-13】단계별·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자연증가 인구	사회적증가 인구	추정인구	계획인구	자연증가 인구	사회적증가 인구	추정인구	계획인구
계	98,311	2,229	14,000	114,540	115,000	3,703	20,500	122,514	123,000
소요생활권	13,335	302	2,500	16,137	16,000	502	2,500	16,337	17,000
생연생활권	84,976	1,927	11,500	98,403	99,000	3,201	18,000	106,177	106,000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2) 인구밀도계획

### 가) 인구밀도 기준

-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동두천이 속한 경기 북부지역은 150인/ha 내외의 개발밀도로 시가지의 개발 및 정비를 유도하도록 제시되어 있음
- 동두천시 시가화면적 대비 인구밀도는 중·저밀의 150인/ha미만(현재 121인/ha)을 적용하고, 생활권별로 차등적용토록 함

### 나) 생활권별 인구밀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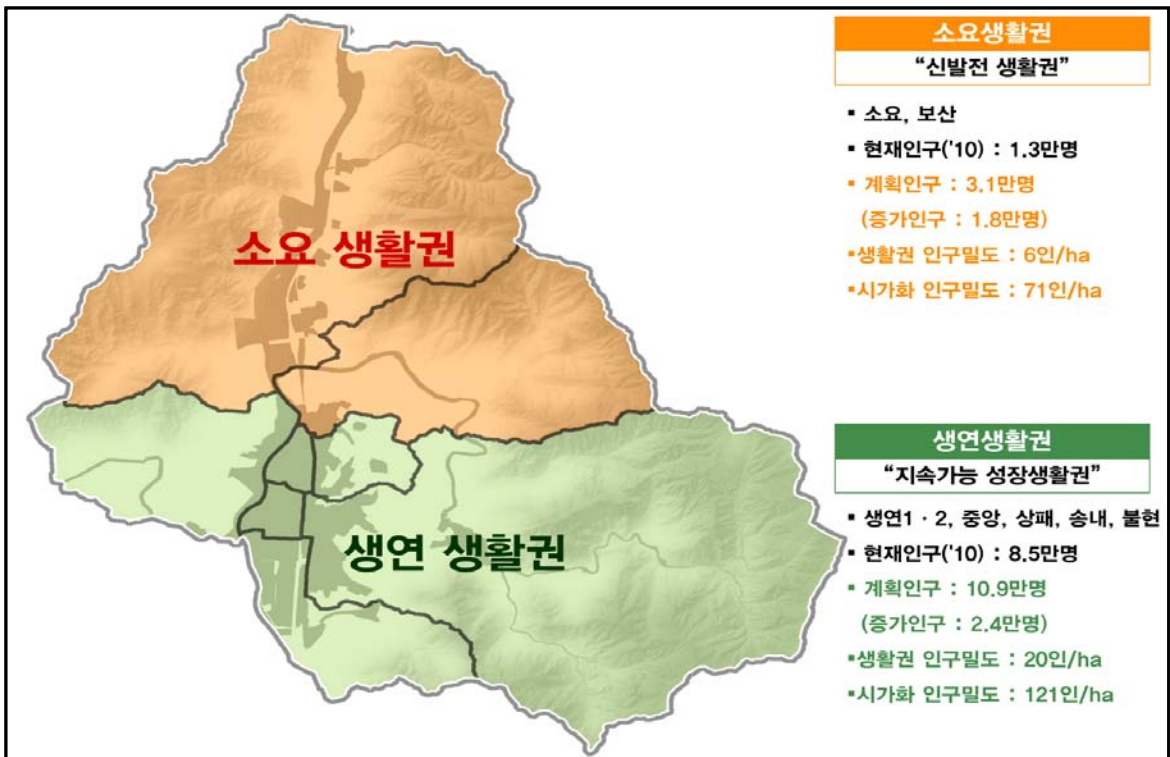
- 2020년 동두천시의 행정구역 인구밀도는 12인/ha, 시가화면적 인구밀도는 101인/ha로 계획

【표IV-14】단계별·생활권별 인구밀도계획

구분	2015년				2020년			
	시가화면적	계획인구	행정구역 인구밀도	시가화면적 인구밀도	시가화면적	계획인구	행정구역 인구밀도	시가화면적 인구밀도
계	960ha	115,000인	11인/ha	99인/ha	1,010ha	123,000인	12인/ha	101인/ha
소요생활권	299ha	16,000인	3인/ha	47인/ha	299ha	17,000인	3인/ha	47인/ha
생연생활권	661ha	99,000인	18인/ha	123인/ha	711ha	106,000인	20인/ha	123인/ha

주 1 : 시가화면적 산정시 시가화예정용지의 10%는 녹지율을 감안하여 제외. 인구 미반영 시가화예정용지는 물량 제외  
 주 2 : 상폐신시가지, 미군공여지, 안흥동 일원은 주거용지만 반영  
 주 3 : 시가화용지 인구밀도는 시가화용지 내 인구를 전체 인구의 92%로 가정하여 산정(거기도 도시화율 92%)

【그림IV-2】생활권별 인구계획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5. 용도별 토지수요 추정

### 가. 주거용지

#### 1) 수요추정 방법

- 주거용지 수요산정은 인구에측에 근거하여 향후 주택 및 토지수요를 산정한 후, 기성시가지의 주거면적과 비교하여 신규로 확보하여야 할 주거용지를 산출하였으며, 산정방식은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함

#### 가)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 도시지역 내 수용인구는 계획인구의 85%, 주거지역 내 수용인구는 도시지역 내 수용인구의 90%로 설정
- 인구밀도는 150인/ha를 기준으로 하여, 고밀·중밀·저밀로 각각 200인/ha, 150인/ha, 100인/ha로 차등 적용
- 밀도별 인구배분율은 고·중·저밀 각 50:25:25 적용

【표IV-15】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 수요추정

(단위 : 인, 인/ha, km<sup>2</sup>)

구 분	계획인구	도시지역 내 수용인구	주거지역 내 수용인구	밀도구분	인구밀도	인구배분	수용인구	수요면적
2020년	123,000	104,550	94,095	합계	-	100%	94,095	6.272
				고밀	200	50%	47,047	2.352
				중밀	150	25%	23,524	1.568
				저밀	100	25%	23,524	2.352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목표연도 인구 123천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총 6.272km<sup>2</sup>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나)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 주택호수는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2020년)의 주택유형별 배분계획 적용
- 도시지역 내 수용 주택호수는 총 주택호수의 85%, 주거지역 내 수용 주택호수는 도시지역 내 수용 주택호수의 90%로 설정
- 주택유형별 부지면적은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여 아파트 105m<sup>2</sup>, 연립 115m<sup>2</sup>, 단독 265m<sup>2</sup>를 적용

- 공공용지율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단독 30%, 공동 40%로 설정
- 혼합율은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려하여 10%로 설정

$$S = \frac{P \times a}{(1 - e) \cdot (1 - u) \cdot r}$$

S : 소요면적  
 P : 주거지역 내 수용될 주택수  
 a : 주택1호당 부지면적  
 e : 공공공지율  
 u : 용도혼합율  
 r : 용적률

【표IV-16】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수요추정 (단위 : 호, 가구, %, km<sup>2</sup>)

구분	주택 호수	도시지역 내 주택수	주거지역 내 주택수	유형배분		수용주택 호수	호당 면적	용적률	공공 공지율	용도 혼합률	수요 면적
2020년	58,482	49,710	44,740	합계	100%	44,740					8,241
				아파트	50%	22,370	105	200%	40%	10%	2,175
				연립	25%	11,185	115	150%	30%	10%	1,361
				단독	25%	11,185	265	100%	30%	10%	4,705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2020년 123천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총 8,241km<sup>2</sup>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2) 소요면적

-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과 주택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에 따라 추정한 면적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7.257km<sup>2</sup>로 추정

## 나. 상업용지

### 1) 수요추정 방법

- 수도권 북부의 지역중심도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용토록 하며, 상업용지를 도심 상업, 지구중심, 생활권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이용인구 분담
- 수요추정방식은 「상업지역 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

$$A = \frac{n \cdot a}{N \cdot r(1 - P)}$$

A : 소요면적  
 n : 상업지역 이용인구  
 r : 건폐율  
 P : 공공공지율  
 a : 1인당 이용면적  
 N : 평균층수

### 가) 상업지역 이용인구에 의한 방법

- 분담율, 평균층수, 건폐율은 도심, 지구중심, 생활권중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표IV-17】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수요추정

구 분	용도	이용률	부담률	이용인구 (인)	이용면적 (㎡/인)	평균층수 (층)	건폐율	공공 공지율	소요면적 (km <sup>2</sup> )
동두천시 (123,000인)	합계			49,200					0.43
	도심	40%	45%	22,140	12	4	70%	40%	0.16
	지구중심	40%	35%	17,220	12	3	70%	30%	0.14
	생활권중심	40%	20%	9,840	12	2	65%	30%	0.13
소요생활권 (17,000인)	소계			6,800					0.06
	도심	40%	45%	3,060	12	4	70%	40%	0.02
	지구중심	40%	35%	2,380	12	3	70%	30%	0.02
	생활권중심	40%	20%	1,360	12	2	65%	30%	0.02
생연생활권 (106,000인)	소계			42,400					0.37
	도심	40%	45%	19,080	12	4	70%	40%	0.14
	지구중심	40%	35%	14,840	12	3	70%	30%	0.12
	생활권중심	40%	20%	8,480	12	2	65%	30%	0.11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목표연도 2020년까지 총 0.43km<sup>2</sup>의 상업용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

○ 기존 상업지역 1.04km<sup>2</sup>로 수요 산정치 이상 초과되어 신규 상업지역 지정을 지양하고, 상업지역 활성화 및 정비방안 필요

## 다. 공업용지

### 1) 수요추정 방법

○ 공업용지는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상 제약여건에 따라 계획적인 수요추정이 곤란하며, 기 지정된 공업용지의 존치와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상 총량규제범위를 수용한 계획수립

○ 공업용지의 수요는 상위계획 및 동두천시의 산업정책에 입각하여 산출함

○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동두천시 산업정책에 따라 대규모 공장밀집지역을 공업용지로 조성

○ 공업용지 잔여물량 및 동두천시 산업정책에 따른 신규 공업용지 수요는 0.48km<sup>2</sup>로 산출됨

【표IV-18】공업용지 수요추정

구 분	대상지역 및 용지수요
동두천시산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공장밀집지역을 정비하여 공업용지를 조성</li> <li>• 위 치 : (구)뉴서울섬유 일원</li> <li>• 면 적 : 0.43km<sup>2</sup></li> </ul>
기정 계획상 잔여물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 적 : 0.05km<sup>2</sup></li> </ul>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6.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 가. 도심 및 시가지 정비계획

#### 1) 기본방향

- 기존 시가지 주변 인구유인 아이템과 연계를 통해 원도심 기능의 활성화
- 행정·상업기능 재정비를 통해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를 방지
- 기존 시가지의 중심지로서 장소성이 유지되도록 가로환경개선, 주차장 확보, 공원 및 쌈지형 공지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심기능의 회복을 도모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과도한 상업지역을 정비하고, 낙후된 정주공간을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

#### 2) 추진전략

##### 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환경 정비 유도

- 기존 시가지의 상업지역 및 불량주거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상업지역 활성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 주민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입각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응하는 주민 생활공간의 개발계획을 수립
- 거주민의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향상을 통해 주민 재정착률 증대

##### 나) 주변지역과 연계한 정비 유도

- 커뮤니티 유도 및 형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자발적으로 도심 사회문제 개선 유도
- 동두천중앙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비유도

##### 다) 친환경적 주거지 정비 유도

- 친환경적인 구시가지 정비를 통해 상업업무주거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구조 창출
- 기존 시가지 내 부족한 공원 및 녹지 등의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나. 주거환경계획

#### 1) 기본방향

- 자연 지형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

○ 주거지 조성과 함께 편익시설을 고루 배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2) 수요추정

- 계획인구, 가구수 및 주택보급률을 기초로 단계별로 소요 주택수 추정
- 감실주택수는 불량주택 철거, 노후주택 개량 및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대체되는 주택으로서 실수요주택의 5%를 적용
- 주택 실수요 가구수는 학생, 종업원의 하숙 및 기숙사에 의해 독립적인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주택 인구를 제외하여 총가구수의 95%를 적용
- 2010년의 주택보급률은 108.6%로서 경기도 평균 주택보급률(100.1%)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보이나 주택의 안정적인 보급 및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0년 주택보급률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15%로 설정

【표IV-19】주택 수요량 추정

(단위 : 인, 가구, 호, %)

구분	총인구	가구당 인구	가구수	주택 실수요 가구수	감실 주택수	주택 총수요	주택 보급률	실공급 주택수
2010년	98,311	2.5	32,413	30,792	308	31,100	108.6	33,775
2015년	115,000	2.5	46,000	43,700	437	44,137	110.9	48,948
2020년	123,000	2.3	53,000	50,350	504	50,854	115.0	58,482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3) 주택공급계획

- 양적 공급위주의 기존방식을 지양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쾌적한 전원형 주거단지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 도시의 공간 특성 및 Life-style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통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주거문화 육성
- 주택유형별 배분은 단독 : 연립 및 다세대 : 아파트 = 25.0 : 25.0 : 50.0으로 계획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표IV-20】주택 유형별 배분계획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주택수	비율	주택수	비율	주택수	비율
계	36,681	100.0	48,948	100.0	58,482	100.0
단독주택	7,858	21.4	11,258	23.0	14,621	25.0
연립 및 다세대	8,815	24.4	11,748	24.0	14,621	25.0
아파트	20,008	54.6	25,942	53.0	29,240	25.0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7. 교통처리계획

### 가. 교통시설 현황

#### 1) 도로시설 현황

○ 2010년을 기준으로 동두천시 도로연장을 살펴보면, 총 연장은 120,553m로서, 이 중 국도는 12,050m이고, 지방도는 13,050m이며, 시도는 95,453m로 주요 지역간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국도는 전체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표IV-21】도로현황

구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연장(m)	120,553	-	12,050	13,050	95,453
구성비(%)	100.0	-	9.99	10.83	79.18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2) 주요 가로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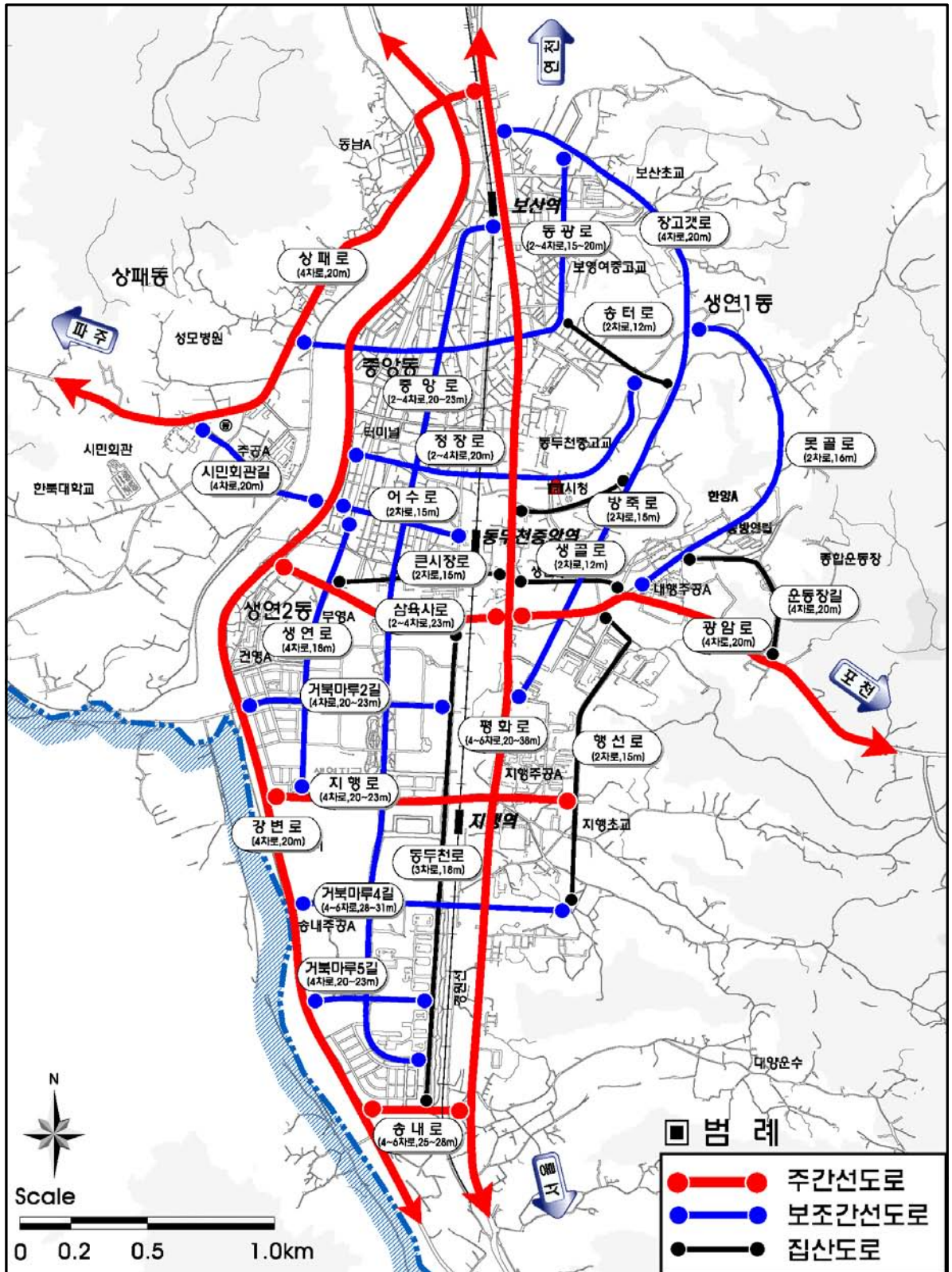
○ 동두천시는 주간선도로 7개 노선과 보조간선도로 11개 노선이 주요 결절점을 연결하며, 7개의 집산도로가 내부가로망을 이루고 있음

【표IV-22】주요 가로망 현황

구분	가로명	차로수(왕복)	폭원(m)	
주간선도로	남북축	평화로	4~6	20~38
		강변로	4	16~24
		상패로	4	20
	동서축	광암로	4	20
		삼육사로	2~4	23
		지행로	4	20~23
		송내로	4~6	25~28
보조간선도로	남북축	중앙로	2~4	20~23
		생연로	4	18
		장고갯로	4	20
	동서축	동광로	2~4	15~20
		정장로	2~4	20
		어수로	2	15
		시민회관길	4	20
		웃골로	2	16
		거북마루2길	4	20~23
		거북마루4길	4~6	28~31
		거북마루5길	4	20~23
집산로	남북축	동두천로	3	18
		행선로	2	15
		운동장길	4	20
	동서축	큰시장로	2	15
		방죽로	2	15
		생골로	2	12
		송터로	2	12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그림Ⅳ-3】주요가로망 현황도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나. 교통소통 현황

### 1)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 현황

○ 동두천시 주요도로의 연도별 교통량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두천시의 주요 동서축과 남북축을 형성하고 있는 국도 3호선(평화로)은 2010년 기준, 의정부~동두천 구간은 48,421대/일, 연평균 증가율 0.49%를 보이고, 지방도 364호선(광암로)의 은현면~동두천 구간은 13,109대/일, 연평균 증가율 1.53%를 보이고 있음

【표IV-23】주요 간선도로 교통량 증가 추이

(단위 : 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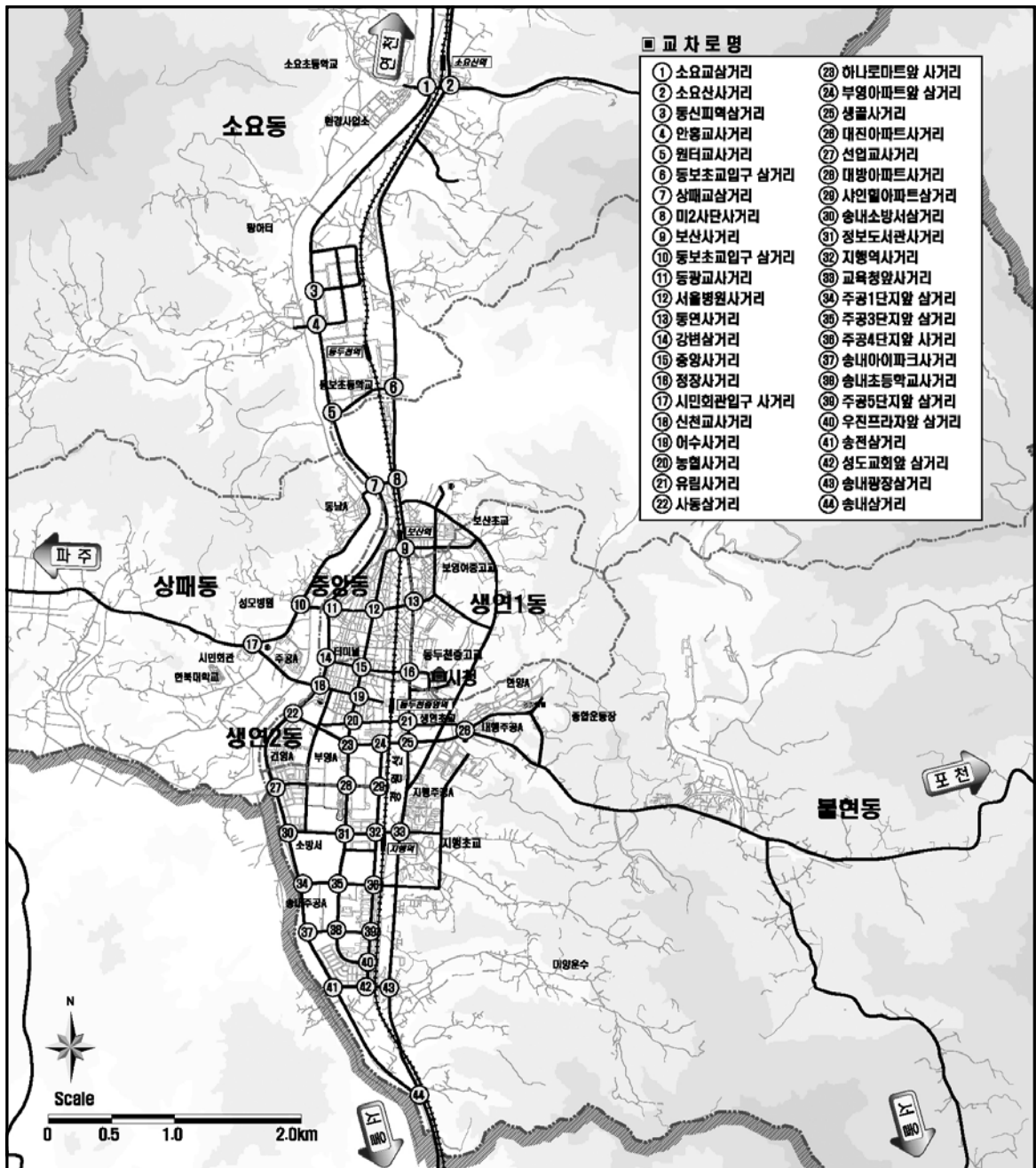
구분	년도	구간	계	승용차	버 스	트럭		
						소 형	중 형	대 형
국 도 3호선 (평화로)	2005년	의정부~동두천	47,248	34,137	1,895	9,700	1,404	112
	2006년		48,912	35,120	1,909	10,846	877	160
	2007년		49,578	35,942	1,891	10,151	1,374	220
	2008년		51,116	37,093	1,535	10,442	1,588	458
	2009년		51,705	35,617	1,844	12,070	1,715	459
	2010년		48,421	33,384	1,495	11,277	1,996	269
	증가율(%)		0.49	-0.45	-4.63	3.06	7.29	19.15
	2005년	동두천~전곡읍	18,238	12,923	752	3,989	514	60
	2006년		17,894	12,358	633	4,336	496	71
	2007년		19,642	13,536	1,040	4,491	498	77
	2008년		18,744	12,743	662	4,519	749	71
	2009년		20,283	12,377	1,142	5,894	803	67
	2010년		20,134	11,791	1,490	5,698	1,061	94
	증가율(%)		2.00	-1.82	14.66	7.39	15.60	9.39
지 방 도 364호선 (광암로)	2006년	은현면~동두천	12,337	8,628	272	2,688	733	16
	2007년		13,384	8,952	162	3,380	879	11
	2008년		12,614	8,977	212	2,814	565	46
	2009년		13,218	9,228	222	3,072	681	15
	2010년		13,109	9,219	182	2,870	819	19
	증가율(%)		1.53	1.67	-9.56	1.65	2.81	4.39
	2006년		동두천~포천시	9,431	6,874	184	2,205	112
	2007년	11,202		8,088	159	2,817	113	25
	2008년	25,739		11,418	80	13,531	683	27
	2009년	11,388		7,929	648	2,688	101	22
	2010년	8,761		6,104	213	2,255	128	61
	증가율(%)	-1.83		-2.93	3.73	0.56	3.39	2.16

자료: 연도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동두천시 2005년~2010년 교통관련기초(교통량·속도) 조사결과

2) 가로구간 및 교차로 교통현황

○ 동두천시 주요가로와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교차하는 44개 지점의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두천시의 도심부 주요 교차로 첨두시는 18시~19시로 조사되었음

【그림Ⅳ-4】교차로 조사지점도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3) 주요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 주요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중앙로상의 ⑫서울병원사거리, ⑮중앙사거리, ⑲어수사거리, ⑳농협사거리의 교차로 지체도가 9.8초/대~51.7초/대로, 서비스수준이 "A~D"로 분석되었음
- 또한 평화로상의 ㉕생골사거리는 교차로지체가 38.1초/대로서 서비스수준이 "C", 강변로상의 ㉒사동삼거리, 광암로상의 ㉖대진아파트사거리는 각각 교차로지체가 13.2초/대, 10.4초/대로서 서비스수준이 "B"로 분석되었음

【표IV-24】첨두시 주요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현황, 18:00~19:00)

교차로명	교통량 (대/시)	교차로 지체도 (초/대)	서비스 수준 (LOS)	비고
① 소요교삼거리	727	42.9	C	신 호
② 소요산사거리	1,436	28.2	B	신 호
③ 동신평협삼거리	1,060	3.4	A	신 호
④ 안흥교사거리	1,405	34.1	C	신 호
⑤ 원터교사거리	1,442	6.5	A	신 호
⑥ 동보초교입구 삼거리	985	20.9	B	신 호
⑦ 상패교사거리	1,885	37.1	C	신 호
⑧ 미2사단사거리	1,582	35.7	C	신 호
⑨ 보산사거리	1,487	36.9	C	신 호
⑩ 동보초교입구 삼거리	724	4.09	A	비신호
⑪ 동광교사거리	1,886	69.2	D	신 호
⑫ 서울병원사거리	1,436	10.8	B	비신호
⑬ 동연사거리	1,221	31.5	C	신 호
⑭ 강변삼거리	1,605	8.6	A	신 호
⑮ 중앙사거리	1,640	10.4	B	비신호
⑯ 정장사거리	1,514	33.0	C	신 호
⑰ 시민회관입구 사거리	942	27.6	B	신 호
⑱ 신천교사거리	2,263	40.2	C	신 호
⑲ 어수사거리	1,546	9.8	A	비신호
⑳ 농협사거리	1,498	51.7	D	신 호
㉑ 유림사거리	1,493	28.0	B	신 호
㉒ 사동삼거리	2,293	13.2	A	신 호
㉓ 하나로마트앞 사거리	1,206	37.0	C	신 호
㉔ 부영아파트앞 삼거리	1,147	38.4	C	신 호
㉕ 생골사거리	2,018	38.1	C	신 호
㉖ 대진아파트사거리	1,131	10.4	B	비신호
㉗ 선업교사거리	2,108	27.0	B	신 호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표IV-24】첨두시 주요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현황, 18:00~19:00) (계속)

교차로명	교통량 (대/시)	교차로 지체도 (초/대)	서비스 수준 (LOS)	비고
㉘ 대방아파트사거리	981	32.6	C	신 호
㉙ 사인힐아파트삼거리	979	14.5	A	신 호
㉚ 송내소방서삼거리	1,916	15.9	B	신 호
㉛ 정보도서관사거리	1,128	32.9	C	신 호
㉜ 지행역사거리	1,706	38.0	C	신 호
㉝ 교육청앞사거리	2,175	40.7	C	신 호
㉞ 주공1단지앞 삼거리	1,769	10.0	A	신 호
㉟ 주공3단지앞 삼거리	762	26.1	B	신 호
㊱ 주공4단지앞 사거리	1,119	40.2	C	신 호
㊲ 송내아이파크사거리	1,855	13.6	A	신 호
㊳ 송내초등학교사거리	541	33.3	C	신 호
㊴ 주공5단지앞 삼거리	773	5.48	A	비신호
㊵ 우진프라자앞 삼거리	622	2.70	A	비신호
㊶ 송전삼거리	1,693	13.7	A	신 호
㊷ 성도교회앞 삼거리	792	9.1	A	신 호
㊸ 송내광장삼거리	1,671	23.6	B	신 호
㊹ 송내삼거리	2,820	30.7	C	신 호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주 : 신호교차로의 교차로지체는 평균제어지체(초/대), 비신호교차로의 교차로지체는 평균운영지체(초/대)를 사용하였음.

## 다. 교통수요 예측

### 1) 1일 총 통행량

○ 동두천시 1일 총 통행량 예측 결과 1일 총 목적통행은 2010년 151,671통행/일에서 2020년 190,148통행/일로 예측되었으며, 총 수단통행은 2010년 163,466통행/일에서 2020년 204,828통행/일로 예측되었음

○ 수단/목적통행비는 2020년 1.08로 예측되었음

【표IV-25】장래 총 통행량 예측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인 구(인)	98,311	115,000	123,000	3.60
통행자(인)	66,863	78,213	83,654	3.60
목적통행(통행)	151,671	177,862	190,148	3.63
수단통행(통행)	163,466	191,573	204,828	3.62
통행자당 목적통행(통행/인)	2.27	2.27	2.27	0.03
통행자당 수단통행(통행/인)	2.44	2.45	2.45	0.02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표IV-25】장래 총 통행량 예측 (계속)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인구당 목적통행(통행/인)	1.54	1.55	1.55	0.03
인구당 수단통행(통행/인)	1.66	1.67	1.67	0.02
수단/목적비	1.08	1.08	1.08	-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라. 교통계획

### 1) 간선도로망 계획

#### 가) 기본 방향

- 도로의 기능별 위계를 정립하여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될 수 있는 도로망 계획
- 도시내 내부교통과 지역간 통과교통의 상충 배제를 위한 도심우회도로 및 순환도로망 계획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계획을 최대한 검토하고 수용하여 도시특성에 맞도록 광역교통체계의 보완과 지역간 접근성 제고
- 가로의 기능별 위계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도로등급별 공급수준에 의한 적절한 가로망 신설 및 확장계획 수립으로 가로망체계 효율성 극대화 도모
-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 및 신설을 통한 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체계 구상
-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등 장래 대단위 개발계획에 부응하는 가로망 계획
- 지역적으로 분산된 각 읍면 소재지간을 방사형으로 연결하며, 지역내에서 격자형의 도로망체계로 구상
-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주요 결절점 및 교차지점은 최대한 입체화 계획

#### 나) 지역간 교통체계 정비

- 국도3호선 확폭 및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신설로 남북간 연결기능 강화
- 광암동~광암1교간 확폭(4차로) 및 승전로 확폭(4차로)으로 연천시와의 연계 강화
- 지방도 379호선의 확폭 및 지방도 364호선의 확폭으로 포천시와의 연계 강화

다) 도시 내 교통체계 정비

- 국도3호선(평화로)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장래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순환도로망 및 연결도로망 확충
- 중로1-30호선(4차로) 도로개설 및 창말~보산동간 도로개설(2차로), 지행동~보산동간 도로개설(2차로) 등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남북간 이동성 강화 및 연결기능 강화
- 미2사단~보산동간 도로개설(4차로)로 인한 동서간 연계성 강화
- 동광로 확장(2→4차로) 및 가마소~동광교간 도로개설(4차로), 생연~광암간 도로개설(2차로)로 동서축 이동성 제고 및 연결기능 강화
- 지행로~동부우회도로간 연결도로(4차로) 및 지행동~안골간 도로(4차로) 개설로 시가지내 동서간 연계성 강화
- 어수로 확장(2→4차로) 및 큰시장로 확장(2→4차로)으로 시가지내 교통정체 완화
- 도시내 간선도로의 단절구간 중 미개설 구간 및 동일도로의 도로폭이 다른 구간의 도로개설로 도로의 기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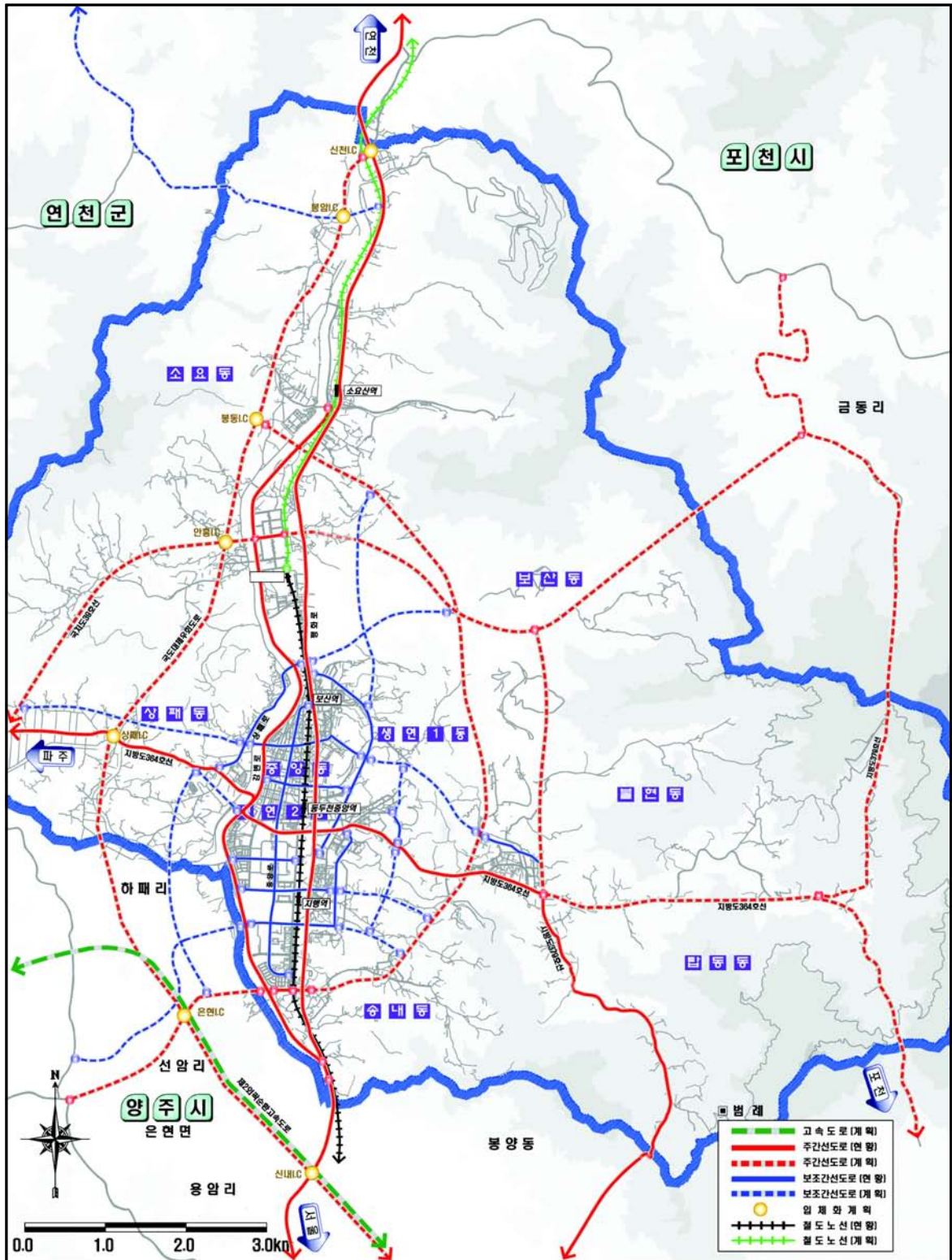
【표IV-26】동두천시 간선도로망 계획

구분	가 로 명	구 간	연장 (km)	폭원 (m)	비 고	
주간선 도로	남북축	국도3호선	양주시계~미2사단	5.00	4~6	확 장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동~소요동	10.70	4	신 설
		동부우회도로	봉암IC~송내광장IC	7.95	4	신 설
		광암동~광암1교간 도로	성우아파트~광암1교	1.01	2~4	확 장
		지방도379호선	광암~신북	2.68	2	확포장
	동서축	국지도39호선	상패동~포천시계	10.80	4	신 설
지방도364호선		광암~마산	5.84	4	확포장	
보조 간선 도로	남북축	중로1-30호선	상패동~동부우회도로	1.25	4	신 설
		창말~보산동간 도로	창말~보산동	2.83	2	신 설
		지행동~보산동간 도로	지행동~보산동	1.79	2	신설 및 확장
	동서축	승 전 로	연천군계~소요동	2.14	4	신설 및 확장
		미2사단~보산동간 도로	미2사단~보산동	1.99	4	신 설
		가마소~동광교간 도로	가마소~동광교	2.90	4	신 설
		동 광 로	동광교~구동영파출소	0.70	2~4	확 장
		생연~광암간 도로	생연동~광암동	1.75	2	신 설
		상패로~신사로간 도로	상패동~생연2동	0.80	4	신 설
		지행로~동부우회도로간 도로	지행초교~동부우회도로	1.59	4	신설 및 확장
지행동~안골간 도로	지행2리~안골	0.94	4	신 설		
기타도로	어 수 로	어수사거리~신천교	0.30	2~4	확 장	
	큰시장로	유림사거리~큰시장	0.40	2~4	확 장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그림IV-5】교통체계 구상도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8. 정보·통신계획

### 가. 기본 방향

#### 1)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 정보화 트렌드를 반영한 Wi-Fi망 확대 및 차세대 통신망 구축

#### 2)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 홈페이지 및 무인시스템을 활용한 대민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도시정보의 공개로 대시민의 서비스 및 관련 부서의 정보 공동 활용을 증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환경으로 구축

#### 3)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과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발을 하며, 네트워크센터 중심의 인텔리전트화

#### 4) 서민형 U-City 시범도시 실현

- U-통합센터의 서비스 기반 모델 정립
- 시민들이 범죄 및 응급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민 중심의 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기대

### 나. 세부계획

#### 1) 정보통신 기반 확대

##### 가)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 스마트폰 사용인구 증가에 따른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대
- 기술개발에 따른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나) 정보거점 중심의 인텔리전트 도시 조성

- 생명과학복합단지, 섬유·패션클러스터, 친환경주거단지 추진시 인텔리전트 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전체의 정보거점으로 육성하고,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인하여 토지 및 도시관리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종합적인 도시정보를 종합적 체계적 구축하여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실현



2) 시민형 U-City 시범도시 실현

가) U-통합센터의 서비스 기반 모델 정립

- 기존 신도시 중심의 U-City 구축에서 벗어나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U-서비스를 발굴하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U-City 시범도시 사업 추진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차별화된 U-통합센터의 서비스 모델 제시
  -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U-검거추적서비스
  - 기존 민원센터에서 실시간 민원처리가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 NFC 및 QR 코드를 활용한 시민소통채널을 구축하는 U-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U-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동두천시 전역에 교통, 방범, 재난, 행정 등 모든 도시관리 기능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하여 체계적 운영 도모

나) U-City 시범건설사업 추진

- 교통기본정보 제공, 대중교통정보 제공, 주정차위반 단속, 돌발상황 감지, 차량추적 관

리, 실시간교통 제어, 공공지역안전 감시

- U-City 통합관리·운영센터, 지역생활정보포털, U-Bike, U-Free Zone, 공공정보통신망

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

- 기존 도서관 활용

라) 전철역사 버스정보시스템(BIS) 설치

- 경원선 지하철 연장 노선 역사 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 역사 앞 버스정류장 버스도착정보, 시정홍보, 실시간뉴스, 날씨정보 제공

마) 공동주택 온라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공동주택단지과 주택간의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을 위한 쌍방향 네트워크시스템으로 실시간 정보교류 및 문서교환 등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바) 시민참여형 생태환경 정보시스템 구축

- 생태환경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저장기반 구축
- 시민참여형 생태환경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 개발

## 9. 기반시설계획

### 가. 기본방향

- 도시의 성격, 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공공시설의 입지 및 규모 설정
  - 시설별 서비스 인구기준을 근거로 적정 원단위 설정
  - 장래 도시발전을 고려한 시설의 계획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추진
- 장묘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장묘시설의 수급을 계획
- 장묘시설의 고급화·다양화를 유도하고, 필요한 장묘시설을 이용인구 및 입지검토를 통해 공급

### 나. 공급계획

- 시청, 세무서, 등기소, 경찰서 등의 공공시설은 기존시설을 확충·정비하여 활용
- 순찰파출소는 소방활동권 단위로 설치하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입지
- 장묘시설은 매장시설의 무분별한 확장을 지양하고, 2020년까지 납골시설 1개소를 신설

【표IV-27】공공시설 및 매장시설 공급계획

구 분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계	개소	14	15	16
시 청	개소	1	1	1
경 찰 서	개소	1	1	1
순찰파출소	개소	3	4	5
세 무 서	개소	1	1	1
법 원	개소	1	1	1
등 기 소	개소	1	1	1
교 육 청	개소	1	1	1
소 방 서	개소	1	1	1
납골 시설	개소	4	4	5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10.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 가. 수질

#### 1) 목표 설정

-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목표연도 수질은 II등급(약간 좋음) 이상의 수질을 만족 시키도록 목표수질 설정

#### 2) 오염원별 관리계획

##### 가) 생활하수

-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혹은 고효율 정화조 보급을 통한 발생지에서의 처리 도모
- 훼손된 하수관거를 정기적으로 정비
-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정화된 생활하수를 화장실이나 정원, 세차 등에 재사용

##### 나) 산업폐수

- 산업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 및 엄격한 지도단속을 실시
- 민관 공동 감시체계 등을 활용한 수질오염 감시기능 강화
- 수계별 수질오염감시시스템(TMS) 설치 운영

##### 다) 비점오염원

- 오·우수 분류식 관거보급을 확충하여 하수처리구역내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한 하수종말 처리장 연계처리 비율 향상
- 초기 강우에 의한 도시 오염원 부하 저감을 위한 초기부하량 저감시설을 설치
- 도시전역에 정기적으로 불특정 폐기물 수거 실시
- 시가화지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청결관리지침을 제정·실시
- 분뇨 및 축산폐수 미처리율이 비점오염원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으므로 축산폐수·분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리율 향상 도모

- 축산분뇨 자원화, 무농약·무화학비료 농사 장려 등을 통한 농경지역 비점오염물질 최소화 추진

## 나. 대기

### 1) 기본방향

-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NO<sub>2</sub>, O<sub>3</sub> 등 대기오염물질 증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
- 고정배출원에 대한 배출규제 및 지도, 청정연료 사용 확대
- 오염원, 오염현황에 대한 보전체계 구축
- 수도권 광역대기질 개선 협의회 구축 및 시책사업의 시행
- 오염정보, 체계, 자동측정망 등의 확충
- 대형배출시설 입지 억제 및 중소규모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생활배출원 관리 강화, 녹색교통정책 적극적 추진

### 2) 추진방안

#### 가)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전략의 수립 및 추진

- 호흡기 장애 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대책 수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함
- 자동차 타이어 마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도로운행 시 도로상 미세먼지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로 살수 및 진공흡입과 같은 도로청결 시스템 도입
-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매연여과장치 부착, 교오수요관리, 그리고 연료품질개선 등과 연계

#### 나) 공사장·사업장 및 생활환경 주변 먼지 저감전략의 수립 및 추진

-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장 중 연면적이 1,000㎡이상의 건물건설공사장이나 토목 공사장 등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강화된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 운영
- 공사장이나 도로 외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쓰레기 적환장은 수시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며, 공터나 나대지 현황을 조사

하여 꽃이나 나무를 심도록 유도

**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정밀검사 강화**

- 정밀검사의 검사주기를 운행 정기검사와 일치시켜 정기검사 시 같은 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도록 하고,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배출가스검사를 면제
-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대안 마련

**라) 환경개선 실천단 구성 및 운영**

-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의 환경오염, 지구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안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교 또는 민간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생 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환경 현장견학 등을 지원
- 방학동안 청소년들의 팀을 구성한 환경감시를 권장하고 이를 봉사활동으로 인정
- 자전거타기와 걷기대회 등의 개최 및 지원을 통한 환경친화적 활동 권장
- 민간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환경보호 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환경보호의 다양한 활동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이를 지원

**마) 기타**

-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의 설치와 지역자체의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영세한 공장들을 집단화하고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의 설치 의무화
- 대기오염 유발이 심각한 지역은 총량규제 실시
- 도시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교통망체계 수립
- 청정연료(LNG, 액화천연가스) 사용을 확대 보급



## 다. 상수도

### 1) 기본방향

- 「2030 동두천 수도정비기본계획(2012년)」상 제시된 급수량 원단위 및 상수도 보급률을 반영

【표IV-28】계획급수량 원단위

(단위 : ℓ /pcd,%)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비고
급수량 원단위	320	328	331	
상수도 보급률	96.8	97.9	98.4	

자료 : 2030 동두천 수도정비기본계획, 2012, 1인1일 평균급수량 원단위 적용

### 2) 급수량 산정 및 지표

- 단계별 계획인구에 상수도보급률, 급수량 원단위를 고려하여 상수 수요량을 산정
- 공업용수는 현재 물량확보만 되어있으며,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확한 장래 예측이 어려워 「2030 동두천 수도정비기본계획」 내용 반영
- 2020년 계획인구에 따른 용수 수요량은 69,322m<sup>3</sup>/일로 추정됨

【표IV-29】급수량 산정 및 지표

구 분	단 위	2010년	2015년	2020년	비고
계획인구	명	98,311	115,000	123,000	
보급률	%	96.8	97.9	98.4	
급수인구	인	95,165	112,585	121,032	
1인1일 급수원단위	ℓ /pcd	320	328	331	
용수 수요량	계(m <sup>3</sup> /일)	47,542	66,188	69,322	
	생활용수 <sup>1)</sup>	30,453	36,928	40,062	
	공업용수 <sup>2)</sup>	17,089	29,260	29,260	

자료 : 『2030 동두천 수도정비기본계획』, 2012

주1) 생활용수 : 일평균급수량 각 단계별 328ℓ, 331ℓ 적용 (2030 동두천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주2) 공업용수(기타용수 포함)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공업용수 및 기타용수 급수량) 반영

## 라. 하수도계획

### 1) 기본방향

- 유효수율은 2030 동두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원단위 적용

○ 2020년 유효수율은 88.0%, 오수전환율은 90.0%, 지하수 유입량은 10.0%로 설정

【표IV-30】계획하수량 원단위

(단위 : %)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비고
하수도 보급률	96.1	99.6	99.6	
유효수율	84.0	86.0	88.0	
오수 전환율	90.0	90.0	90.0	
지하수 유입량	10.0	10.0	10.0	

자료 : 『동두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05), 『2030 동두천 수도정비기본계획』(2012)

## 2) 오수량 산정 및 지표

- 생활오수량은 단계별 계획인구에 하수도보급률,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지하수 유입량 등을 고려하여 오수량을 산정
- 기타 오수량은 「2030 동두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공업용수 급수량, 기타용수 급수량, 잠재용수량을 유효수율 및 유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
- 지하수량, 군부대용수, 개별공장 등은 「동두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05) 상 계획하수량 적용
- 2020년 계획인구 및 기타 오수량에 따른 계획오수량은 83천<sup>m<sup>3</sup></sup>/일로 추정됨

【표IV-31】오수량 추정

구 분	단 위	2010년	2015년	2020년	비고
계획인구	명	98,311	115,000	123,000	
보급율	%	96.1	99.6	99.6	
처리인구	인	94,477	114,540	122,508	
1 최대 급수량 원단위	m <sup>3</sup> /일	320	328	331	
유효수율	%	84.0	86.0	88.0	
오수전환율	%	90.0	90.0	90.0	
생활오수량	m <sup>3</sup> /일	22,856	29,078	32,116	
기타급수량	m <sup>3</sup> /일	21,868	26,448	27,063	
기정 계획하수량	m <sup>3</sup> /일	14,955	16,487	16,604	
지하수 유입량	m <sup>3</sup> /일	5,968	7,201	7,578	
계획하수량	m <sup>3</sup> /일	65,647	79,214	83,361	

자료 : 동두천시, 『동두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2005.

## 11. 경관구상

### 가. 기본방향

- 도시생활환경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녹지에 의한 경관요소의 창출 및 개선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대한 체계 구상
- 인위적 요소인 건물, 교량 등이 자연적 요소인 식물, 물 등의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총체적 보전 및 활용 구상
- 공원, 공공공지, 가로수, 녹도 등의 녹지체계에 의한 지역의 정체성 창출 구상
- 각 권역의 핵심적 경관특성을 추출하여 공간적 영역이 명확한 특성화 방안 구상

### 나. 경관구상의 기준

- 각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경관 권역 구상
- 점적, 선적, 면적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 진입관문 및 주요 결절점에 아이덴티티 부여

### 다. 권역별 경관구상

【표IV-32】권역별 경관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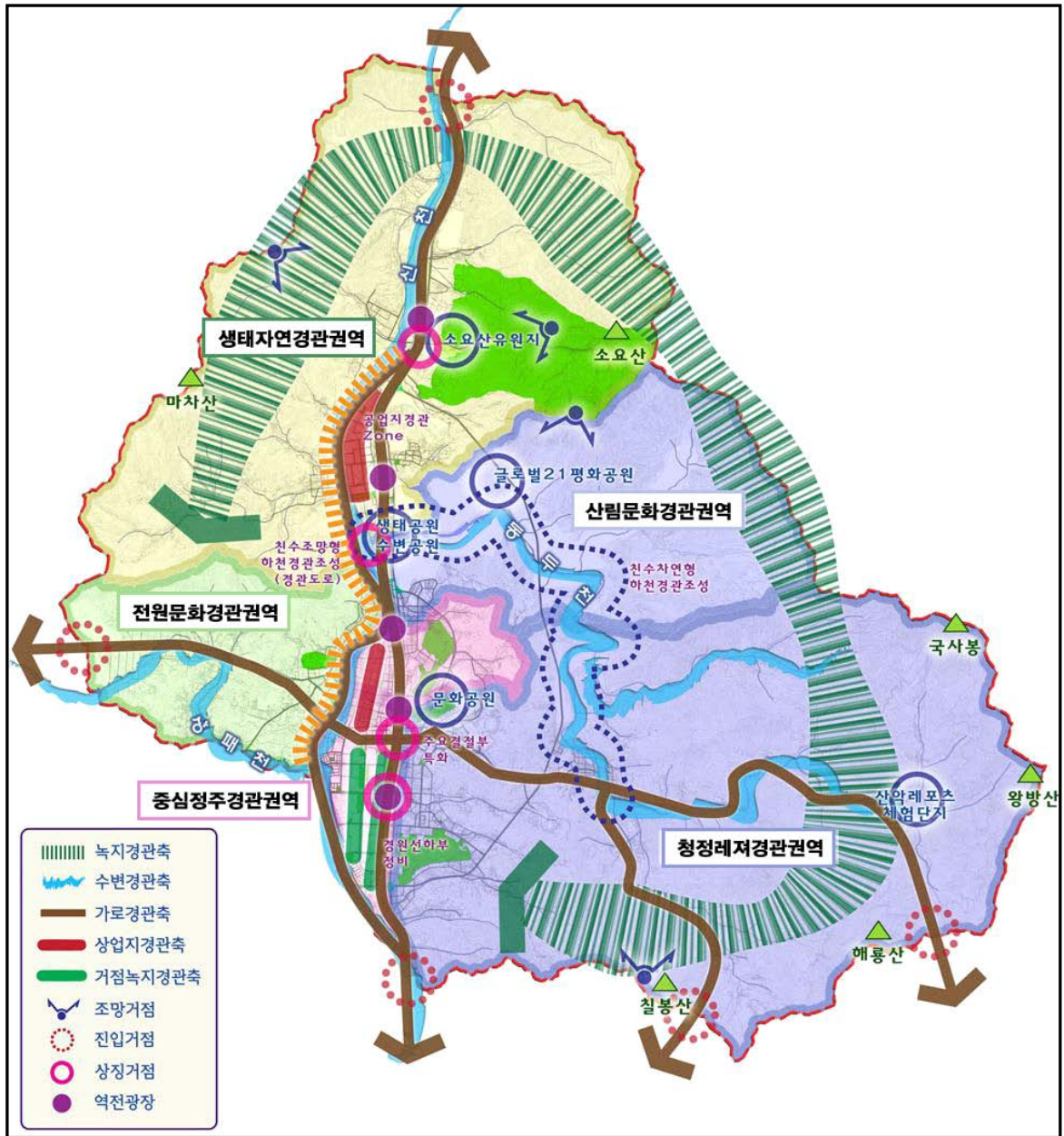
행정동	권역	조성방향
소요동	생태자연 경관권역	자연과 조화로운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
상패동	구릉지 경관권역	농촌개발계획, 평야, 구릉지의 보전 및 활용
보산동	산림문화 경관권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문화시설 개발
불현동	청정레저 경관권역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레저시설 개발
그 외 중심	중심정주 경관권역	구시가지 및 신시가지의 개성적 공원, 녹지 경관 창출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라. 거점 및 축별 경관구상

- 주요 경관축 보전(녹지, 수변)
- 상징 경관거점 형성(시 진입부, 광장, 주요 결절점)
- 경원선 하부공간 특화
- 주요가로 및 보행로 특화(강변도로, 중심상가)

【그림IV-6】경관 구상도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12. 공원 · 녹지계획

### 가. 기본방향

#### 1) 지속가능성

○ 일시적인 계획이 아닌 동두천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기적인 계획

#### 2) 환경친화성

○ 도시공간내 자연적인 요소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도시내 녹음이 가득한 친환경적인 계획

#### 3) 차별성

○ 동두천시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살려 다른 시와 구분되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계획

#### 4) 현실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제권고제 대비하여 공원 현실화 및 민자공원 활성화

【그림IV-7】공원 · 녹지계획 기본방향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나. 공원·녹지 종합배치 구상

### 1) 보전체계 구상

#### 가)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그린 네트워크 형성

- 녹지네트워크 구축, 산림 및 구릉지 보전

### 2) 확충체계구상

#### 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Open Space 확충

- 일상권 공원녹지 확충, 소공원 정비 및 보호수 소공원 조성
- 근린공원→문화공원, 도시자연공원→역사, 문화, 근린공원으로 변경

#### 나) Green Way, Blue Way 조성

- 신천과 동두천을 중심으로 하는 Blue network 구축
- 동서 녹지축의 형성

### 3) 이용체계구상

#### 가) 건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자전거길 조성

#### 나) 균형있는 공원배치를 통한 활력넘치는 Well-being Life 구현

-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공원계획
- 각 주제공원들의 연계를 통한 문화네트워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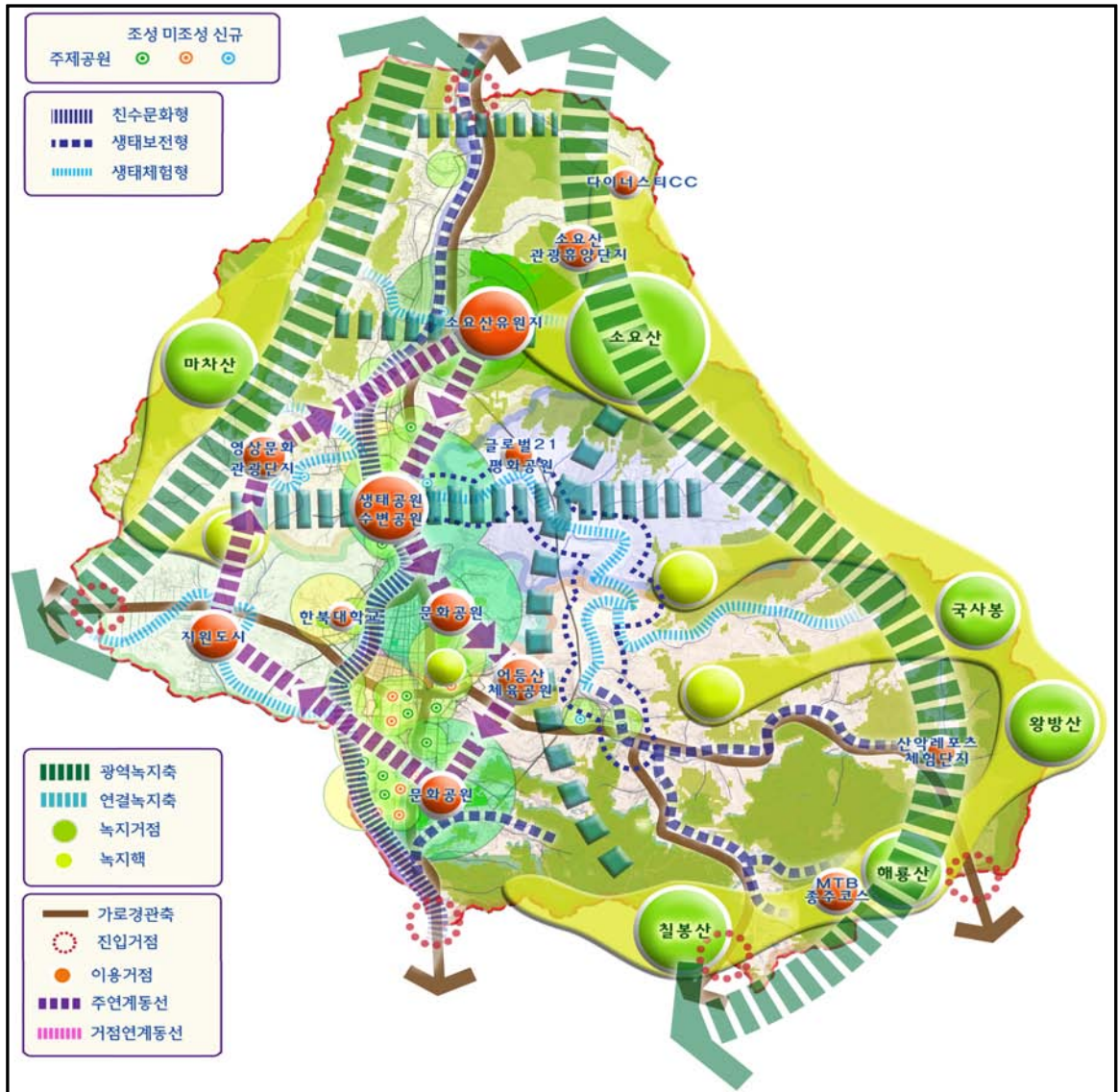
### 4) 경관체계구상

#### 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감성 문화도시 구현

- 권역별 경관체계에 부합하는 경관계획 수립
- 시 진입부, 주요 가로, 거점경관축 특화



【그림IV-8】공원·녹지 종합배치 구상도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다. 세부계획

### 1) 공원·녹지 복원

- 도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단절된 공원·녹지축에 대해 생태이동통로, 식생복원 및 사면녹화 등을 통해 단절된 공원·녹지축 복원
-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절개지는 계단식이나 완만한 경사면으로 복원하고 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덩굴식물, 씨드스프레이 등을 활용하여 절개지의 위화감 제거 및 사면녹화 시행

## 2) 공원서비스 확충

- 동두천시 행정구역 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의 공원이 기 결정되어 있으나 재정 여건상 설치되지 않은 공원 및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원 확충

### 가) 소요생활권

- 생연생활권에 비해 공원의 개소수 및 면적이 적은 소요생활권의 공원 확충
- 기 설치된 소요산 산림욕장,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확충

### 나) 생연생활권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인 못골지역의 호수를 활용한 수변공원 신설

## 3) 사회약자를 배려한 공원 조성

- 공원 조성시 장애물 없는 진입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
- 관계법과 연계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 마련하여 조성
- 주거지역과 연결되는 높낮이 없는 보행환경 조성,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조성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공원 내 접근이 어려운 산책로, 저수지 등 접근 가능한 데크 및 탐방길 조성

【그림Ⅳ-9】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원조성 예시



## 4)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 시행에 따라 2020년 실효가 예상되는 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조성 유도하고 일부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일부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 13. 방재 및 안전계획

### 가. 기본방향

#### 1) 종합적인 재난예방대책 수립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방안 마련
- 안전관리 저변 확대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사업 육성
- 재난관리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과학적·실용적인 정책 개발
- 재난예방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운영

#### 2) 통합적 재난대비대책의 구축

- 기상관측, 재난예측 및 경보시스템의 과학화·현대화 촉진
-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훈련 강화
- 재난을 대비하여 물자·자재를 비축하고 재난대응 표준 매뉴얼의 개발, 재난관리시스템의 정비·심사·평가 등을 통해 재난정책 개선

#### 3) 신속한 재난대응대책 강화

- 신속·정확한 재난상황파악과 초기대응을 위한 종합상황실의 운영·관리 강화
- 유관기관·단체 간 공조체제를 통한 효율적 긴급구조태세 확립
- 재난사태 선포, 응원요청, 대피명령 등 상황별 대응 시스템 체계화
- 재난현장 출입통제와 사상자 관리 등 일사불란한 현장지위·통제시스템 구축

#### 4) 항구적인 재난복구대책 강구

- 신속한 복구의사결정과 개량중심 복구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강구
- 과학적인 피해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복구체계 확립
- 대형 재난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복구·재활 지원
- 재난복구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한 재난예방·대비의 개선 강구

5)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 구축

-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방안 강구
- 범죄예방을 위한 통합관리방안 강구

나. 세부계획

1) 도시지역

- 사업 대상지의 개발계획 수립 시 재해위험 발생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주요 시설물 설치 지양
- 저지대가 아닌 지역에 개발을 유도하고 신규 개발 또는 관공서 유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저지대 지역의 인구가 이동될 수 있도록 유도
- 개발사업 시 공공시설 및 주차장에 투수성 포장 및 빗물 침투시설 계획
- 내수침수재해 위험지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저감방안 준수
- 도시방재계획, 구역별 저류능력 확대,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구역내 홍수방어시설 계획
- 개별 사업의 개발 단계별 지하시설물 계획수립시 우수유출규정에 의거하여 설치

2) 산악지역

- 조사 완료된 동두천시의 사면 및 토사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수립되어 있는 저감방안 준수
-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 지양
- 급경사지역은 개발을 지양하고, 보존하는 방안 검토
-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사면 발생을 억제하고 절·성토 규모 최소화를 위한 방안 검토
- 산지개발로 인해 황폐하게 노출되는 경사면에 피복 등 경사면의 녹화계획 수립
- 훼손된 산림과 지형의 복구계획 수립

### 3) 농촌지역

-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 사전 파악 및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 배수펌프장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저류를 할 수 있는 우수지 확보
- 내수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처리계획 수립

### 4) 하천·호소지역

-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처리 방안 검토
- 각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 시 저지대는 시설물 밀집 지양
- 월류위험성이 있는 하천재해 위험지구는 수립된 저감대책 준수

### 5) 상습침수구역

- 과거 재해이력, 예상되는 피해 정도, 지역여건 및 주민여론 등을 검토하여 방재지구 지정 검토
- 재해위험 검토지역 내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충분한 재해위험요인 검토를 통해 제도적 안전관리 강화
-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시 지하시설에 대한 이용 및 용도를 적절히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유도
- 재해위험 검토지역을 포함하는 개발사업 시행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 및 사후 평가를 통해 재난가능성 저감

## 14. 경제 · 산업개발계획

### 가. 기본방향

#### 1)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소요산 방문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표IV-33】소요산역 승하차 인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승하차인원	2,159,775	2,094,936	2,312,387	2,674,489	2,923,640
승차인원	1,107,447	1,087,287	1,210,617	1,387,749	1,545,076
하차인원	1,052,328	1,007,649	1,101,770	1,286,740	1,378,564

자료 : 철도통계연보, 각 년도

-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생연동 일원의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 2)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

- 소요산 관광지 인근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연계방안 마련

### 나. 추진전략

#### 1) 소요산 관광지 육성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요산 관광객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여 소요산 주변 환경 정비 및 안전을 고려한 소방도로 확보

#### 2) 온천개발

-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생연동 일원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관광호텔 조성 등을 통한 온천 관광객 유치

#### 3)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

- 소요산을 중심으로 소요산-산림욕장-자유수호평화박물관-어린이박물관을 연계한 소요산 관광타운 조성

## 15. 사회·문화개발계획

### 가. 보건·의료시설

#### 1) 기본방향

##### 가) 종합적인 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수준 향상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보건소 등을 포함하여 공공·민간의료 시설을 연계한 종합의료체계 확립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력 및 병상수의 지속적인 확충

##### 나) 의료시설의 생활권별 배치유도와 지역보건의료 기반 강화

○ 보건소 기능의 강화로 민간병원의 연계성 강화

○ 한방 및 물리치료 시스템을 확대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료체계 수립

#### 2) 계획 지표

○ 2010년 이후 종합병원 1개소를 확충하여 다양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적 이용체계 형성 및 도심부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 외곽에 의료시설 배치 유도

○ 의원은 접근성이 가장 높은 의료시설로서 지속적으로 확충

【표IV-34】보건·의료시설 계획 지표

구분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인	98,311	115,000	123,000
종합병원	개소	-	1	1
일반병원	개소	2	2	2
의원	개소	34	58	62
치과병원	개소	17	17	18
한의원	개소	13	13	13
보건소	개소	1	1	1
특수병원	개소	1	1	1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나. 사회복지시설

### 1) 기본방향

-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대책 강구
- 도시화와 더불어 각종 범죄, 청소년 비행 등 사회불안 요인을 예방하는 예방적 차원의 복지체계 확립

### 2) 계획 지표

- 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
- 특히 부족한 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노인 여가활동 지원

【표IV-35】복지시설 계획 지표

구분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인	98,311	115,000	123,000	
아동복지시설	개소	10	12	13	
여성복지시설	개소	1	1	1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	1	1	
노인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개소	108	110	113
	주거복지시설	개소	1	1	1
	의료복지시설	개소	31	33	33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소	3	3	3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다. 교육시설

### 1) 기본방향

#### 가) 산학연과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산업체, 연구소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 지역 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 설립 및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나) 장래 교육수준에 대응한 교육환경 개선

○ 사회적 인구증가 대비 교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

2) 계획 지표

○ 자연증가 및 사회적 증가인구에 따른 단계별 계획인구 적용

○ 학급당 학생수 및 학교당 학급수는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학급당 학생수 감축 관련 도지사·시장·군수에게 협조요청(2013.5.8)”상 지표 적용

–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020년까지 21명, 중·고등학교 2020년까지 23명

– 학교당 학급수 :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표IV-36】학교시설 계획 지표

구분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인	98,311	115,000	123,000
초등학교	학생수	인	6,116	6,900	7,257
	학급수	학급	224	300	346
	학급당 학생수	인	27.3	23.0	21.0
	학교당 학급수	학급	20	28	36
	학교수	개교	11	11	11
중학교	학생수	인	3,318	3,795	3,936
	학급수	학급	98	152	171
	학급당 학생수	인	33.9	25.0	23.0
	학교당 학급수	학급	16	24	24
	학교수	개교	6	6	7
고등학교	학생수	인	3,120	3,565	3,690
	학급수	학급	117	129	160
	학급당 학생수	인	32.4	27.7	23.0
	학교당 학급수	학급	20	22	24
	학교수	개교	4	6	7

자료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2013.1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1
용도지구	2
용도구역	3
도시계획시설	4





## V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1. 용도지역

#### 가. 용도지역의 개요

##### 1) 용도지역의 개념

-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
-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규모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여야 하며,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 2) 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

【표 V-1】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

구 분		지 정 기 준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전용 주거 지역	제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가지 또는 그 주변의 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로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li> <li>• 신시가지중 주택지로 개발할 지역으로 양호한 단독주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li> <li>•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li> </ul> 제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성 및 주변시가지의 주택으로서 순화된 주거지역에서 기 형성되어 있는 중층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상황에서 보아 중·저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li> <li>• 중·저층 주택단지로서 계획적으로 정비하였거나 정비하기로 계획된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li> </ul>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li> <li>•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li> <li>•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li> <li>•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군기본계획상 시가화에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li> <li>• 가능한 한 주간선도로와 접하지 않. 다만, 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ul>

【표 V-1】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계속)

구 분		지 정 기 준
주 거 지 역	일반 주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li> <li>•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함. 다만, 녹지대 또는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li>• 제1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li> </ul>
	제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li> <li>•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 내에 포함된 지역</li> </ul>
도 시 지 역	준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li> <li>•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li> <li>•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li> <li>•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li> <li>•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li> <li>• 계획적 주택단지 내의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li> <li>•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 배치</li> <li>•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의 경계는 도로·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li> </ul>
	중심 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li> <li>•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 및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신시가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li> <li>• 당해 도시의 중심적 상권을 지닌 상업·업무기능의 중심지 또는 부도심 성격을 지니는 지역</li> </ul>
상 업 지 역	일반 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li> <li>• 지나친 선적(線的)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할 수 있는 지역</li> <li>• 전철과 같은 대량교통수단의 환승점 또는 자체에 기종점을 둔 통행발생이 많은 지역</li> <li>• 기능적으로 특화된 지역중심지로서 위락·자동차매매 및 정비·인쇄·출판 등의 기능을 면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li> <li>• 자동차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 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시고속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li> <li>• 주거지역과는 분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녹지 등과 같은 완충대 설치 고려</li> </ul>
	근린 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해 있으면서 도시·군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중 주차·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li> <li>•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li> <li>• 근린생활권 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지구의 중심상가 조성지</li> </ul>
	유통 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li> <li>•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li> <li>• 물자공급지의 연결이 용이하며 도시 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송단지와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li> </ul>

【표 V-1】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계속)

구분		지정기준
도시지역	공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서 지나친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정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무거운 구조물의 구축에 충분한 지내력을 지닌 지역</li> <li>• 도시의 규모, 입주공업의 토지에 대한 공업밀도를 감안하여 공업시설의 면적·지원 시설 면적·녹지시설 면적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지의 확보가 가능하고 일단의 토지매입이 용이한 지역</li> <li>•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해지역의 경우에는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조건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li> <li>•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li> </ul>
	일반공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li> <li>•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li> </ul>
	준공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li> <li>• 주문생산품의 생산자 또는 이용자가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소규모 분산적 입지도 가능한 지역</li> <li>• 취업자들의 통근편의성 및 소음·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보호를 고려하여 지정</li> <li>• 준공업지역은 주기능이 공업기능이므로 이에 상충되는 기능의 혼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가능한 억제하며, 기존 준공업지역중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지정</li> <li>• 대도시의 경우에는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의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며, 중·소도시에서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음</li> </ul>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가지 내 또는 인근에 수림, 초지, 호소, 하천, 연안, 주요 습지 등과 인접 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li> <li>• 문화재, 전통사찰, 기념적 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li> <li>•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li> <li>•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상수원 보호,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해의 방지, 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규모·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li> <li>•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하천 상류지역</li> <li>•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등과 연계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li> <li>•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li> </ul>
	생산녹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li> <li>•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li> <li>•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농지</li> <li>•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ul>

【표 V-1】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계속)

구분		지정기준
도시지역	녹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li> <li>•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li> <li>•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li> <li>•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개발시 기반시설의 투자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 급경사지, 저습지 등</li> </ul>
	관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li> <li>• 장래 보전산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li> <li>• 장래 농업진흥지역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li> <li>• 관리지역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li> </ul>
	농림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li> <li>•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당해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li> </ul>
비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li> <li>•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li> <li>•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li> <li>-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li> <li>-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li> <li>-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li> <li>-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li> <li>-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li> <li>-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li> <li>-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li> <li>-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li> <li>-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3조, 제3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li> <li>-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li> <li>-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육역</li> </ul> </li> <li>• 무인도는 환경부의 「자연환경조사」결과 및 「특정도서」지정내용 등을 참고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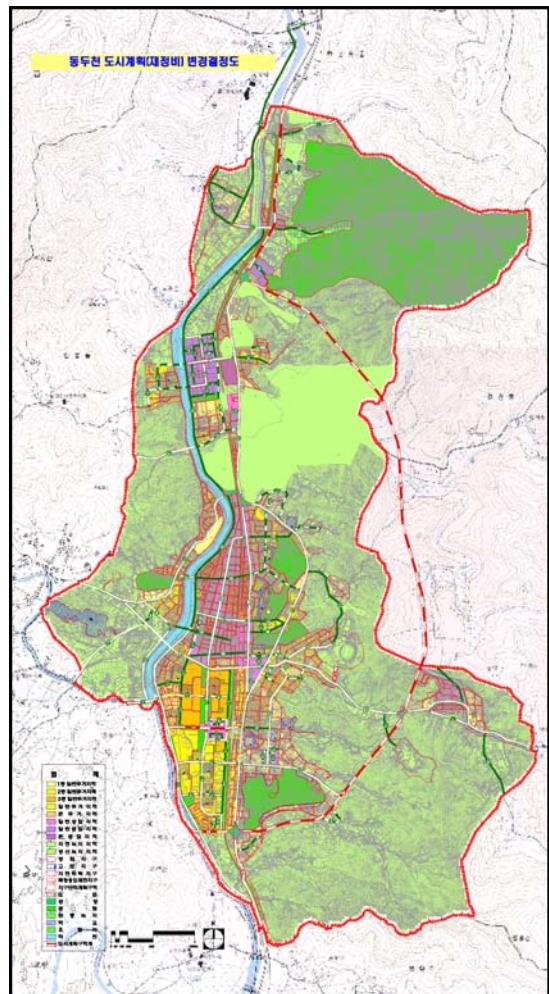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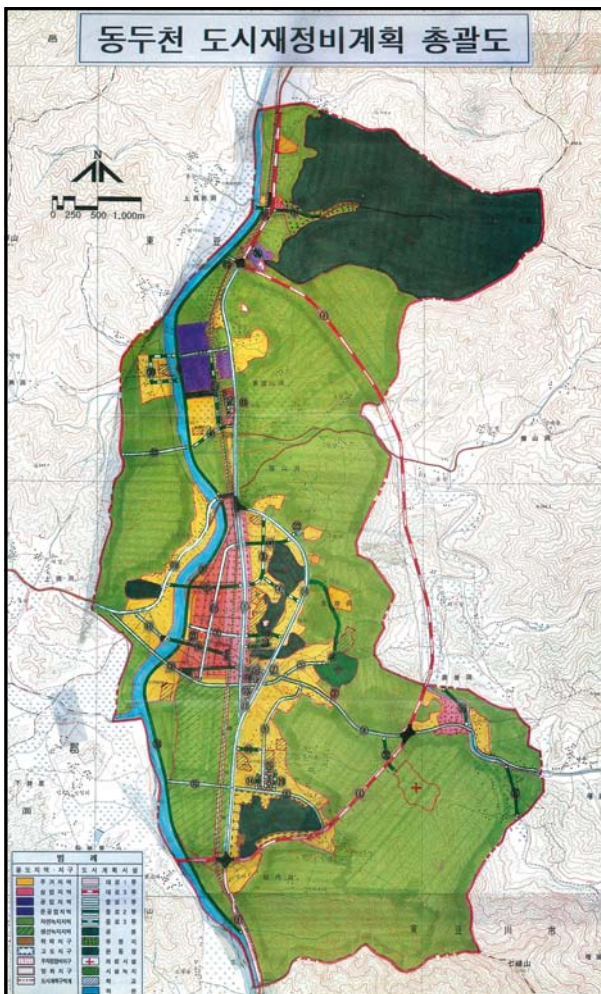
### 3) 현황분석

#### 가) 시가화 동향

- 동두천은 1965년 최초 도시계획수립이후 1976년, 1986년, 1996년 5월, 12월, 2003년, 2010년에 걸쳐 총 6차례의 도시계획 재정비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기존 집 단취락지역을 포함한 약 394천㎡의 면적이 주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구시가지 내 상업기능이 미미한 약 126천㎡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기존 취락 밀집지역 약 409천㎡를 주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공업지역도 약 460천㎡를 신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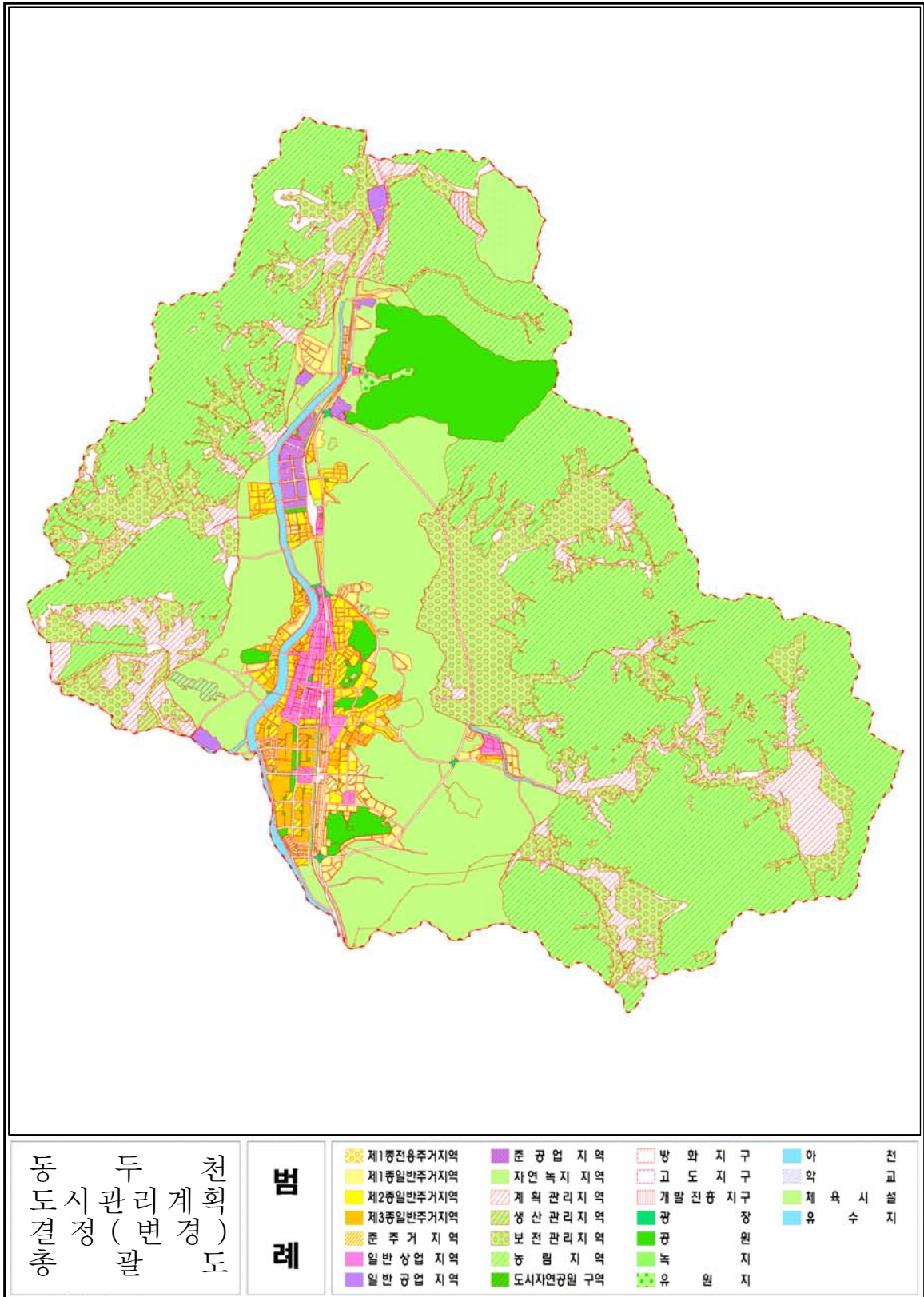
【그림 V-1】1996년 동두천 도시재정비계획 총괄도

【그림 V-2】2003년 동두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도





【그림 V-3】2015년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도





나) 용도지역 지정 현황

- 동두천시는 2013년말 기준 도시지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34.8%인 33,299km<sup>2</sup>, 비도시지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65.2%인 62,382km<sup>2</sup>를 차지하고 있음
- 도시지역 중 시가화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은 7,667km<sup>2</sup>로 행정구역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이 25,631km<sup>2</sup>로 행정구역 면적의 26.8%를 차지하고 있음
-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이 21,940km<sup>2</sup>로 행정구역 면적의 22.9%, 농림지역이 40,443km<sup>2</sup>로 행정구역 면적의 42.3%를 차지하고 있음
-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6,715km<sup>2</sup>로 7.0%, 생산관리지역이 1,215km<sup>2</sup>로 1.3%, 보전관리지역이 14,010km<sup>2</sup>로 14.6%를 차지하고 있음

【표 V-2】용도지역 지정현황

구분		면적(m <sup>2</sup> )	비율(%)	비고	
총계		95,681,000	100.0		
도시 지역	소계		33,298,502	34.8	
	주거 지역	계	5,632,586	5.9	
		제1종전용주거지역	21,663	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39,485	2.1	
		제2종일반주거지역	2,433,641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943,715	1.0	
		준주거지역	194,082	0.2	
	상업 지역	계	1,037,901	1.1	
		일반상업지역	1,037,901	1.1	
	공업 지역	계	996,628	1.0	
		일반공업지역	990,253	1.0	
		준공업지역	6,375	0.0	
	녹지 지역	계	25,631,387	26.8	
		자연녹지지역	25,631,387	26.8	
비도시 지역	소계		62,382,498	65.2	
	관리 지역	계	21,939,504	22.9	
		계획관리지역	6,714,725	7.0	
		생산관리지역	1,214,722	1.3	
		보전관리지역	14,010,057	14.6	
	농림지역		40,442,994	42.3	

자료 : 동두천시 내부자료(2013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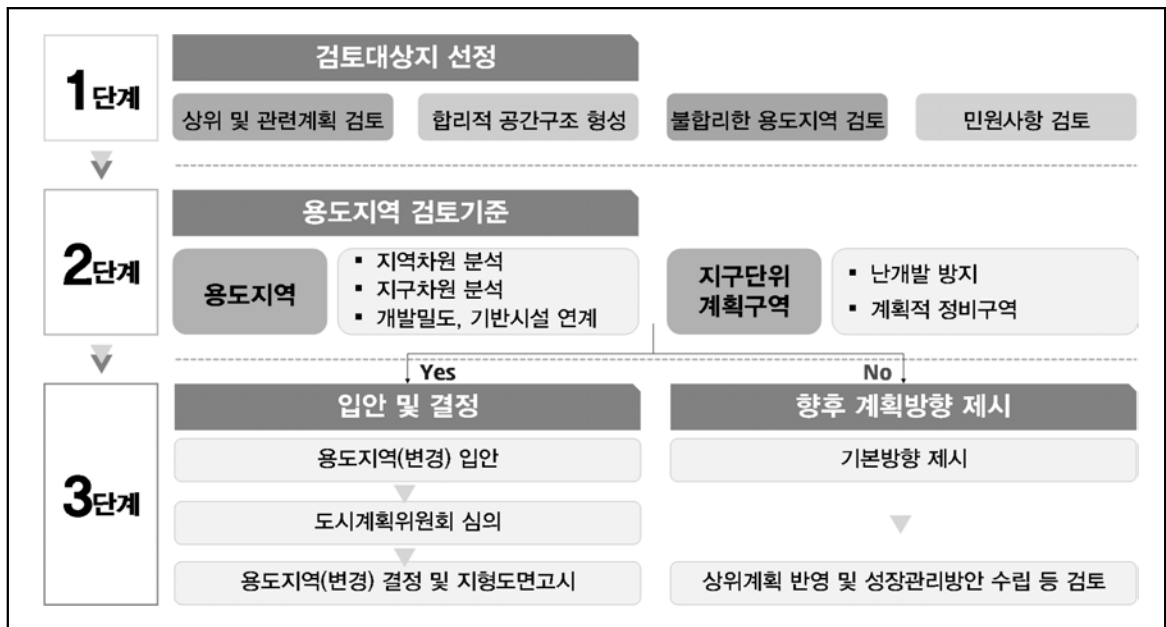
## 나. 용도지역별 계획기준

### 1) 도시지역

#### 가) 도시지역 정비의 기본방향

- 용도지역 재정비는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배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기반으로 작성(2~3단계까지의 용지배분계획을 토대로 검토)
-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 지정 검토
- 용도지역 변경의 일관성을 위해 상위 및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제외한 2단계 이상의 사항을 지양
- 기존 시가지 내의 용도지역 중 도시여건변화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조정토록 하며, 민원제기 지역에 대한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

【그림 V-4】도시지역의 단계별 계획내용 및 검토기준



### 나) 주거지역

#### (1)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주거지역으로 배분·검토

하되, 개별사업추진을 통해 정비될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

-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취락지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 (2) 합리적 공간구조 형성

-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주거지역 지정 검토

#### (3)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민원사항 검토

- 기타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및 주요 민원지역을 정비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

### 다) 상업지역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한 상업지역 지정
- 미래의 인구규모 및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상업지역 수요면적 추정
- 생활권별로 중심지 위계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상업지역을 배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유도

#### (1) 상업지역 배분계획

- 목표연도 2020년까지 계획인구 123,000인에 대하여 약 0.43km<sup>2</sup>의 상업용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 현재 상업지역이 1.04km<sup>2</sup>로 수요추정치 이상으로 초과 지정된 상황이므로 신규 상업지역 지정 지양
- 「온천법」에 의한“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생연동 일원에 대해서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 용도를 고려하여 개발용도에 맞는 상업지역으로 변경

### 라) 공업지역

-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며, 공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

여 지정

- 공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세분
- 금회 재정비시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지양하고 기존 공업지역에 대해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마) 녹지지역

-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
- 도시기본계획상의 녹지체계를 유지하며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도시민이 쉽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우선 녹지지역으로 지정
- 표고, 경사도, 식생, 임상, 자연생태계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녹지지역지정

2) 비도시지역

가) 경기도 관리지역 재정비 검토기준

- 경기도에서는 관리지역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 관리지역 재정비 검토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제시하였으며, 각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완화 및 강화하여 적용 가능
- 주요 검토 기준으로 기존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3만㎡ 이상 대규모 집단 개발지역, 최초 세분 시 개발지 누락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적법훼손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 내 1만㎡ 이상 취락지구·자연마을 및 전·답 등은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3천㎡ 이하의 과소블록은 연접 블록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은 해당 토지 및 연접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표 V-3】계획 유형별 관리지역 재정비 검토기준 -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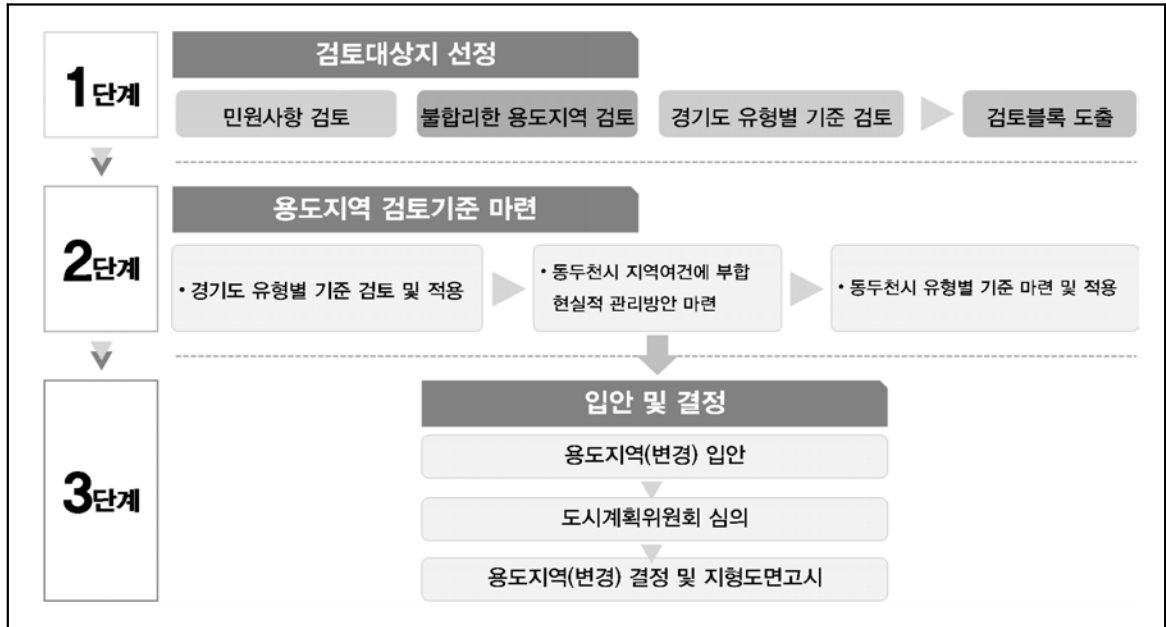
구분	계획유형	검토기준	용도지역
유형1	3만㎡ 이상 대규모 집단 개발지역	• 대지밀도 50%와 건축밀도 1만㎡당 5호중 하나와 적법 훼손지 66% 이상 충족시 적용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유형2	1만㎡ 이상 취락지구 자연마을 등	• 적법훼손지 66% 이상	(보전→ 생산관리지역)
유형3	기 결정시 개발지 누락지역	• 최초세분 이전 적법 훼손지 누락지역 • 계획관리지역 연접 (미연접시 1만㎡ 이상, 적법훼손지 80% 이상)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유형4	적법훼손지 용도지역 현실화 (계획관리지역 내 가능한 용도 허가 지역)	• 계획관리지역 연접 (미연접시 1만㎡ 이상, 적법훼손지 80% 이상)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유형5	토지이용상황에 따른 용도지역조정	• 생산관리지역 연접 • 3만㎡ 이상 지목상 임야 외 지역 80% 이상 집단분포	(보전→ 생산관리지역)
유형6	과소블록은 연접 용도지역과 갈게 조정	• 3천㎡ 이하 블록 • 연접블록 토지이용 상황 적극 고려 • 보전등급토지는 현행 유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유형7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	• 현 토지상황 및 연접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결정	(농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 나) 동두천시 관리지역 재정비 검토기준

### (1) 기본방향

- 동두천시는 현재 관리지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점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 관리지역 재정비 유형별 기준 적용 시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경기도 검토기준을 기초로 동두천시 지역여건에 맞는 검토기준 마련

【그림 V-5】관리지역의 단계별 계획내용 및 검토기준



(2) 기준 적용방안

- 관리지역 재정비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3-1-6-5를 근거로 기준 마련
- 최초 관리지역 세분시 블록의 최소 면적을 1만㎡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금회 관리지역 재정비시 블록의 최소 면적 기준을 1만㎡ 이상으로 설정
- 토지적성평가 결과 4·5등급 면적이 블록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관리지역 재정비시 적법훼손지 기준을 50% 이상으로 설정

【표 V-4】기준 적용방안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동두천시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관리지역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이상으로 가능</li> <li>• 1만㎡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인근 용도지역을 고려</li> </ul>	블록 최소 면적을 1만㎡ 이상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적성평가 결과 5등급으로 토지의 4~5등급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가능</li> </ul>	적법훼손지 기준을 블록 전체 면적의 50% 이상으로 적용

(3) 동두천시 관리지역 재정비 검토기준

- 동두천시 관리지역 내 적법훼손지를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지 않고 별도 블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규모를 1만㎡ 이상으로 설정하고, 적법훼손지 50% 이상 충족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인접한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 내 3만㎡ 이상인 지역이 전·답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1만㎡ 이하의 과소블록은 연접 블록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표 V-5】계획 유형별 관리지역 재정비 검토기준 - 동두천시

구분	계획유형	검토기준	용도지역
유형1	1만㎡ 이상 집단 개발지역 및 자연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 이상</li> <li>• 적법훼손지 50% 이상</li> </ul>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유형2	기 결정시 개발지 누락지역 및 적법훼손지 용도지역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법훼손지 누락지역(2014년 7월 이전)</li> <li>• 계획관리지역 연접</li> </ul>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유형3	적법훼손지 용도지역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법훼손지 누락지역(2014년 7월 이전)</li> <li>• 계획관리지역 인접</li> <li>• 적법훼손지 50% 이상</li> </ul>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유형4	토지이용상황에 따른 용도지역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관리지역 연접</li> <li>• 3만㎡ 이상</li> <li>• 지목상 임야 및 하천 외 지역 80% 이상 집단분포</li> </ul>	(보전→ 생산관리지역)
유형5	과소블록은 연접 용도지역과 같게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 미만</li> <li>• 연접블록 토지이용상황 적극 고려</li> </ul>	(보전, 생산→ 생산, 계획관리지역)
유형6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시설 및 지형현황 등 현황여건과 불부합하는 용도지역 경계 조정</li> </ul>	(계획→ 보전관리지역)

## 라. 용도지역별 변경계획

### 1) 총괄

【표 V-6】용도지역 총괄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5,681,000	-	95,681,000	100.0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소 계	5,632,586	증) 162,230	5,794,816	6.1		
		제1종전용주거지역	21,663	-	21,663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2,039,485	증) 50,277	2,089,762	2.2		
		제2종일반주거지역	2,433,641	증) 75,463	2,509,104	2.6		
		제3종일반주거지역	943,715	증) 19,546	963,261	1.0		
		준주거지역	194,082	증) 16,944	211,026	0.2		
	상업 지역	소 계	1,037,901	증) 4,586	1,042,487	1.1		
		일반상업지역	1,037,901	증) 4,586	1,042,487	1.1		
	공업 지역	소 계	996,628	감) 909	995,719	1.0		
		일반공업지역	990,253	감) 909	989,344	1.0		
		준공업지역	6,375	-	6,375	0.0		
	녹지 지역	소 계	25,631,387	감) 165,907	25,465,480	26.6		
		자연녹지지역	25,631,387	감) 165,907	25,465,480	26.6		
	비 도 시 지 역	관리 지역	소 계	21,939,504	-	21,939,504	22.9	
			계획관리지역	6,714,725	증) 20,838	6,735,563	7.0	
			생산관리지역	1,214,722	증) 328,742	1,543,464	1.6	
			보전관리지역	14,010,057	감) 349,580	13,660,477	14.3	
		농 립 지 역	40,442,994	-	40,442,994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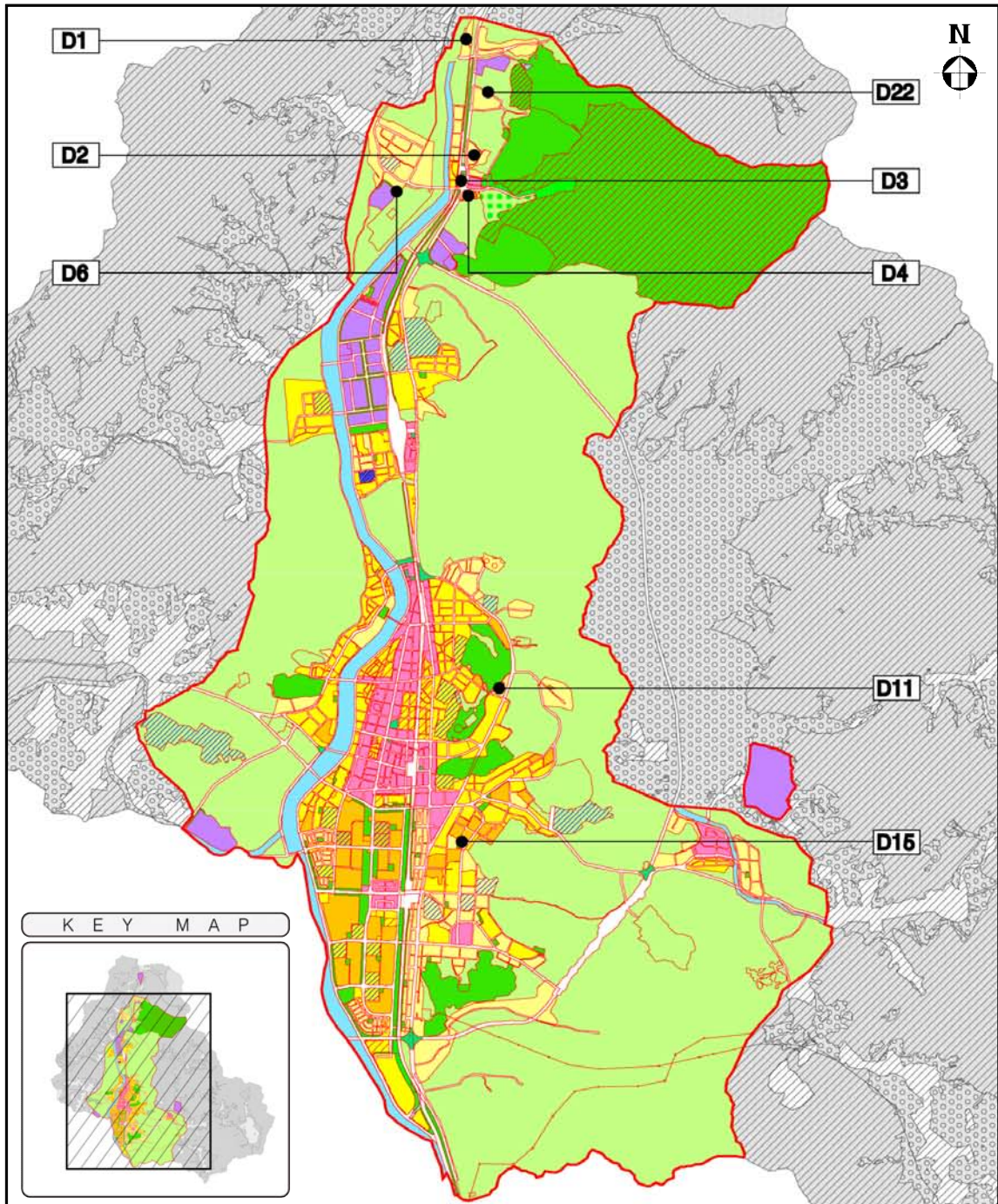


2) 용도지역 변경 내역

가) 도시지역

(1) 변경 내역 총괄도

【그림 V-6】용도지역(도시지역) 변경 총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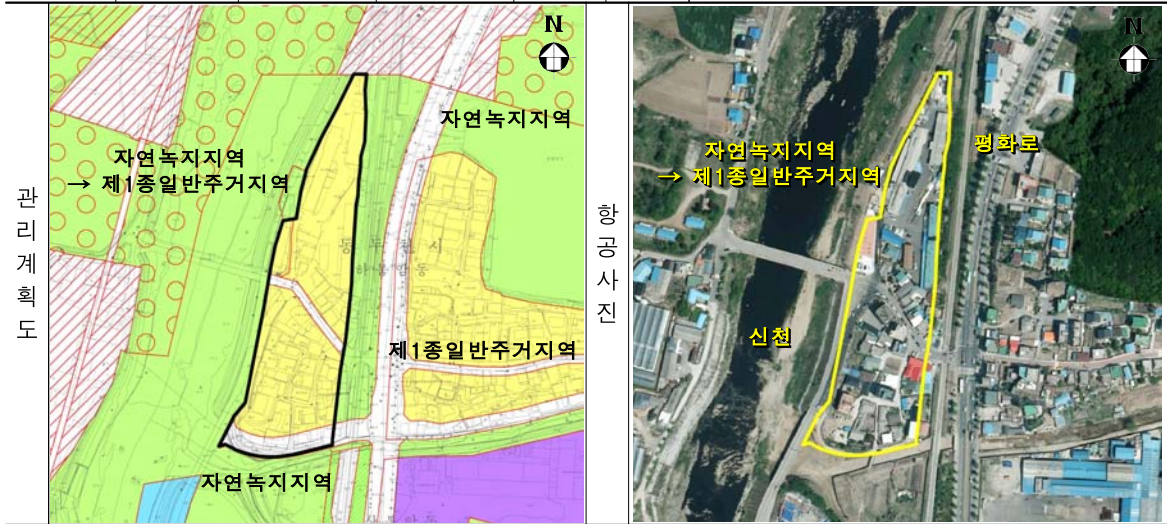




(2) 세부 변경 내역

○ D1 : 하봉암동 320-1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D1	하봉암동 320-1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3,143	200 이하	• 기존 취락 밀집지역(봉암마을)에 대한 용도 지역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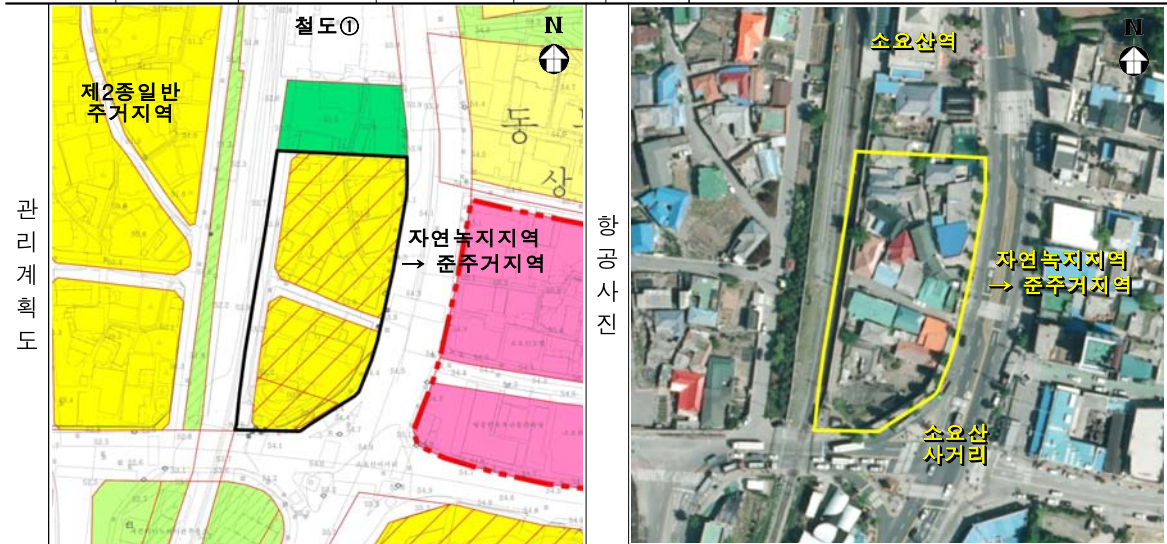
○ D2 : 상봉암동 84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D2	상봉암동 84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9,117	200 이하	• 기존 밀집지역 현실화 및 박찬호야구장, 어린이 박물관 설치 등 여건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기반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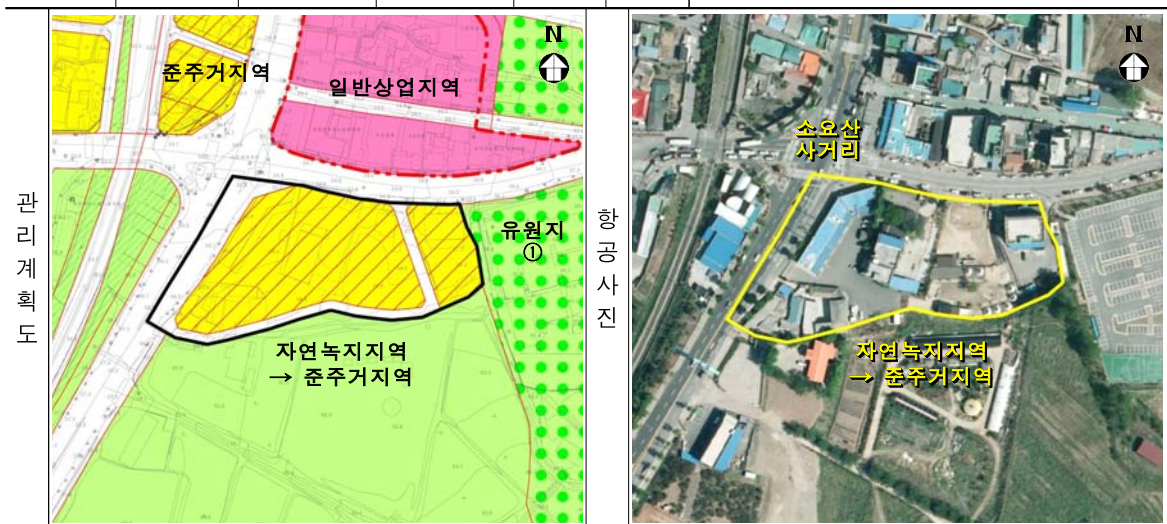
○ D3 : 상봉암동 132-17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D3	상봉암동 132-17일원	자연 녹지지역	준주거지역	5,341	500 이하	• 소요산역 진입부로 현재 건축용도 및 소요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D4 : 상봉암동 140-1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D4	상봉암동 140-1일원	자연 녹지지역	준주거지역	11,603	500 이하	• 소요산역 진입부로 현재 건축용도 및 소요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D6 : 상봉암동 217-2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D6	상봉암동 217-2일원	일반 공업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909	200 이하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에 따른 용도 지역 정형화

관 리 계 획 도	<p>일반공업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p> <p>자연녹지지역</p>	향 공 사 진	<p>일반공업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p> <p>동두천시 환경사업소</p>
-----------------------	---	------------------	---

○ D11 : 생연동222-3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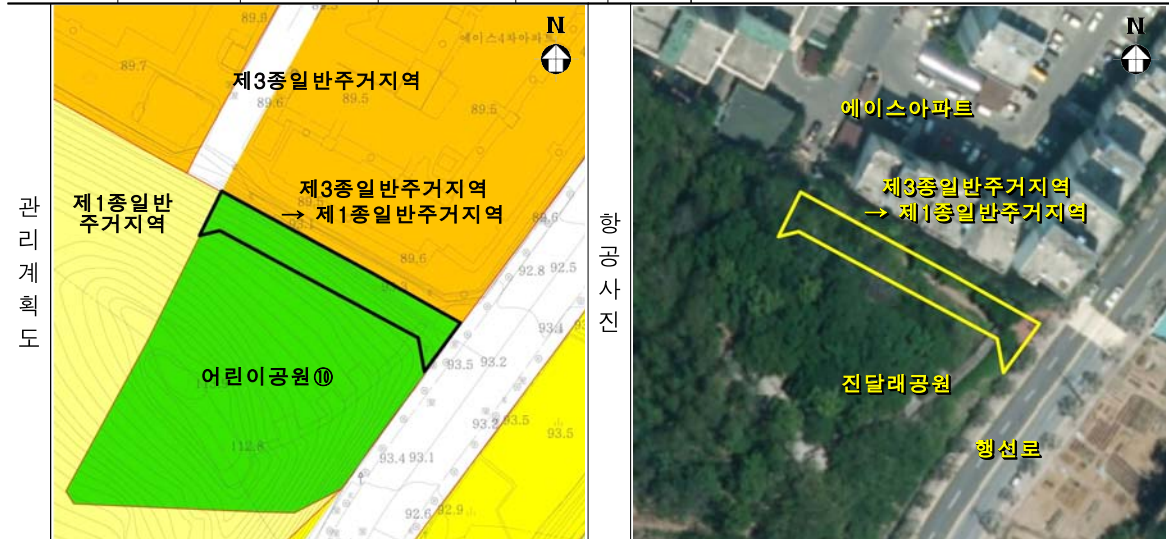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D11	생연동 222-3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4,586	1,300 이하	• 「온천법」에 의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온천개발계획에 맞추어 일반상업 지역으로 변경

관 리 계 획 도	<p>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p> <p>제2종일반주거지역</p>	향 공 사 진	<p>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p> <p>송터로</p> <p>장고곶로</p>
-----------------------	--	------------------	--

○ D15 : 생연동 335-5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D15	생연동 335-5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473	200 이하	•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경계에 맞추어 용도지역 조정



○ D22 : 상봉암동 33-2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D22	상봉암동 33-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603	200 이하	• 종로 3-32호선의 선형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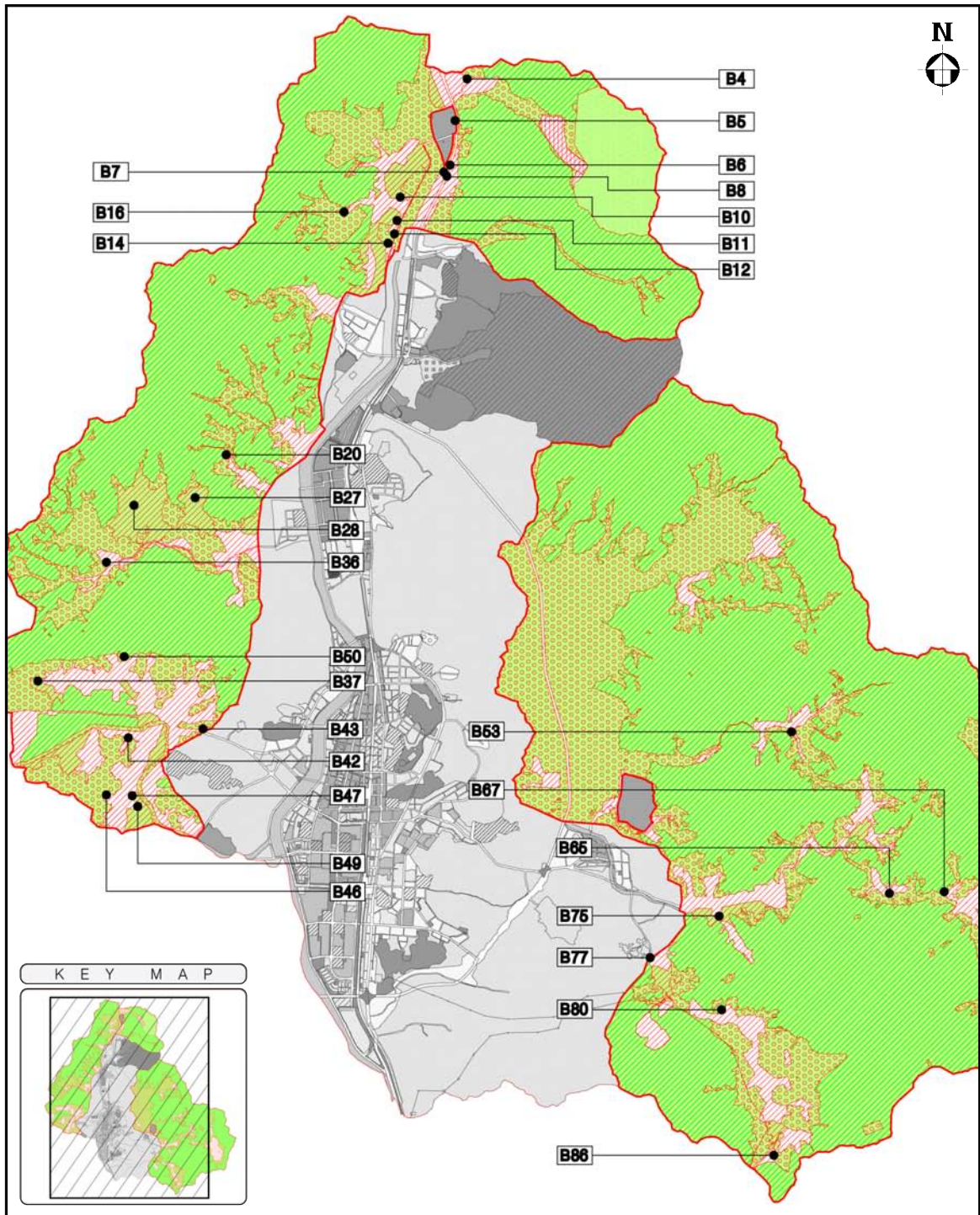




나) 비도시지역

(1) 변경 내역 총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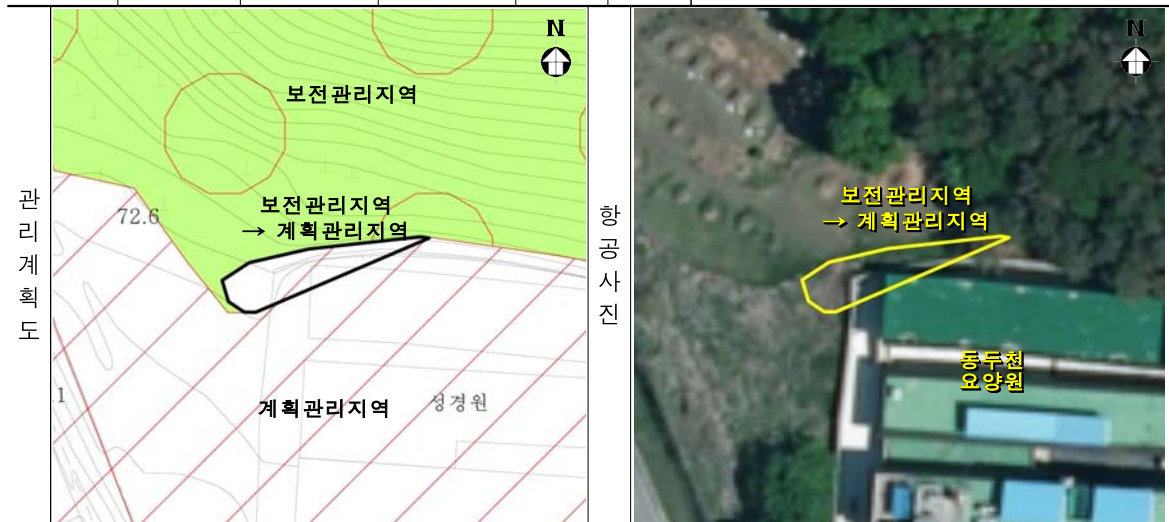
【그림 V-7】용도지역(비도시지역) 변경 총괄도



(2) 세부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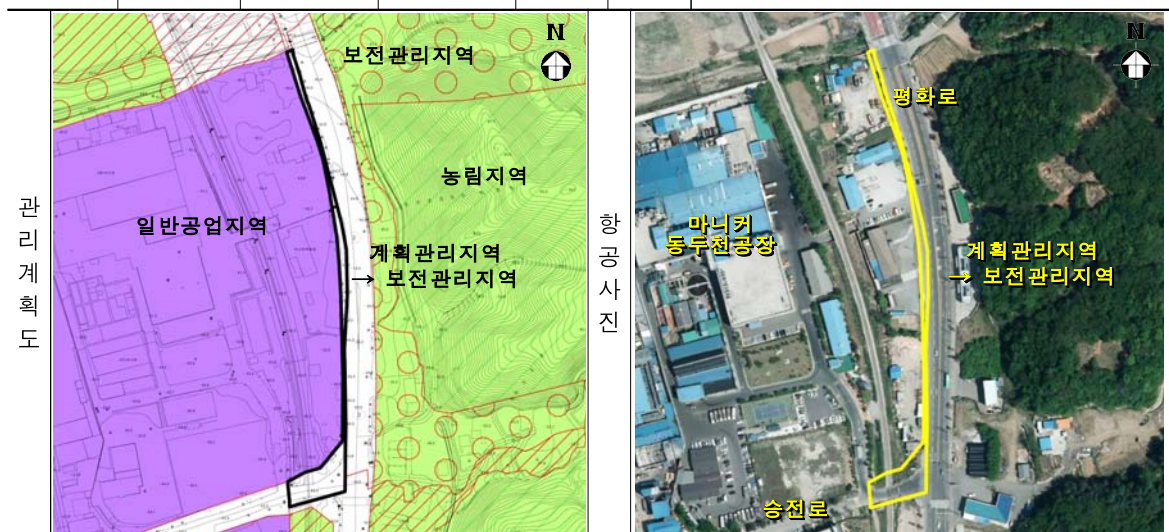
○ B4 : 하봉암동 1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4	하봉암동 1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15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 B5 : 하봉암동 116-3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5	하봉암동 116-3 일원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2,062	80 이하	• 용도지역 정형화 및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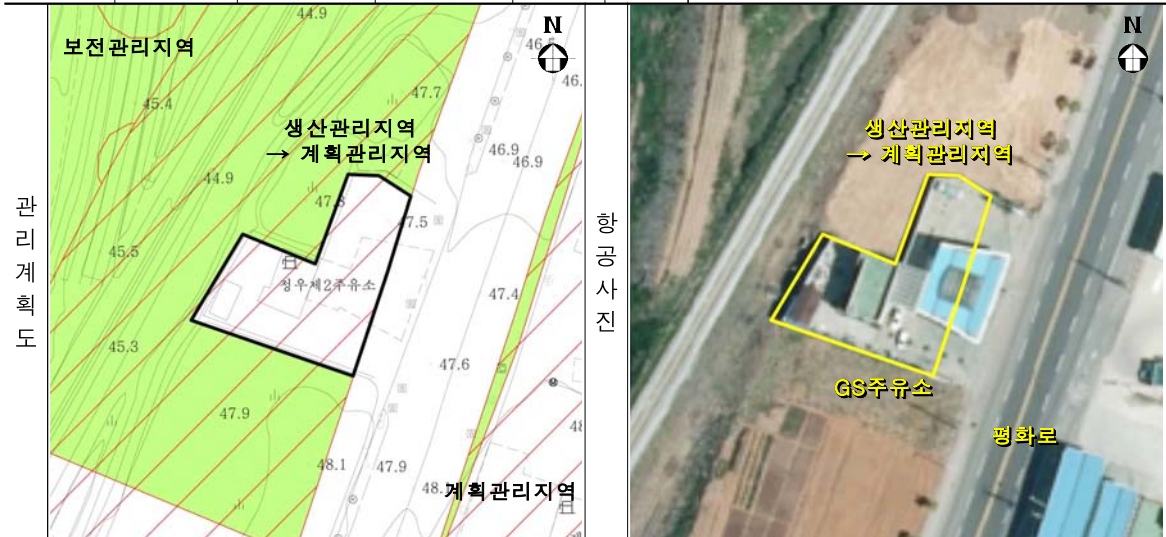
○ B6 : 하봉암동 72-2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6	하봉암동 72-2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69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 B7 : 하봉암동 69-7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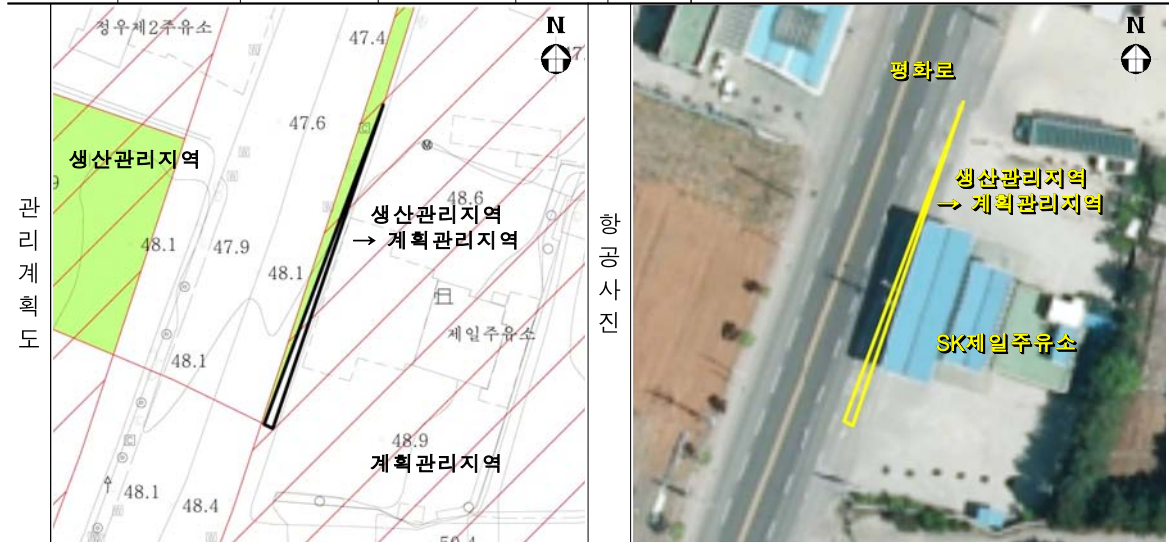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7	하봉암동 69-7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779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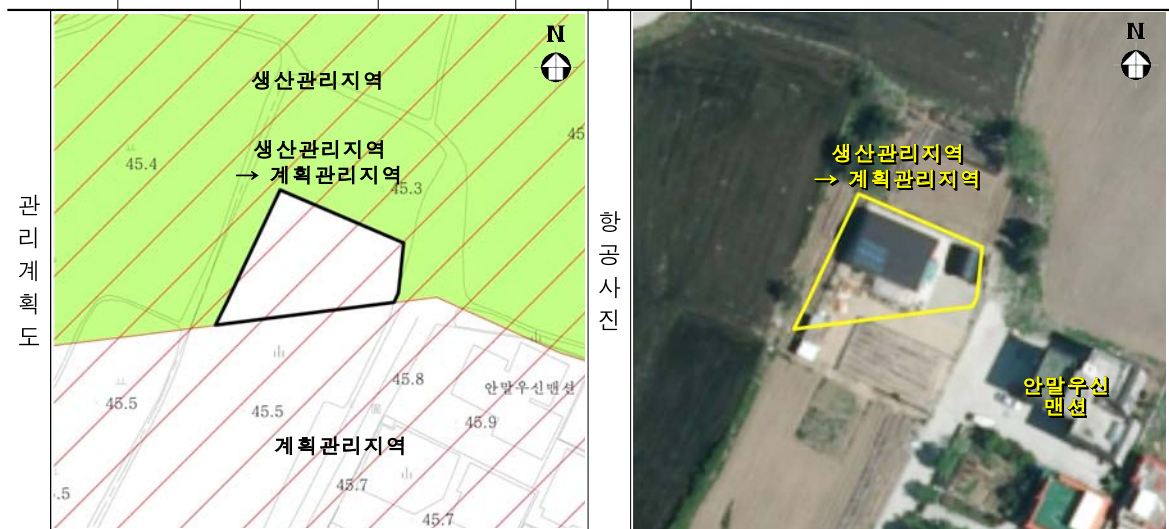
○ B8 : 하봉암동 70-5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8	하봉암동 70-5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5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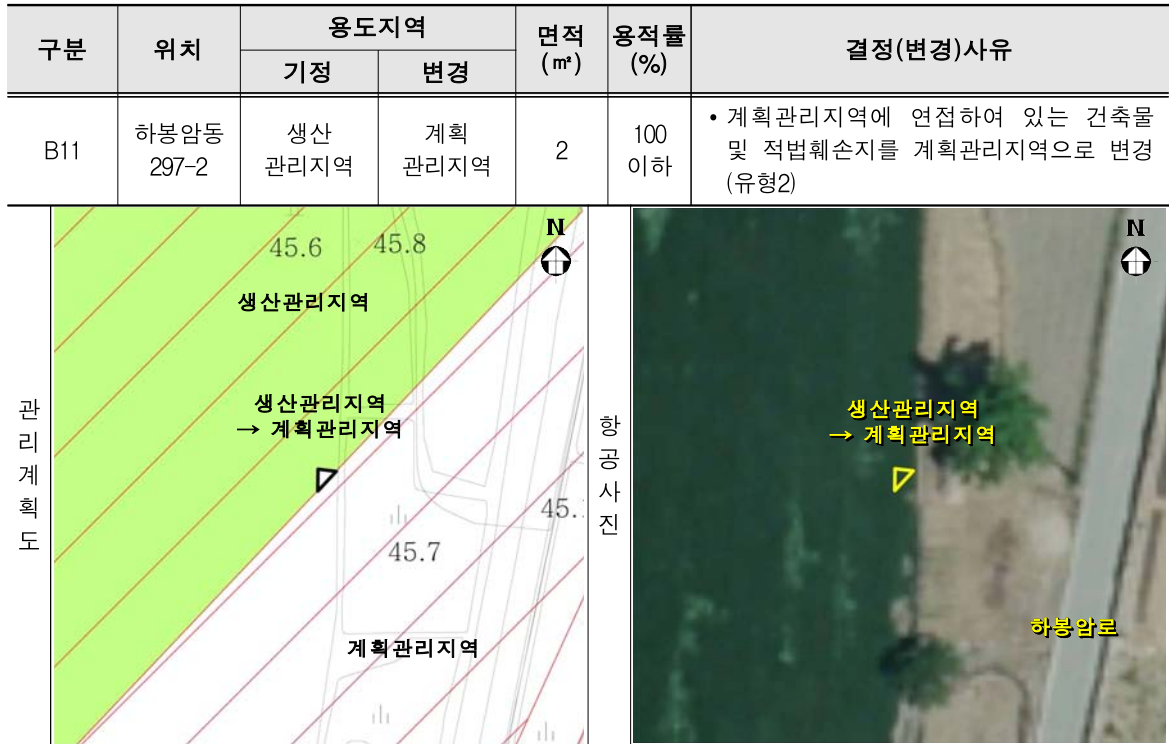


○ B10 : 하봉암동 278-19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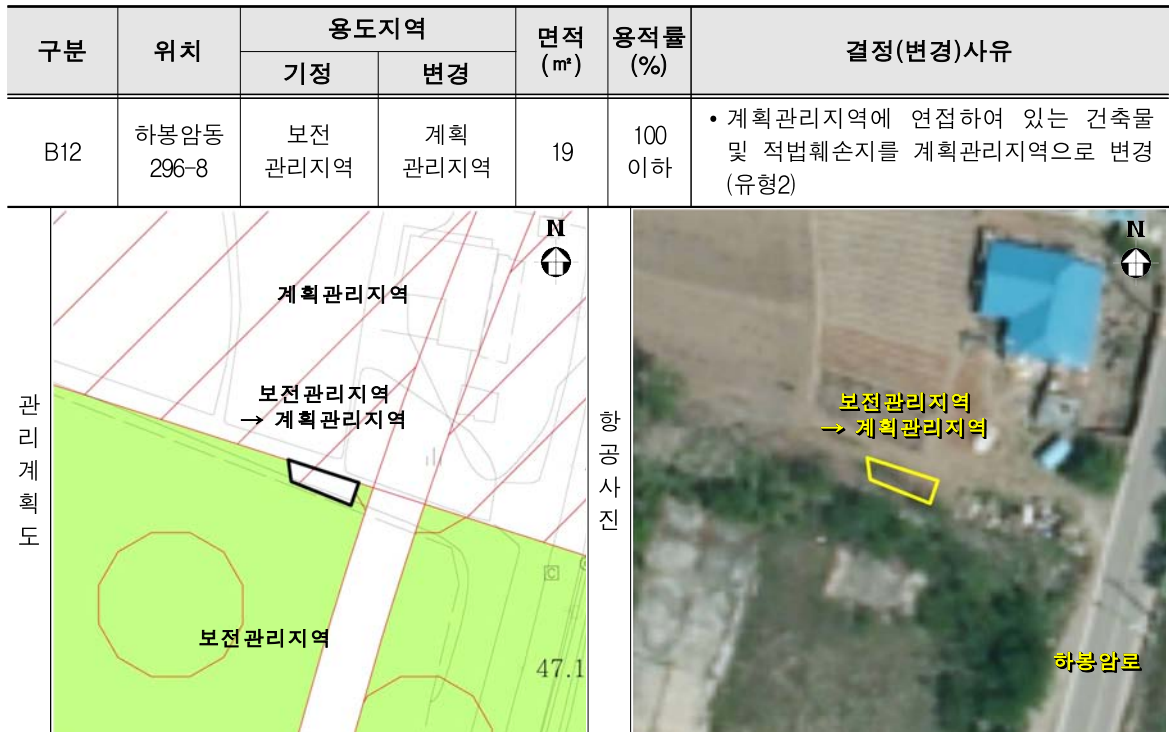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10	하봉암동 278-19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86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 B11 : 하봉암동 297-2번지



○ B12 : 하봉암동 296-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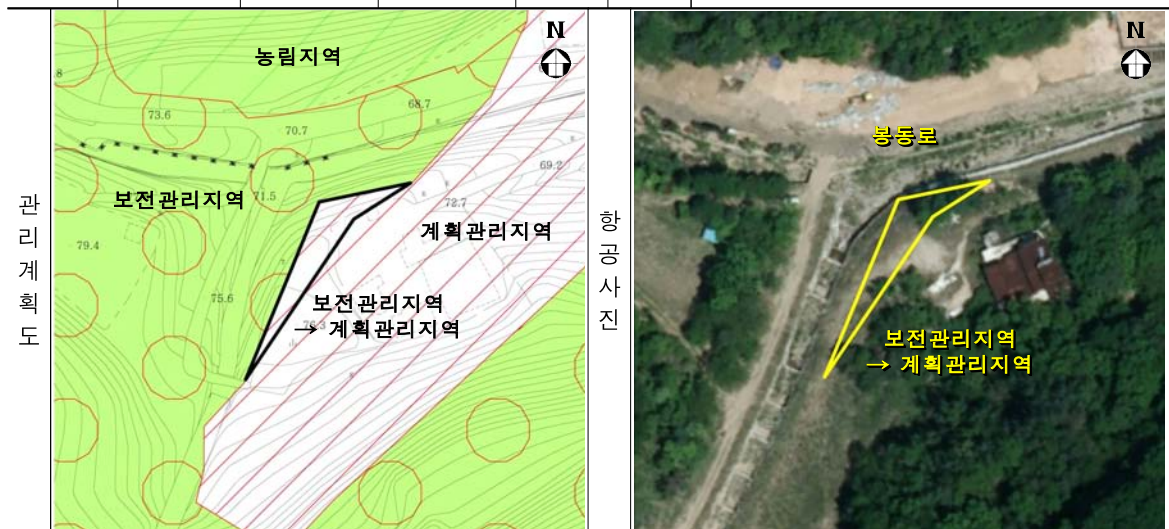
○ B14 : 하봉암동 338-5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14	하봉암동 338-5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2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 B16 : 하봉암동 산11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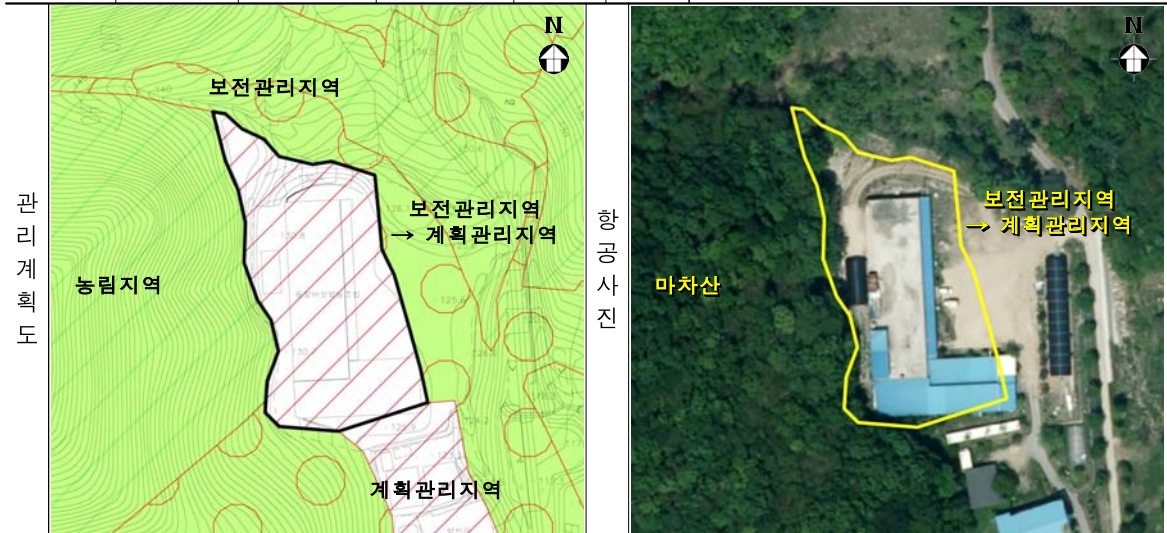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16	하봉암동 산119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28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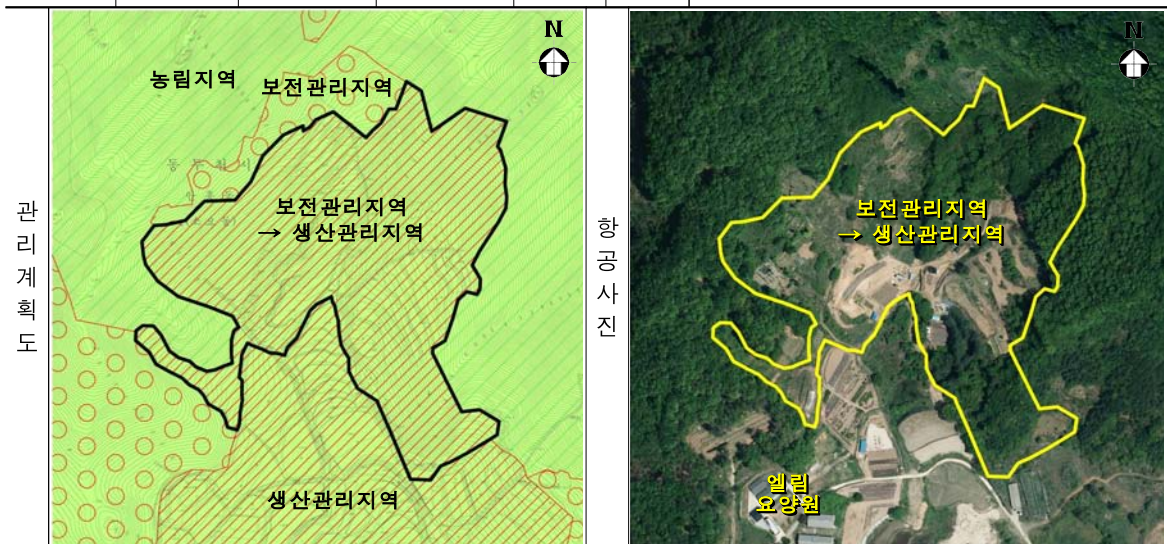
○ B20 : 안흥동 187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20	안흥동 187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358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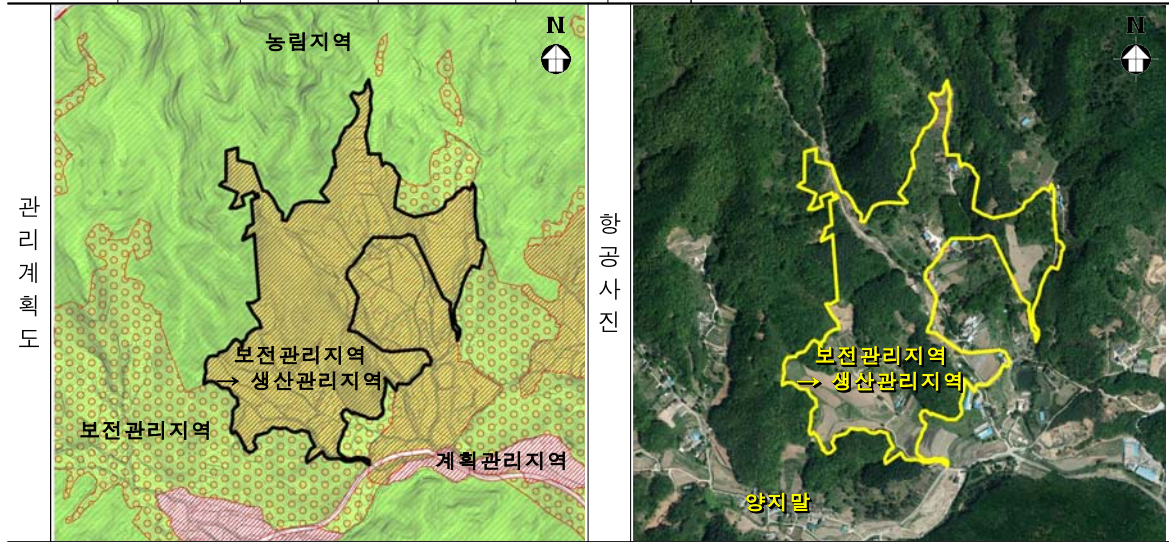
○ B27 : 안흥동 276-2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27	안흥동 276-2일원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70,162	80 이하	• 토지이용 현황상 대부분 전답부지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4)



○ B28 : 안흥동 307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28	안흥동 307일원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266,353	80 이하	• 토지이용 현황상 대부분 전답부지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4)



○ B36 : 안흥동 404-6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36	안흥동 404-6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 B37 : 상패동 955-2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37	상패동 955-2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41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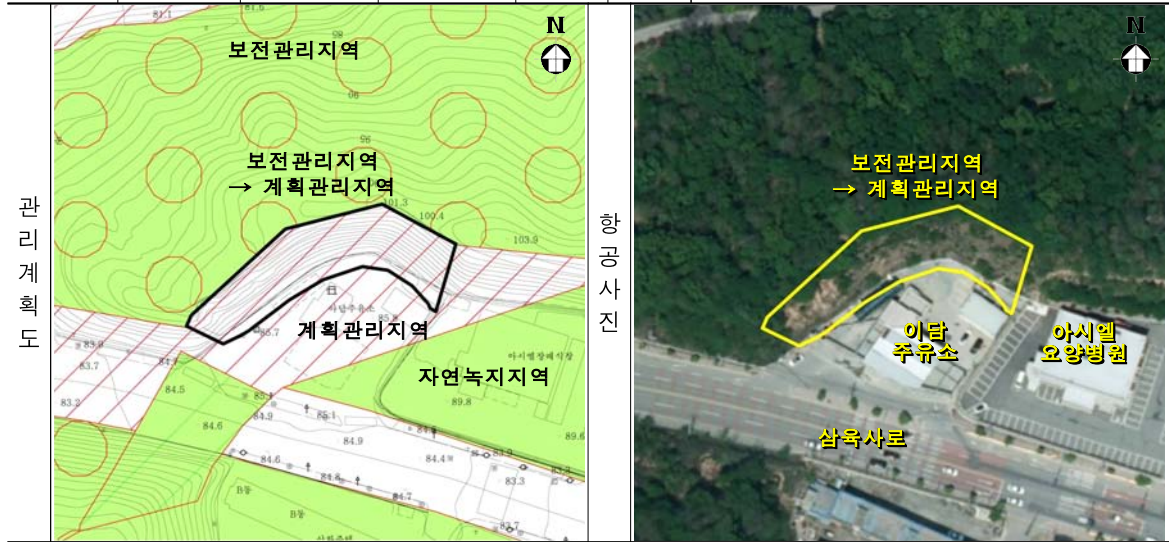
○ B42 : 상패동 630-2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42	상패동 630-2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97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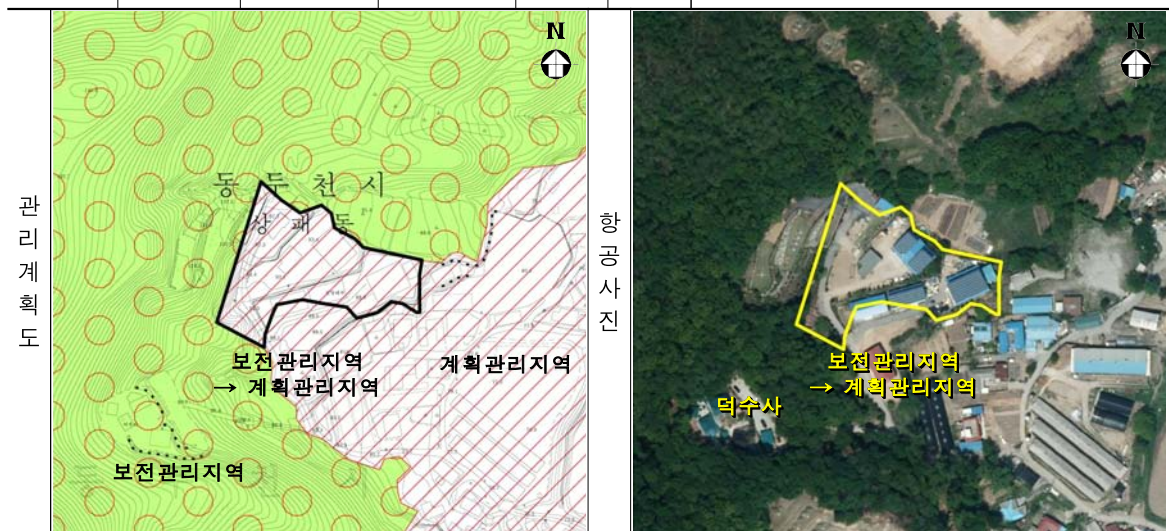
○ B43 : 상패동 201-24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43	상패동 201-24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375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 B46 : 상패동 766-3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46	상패동 766-3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5,161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 B47 : 상패동 738-9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47	상패동 738-9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971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 B49 : 상패동 739-7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49	상패동 739-7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95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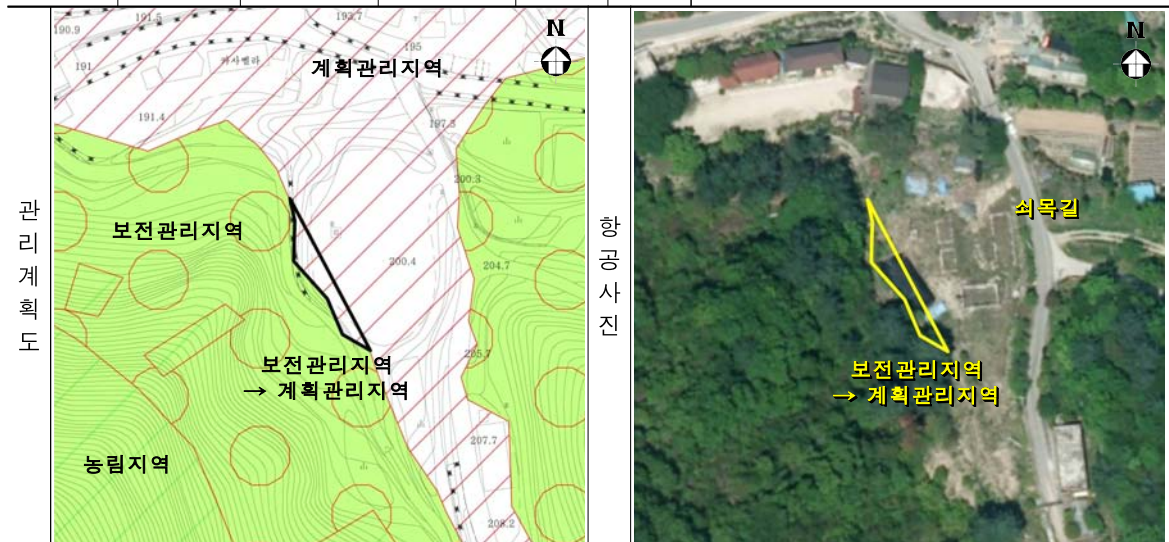
○ B50 : 상패동 산124-5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50	상패동 산124-5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2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 B53 : 광암동 39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53	광암동 39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81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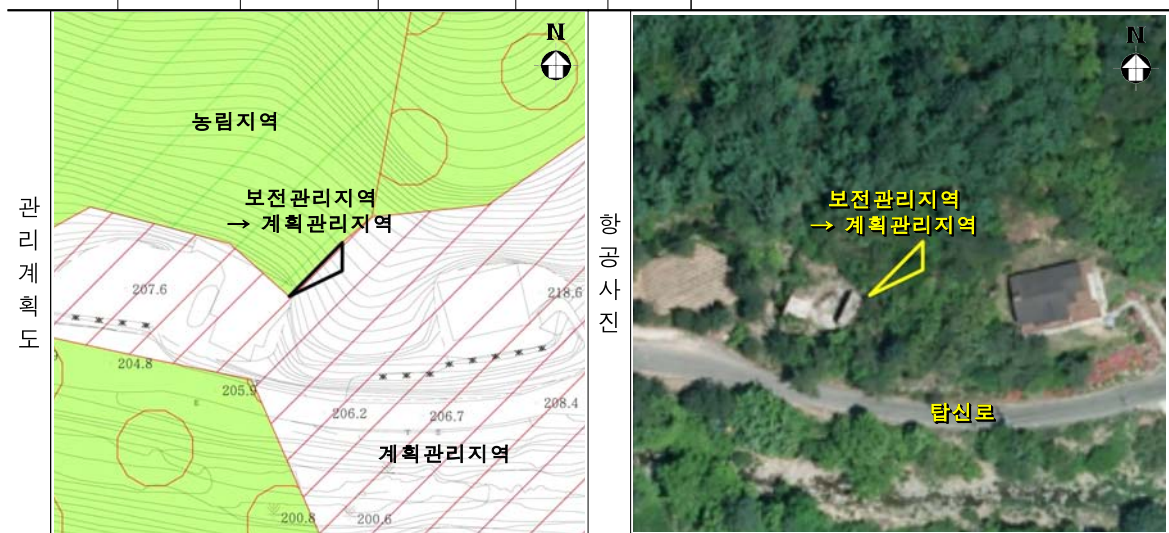
○ B65 : 탑동동 231-4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65	탑동동 231-4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15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 B67 : 탑동동 산163-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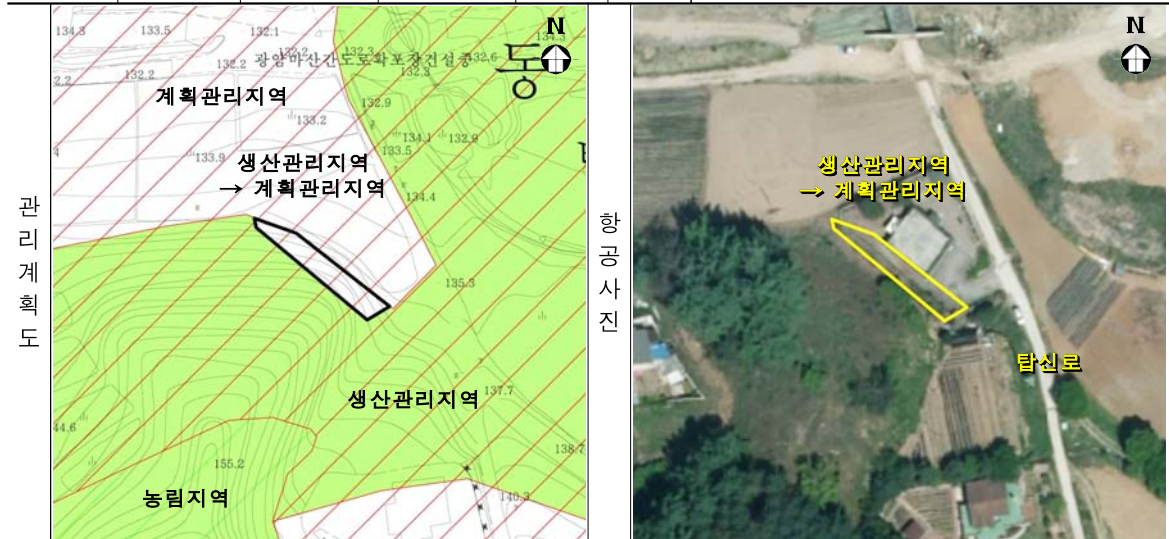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67	탑동동 산163-2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4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소규모 블록으로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5)





○ B75 : 탑동동 662-9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75	탑동동 662-9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95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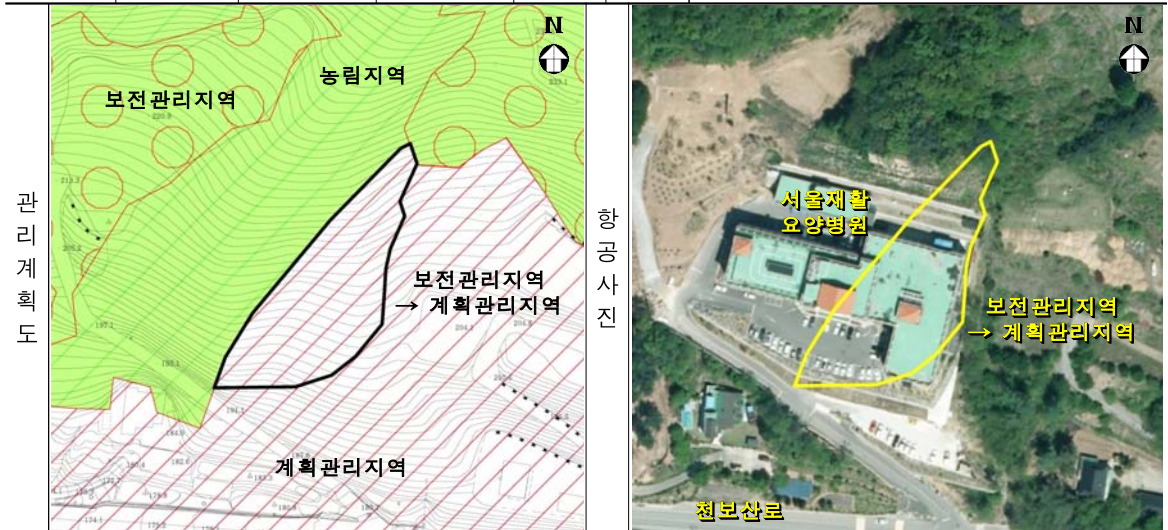
○ B77 : 탑동동 산233-2번지 일원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77	탑동동 산233-2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6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소규모 블록으로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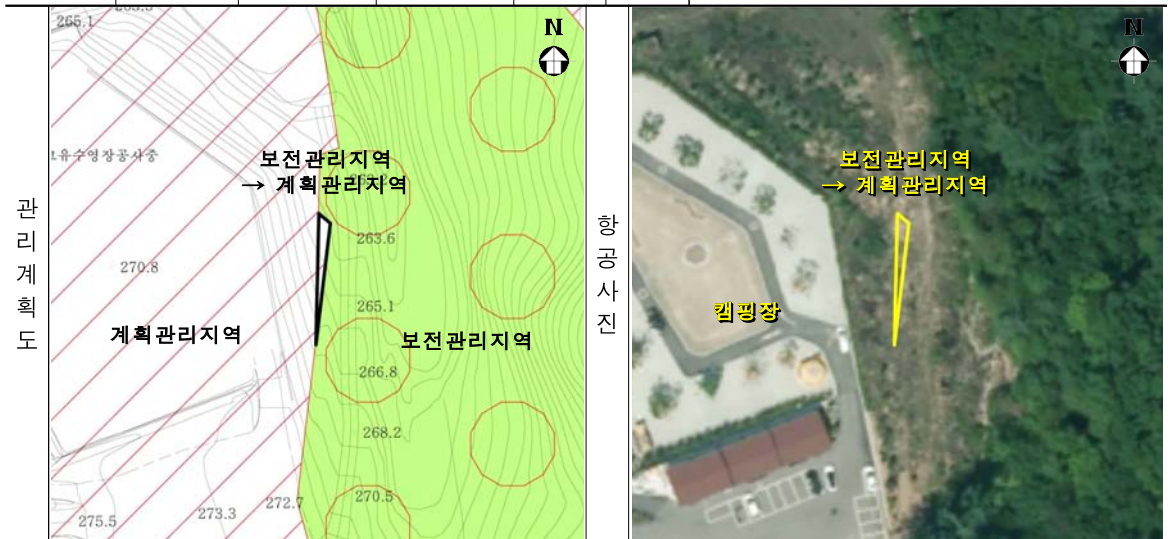
○ B80 : 탑동동 651-2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80	탑동동 651-2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283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 B86 : 탑동동 495-8번지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86	탑동동 495-8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8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유형2)



## 2. 용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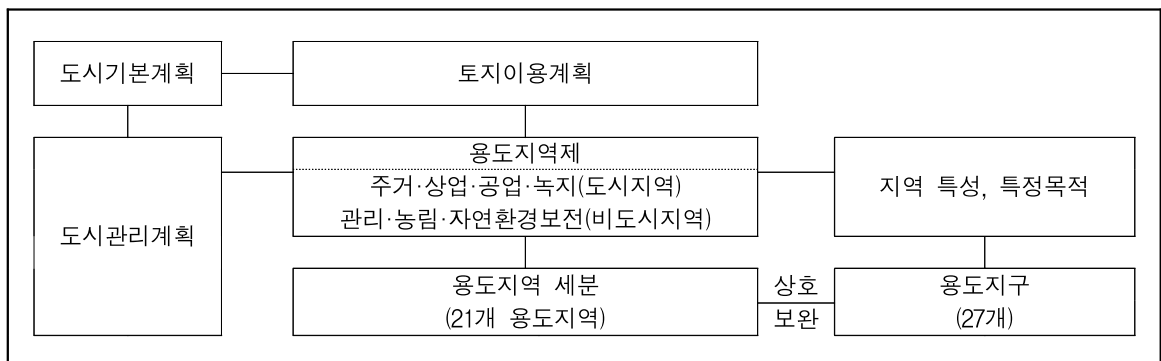
### 가. 용도지구의 개요

#### 1) 용도지구의 종류 및 지정기준

##### 가) 용도지구의 개념

- 도시의 일정지역에 지정 목적상의 토지이용 또는 구체적인 사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수단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 고도 등의 규제를 통해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용도지역에 중복하여 지정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그림 V-8】용도지구의 개념



##### 나)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효과

-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
-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 및 규모를 지정함으로써 과도한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토지 및 건물의 용도순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도로의 교통용량 초과를 예방
- 건폐율·용적률 및 고도 등의 제한으로 도시경관을 증진시키고 일조와 풍향을 제공
- 환경저해용도를 분리함으로써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의 공해발생을 방지하며, 재해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용도지역을 보완하여 건축물의 용도, 고도, 형태, 구조와 설비, 공지비율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규제 가능

다) 용도지구의 종류

(1)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검토기준

○ 현행 법규상 용도지구는 11개가 있으며, 이는 다시 27개 용도지구로 세분됨

(2) 용도지구별 지정목적 및 검토기준

【표 V-7】용도지구별 지정목적 및 검토기준

구 분	지정목적 및 검토기준
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ul>
자연 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li> <li>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중에서 선정</li> <li>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 상에 지정</li> <li>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li> </ul>
수변 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변·호소변·해안 등에 자연적·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수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li> <li>시가지 내에서 복개되지 않은 모든 수변은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li> <li>수변경관지구의 지정범위는 수변의 폭이나 크기에 따라 달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변의 경우는 대체로 하천 평균폭의 1~2배 폭으로 지정하며, 호소변에는 200~300m, 해안변의 경우는 1~2km 지정</li> </ul> </li> </ul>
시가지 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li> <li>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우량 주택지구 등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진입부란 외부로부터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경계부로서 고속도로, 철도, 주요 지역간도로 등의 양쪽 인접지역</li> </ul> </li> <li>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km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며, 그 폭은 가시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m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량 주택지구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우량주택지구 경계를 따라 지정</li> </ul> </li> </ul>
미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ul>
중심지 미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고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li> <li>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에는 중심지미관지구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단위는 종로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가구를 단위로 한다. 다만, 기존의 중심상업 지역의 지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수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다르게 할 수 있음</li> </ul> </li> <li>중심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가로변의 양편에는 중심지미관지구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에 중심지미관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교통량과 가로의 폭·기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가로에 면한 각각 한 켄의 획지 또는 50m 정도 폭에 해당하는 지역을 경계로 할 수 있으며, 시작과 끝은 가로의 교차점을 기준</li> </ul> </li> </ul>

【표 V-7】용도지구별 지정목적 및 검토기준(계속)

구 분	지정목적 및 검토기준
역사문화 미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지·전통건축양식 등이 소재한 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li> <li>• 일차적인 지정기준은 당해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인접한 필지의 고밀개발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소로 포함)로 구획된 가구(보전대상 건물이 속한)를 단위로 경계 설정</li> </ul> </li> <li>• 가로가 역사성을 갖는 경우에는 도로 양편 모두를 일정 폭만큼 지구에 포함</li> </ul>
일반 미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li> <li>•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li> </ul>
고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미터법에 의한 높이로 하고, 아파트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층수로도 할 수 있음</li> <li>- 건축물의 건축높이 계산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li> <li>- 용도지역계획의 목적에 따라 최저 및 최고고도지구를 동시에 계획 가능</li> </ul> </li> </ul>
최고 고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환경의 조성 및 경관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 시가지 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비추어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li> <li>-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 내 전체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 시가지 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ul> </li> </ul>
최저 고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환경의 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주요부 등 특히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li> <li>-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li> <li>- 스카이라인 계획에 의하여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li> <li>- 토지의 고도이용,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ul> </li> </ul>
방화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의 지역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li> <li>-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li> <li>-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li> </ul> </li> </ul>



【표 V-7】용도지구별 지정목적 및 검토기준(계속)

구 분	지정목적 및 검토기준
방재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할 경우 시가지방재지구 지정</li> <li>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할 경우 자연방재지구 지정</li> </ul>
시가지 방재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의 지역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풍수해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li> <li>지반이 약하여 산사태·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li> <li>지진발생이 우려되어 특별히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ul> </li> <li>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방재지구로 지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연안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 육역에 한정)</li> <li>다음의 기준에 따라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한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li> <li>재해발생지역은 재해피해보상대상(지자체), 재해피해액(국민안전처, 지자체), 인명피해(국민안전처, 지자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최근 10년 내에 재해피해 보상경력이 있는 지번을 조사해 도면 상에 표시하고, 동일시기에 발생한 피해 지번을 하나의 재해발생지역으로 구획한다.</li> <li>동일시기에 발생한 재해 시 인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재해피해 지번은 최대한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되도록 도로, 하천, 기반시설, 배수분구 등을 기준으로 정형화한다.</li> <li>최근 10년 내에, 2회 이상(동일시기 제외) 재해발생지역의 피해 지번이 중복되는 지역을 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지역으로 본다.</li> <li>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지역에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이재민)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지역 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가 된다.</li> </ol> </li> </ul> </li> </ul>
자연 방재지구	
보존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ul>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ul>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ul>
생태계 보존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생동식물서식지·도래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ul>
문화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li> </ul>
시설보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ul>
학교시설 보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의 주변지역</li> <li>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학교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대학촌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ul>



【표 V-7】용도지구별 지정목적 및 검토기준(계속)

구 분	지정목적 및 검토기준
공용시설 보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용시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ul>
항만시설 보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 및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지역</li> <li>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항만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li> </ul>
공항시설 보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항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항공기의 소음으로 사람의 주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li> <li>공항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li> </ul>
취락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li> </ul>
자연 취락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li> <li>용도지역의 틀 안에서 운용되므로 각 용도지역의 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 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li> </ul>
집단 취락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li> </ul>
개발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li> </ul>
주거개발 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li> <li>중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li> </ul>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li> <li>산업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li> <li>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li> </ul>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li> </ul>
복합개발 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2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li> </ul>
특정개발 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기능, 고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li> </ul>
특정용도 제한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li> <li>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용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li> <li>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시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li> </ul>

(2) 용도지구별 토지이용 규제사항

【표 V-8】용도지구별 밀도·규모·용도

구 분	밀도·규모 등에 관한 사항	용도에 관한 사항	
경 관 지 구	자연 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폐율 : 40% 이하</li> <li>• 높이 : 5층 또는 20m 이하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li> <li>• 정면부 길이 : 30m 미만</li> <li>• 연면적 : 1,500㎡ 이하</li> <li>• 조경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역 : 대지면적의 15% 이상</li> <li>- 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30% 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골프장,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자원순환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건축 불가</li> </ul>
	수변 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폐율 : 40% 이하</li> <li>• 높이 : 5층 또는 20m 이하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m 이하)</li> <li>• 정면부 길이 : 30m 미만</li> <li>• 연면적 : 1,500㎡ 이하</li> <li>• 조경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역 : 15% 이상</li> <li>- 녹지지역 : 30% 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외, 500㎡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골프장,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자원순환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건축 불가</li> </ul>
	시가지 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폐율 : 40% 이하</li> <li>• 정면부 길이 : 30m 미만</li> <li>• 연면적 : 1,50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건축 불가</li> </ul>
미 관 지 구	중심지 미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선 :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li> <li>•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li> <li>-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li> </ul> </li> <li>• 부속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에서 보이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설치 불가</li> <li>- 건축물 전면에 굴뚝·환기설비 등 설치 불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함),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묘지관련시설 등 건축 불가</li> </ul>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고 도 지 구	최고 고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 :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li> </ul>	-
	최저 고도지구		
방화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폐율 : 90% 이하 (준주거·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 내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에 한함)</li> </ul>	-	

【표 V-8】용도지구별 밀도·규모·용도(계속)

구 분		밀도·규모 등에 관한 사항	용도에 관한 사항
방 재 지 구	시가지 방재지구	-	-
	자연 방재지구	-	-
보 존 지 구	역시문화환경 보존지구	-	-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	-
	생태계 보존지구	-	-
문화지구		-	-
시 설 보 호 지 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마시술소, 단란주점, 판매시설,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관련 시설, 교도소, 감화원,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건축불가</li> </ul>
	공용시설 보호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주택(공관 제외),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 제외), 격리병원, 교육연구 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교도소, 감화원, 묘지관련시설 등 건축불가</li> </ul>
	항만시설 보호지구	-	-
	공항시설 보호지구	-	-
취 락 지 구	자연 취락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폐율 : 50% 이하</li> <li>층수 : 4층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운동시설, 창고(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10,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관광지·관광단지 내), 도정공장 및 식품 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저공해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li> </ul>

【표 V-8】용도지구별 밀도·규모·용도(계속)

구분	밀도·규모 등에 관한 사항	용도에 관한 사항
취락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폐율 60% 이하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함)</li> <li>• 높이 : 3층 이하</li> <li>• 용적률 : 300% 이하</li> <li>• 연면적 : 300㎡ 이하</li> <li>• 건폐율 40% 이하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함)</li> <li>• 높이 : 3층 이하</li> <li>• 용적률 : 10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가능 (취락지구정비사업 시행시)</li> </ul>
개발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외 : 40% 이하</li> <li>- 자연녹지지역 : 30% 이하</li> </ul> </li> <li>•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외 : 100% 이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한 건축 불가</li> </ul>
특정용도제한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위락시설 건축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 불가</li> </ul>

2) 용도지구 지정 현황

가) 총괄

○ 동두천시의 용도지구는 현재 고도지구, 방화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5개의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표 V-9】용도지구 지정현황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합계	13	637,308	
고도지구	5	263,976	최고고도지구
방화지구	5	160,062	
취락지구	1	10,320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1	146,100	
특정용도제한지구	1	56,850	

## 나. 용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 1) 용도지구 정비방향

#### 가) 검토방향

-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정비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구의 변경 검토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정목적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한 용도지구는 폐지 검토
-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기존의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혹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변경 등으로 인해 효율적 토지이용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구 지정 검토

#### 나) 정비기준

- 주변 용도지역, 기반시설계획, 대상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구는 경계 조정
-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용도지구 지정의 목적이 상실된 용도지구는 해제

## 다. 용도지구별 정비계획

### 1) 고도지구

#### 가) 기본방향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대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환경개선 유도 등 도시발전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

#### 나) 정비계획

- 동막골 및 덕쟁이골의 최고고도지구 주변으로 소요산역, 체육공원, 소요산관광지 등의 입지에 따라 도시발전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
- 송내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송내공원 축소 및 주변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

2) 방화지구

가) 기본방향

-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방화지구 경계 재검토
- 여건변화로 방화지구 지정목적 상실한 경우 폐지 검토

나) 정비계획

-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결정되어 있는 방화지구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송내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정목적 상실하였으므로 폐지 검토

3) 취락지구

가) 기본방향

- 기존취락이 밀집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 개발용도로 정비될 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 검토
-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해서는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합한 지역에 한해 취락지구 지정

나) 정비계획

- 탑동동 조산마을을 신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라. 용도지구별 변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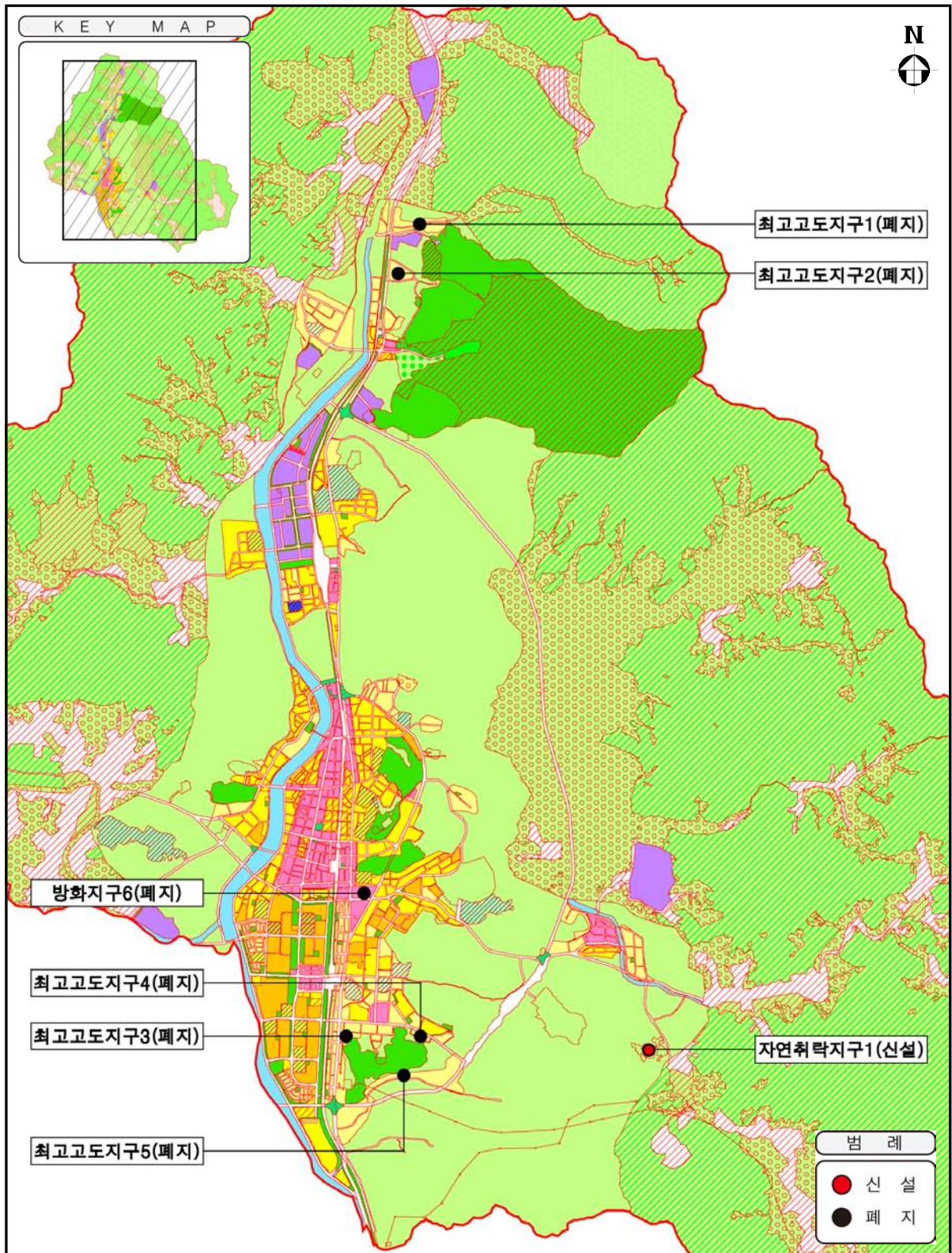
1) 용도지구 변경 총괄

가) 총괄

【표 V-10】용도지구 변경 총괄

구분	기정		변경		비 고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합계	13	637,308	8	379,006	
고도지구	5	263,976	-	-	고도지구 일괄 폐지
방화지구	5	160,062	4	136,062	시외버스터미널 방화지구 폐지
취락지구	1	10,320	2	39,994	조산 자연취락지구 신설
개발진흥지구	1	146,100	1	146,100	변경없음
특정용도제한지구	1	56,850	1	56,850	변경없음

【그림 V-9】용도지구 변경 총괄도





2) 고도지구 (일괄 폐지)

가) 변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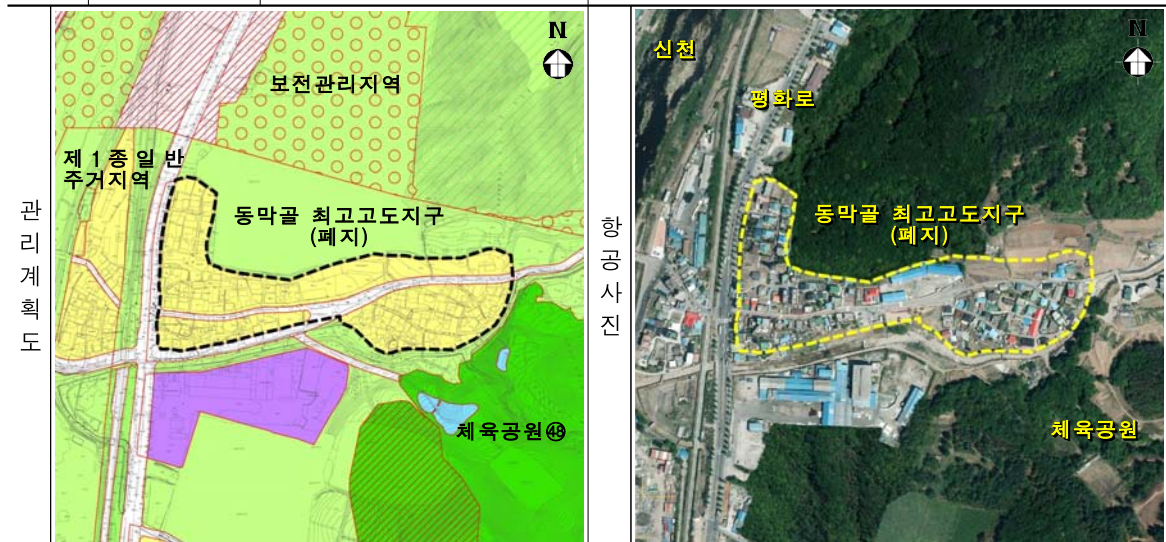
【표 V-11】고도지구 변경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1	동막골 최고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하봉암동 38-2일원	12m	63,006	경기2청고 제5160호 (07.11.19)	
폐지	2	먹쟁이골 최고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상봉암동 69-5일원	12m	29,790	경기2청고 제5160호 (07.11.19)	
폐지	3	지행동3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지행동 361일원	12m	118,020	경고 제125호 (87.05.04)	
폐지	4	지행동4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지행동 361-1일원	12m	10,750	경고 제125호 (87.05.04)	
폐지	5	송내동 최고고도지구	최고고도 지구	송내동 329-1일원	12m	42,410	경고 제125호 (87.05.04)	

나) 변경내역

○ 최고고도지구 ① : 동막골 최고고도지구 (폐지)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폐지	하봉암동 38-2번지 일원	• 최고고도지구 폐지 A=63,006㎡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대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환경개선을 유도 등 도시발전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



○ 최고고도지구 ② : 떡쟁이골 최고고도지구 (폐지)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폐지	상봉암동 69-5번지 일원	• 최고고도지구 폐지 A=29,790㎡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대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 등 도시발전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
관리계획도			

○ 최고고도지구 ③ : 지행동3 최고고도지구 (폐지)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폐지	지행동 361번지 일원	• 최고고도지구 폐지 A=118,020㎡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대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 등 도시발전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
관리계획도			



○ 최고고도지구 ④ : 지행동4 최고고도지구 (폐지)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폐지	지행동 361-1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고도지구 폐지 A=10,7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대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 등 도시발전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 최고고도지구 ⑤ : 송내동 최고고도지구 (폐지)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폐지	송내동 329-1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고도지구 폐지 A=42,4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대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 등 도시발전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 3) 방화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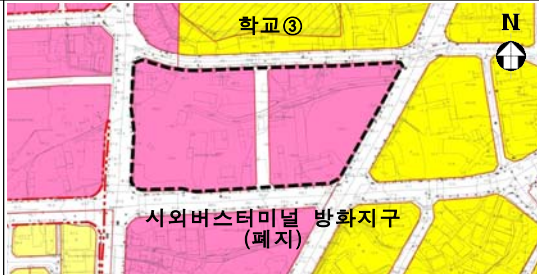

#### 가) 변경계획

【표 V-12】방화지구 변경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6	시외버스터미널 방화지구	생연동 417-1번지 일원	24,000	경고 제114호 (1996.5.16.)	

#### 나) 변경내역

○ 방화지구 ⑥ : 시외버스터미널 방화지구 (폐지)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폐지	생연동 417-1번지 일원	• 방화지구 폐지 A=24,000㎡	• 시외버스터미널이 송내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정 목적 상실로 폐지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 4) 취락지구



#### 가) 변경계획

【표 V-13】취락지구 변경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조산 자연취락지구	탑동동 915번지 일원	29,674	금회 신설	

#### 나) 변경내역

○ 자연취락지구 ① : 조산 자연취락지구 (신설)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탑동동 915번지 일원	• 자연취락지구 신설 A=29,674㎡	• 주민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 3. 용도구역

#### 가. 용도구역의 개요

##### 1) 용도구역의 개념 및 종류

###### 가) 용도구역의 개념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나) 용도구역의 종류 및 지정목적

###### (1)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는 구역

###### (2) 시가화조정구역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되는 지역

###### (3)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 (4)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지역

## 나. 용도구역 정비의 기본방향

### 1) 용도구역의 정비방향

#### 가) 검토방향

- 용도구역 지정 목적 및 용도지역 정비방향 등을 검토하여 용도구역의 신설·변경 검토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정목적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한 지역은 폐지 검토
- 기존의 기능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혹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변경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효율적 토지이용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용도구역 변경 검토

#### 나) 정비기준

- 동두천시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에 대해 검토 진행
- 주변 용도지역, 기반시설계획을 고려하여 용도구역 경계를 조정

## 다. 용도구역별 계획기준

### 1)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상봉암1근린공원 및 상봉암2역사공원의 신설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공원을 제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조정

### 2)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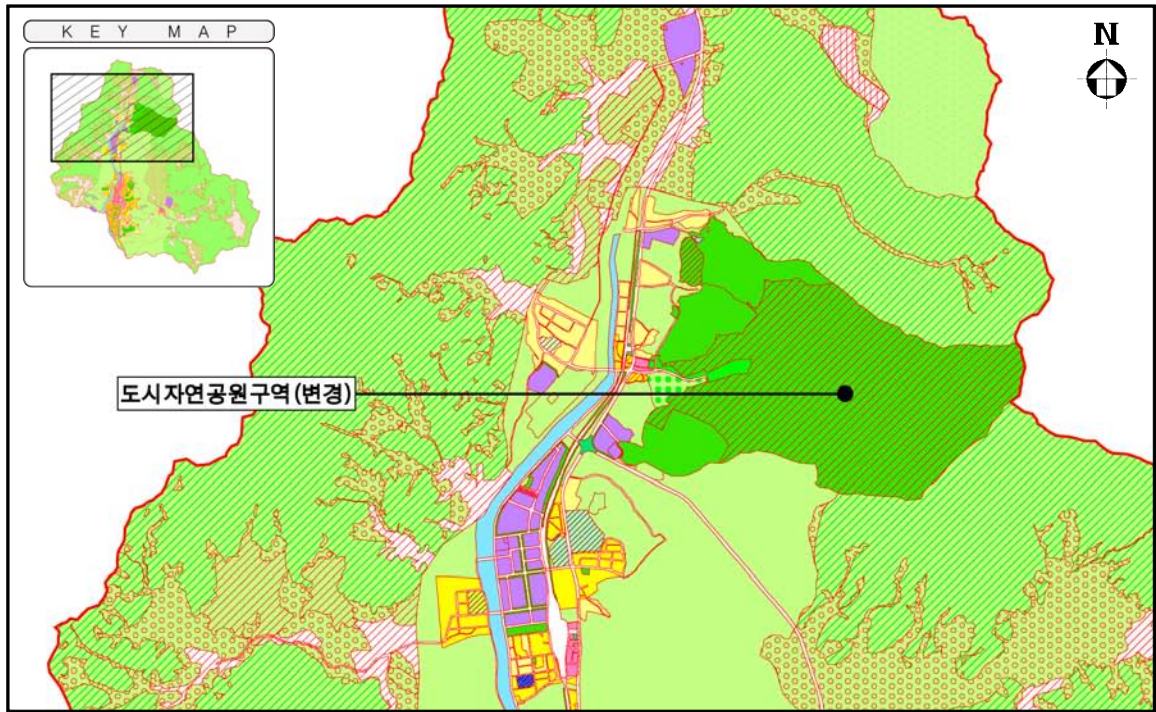
#### 가) 변경계획

【표 V-14】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소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상봉암동 산1-1일원	3,506,986	감) 545,557	2,961,429	경고 제54호 (’14.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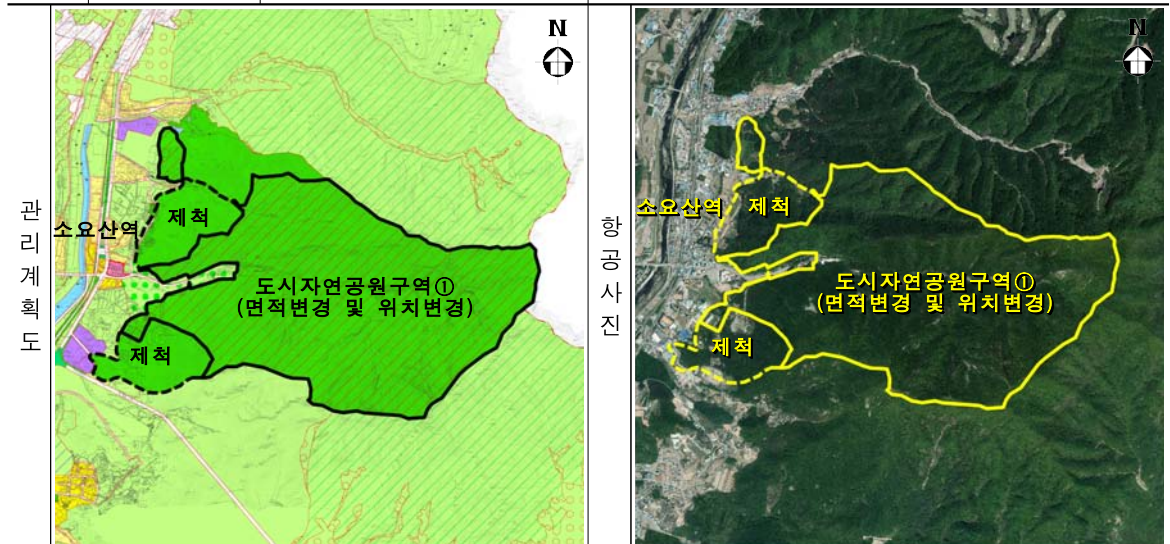
【그림 V-10】용도구역 변경 총괄도



나) 변경내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① : 상봉암동 산1-1번지 일원 (변경)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소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감소 : 3,506,986㎡ → 2,961,429㎡ (감) 545,557㎡</li> <li>위치변경(대표지번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봉암1근린공원 및 상봉암2역사공원 신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축소 및 위치변경</li> </ul>





## 4. 도시계획시설

### 가. 도시계획시설의 개요

#### 1) 개요

##### 가)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정의되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바탕이 되는 공공시설과 주민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설을 의미함
- 법률로서 정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총 7개 종류 52개 시설이 기반시설에 해당함
- 기반시설의 설치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지역의 성격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 나) 기반시설의 종류

- 기반시설은 크게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됨

【표 V-15】기반시설의 종류

구 분	시설의 세분
교통시설(10)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 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5)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9)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 체육시설(9)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8)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7)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4)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표 V-16】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

구분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교통시설	• 공항(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1,000㎡ 미만, 혹은 민간이 설치하는 것), 여객자동차터미널(전세버스운송 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 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공항(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 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공공공지	• 광장,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공공공지
유통 및 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도시가스사업 허가받은 자에 한함),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인화성액체 중 유류저장 시설),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제외), 연료전지 설비 및 태양에너지 설비,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수소에너지 설비·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풍력 설비·수력 설비·해양에너지 설비·지열에너지 설비·바이오에너지 설비·폐기물에너지 설비·수열에너지 설비·전력저장 설비에 한함)	• 가스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도시가스사업 허가받은 자에 한함),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 시설,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 체육시설	•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 시설	•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 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 시설	• 종합의료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민간이 설치하는 것), 장례식장, 도축장(대지면적 500㎡ 미만)	• 종합의료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민간이 설치하는 것), 장례식장, 도축장 (대지면적 500㎡ 미만)
환경기초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폐차장, 수질오염방지 시설(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폐차장, 수질오염방지시설(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2) 도시계획시설 현황

### 가) 도시계획시설 현황

- 2013년 12월말 현재 동두천시에는 총 27개 시설, 785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음
- 교통시설에 도로·철도·주차장·자동차정류장, 공간시설에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학교·운동장·공공청사·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이 결정되어 있으며, 기타 수도공급설비·시장·하천·유수지·방수설비·도축장·종합의료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이 결정되어 있음
- 현재 동두천시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총면적은 11,403,942㎡로 이중 도로가 2,431,322㎡로 전체시설의 21%를, 공원시설이 4,231,608㎡로써 전체시설의 37%를 차지함

【표 V-17】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구분	시설의종류	시설의세분	시설수(개수)	연장(m)	면적(㎡)
교통시설	도로	대로	7	17,514	493,589
		중로	119	74,750	1,279,817
		소로	471	83,628	657,916
	철도	일반철도	1	8,370	301,819
	주차장	노외주차장	21	-	33,883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1	-	18,665
공간시설	광장	교차점광장	6	-	59,585
		역전광장	1	-	1,984
		근린광장	4	-	7,254
		경관광장	1	-	4,567
	공원	도시자연공원	1	-	3,293,090
		근린공원	11	-	872,942
		어린이공원	26	-	54,747
		소공원	3	-	4,829
		수변공원	1	-	6,000
		완충녹지	29	-	218,203
	녹지	경관녹지	5	-	11,732
		연결녹지	1	-	289
		유원지	1	-	116,500
공공공지	공공공지	3	-	3,825	
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5	-	46,337
		정수시설	1	-	48,669
		송수시설(가압장)	1	-	4,610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1	-	7,560
		송전선로	2	-	9,453
		전기공급설비	1	-	223,920
	시장	시장	2	-	9,709
공공·문화 시설	학교	초등학교	10	-	155,834
		중학교	3	-	39,871
		고등학교(중고등학교포함)	8	-	241,956
		대학교	2	-	201,110
	운동장	종합운동장	1	-	171,402
	공공청사	청사	11	-	66,101
	문화시설	시민회관	1	-	16,850
	체육시설	골프장	1	-	1,258,590
		공공체육시설	2	-	22,15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3	-	5,302	
방재시설	하천	지방2급하천	1	-	1,020,352
		소하천	2	-	64,789
	유수지	저류시설	1	-	1,261
	방수설비	방수설비	4	-	3,844
보건위생 시설	도축장	도축장	1	-	8,855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1	-	139,770
	납골시설	봉안시설	1	-	27,456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1	-	128,148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중간처리시설	3	-	11,544
		폐기물최종처리시설	1	-	18,757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1	-	8,506
합 계			785	184,262	11,403,942

※ 도시자연공원은 2014년 3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 나. 도시계획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 1) 동두천시 여건

- 동두천시는 외곽지역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동두천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3호선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국도3호선을 따라 도시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요 도시계획시설도 국도3호선 변의 도시지역에 지정되어 있음
- 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 행정구역 면적이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중심에 위치한 미군부대로 인해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도시지역이 남북으로 분리된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어 동두천시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2011년 신천의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배수펌프장이 설치되고 있어 사회적·자연적 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
-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다가옴에 따라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를 통해 설치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및 주민 재산권 보호 필요

### 2) 도시계획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기준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기타 개별 법령에 따라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계획
- 미군부대의 이전을 고려하여 이전 후 동두천시의 발전 기반을 조속히 구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계획
- 집중호우로 인한 신천의 범람 등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설치되고 있는 방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기반시설 배치방안을 마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의회 보고를 통해 설치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다. 도시계획시설별 계획기준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1) 정의

-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비교적 넓은 길을 의미하며, 「도로법」상 도로의 범위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포함됨

##### (2) 종류

- 사용 및 형태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구분됨
- 규모에 의한 도로 구분으로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되며 각 도로별 폭원에 따라 세부적으로 1류~3류로 세분됨
- 기능에 의한 도로 구분으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로 구분되며,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 같이 자동차 이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를 특수도로로 구분함

##### (3) 재검토 기준

【표 V-18】도로 재검토 기준

구 분	정비유형	정비계획
기존도로가 없는 경우 (일부구간 포함)	•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 검토
	•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폐지 검토
	•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폐지 검토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폐지 검토
	•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 분포 등)	폐지 검토
	• 시·군 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존치 검토
	•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매수 또는 건축허용

【표 V-18】도로 재검토 기준 (계속)

구 분	정비유형	정비계획
일부 미개설 도로 (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차 확폭되어야할 계획선 상에 옹벽 등이 위치하여 개설이 어려운 경우</li> <li>기존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li> <li>대부분 기존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일부구간은 단차가 심하여 계단 처리된 경우</li> <li>일부 미개설되었으나 기존도로만으로 다른 시설로 접근·소통이 가능한 경우</li> <li>기존도로로는 기능수행이 미흡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일부 구간 병목현상 발생)</li> <li>도로계획선 단절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경우</li> </ul>	폐지 검토 폭원축소 검토 폭원축소 검토 폭원축소 검토 존치 검토
	보상 없이 전체구간 개설이 완료된 경우	조기 보상
주변여건이 변화된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도로와 연접하여 그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하천복개도로 등)가 개설된 경우</li> <li>대체도로 개설 및 기능상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li> <li>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이용 형태가 변화된 경우</li> <li>현재 토지이용 여건상 도로규모가 과대하게 결정된 경우</li> </ul>	폐지 검토 폐지 검토 노선축소 검토 폭원축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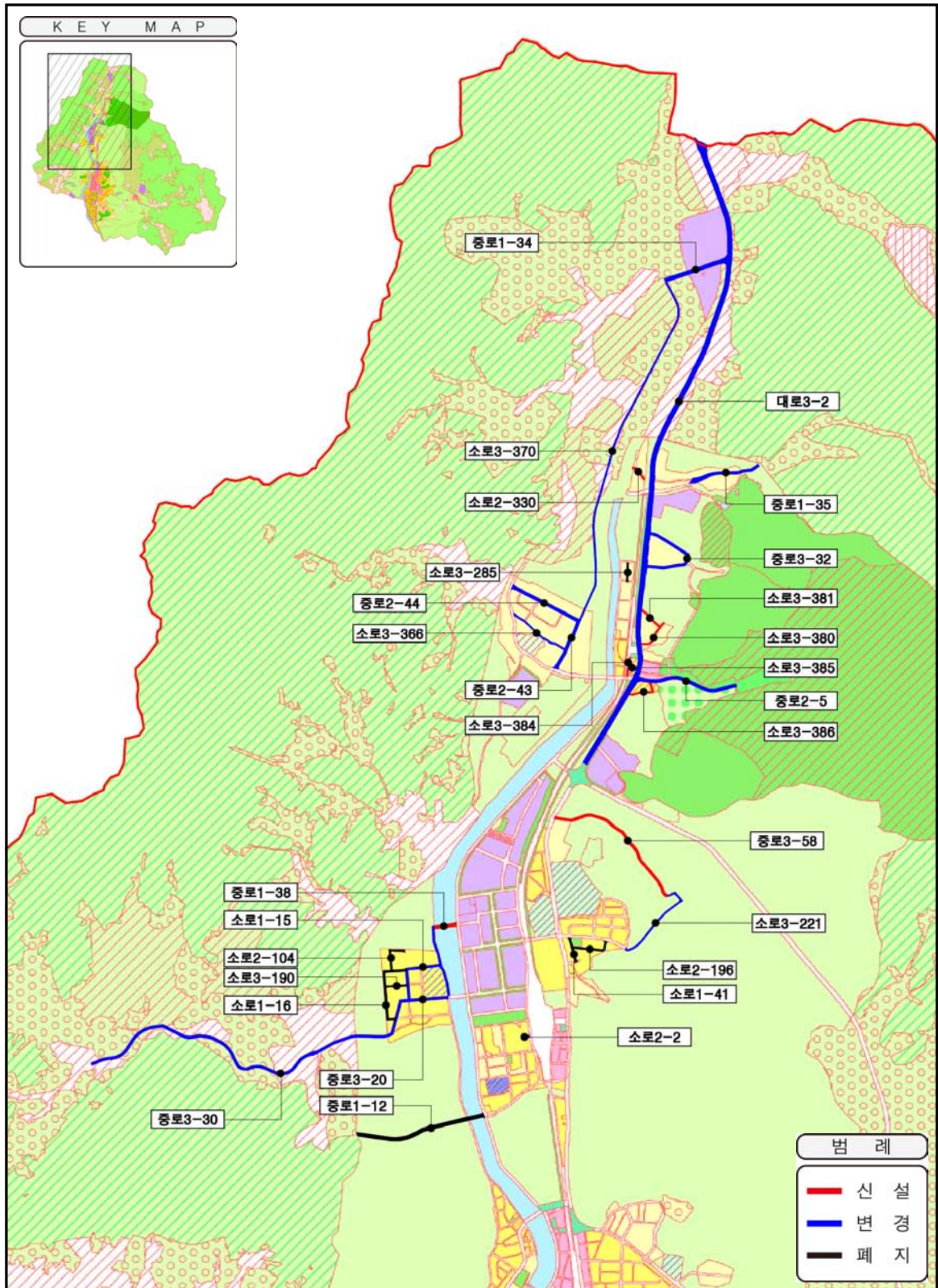
(4) 변경계획

-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상 교통계획을 고려하여 도로시설계획 수립
- 지역 내 여건 변화로 폭원·선형 등의 재검토가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조정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시의회 보고 후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 폐지 또는 변경
- 현재 도로 이용 여건상 축소(변경)하여도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거나 지형 및 지장물에 의해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노선 조정

【표 V-19】도로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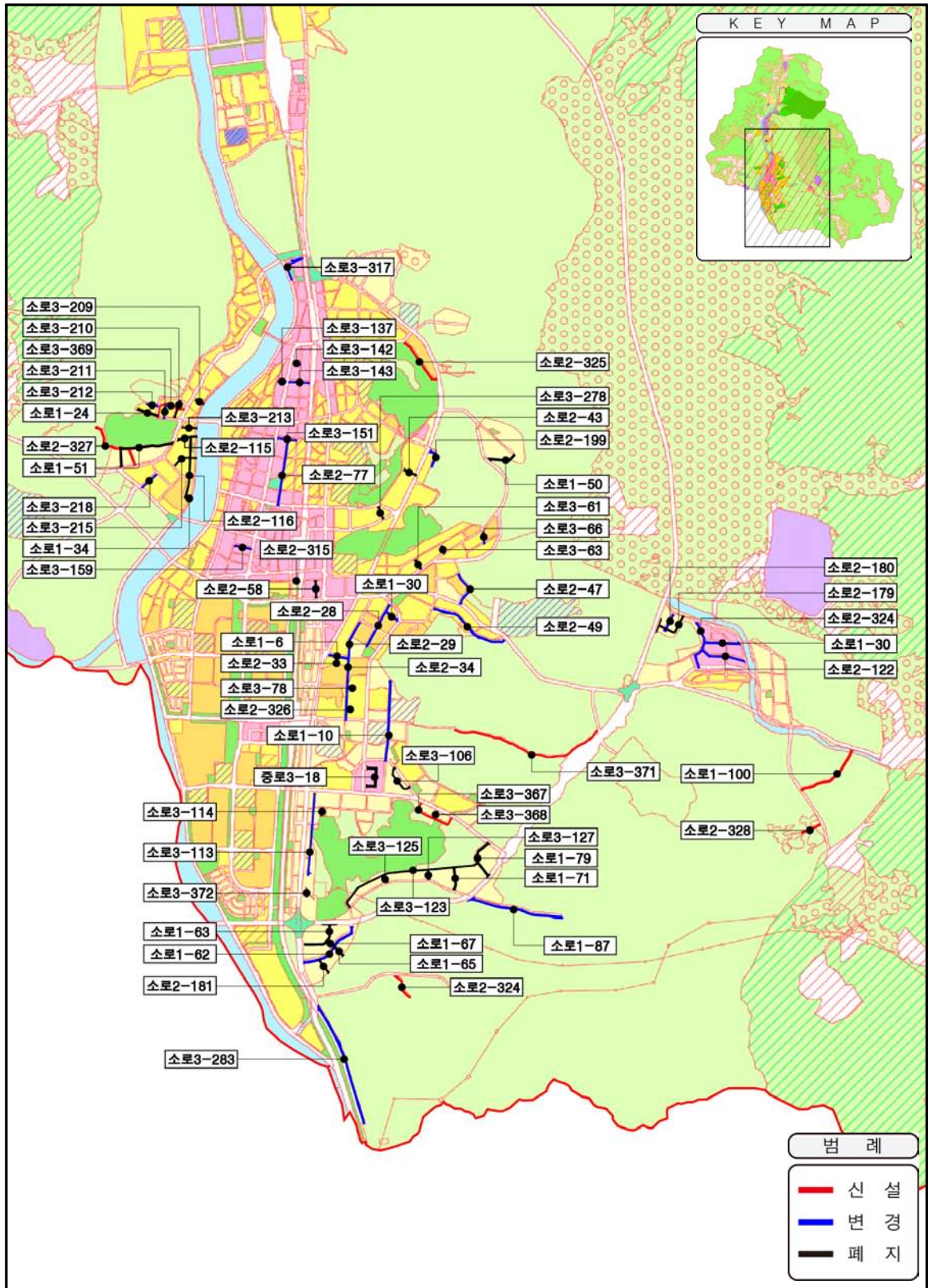
구 분	기 정			변 경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총계	597	175,892	2,431,322	576	175,022	2,412,604	
대로	소계	7	17,514	493,589	7	17,514	493,786
	1류	3	1,676	58,660	3	1,676	58,660
	2류	-	-	-	-	-	-
	3류	4	15,838	434,929	4	15,838	435,126
중로	소계	119	74,750	1,279,817	121	73,555	1,280,335
	1류	38	38,377	767,540	40	37,994	771,199
	2류	52	25,267	379,005	52	22,933	357,425
	3류	29	11,106	133,272	29	12,628	151,711
소로	소계	471	83,628	657,916	448	82,375	635,593
	1류	76	21,841	230,239	65	20,088	206,069
	2류	159	34,392	273,895	154	33,437	265,951
	3류	236	27,395	159,159	229	28,850	163,573

【그림V-11】도로 변경 총괄도 (1/2)





【그림 V-11】도로 변경 총괄도 (2/2)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5,533	대로3-4	동두천동 교차점광장	일반 도로	소요산역 광장	건고272 ('74.8.14)	
변경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5,533	대로3-4	동두천동 교차점광장	일반 도로	소요산역 광장	건고272 ('74.8.14)	경미한변경 가감차로변경
폐지	중로	1	12	20	보조 간선	784	안흥동 구역계	중로2-12	일반 도로	안흥동 빨래터	동고96-13 ('96.6.5)	의회권고
기정	중로	1	34	20	보조 간선	399	중로2-43	대로3-2	일반 도로	승전교	동고1 ('04.1.14)	
변경	중로	1	34	20	보조 간선	392	대로3-2	소로3-370	일반 도로	승전교	동고1 ('04.1.14)	
기정	중로	1	35	20	보조 간선	437	중로2-46	대로3-2	일반 도로	-	동고1 ('04.1.14)	
변경	중로	1	35	12~20	보조 간선	420	중로2-46	하봉암동 12-1	일반 도로	-	동고1 ('04.1.14)	
신설	중로	1	38	20	보조 간선	137	소로1-18	중로2-12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기정	중로	2	5	15	국지 도로	606	대로3-2	소요공원	일반 도로	소요유원지	경고387 ('76.12.18)	
변경	중로	2	5	15	국지 도로	606	대로3-2	소요공원	일반 도로	소요유원지	경고387 ('76.12.18)	경미한변경 가감차로변경
기정	중로	2	43	15	보조 간선	2,567	중로1-16	중로1-34	일반 도로	하봉암교	동고31 (04.7.19)	
변경	중로	2	43	15	집산 도로	326	중로1-16	소로3-370	일반 도로	-	동고31 (04.7.19)	
변경	소로	3	370	6	국지 도로	2,238	중로1-34	중로2-43	일반 도로	하봉암교	동고31 (04.7.19)	
기정	중로	2	44	15	보조 간선	439	중로2-43	중로2-45	일반 도로	-	동고1 ('04.1.14)	
변경	중로	2	44	15	보조 간선	440	중로3-55	중로2-45	일반 도로	-	동고1 ('04.1.14)	
폐지	중로	3	18	12	국지 도로	214	중로1-9	중로1-9	일반 도로	지행5통 경로당	경고130 ('88.5.19)	의회권고
기정	중로	3	20	12	보조 간선	874	중로2-12	중로1-32	일반 도로	신흥고교	경고321 ('87.12.2)	의회권고
변경	중로	3	20	12	보조 간선	425	소로1-18	소로1-15	일반 도로	신흥고교	경고321 ('87.12.2)	
기정	중로	3	30	12	집산 도로	349	대로1-1	소로1-62	일반 도로	송라주거	동고97-11 ('97.1.7)	의회권고
기정	소로	1	62	10	국지 도로	477	대로1-1	대로3-1	일반 도로	송라주거	동고97-11 ('97.1.7)	
변경	소로	1	62	10	집산 도로	398	대로1-1	대로3-1	일반 도로	송라주거	동고97-11 ('97.1.7)	
기정	중로	3	30	12	집산 도로	867	중로3-20	안흥동 산59-7	일반 도로	안흥동	동고19 ('02.5.11)	
변경	중로	3	30	12	집산 도로	2,313	중로3-20	안흥동 379-2	일반 도로	안흥동	동고19 ('02.5.11)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2	12	집산 도로	556	대로3-2	대로3-2	일반 도로	-	동고51 ('96.12.27)	의회권고
변경	중로	3	32	12	집산 도로	554	대로3-2	대로3-2	일반 도로	-	동고51 ('96.12.27)	
신설	중로	3	58	12	집산 도로	914	중로1-14	동두천동 284-2	일반 도로	캠프캐슬	금회 신설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250	중로1-14	중로1-9	일반 도로	내행동 사무소	경고435 ('79.10.19)	의회권고
변경	소로	1	6	10	국지 도로	124	중로1-14	지행동 273-9	일반 도로	-	경고435 ('79.10.19)	
기정	소로	1	10	10~12	국지 도로	658	중로1-9	중로2-15	일반 도로	지행초교	경고321 ('87.11.24)	의회권고
변경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498	중로2-15	지행동 286-42	일반 도로	지행초교	경고321 ('87.11.24)	
기정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197	중로3-20	소로1-18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경미한변경 가감차로변경
변경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197	중로3-20	소로1-18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권고관련
폐지	소로	1	16	10	국지 도로	469	중로3-30	소로3-20	일반 도로	안흥동	경고228 ('89.8.14)	의회권고
기정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269	중로3-20	소로1-18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변경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430	소로2-106	안흥동 37-4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폐지	소로	1	24	10	국지 도로	130	중로2-61	소로3-212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의회권고
기정	소로	1	29	10	국지 도로	295	중로1-4	소로2--127	일반 도로	광암 레저피아	경고228 ('89.8.14)	의회권고
변경	소로	2	324	8	국지 도로	295	중로1-4	소로2--127	일반 도로	성지 요양병원	경고228 ('89.8.14)	
기정	소로	1	30	10	국지 도로	215	소로1-29	소로1-82	일반 도로	광암동 우체국	경고228 ('89.8.14)	경미한변경 가감차로변경
변경	소로	1	30	10	국지 도로	215	소로2-324	소로1-82	일반 도로	광암동 우체국	경고228 ('89.8.14)	
폐지	소로	1	34	10	국지 도로	43	상패동60	소로1-26	일반 도로	상패동 주공아파트	동고96-13 ('96.3.5)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41	10	국지 도로	148	소로1-74	중로2-37	일반 도로	창말주거	동고96-51 ('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50	10	국지 도로	162	중로2-14	소로1-48	일반 도로	못골	동고96-51 ('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51	10	집산 도로	434	중로1-10	중로1-10	일반 도로	상패공원 남측	동고51 ('96.12.2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63	10	국지 도로	254	대로1-1	대로3-1	일반 도로	송라주거	동고96-51 ('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65	10	국지 도로	63	소로1-62	중로3-30	일반 도로	송라주거	동고96-51 ('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67	10	국지 도로	43	중로3-30	소로1-63	일반 도로	송라주거	동고96-51 ('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71	10	국지 도로	136	소로1-80	소로3-123	일반 도로	안골주거	동고96-51 ('97.1.7)	의회권고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1	79	10	국지 도로	260	중로1-6	대로3-1	일반 도로		동고41 ('03.11.3)	의회권고
기정	소로	1	87	10	집산 도로	394	대로3-1	대로3-1	일반 도로	-	동고96-51 ('97.1.7)	의회권고
기정	소로	1	88	10	집산 도로	366	소로1-87	안골버스 회차지점	일반 도로	-	동고30 ('07.5.22)	
변경	소로	1	87	10	집산 도로	565	대로3-1	안골버스 회차지점	일반 도로	-	동고96-51 ('97.1.7)	
신설	소로	1	100	10	집산 도로	419	중로1-4	중로2-17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32	중로3-24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79-435 ('79.10.19)	의회권고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46	중로3-24	동두천동 524	일반 도로	-	경고79-435 ('79.10.19)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367	소로1-6	중로1-9	일반 도로	에이스 아파트	경고435 ('79.10.19)	의회권고
변경	소로	2	28	8	국지 도로	290	소로1-6	생연동 354-4	일반 도로	에이스 아파트	경고435 ('79.10.19)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231	중로3-24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79-435 ('79.10.19)	
변경	소로	2	29	8	국지 도로	231	중로3-24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79-435 ('79.10.19)	
폐지	소로	2	33	8	국지 도로	61	지행동 산2-1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321 ('87.11.24)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34	8	국지 도로	370	중로2-11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79-435 ('79.10.19)	
변경	소로	2	34	8	국지 도로	370	중로2-11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79-435 ('79.10.19)	
폐지	소로	2	43	8	국지 도로	80	중로1-14	소로3-82	일반 도로	-	경고321 ('87.11.24)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239	중로1-4	중로1-5	일반 도로	-	경고321 ('87.11.24)	의회권고
변경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75	중로1-4	소로2-49	일반 도로	-	경고321 ('87.11.24)	
기정	소로	2	49	8~15	국지 도로	481	중로1-9	중로1-4	일반 도로	-	경고45 ('79.10.19)	의회권고
변경	소로	2	49	8~15	국지 도로	500	중로1-9	중로1-4	일반 도로	-	경고45 ('79.10.19)	
폐지	소로	2	58	8	국지 도로	103	소로2-40	중로1-3	일반 도로	자동차학원	경고435 ('79.10.19)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77	8	국지 도로	485	중로1-8	중로2-2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의회권고
변경	소로	2	77	8	국지 도로	402	중로1-8	소로3-151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폐지	소로	2	104	8	국지 도로	210	중로3-20	소로1-16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의회권고
폐지	소로	2	115	8	국지 도로	119	중로1-10	소로1-26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의회권고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356	소로1-34	소로2-115	일반 도로	-	경고228 ('89.8.7)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122	8	국지 도로	272	소로1-82	소로1-29	일반 도로	새마을금고 제2분소	경고321 ('87.12.2)	경미한변경 가감차로변경
변경	소로	2	122	8	국지 도로	272	소로1-82	소로2-324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폐지	소로	2	179	8	국지 도로	201	대로3-1	소로2-127	일반 도로	광암동주거	동고96-51 ('97.1.7)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180	8	국지 도로	105	소로2-179	소로2-127	일반 도로	광암동주거	동고96-51 ('97.1.7)	경미한변경 막다른도로
변경	소로	2	180	8	국지 도로	112	소로2-127	광암동 471-38	일반 도로	광암동주거	동고96-51 ('97.1.7)	
폐지	소로	2	181	8	국지 도로	101	소로1-62	중로3-30	일반 도로	송라주거	동고96-51 ('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2	196	8	국지 도로	237	소로1-41	중로2-37	일반 도로	창말주거	동고96-51 ('97.1.7)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199	8~12	국지 도로	230	소로2-198	중로1-14	일반 도로	-	동고97-11 ('97.3.24)	
변경	소로	2	199	8~12	국지 도로	122	소로2-198	생연동 214-4	일반 도로	-	동고97-11 ('97.3.24)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311	8	국지 도로	373	중로2-43	중로2-45	일반 도로	봉동 노인회관	동고30 (07.5.28)	
변경	소로	3	366	6	국지 도로	374	중로3-55	중로2-45	일반 도로	-	동고30 (07.5.28)	
폐지	소로	2	315	8	국지 도로	47	소로2-90	생연동 710-1	일반 도로	-	경고2청고5075 ('07.7.23)	의회권고
신설	소로	2	324	8	국지 도로	151	중로3-51	송내동 207-3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2	325	8	국지 도로	308	중로2-4	중로1-14	일반 도로	중앙공원	금회 신설	
신설	소로	2	326	8	국지 도로	15	소로2-34	지행동 292-8	일반 도로	주미노조 2단지	금회 신설	
신설	소로	2	327	8	국지 도로	394	중로1-10	상패동 140-1	일반 도로	상패공원	금회 신설	
신설	소로	2	328	8	국지 도로	124	중로2-17	탑동동 917-1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2	330	8	국지 도로	101	하봉암동 327-50	하봉암동 318-5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폐지	소로	3	61	6	국지 도로	64	중로1-5	소로2-21	일반 도로	-	경고435 ('79.10.19)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63	6	국지 도로	49	소로1-3	소로2-21	일반 도로	생연공원 남측	경고435 ('79.10.19)	
변경	소로	3	63	6	국지 도로	50	소로1-3	소로2-21	일반 도로	-	경고435 ('79.10.19)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66	6	국지 도로	140	중로2-14	소로1-3	일반 도로	-	경고435 ('79.10.19)	
변경	소로	3	66	6	국지 도로	72	소로1-3	소로2-24	일반 도로	-	경고435 ('79.10.19)	의회권고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78	6	국지 도로	113	중로1-9	소로2-34	일반 도로	-	경고435 ('79.10.19)	
변경	소로	3	78	6	국지 도로	47	중로1-9	지행동 272-7	일반 도로	-	경고435 ('79.10.19)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106	6	국지 도로	196	소로1-11	소로1-11	일반 도로	지행동상업 지역서측	경고321 ('87.12.2)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113	6	국지 도로	628	중로1-6	소로2-70	일반 도로	송내공원 동측	경고321 ('87.12.2)	
변경	소로	3	113	6	국지 도로	498	중로1-6	송내동 593-5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변경	소로	3	372	6	국지 도로	47	소로2-70	송내동 588-4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폐지	소로	3	114	6	국지 도로	50	소로3-118	지행동 산135-3	일반 도로	송내동천일 하이츠빌라	경고321 ('87.12.2)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123	6	국지 도로	874	소로1-80	소로1-79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125	6	국지 도로	48	소로1-80	소로3-123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127	6	국지 도로	57	소로1-80	소로3-123	일반 도로	송내공원	경고321 ('87.12.2)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137	6	국지 도로	99	중로1-2	소로2-73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변경	소로	3	137	6	국지 도로	47	중로1-2	소로3-134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142	6	국지 도로	104	중로1-2	소로3-178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변경	소로	3	142	6	국지 도로	45	중로1-2	소로2-74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143	6	국지 도로	169	중로1-2	소로2-8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변경	소로	3	143	6	국지 도로	121	중로1-2	소로2-313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151	6	국지 도로	173	중로1-2	소로3-179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변경	소로	3	151	6	국지 도로	173	중로1-2	소로3-179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경미한변경 ( 감 27㎡ )
기정	소로	3	159	6	국지 도로	105	중로1-2	소로2-84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변경	소로	3	159	6	국지 도로	105	중로1-2	소로2-84	일반 도로	-	경고321 ('87.12.2)	경미한 변경 (가각부 변경)
폐지	소로	3	190	6	국지 도로	130	중로3-20	소로1-16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209	6	국지 도로	60	중로1-10	소로1-22	일반 도로	천성프라자	경고228 ('89.8.14)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210	6	국지 도로	106	소로1-24	소로1-23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의회권고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11	6	국지 도로	106	소로1-24	소로1-23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의회권고
변경	소로	3	211	6	국지 도로	79	중로2-61	소로3-369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기정	소로	3	212	6	국지 도로	147	소로1-24	소로1-23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의회권고
변경	소로	3	212	6	국지 도로	72	중로2-61	상패동 47-8	일반 도로	-	경고228 ('89.8.14)	
폐지	소로	3	213	6	국지 도로	87	중로1-10	소로1-26	일반 도로	구세군 영문교회	경고228 ('89.8.14)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215	6	국지 도로	151	소로1-25	소로1-26	일반 도로	-	경고228 ('89.8.7)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218	6	국지 도로	218	중로1-11	소로1-25	일반 도로	조흥아파트	경고228 ('89.8.14)	
변경	소로	3	218	6	국지 도로	120	중로1-11	소로1-28	일반 도로	조흥아파트	경고228 ('89.8.14)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460	중로2-37	동두천동 24-5	일반 도로	-	동고19 ('02.5.11)	
변경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564	중로2-37	동두천동 24-21	일반 도로	미래교통	동고19 ('02.5.11)	
폐지	소로	3	278	6	국지 도로	79	중로2-7	중로2-8	일반 도로	시청	동고97-11 ('97.3.24)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283	6	국지 도로	860	대로1-1	대로1-1	일반 도로	도독천	건고98-144 ('98.5.16)	
변경	소로	3	283	6	국지 도로	773	대로1-1	송내동 462-2	일반 도로	도독천	건고98-144 ('98.5.16)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285	6	국지 도로	464	소로2-159	소로2-312	일반 도로	-	동고22 ('02.6.21)	
기정	소로	3	317	6	국지 도로	196	보산동 431-52	보산동435-8	일반 도로	-	동고10 ('00.3.8)	
변경	소로	3	317	5~6	국지 도로	196	보산동 431-52	보산동435-8	일반 도로	-	동고10 ('00.3.8)	
신설	소로	3	367	6	국지 도로	295	중로1-6	중로1-6	일반 도로	송내공원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68	6	국지 도로	46	중로1-6	소로3-367	일반 도로	송내공원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69	4	국지 도로	224	중로1-10	중로2-61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71	6	국지 도로	960	중로2-22	소로2-302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대로3-1 중복
신설	소로	3	380	6	국지 도로	210	대로3-2	상봉암동 84-30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81	6	국지 도로	156	대로3-2	소로3-380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84	6	국지 도로	110	중로1-16	교통광장 3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85	6	국지 도로	43	대로3-2	소로3-384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86	6	국지 도로	213	대로3-2	중로2-5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대로3-2	대로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감차로 설치</li> <li>A = 98,875㎡ → 99,07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흐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감차로 설치</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1-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폐지</li> <li>B = 20m, L = 78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계획을 반영하여 노선 폐지</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1-34	중로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단축</li> <li>B = 20m</li> <li>L = 399m → 392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로2-43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연장축소</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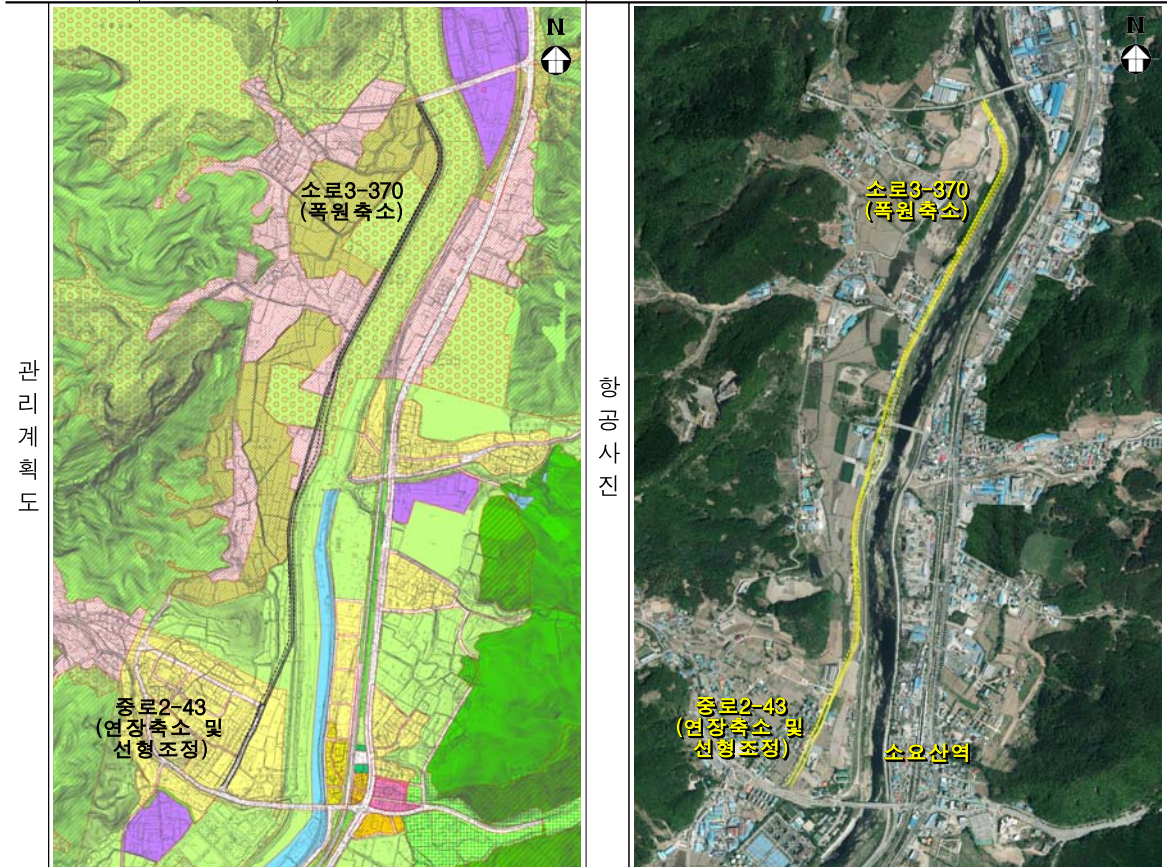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종로1-35	종로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원축소 및 노선단축</li> <li>B = 20m → 12~20m</li> <li>L = 437m → 42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도로를 활용한 도로연장 및 폭원축소</li> </ul>
관리계획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종로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선신설</li> <li>B = 20m</li> <li>L = 137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기존시가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노선신설</li> </ul>
관리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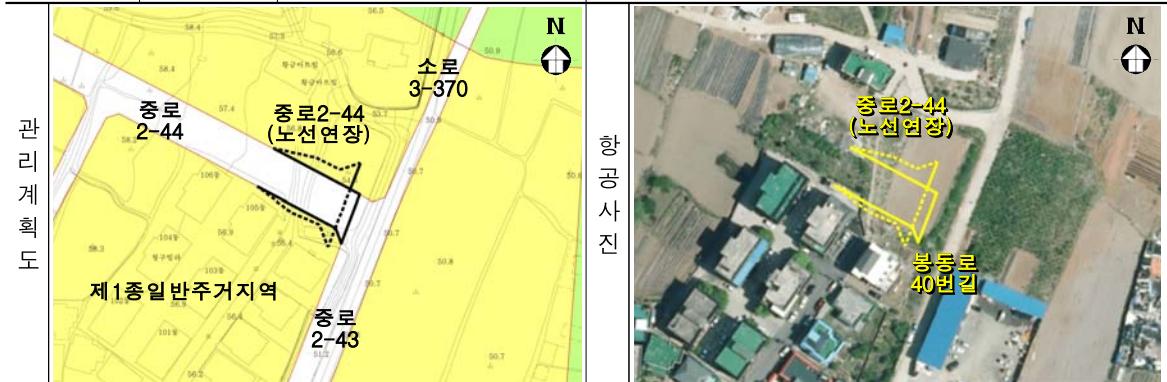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종로2-5	종로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감차로 설치</li> <li>A = 9,090㎡ → 9,04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감차로 설치</li> </ul>
관리계획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2-43	중로2-43	• 연장축소 및 선형조정 L = 2,567m → 326m	•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폭원축소 및 노선분리
	소로3-370	• 폭원축소 B = 15m → 6m L = 2,567m → 2,238m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2-44	중로2-44	• 노선연장 B = 15m L = 439m → 440m	• 중로2-43호선 선형조정에 따른 노선연장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12m L = 21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 (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20	중로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단축 B = 12m L = 874m → 42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국도3호선우회도로와 중복구간에 대해 노선 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30 소로1-62	소로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원축소 및 노선단축 B = 12m, 10m → 10m L = 349m, 477m → 39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축소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폭원축소 및 노선단축 (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30	중로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연장 B = 12m L = 867m → 2,31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흥동 취락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연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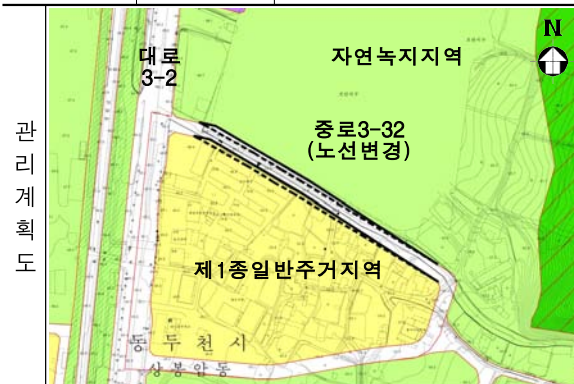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32	중로3-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변경 B = 12m L = 556m → 55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선형이 소요연립에 저촉됨에 따라 일부 노선 변경</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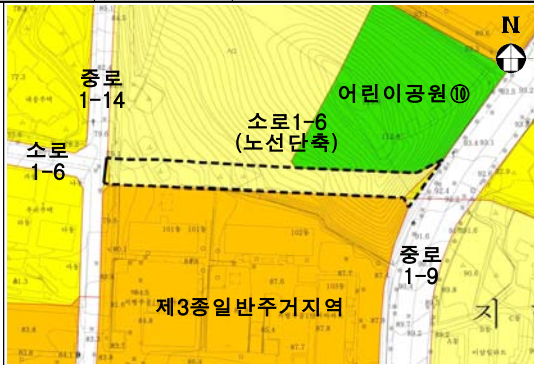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중로3-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12m L = 91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말일원에 통행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6	소로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단축 B = 10m L = 250m → 12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 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10	소로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원축소 및 노선단축 B = 10~12m → 10m L = 658m → 49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 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15	소로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감차로 변경</li> <li>A = 1,970㎡ → 1,96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로3-20호선 노선단축에 따른 가감차로 변경</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li> <li>B = 10m</li> <li>L = 469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국도3호선우회도로와 중복구간이 발생하여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18	소로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연장</li> <li>B = 10m</li> <li>L = 269m → 43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시가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노선연장</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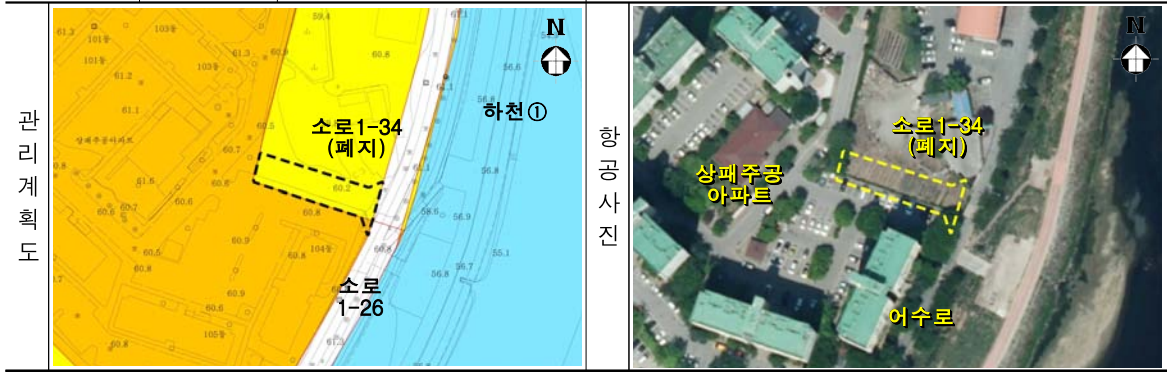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10m L = 13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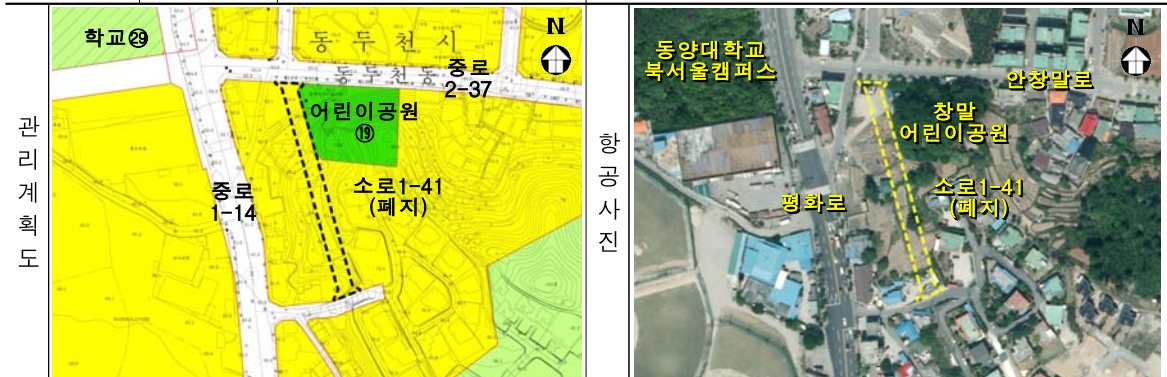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29	소로2-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원축소 B = 10m → 8m L = 29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폭원을 축소하여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폭원축소(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30	소로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감차로 변경 A = 2,150㎡ → 2,14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로1-29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가감차로 변경</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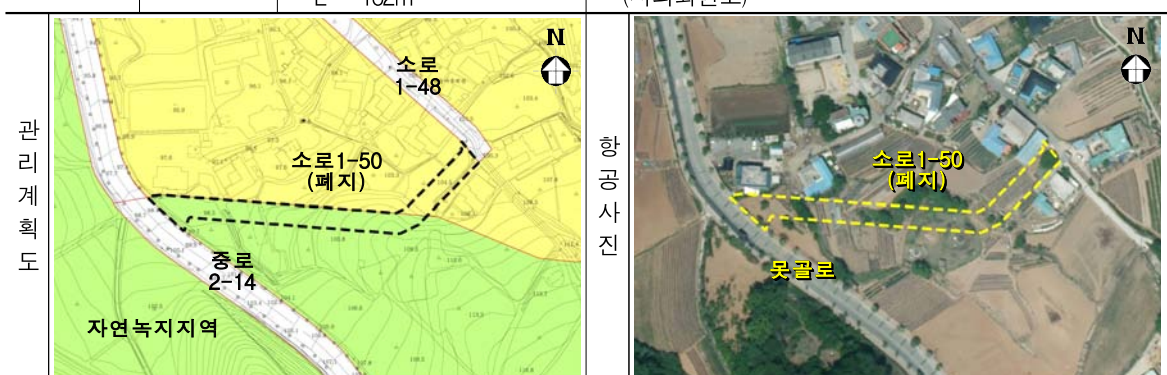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3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10m L = 4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4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10m L = 14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10m L = 162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10m L = 43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소로1-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10m L = 25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소로1-6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10m L = 6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6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10m L = 4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7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10m L = 136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7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10m L = 26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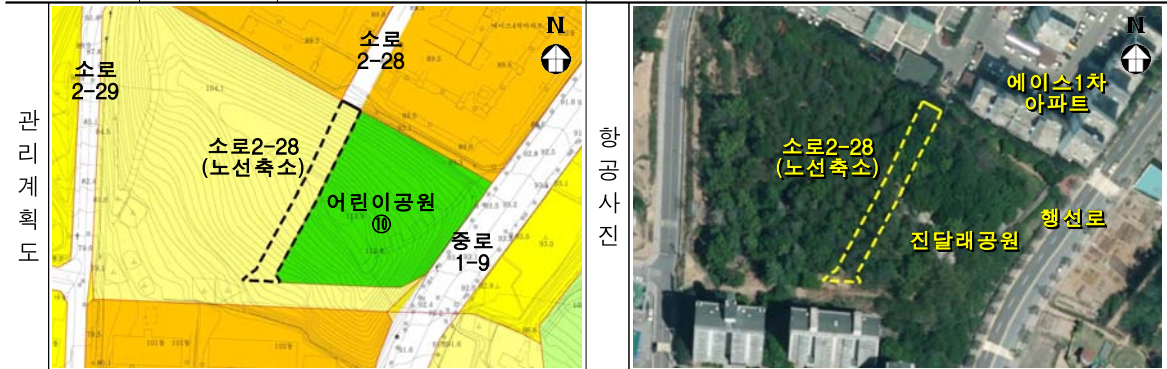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87 소로1-88	소로1-87	• 노선축소 및 노선합병 B = 10m L = 394m, 366m → 565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소1-87호선)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 폐지(시의회권고) 및 소로1-88호선과 노선 일원화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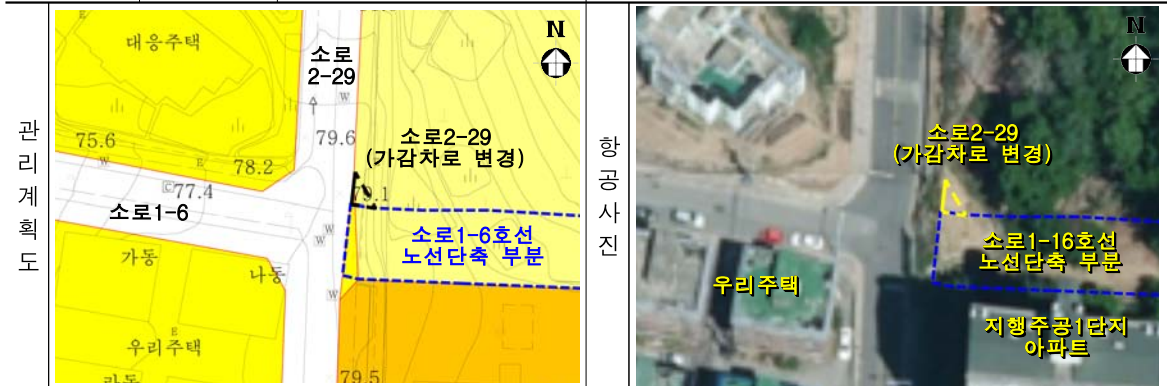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1-100	• 노선신설 B = 10m L = 419m	• 조산마을 일원에 통행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2	소로2-2	• 노선축소 B = 8m L = 132m → 46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을 축소하여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축소(시의회권고)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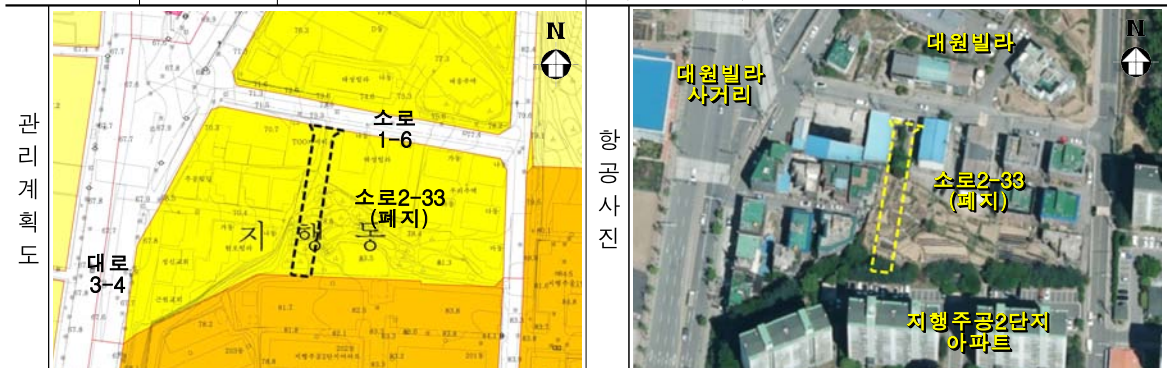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28	소로2-28	• 노선축소 B = 8m L = 132m → 46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 폐지(시의회권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29	소로2-29	• 가감차로 변경 A = 760㎡ → 753㎡	• 소로1-6호선 연장축소에 따른 가감차로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33	-	• 노선폐지 B = 8m L = 61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34	소로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감차로 변경</li> <li>A = 2,960㎡ → 2,95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로1-6호선 연장축소에 따른 가감차로 변경</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4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li> <li>B = 8m</li> <li>L = 8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47	소로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li> <li>B = 8m</li> <li>L = 239m → 17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 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49	소로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연장 B = 8~15m L = 481m → 50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형에 의해 설치 불가능한 노선 일부 조정</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5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8m L = 10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 (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77	소로2-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 B = 8m L = 485m → 402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동두천성당)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 폐지</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1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8m L = 21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국도3호선우회도로와 중복구간이 발생하여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1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8m L = 119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1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8m L = 356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122	소로2-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감차로 변경</li> <li>A = 2,176㎡ → 2,17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로1-29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가감차로 변경</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17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li> <li>B = 8m</li> <li>L = 201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180	소로2-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연장</li> <li>B = 8m</li> <li>L = 105m → 112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로2-179호선 폐지에 따른 노선연장</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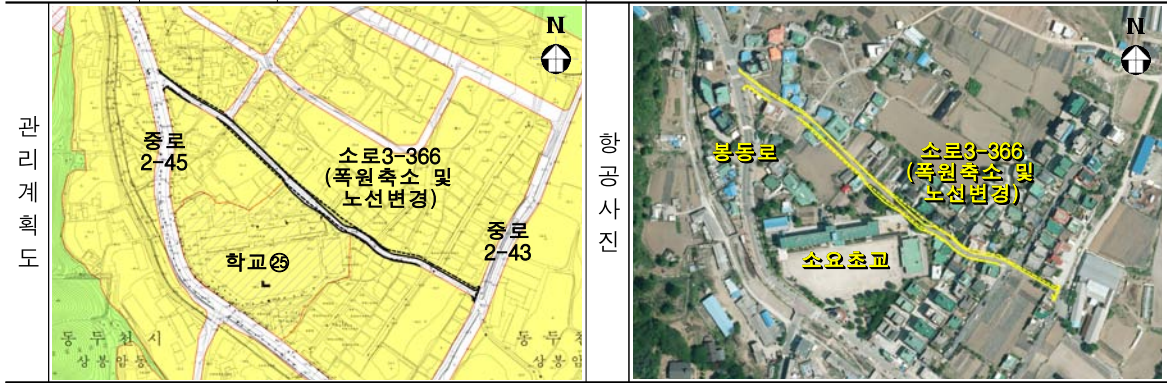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1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8m L = 101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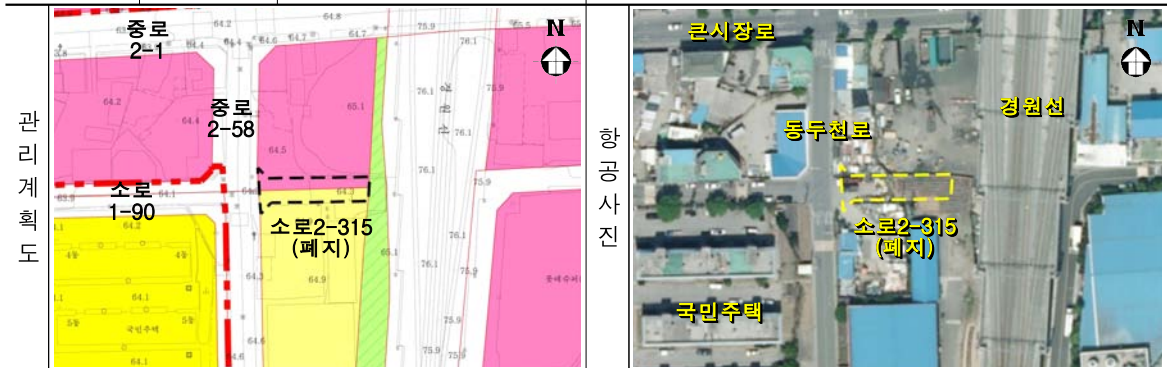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1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8m L = 237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199	소로2-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 B = 8~12m L = 230m → 122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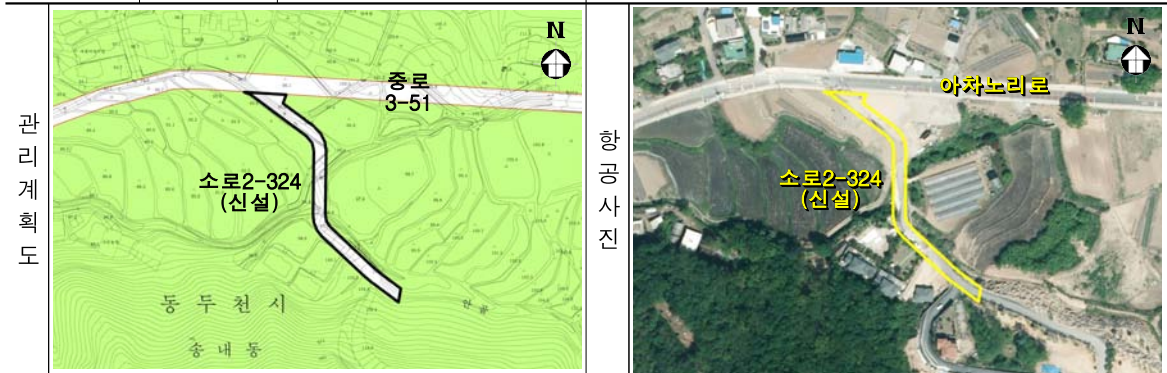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311	소로3-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원축소 및 노선변경 B = 8m → 6m L = 373m → 37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황도로에 맞추어 폭원 축소 및 노선변경</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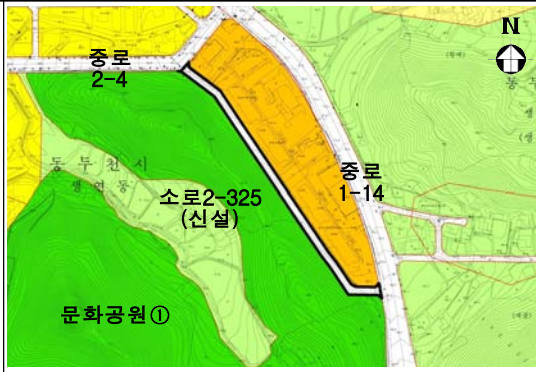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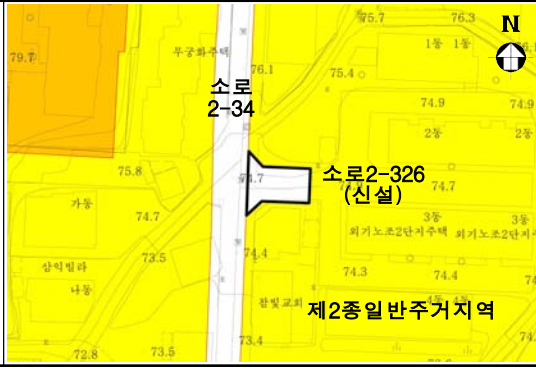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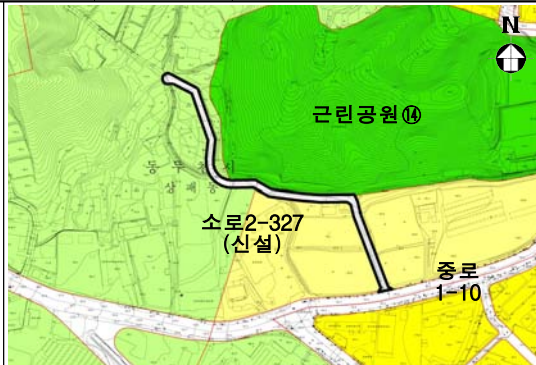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3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8m L = 47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2-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8m L = 151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락 밀집지역 진입로 확보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선신설</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2-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8m L = 30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연주공아파트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노선신설</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2-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8m L = 1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미노조2단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2-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8m L = 39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락 밀집지역 진입로 확보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선신설</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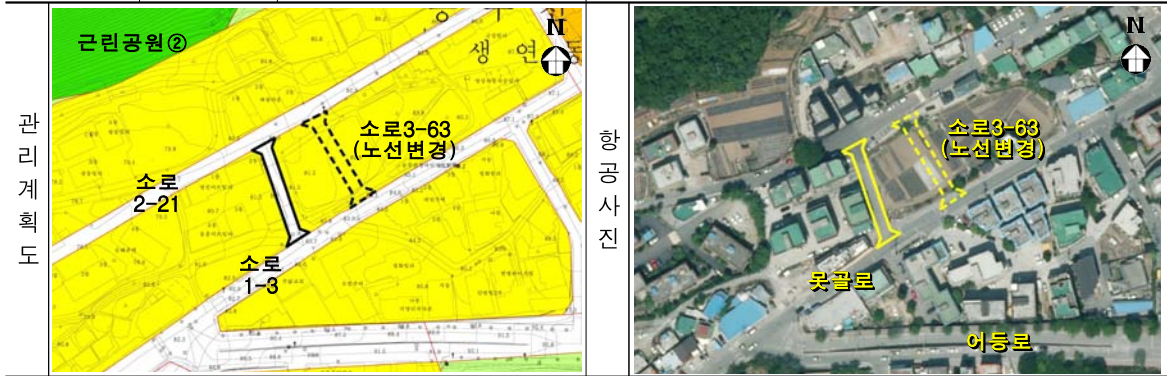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2-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8m L = 12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락 밀집지역 진입로 확보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선신설</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2-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8m L = 101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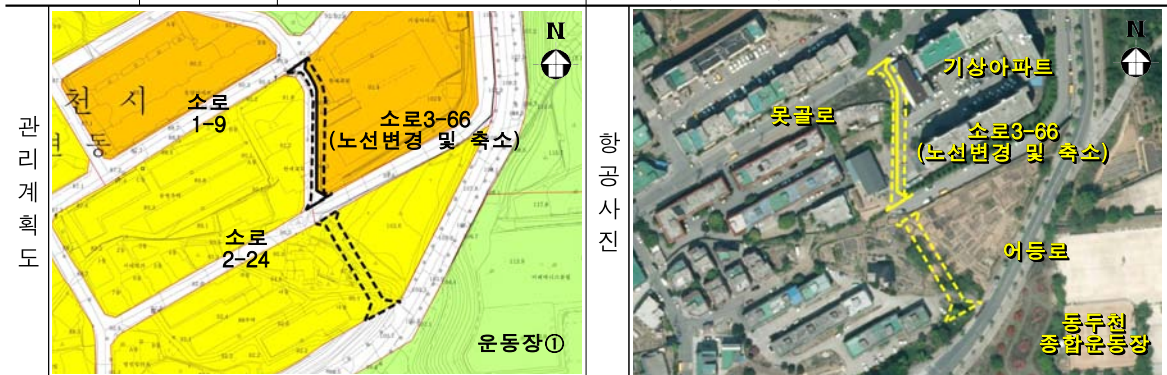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6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6m L = 6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 (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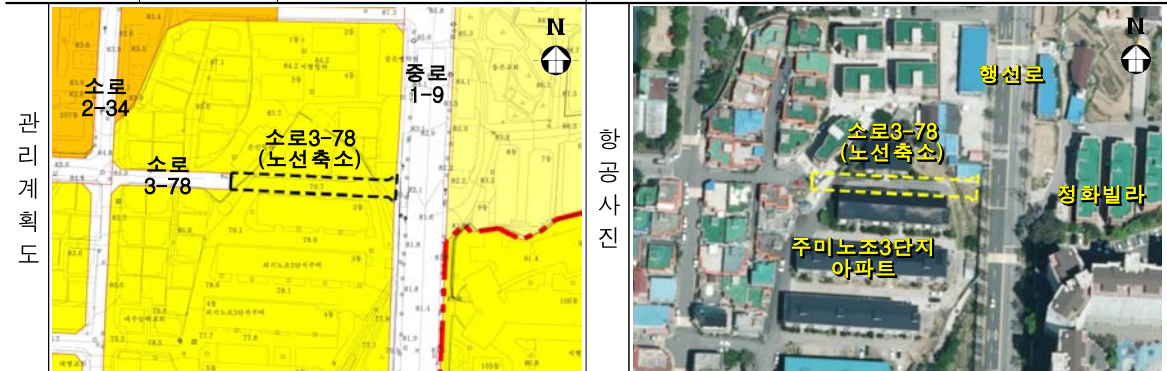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63	소로3-63	• 노선변경 B = 6m L = 49m → 50m	• 현황 도로에 맞추어 노선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66	소로3-66	• 노선축소 B = 6m L = 140m → 72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폐지 및 현황도로에 맞추어 노선 변경(시의회권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78	소로3-78	• 노선축소 B = 6m L = 113m → 47m	• 옹벽에 의해 종로1-9호선에 접속이 불가하여 노선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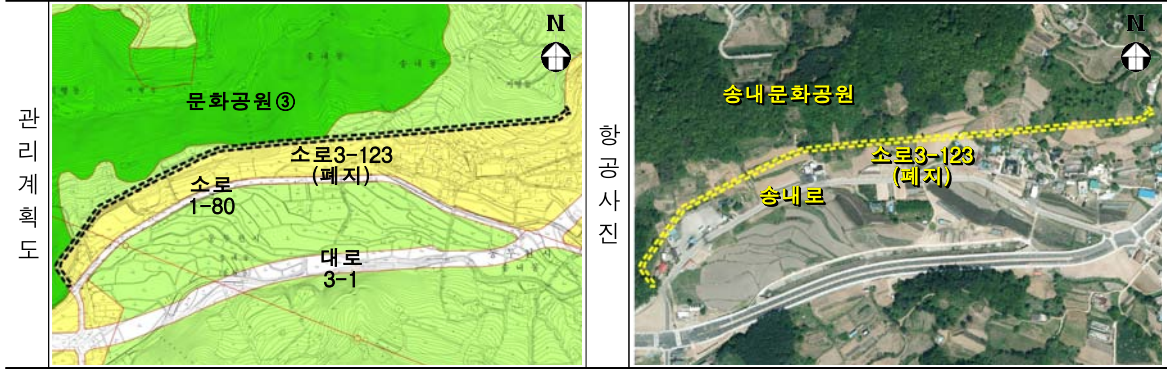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6m L = 196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13	소로3-113 소로3-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축소 L= 628m→498m, 47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개설이 곤란한 구간에 대한 일부 노선 폐지</li> </ul>
관리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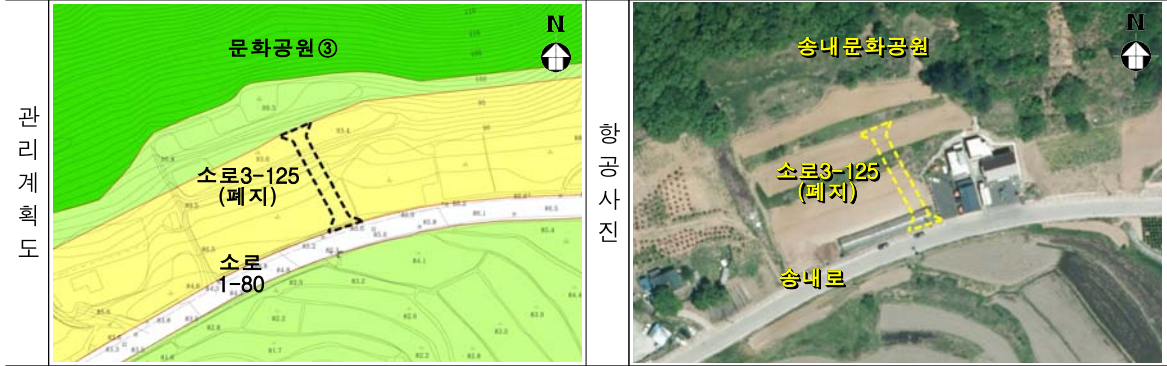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6m L = 196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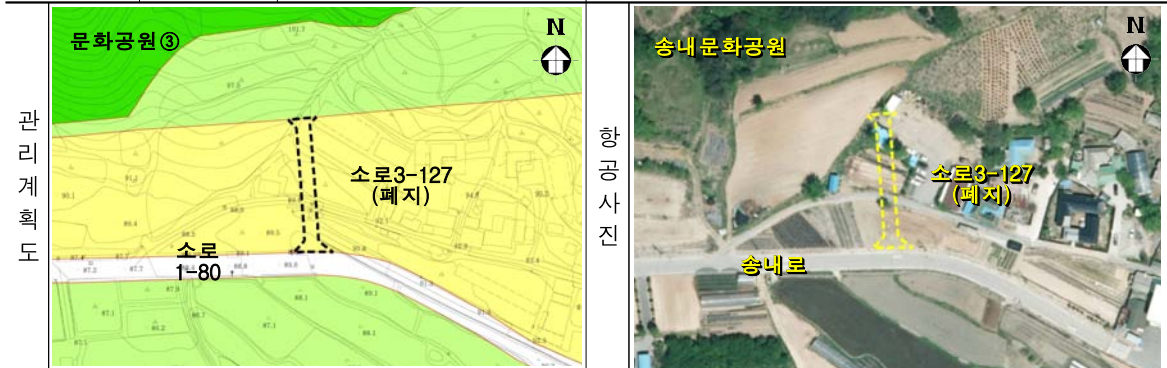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6m L = 87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6m L = 4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6m L = 57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37	소로3-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 B = 6m L = 99m → 47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에 의해 개통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 일부 노선 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42	소로3-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 B = 6m L = 104m → 4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에 의해 개통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 일부 노선 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43	소로3-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 B = 6m L = 169m → 121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장물 의해 개통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 일부 노선 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51	소로3-151	• 가각부 변경 A = 1,038㎡ → 1,011㎡	• 소로2-77호선 연장축소에 따른 가각부 변경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59	소로3-159	• 가각부 변경	• 건축물 현황에 따른 가각부 변경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90	-	• 노선폐지 B = 6m L = 130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국도3호선우회도로와 중복구간이 발생하여 노선폐지(시의회권고)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2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6m L = 6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2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6m L = 106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211	소로3-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 B = 6m L = 106m → 79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옹벽에 의해 도로 접속이 어려움에 따라 일부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212	소로3-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 B = 6m L = 147m → 72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축소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축소(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2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6m L = 87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2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6m L = 151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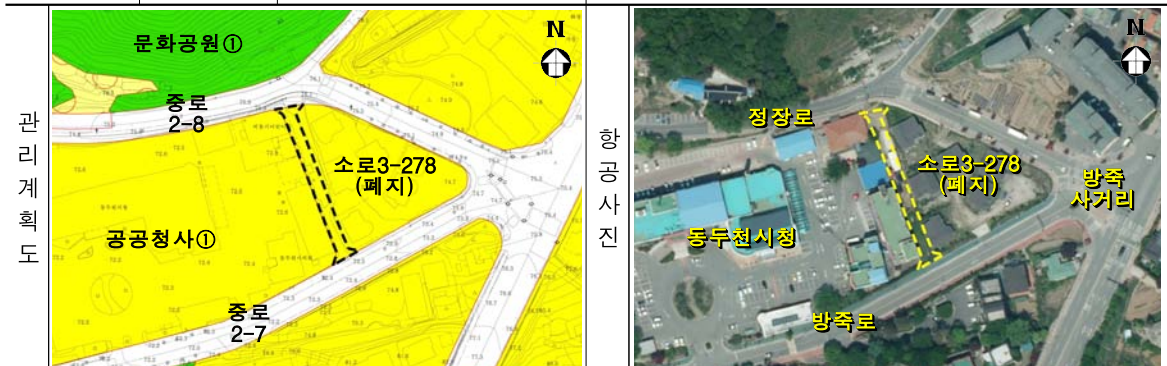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218	소로3-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 B = 6m L = 218m → 12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축소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축소(시의회권고)</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221	소로3-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연장 B = 6m L = 460m → 56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교통일원 교통서비스 향상 및 현황도로에 맞추어 노선연장</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2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6m L = 79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283	소로3-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 B = 4m L = 860m → 77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축소되어도 교통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축소 (시의회권고)</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소로3-2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폐지 B = 6m L = 206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시계획도로 폐지</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소로3-317	소로3-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원축소 B = 6m → 5m L = 196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황도로에 맞추어 폭원축소</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3-367	• 노선신설 B = 6m L = 163m	• 주거지역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
관리계획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3-368	• 노선신설 B = 6m L = 295m	• 주거지역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
관리계획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3-369	• 노선신설 B = 6m L = 46m	• 주거지역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
관리계획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3-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6m L = 96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이골 일원 통행수요 증가 및 교통서비스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3-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6m L = 21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3-3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6m L = 156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3-3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6m L = 11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3-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6m L = 4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3-3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B = 6m L = 21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 나) 주차장

### (1) 정의

-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2) 현황

- 동두천시의 주차장은 2010년 현재 79개소, 3,855면으로 최근 10년동안 각각 2.37%, 2.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현재 동두천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30,927대로 등록차량 1대당 0.12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
- 주차장 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노상주차장 834면, 노외주차장 3,021면으로 노외주차장이 전체의 78.4%를 차지하고 있음

【표 V-20】주차장 현황

구 분	합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001년	64	3,091	37	818	27	2,273
2002년	64	3,091	37	818	27	2,273
2003년	66	3,148	38	852	28	2,296
2004년	70	3,208	38	852	32	2,356
2005년	70	3,158	38	848	32	2,310
2006년	73	3,625	38	814	35	2,811
2007년	72	3,426	38	834	34	2,592
2008년	78	3,842	38	834	40	3,008
2009년	78	3,842	38	834	40	3,008
2010년	79	3,855	38	834	41	3,021
연평균증가율(%)	2.37	2.48	0.30	0.22	4.75	3.21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1

### (3) 결정기준

- 별도의 진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간선도로에 진출입구가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
-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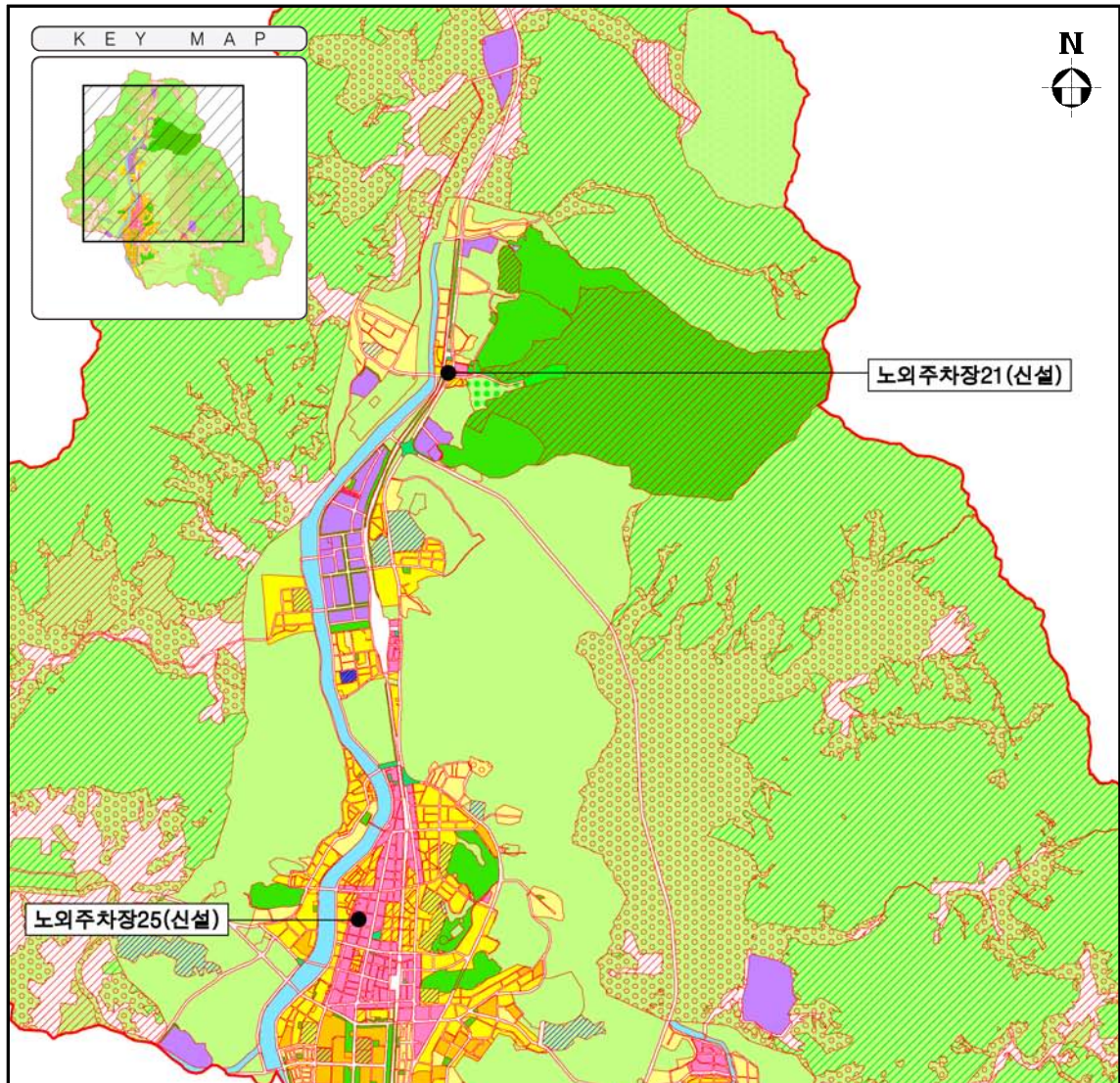
(4) 변경계획

- 중앙시장 주변의 수요를 고려한 주차장 신설
- 소요산사거리 인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밀도 상승 및 소요산 방문객을 고려한 주차장 신설

【표 V-21】주차장 변경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1	노외주차장	생연동 588-3일원	-	증) 2,864	2,864	금회 신설	
신설	25	노외주차장	상봉암동 115-36일원	-	증) 433	433	금회 신설	

【그림 V-12】주차장 변경 총괄도





○ 주차장 ㉑ : 노외주차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생연동 588-3일원	• 시설신설 A=2,864㎡	• 중앙시장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기 설치 완료된 주차장 1개소 반영(기존시설)
관리 계획 도			

○ 주차장 ㉕ : 노외주차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상봉암동 115-36 일원	• 시설신설 A=433㎡	•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신설
관리 계획 도			

## 2) 공간시설

### 가) 공원

#### (1) 정의

-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표 V-22】도시공원의 세분

공원구분	기능 및 주제
1. 국가도시공원	•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2) 도보권 근린공원	•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4) 광역권 근린공원	•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3.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공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2) 면적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의 공원 확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서의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 이상의 공원 확보

(3) 현황

- 동두천시 내에는 총 44개소, 1,263,185㎡의 도시공원이 결정되어 있으며 동두천시 주민 1인당 12.8㎡의 공원이 확보되어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당 6㎡ 이상의 공원 확보 기준을 충족
-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서의 도시공원은 34개소, 110,770㎡로 주민 1인당 1.1㎡의 공원이 확보되어 있어 시가화구역 내에서 공원의 추가확보가 시급함

【표 V-23】도시공원 현황

구 분	동두천시 전체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44	1,263,185	34	110,770
근린공원	11	872,942	4	49,027
소공원	4	5,636	3	1,688
수변공원	1	6,000	1	6,000
어린이공원	27	59,088	26	54,055
체육공원	1	319,519	-	-

(4) 재검토 기준

- 녹지지역 내 대규모 근린공원(4개소)을 제외한 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공원 재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

【표 V-24】공원 재검토 기준

구 분	정비유형	정비계획
공원기능 상실	•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검토
	•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된 경우	축소 검토

【표 V-24】공원 재검토 기준 (계속)

구 분	정비유형	정비계획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li> <li>• 공원 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li> </ul>	축소 검토 건축 허용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 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li> <li>•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li> </ul>	조정 검토  보전녹지지정 등 대체관리

(5) 녹지지역 내 대규모 근린공원 검토기준

- 녹지지역 내 대규모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 상실 전까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축소 계획 기 반영
- 따라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반영되어 있는 공원축소 계획을 근거로 공원결정 효력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만 공원으로 존치
- 그 외 지역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4개 근린공원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1차보전지역, 2차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원 축소 검토

【표 V-25】4개 근린공원 축소 기준

구 분	내 용
절대보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인가(조정완료지역) 고시</li> <li>• 임상도 5영급지</li> </ul>
1차보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목상 임야, 묘지 중 임상도4영급, 생태자연도2등급, 국토환경평가도1·2등급, 경사도 25도 이상과 중첩지역</li> </ul>
2차보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보전지역 및 1차보전지역 외 지역 중 임상도 4영급, 생태자연도2등급, 국토환경평가도 1·2등급, 경사도 25도 이상과 2개 이상 중첩지역</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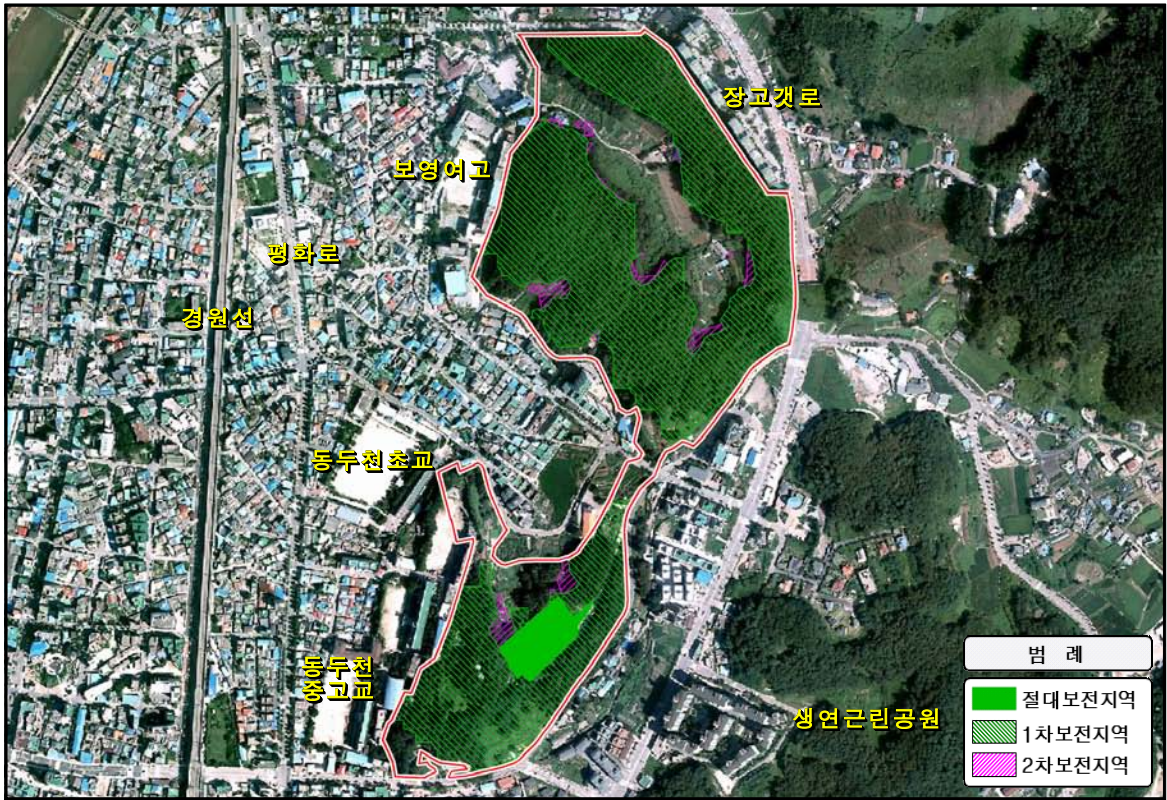
(6) 녹지지역 내 대규모 근린공원 검토 결과

- 중앙근린공원(생연동 산36번지 일원)에 대해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사용 중인 절대보전지역 등 공원 내에 보전지역을 제외한 비 보전지역의 면적이 61,630㎡로 검토되었음

【표 V-26】근린공원 축소 기준에 따른 면적 (중앙근린공원)

구분	합계	절대보전지역	1차 보전지역	2차 보전지역	비 보전지역
면적(㎡)	231,209	6,531	156,198	6,850	61,630





○ 생연근린공원(생연동 산53번지 일원)에 대해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기상대,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인 절대보전지역 등 공원 내에 보전지역을 제외한 비 보전지역의 면적이 1,611㎡로 검토되었음

【표 V-27】근린공원 축소 기준에 따른 면적 (생연근린공원)

구분	합계	절대보전지역	1차 보전지역	2차 보전지역	비 보전지역
면적(㎡)	99,226	6,797	82,934	7,884	1,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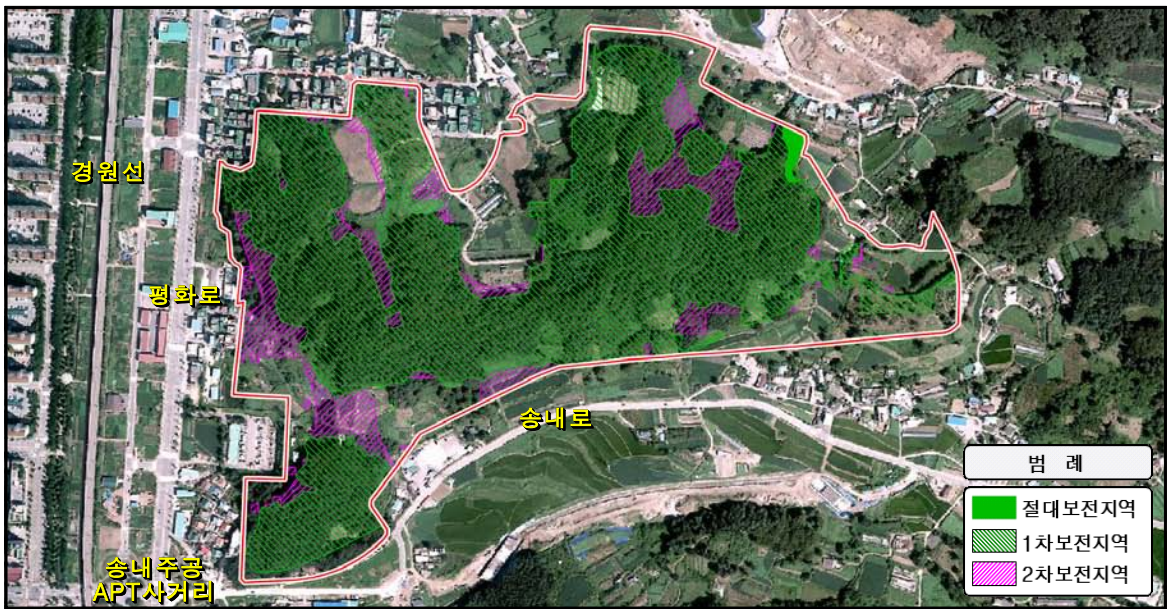




- 송내근린공원(송내동 산39번지 일원)에 대해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임상도 5영급 이상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등 공원 내에 보전지역을 제외한 비 보전지역의 면적이 110,210㎡로 검토되었음

【표 V-28】근린공원 축소 기준에 따른 면적 (송내근린공원)

구분	합계	절대보전지역	1차 보전지역	2차 보전지역	비 보전지역
면적(㎡)	362,407	1,236	207,553	43,408	110,210



- 상패근린공원(상패동 산16번지 일원)에 대해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컬링경기장 등으로 사용 중인 절대보전지역 등 공원 내에 보전지역을 제외한 비 보전지역의 면적이 14,116㎡로 검토되었음

【표 V-29】근린공원 축소 기준에 따른 면적 (상패근린공원)

구분	합계	절대보전지역	1차 보전지역	2차 보전지역	비 보전지역
면적(㎡)	76,970	11,259	47,566	4,029	14,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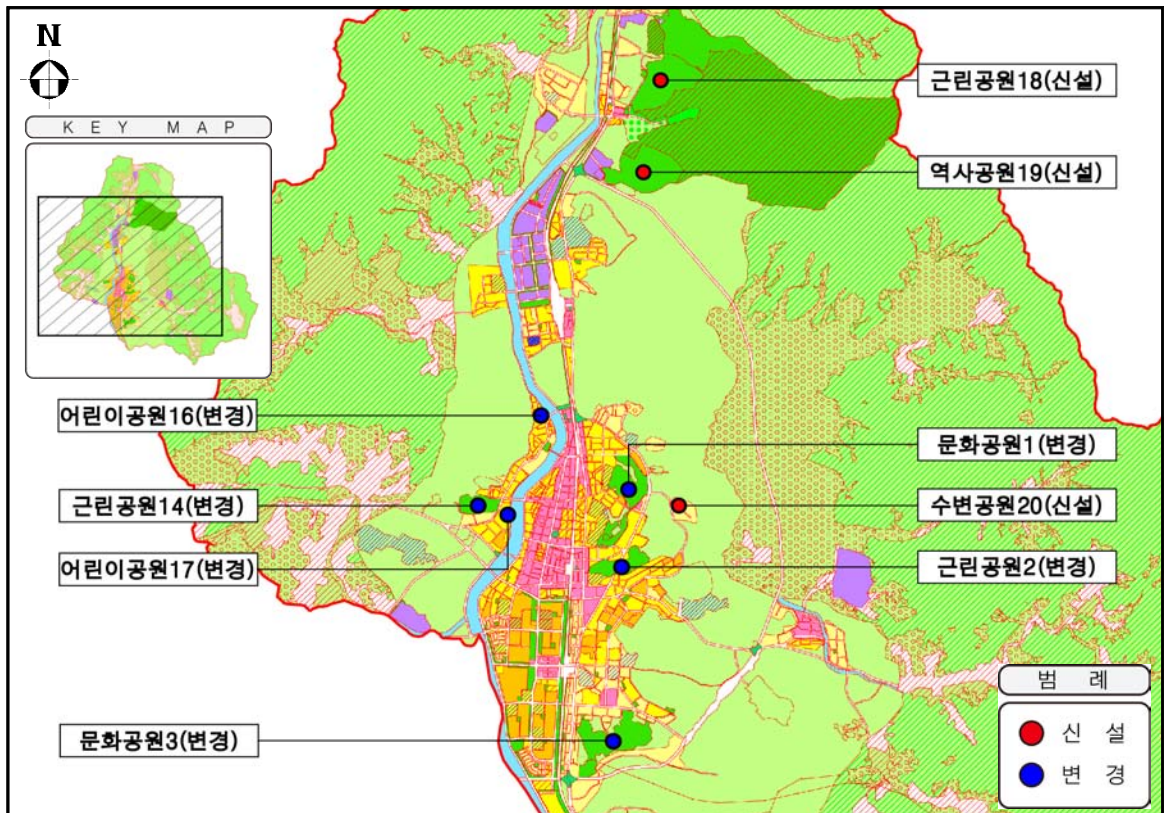


(6) 변경계획

【표 V-30】공원 변경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중앙공원	문화공원	생연동 산36일원	231,209	감)31,289	199,920	건고1983호 (65.11.13)	
변경	2	생연공원	근린공원	생연동 산53일원	99,226	증)4,618	103,844	동고29호 (96.07.24)	
변경	3	송내공원	문화공원	송내동 산39일원	362,407	감)110,615	251,792	경고435호 (79.10.19)	
변경	14	상패공원	근린공원	상패동 산16일원	76,970	감)3,775	73,195	건고106호 (89.08.07)	
변경	16	상패1공원	어린이공원	상패동 2-29일원	1,500	감)723	777	경고228 (89.08.07)	
변경	17	상패2공원	어린이공원	상패동 56-13일원	2,503	감)667	1,836	경고228 (89.08.07)	
신설	18	상봉암1공원	근린공원	상봉암동 산21일원	-	증)273,707	273,707	금회 신설	
신설	19	상봉암2공원	역사공원	상봉암동 산41일원	-	증)271,740	271,740	금회 신설	
신설	20	못골공원	수변공원	생연동 111일원	-	증)1,407	1,407	금회 신설	

【그림 V-13】공원 변경 총괄도





○ 도면번호 ① : 중앙문화공원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생연동 산36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축소 A=231,209㎡ → 199,920㎡</li> <li>시설종류 변경 근린공원 → 문화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 계획」에 맞추어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훼손지는 공원에서 해제하고, 문화공원으로 변경</li> </ul>
관리 계획 도			

○ 도면번호 ② : 생연근린공원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생연동 산53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축소 A=99,226㎡ → 103,84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 계획」에 맞추어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훼손지는 공원에서 해제 및 구적오차 정정</li> </ul>
관리 계획 도			

○ 도면번호 ③ : 송내문화공원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송내동 산39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축소 A=362,407㎡ → 251,792㎡</li> <li>시설종류 변경 근린공원 → 문화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5년 동두천도시기본 계획」에 맞추어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훼손지는 공원에서 해제하고, 문화공원으로 변경</li> </ul>
관리 계획 도			

○ 도면번호 ⑭ : 상패근린공원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상패동 산16번지 일원	• 면적축소 A=76,970㎡ → 73,19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 계획」에 맞추어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훼손지는 공원에서 해제
관리계획도			

○ 도면번호 ⑯ : 상패1 어린이공원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상패동 2-29일원	• 면적축소 A=1,500㎡ → 777㎡	• 이상기후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긴급복구계획이 수립된 상패동 일원의 방수설비(상패-1빗물펌프장) 증설계획에 따라 공원 변경
관리계획도			

○ 도면번호 ⑰ : 상패2 어린이공원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상패동 56-13 일원	• 면적축소 A=2,503㎡ → 1,836㎡	• 이상기후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긴급복구계획이 수립된 상패동 일원의 방수설비(상패-4빗물펌프장) 증설계획에 따라 공원 변경
관리계획도			



○ 도면번호 ⑱ : 상봉암1 근린공원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상봉암동 산21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A=273,7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기 조성된 삼림욕장을 이용한 근린공원 신설</li> </ul>
관리 계획 도			
	관 리 계 획 도	관 리 계 획 도	

○ 도면번호 ⑲ : 상봉암2 역사공원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상봉암동 산41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A=271,7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기 조성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이용한 역사공원 신설</li> </ul>
관리 계획 도			
	관 리 계 획 도	관 리 계 획 도	

○ 도면번호 ⑳ : 못골공원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생연동 111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A=1,4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수변공원 신설</li> </ul>
관리 계획 도			
	관 리 계 획 도	관 리 계 획 도	



## 나) 녹지

### (1) 정의

-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

【표 V-31】녹지의 세분

구 분	기 능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 (2) 결정 기준

【표 V-32】녹지 결정 기준

구 분	결 정 기 준
완충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의 연결구역</li> <li>• 공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비점오염과 악취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 /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li> <li>• 당해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li> <li>•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li> <li>• 우수등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이 저류·침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li> </ul>
경관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li> <li>•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li> <li>• 그 기능이 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li> </ul>
녹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도로, 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li> <li>• 철도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li> <li>•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li> </ul>

### (3) 현황

- 동두천시에는 총 35개소, 230,224㎡의 녹지가 결정되어 있음
- 결정되어 있는 녹지의 대부분은 완충녹지로 경원선 철도 주변, 평화로 주변, 공업지역 주변 등에 결정되어 있음

【표 V-33】녹지 현황

구분	개소	면적(㎡)	비고
합계	35	230,224	
완충녹지	29	218,203	
경관녹지	5	11,732	
연결녹지	1	289	

(4) 재검토 기준

【표 V-34】녹지 재검토 기준

정비유형	정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으나 근린상가 및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li> <li>주택가 내 완충녹지로 계획되었으나 근린상가 및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li> <li>주택가 내 완충녹지로 경사가 심하고 양호수립대가 형성된 시설에 대하여 기능 유지가 필요한 경우</li> </ul>	건축 허용 건축 허용 조속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 내 근린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사업집행이 장기화가 예상되며, 주용도가 소음 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철도 및 도로의 장래 확폭 문제상 별다른 지장이 없고 대체시설(방음벽)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li> </ul>	폐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개지 형태의 장방향의 녹지로 결정되었으나 조성이 불가능한 경우</li> <li>광장과 녹지가 중복지정된 경우</li> </ul>	폐지 검토 보조기능 폐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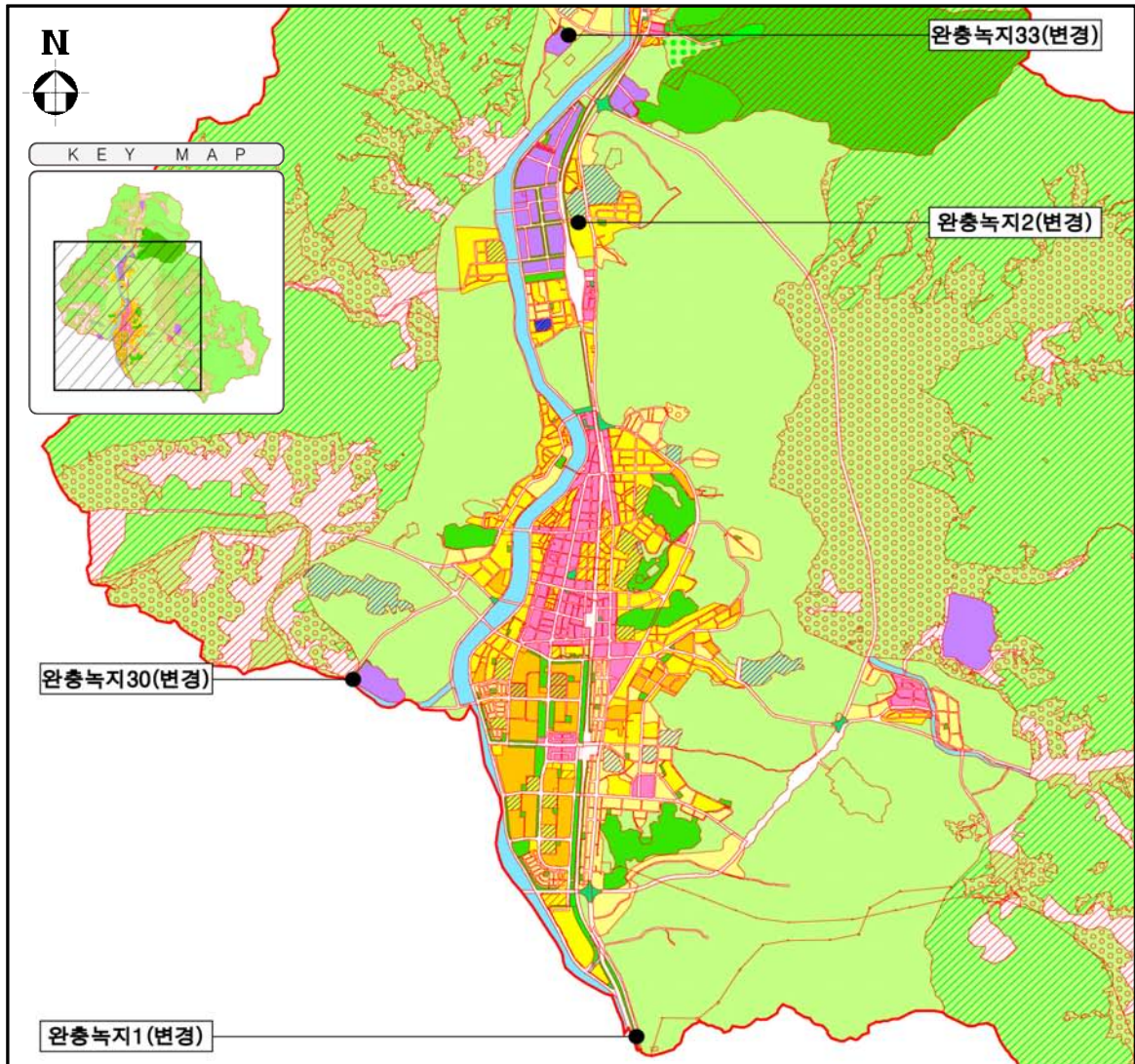
(5) 변경계획

- 당초 완충녹지를 관통하여 결정된 도로의 폐지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 기존 미군부대에 면한 지역에 결정되어 있던 완충녹지에 대해 미군부대의 이전 및 대학교 입지에 따른 완충녹지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에 대한 완충녹지 변경
- 기 결정된 완충녹지로 인한 진출입 불편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표 V-35】녹지 변경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경원선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경원선철도변	54,568	증)129	54,697	경고387 ('76.12.18)	
변경	2	준공업지역 완충녹지	완충녹지	대로1-1~철도변	3,465	감)1,644	1,821	건고405 ('86.9.12)	
변경	30	상패동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패동 348-1일원	2,602	감)285	2,317	경고5160 (07.11.19)	
변경	33	상봉암2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봉암동 209-2일원	2,647	감)55	2,592	경고5160 (07.11.19)	

【그림 V-14】녹지 변경 총괄도



○ 완충녹지 ① : 경원선철도변 완충녹지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경원선철도변	• 면적증감 A=54,568㎡→54,697㎡	• 소로2-283호선 폐지로 인한 국도3호선변 완충역할을 위해 완충녹지로 지정
관리계획도			

○ 완충녹지 ㉒ : 동두천동 완충녹지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대로1-1~철도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감소 A=3,465㎡→1,821㎡</li> <li>시설명 변경 준공업지역 완충녹지 → 동두천동 완충녹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교 주변 활성화를 위해 도로변 완충녹지 일부 해제</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 완충녹지 ㉓ : 상패동 완충녹지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상패동 348-1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감소 A=2,602㎡→2,31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공장지역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제척</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 완충녹지 ㉔ : 상봉암2 완충녹지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상봉암동 209-2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감소 A = 2,647㎡ → 2,59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공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을 제척하고, 원인시설인 공장지역으로 완충녹지 일부 선형조정</li> </ul>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다) 광장

(1) 정의

○ 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  
 ,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

(2) 결정기준

【표 V-36】광장 결정 기준

구 분		결 정 기 준
교통 광장	교차점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li> <li>•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li> <li>•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ul>
	역전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li> <li>•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li> <li>•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li> </ul>
	주요 시설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li> <li>•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li> </ul>
일반 광장	중심 대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li> <li>•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li> <li>•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li> </ul>
	근린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사고,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li> <li>• 시장·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li> <li>•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li> </ul>
경관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li> <li>•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li> <li>•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li> </ul>
지하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li> <li>•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li> </ul>
건축물 부설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li> <li>•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li> </ul>



(3) 현황

○ 동두천시에는 총 12개소, 73,390㎡의 광장이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 교차점 광장이 6개소, 59,569㎡로 광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V-37】광장 현황

구분		개소	면적(㎡)	비고
합계		12	73,390	
교통광장	소계	7	61,569	
	교차점광장	6	59,585	
	역전광장	1	1,984	
일반광장	소계	4	7,254	
	근린광장	4	7,254	
경관광장		1	4,567	

(4) 재검토 기준

【표 V-38】광장 재검토 기준

정비유형	정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미개설부분에 노후주택 등이 밀집된 시설</li> <li>대부분 광장으로 설치되었으나, 미개설 부분에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되거나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li> <li>로터리의 자동차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결정된 시설</li> <li>완충녹지와 광장으로 중복지정된 시설</li> <li>일부 미설치되었으나 지장물이 없어 개설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li> </ul>	<p>축소 검토</p> <p>축소 검토</p> <p>축소 검토</p> <p>부수시설 폐지 검토</p> <p>존치 검토</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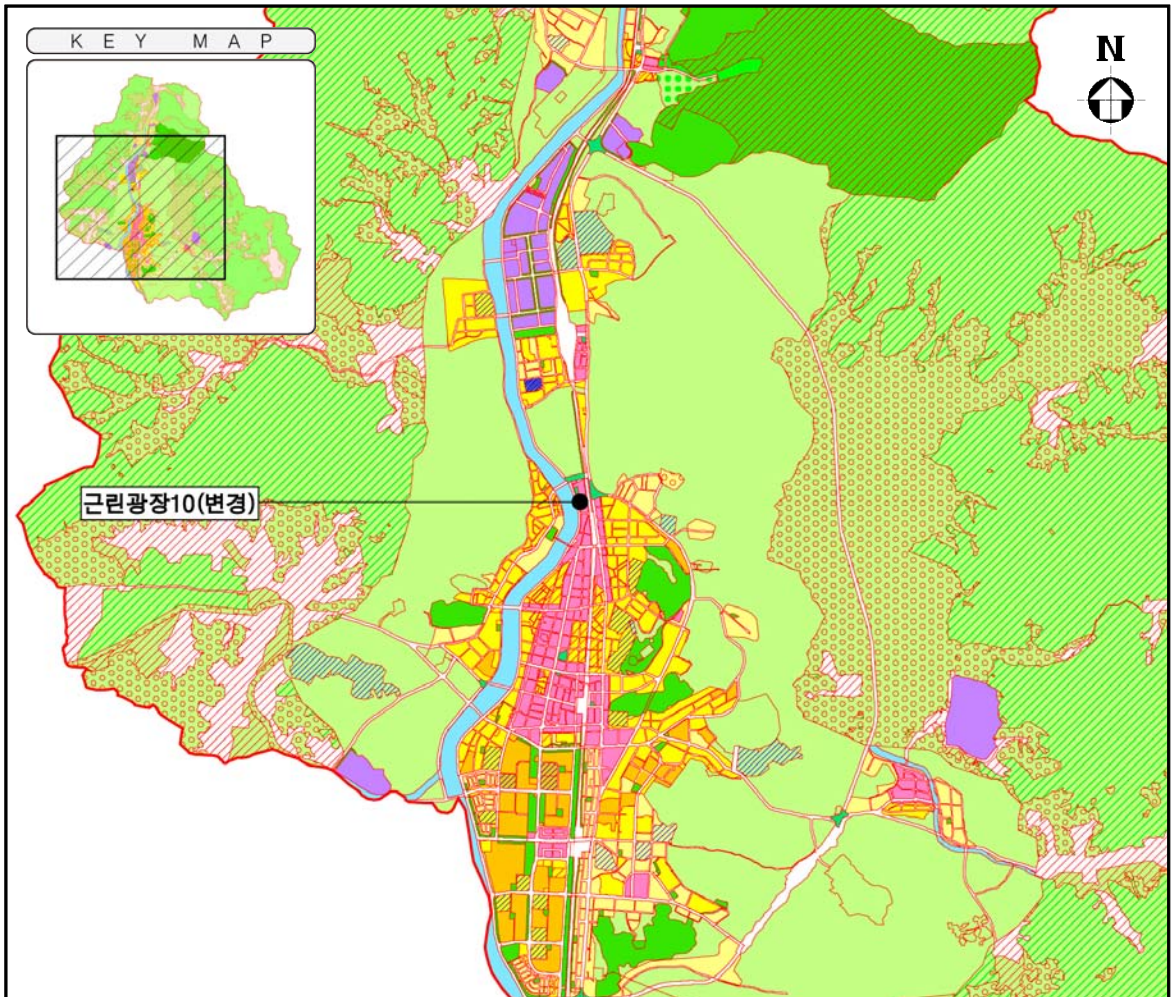
(5) 변경계획

○ 2011년 신천 범람에 따라 긴급복구계획이 수립된 보산동 일원에 방수설비 확충을 위해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기존 광장의 유희부지에 방수설비 설치를 위해 광장 변경

【표 V-39】광장 변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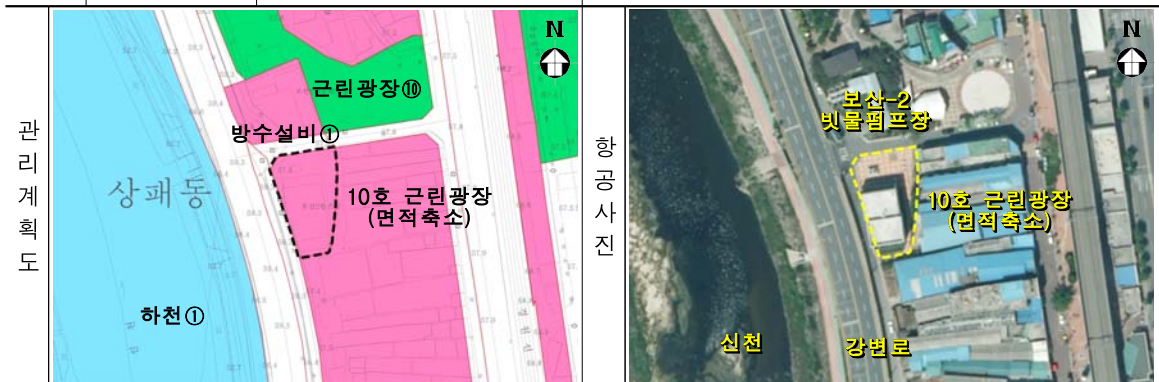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근린광장	보산동미관광장(관광특구)	보산동430번지 일원	3,938	감) 838	3,100	동고3(02. 1.21)	

【그림 V-15】광장 변경 총괄도



○ 근린광장 ⑩ : 보산동 미관광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보산동 430번지 일원	• 면적축소 A=3,938㎡ → 3,100㎡	• 2011년 신천 범람에 따른 방수설비 확충을 위해 기존 광장의 유휴부지에 방수설비 확충



### 3) 공공·문화체육시설

#### 가) 학교

##### (1) 정의

###### ○ 학교란 다음의 시설을 말함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 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사이버대학 및 대학원대학 제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

##### (2) 결정기준

【표 V-40】학교 결정 기준

결 정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li> <li>•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li> <li>•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li> <li>• 위생·교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쓰레기처리장·유해업소·관람장과 소음·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li> <li>•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li> <li>•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li> <li>• 옥외체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교사 부지와 연결된 곳에 설치할 것</li> <li>• 도서관·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li> <li>•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li> <li>•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li> </ul>

【표 V-40】학교 결정 기준 (계속)

결 정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li> <li>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고려할 것</li> <li>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li> <li>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식량저장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환기시설 및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하 "주민일시체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li> <li>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li> </ul>

(3) 현황

○ 동두천시에는 초등학교 10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8개소, 대학교 2개소 등 총 23개소, 638,711㎡의 학교시설이 결정되어 있음

【표 V-41】학교 현황

구분	개소	면적(㎡)	비고
합계	23	638,771	
초등학교	10	155,834	
중학교	3	39,871	
고등학교(중고등학교포함)	8	241,956	
대학교	2	201,110	

(4) 재검토 기준

【표 V-42】학교 재검토 기준

정비유형	정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시설로 결정되었거나 나대지로 남아있는 경우</li> <li>학교시설기준의 적정규모에 미달되며, 주차장 등 다른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li> <li>구릉지 형태의 지형으로 시설부지 내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된 경우</li> </ul>	폐지검토 (관할 교육청과 협의)

(5) 변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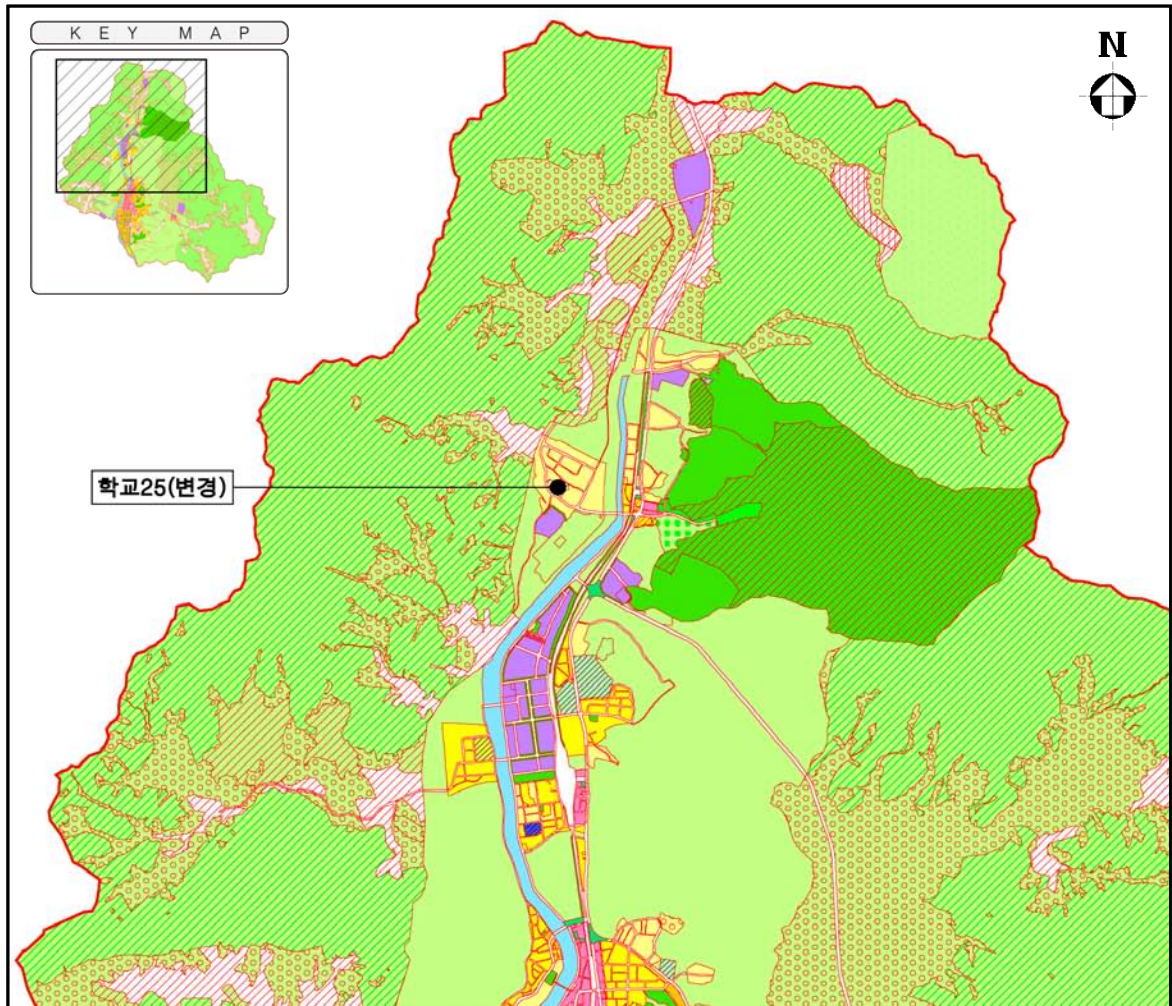
○ 기 결정되어 있는 소요초등학교의 후문 도로(소로2-311호선) 통학로 조성을 위한 선형 변경에 따라 학교 선형 일부 조정

【표 V-43】학교 변경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5	소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상봉암동 237-2 일원	15,756	감)158	15,598	동고 제1호 (2004.1.14)	



【그림 V-16】학교 변경 총괄도



○ 학교 ㉮ : 소요초등학교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상봉암동 237-2 일원	• 면적 감소 A = 15,756m <sup>2</sup> → 15,598m <sup>2</sup>	• 소로2-311호선의 선형 및 폭원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4) 방재시설

가) 방수설비

(1) 정의

○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

(2) 계획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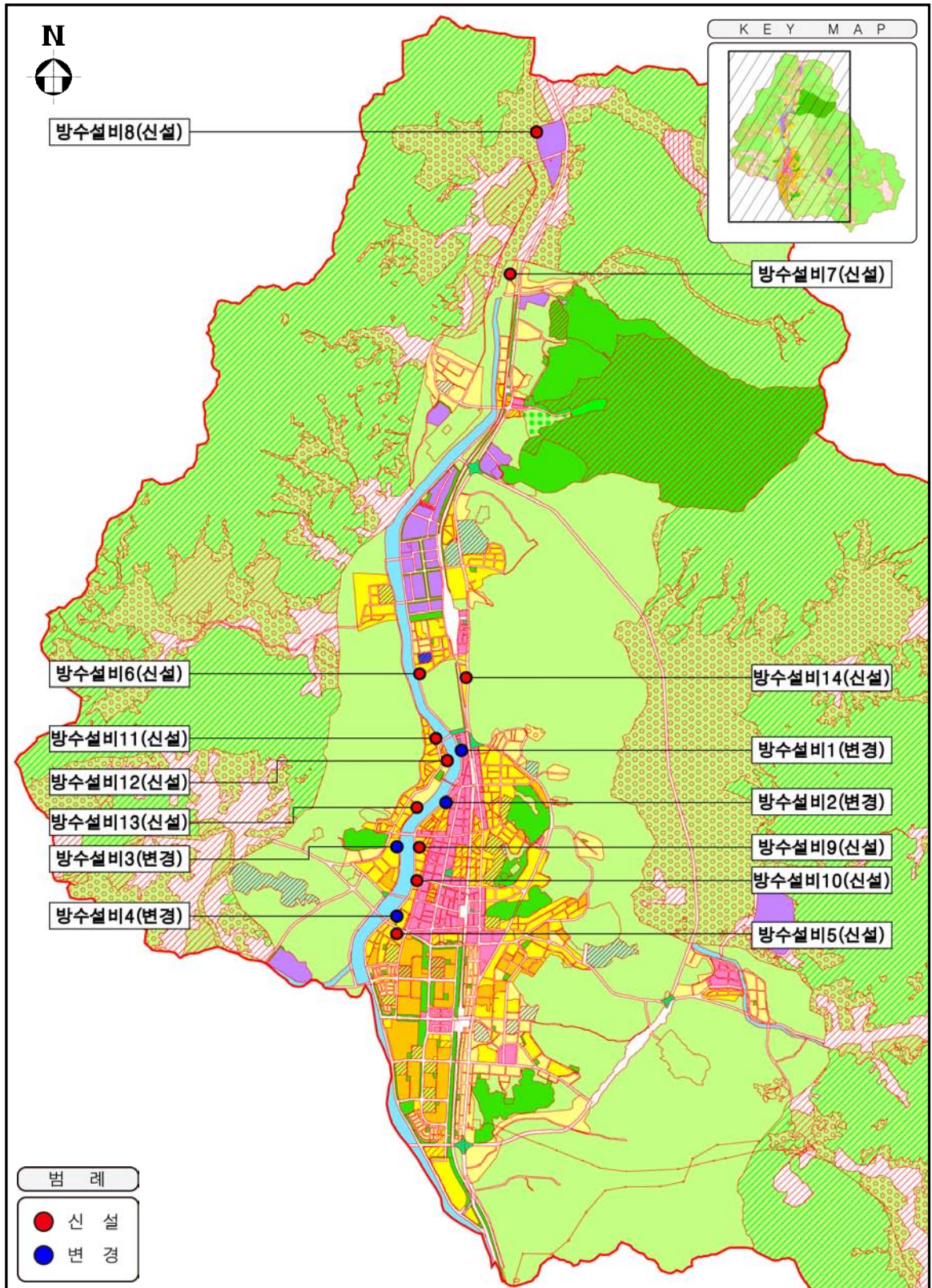
○ 방수설비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29조의 규정 준용

(3) 변경계획

【표 V-44】방수설비 변경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보산2 배수펌프장	보산동 431-58일원	912	증) 1,005	1,917	동고10 ('00.3.8)	
변경	2	중앙1 빗물펌프장	생연동 580-71일원	548	증) 976	1,524	동고3 ('02.1.21)	
변경	3	상패4 빗물펌프장	상패동 56-7일원	743	증) 667	1,410	동고19 ('02.5.11)	
변경	4	생연1 빗물펌프장	생연동 807-1일원	1,641	증) 369	2,010	동고3 ('02.1.21)	
신설	5	생연2 빗물펌프장	생연동 795-6	-	증) 1,486	1,486	금회 신설	
신설	6	소요1 빗물펌프장	동두천동 531-9일원	-	증) 2,799	2,799	금회 신설	
신설	7	소요2 빗물펌프장	하봉암동 327-40일원	-	증) 1,465	1,465	금회 신설	
신설	8	소요3 빗물펌프장	하봉암동 131 일원	-	증) 1,182	1,182	금회 신설	
신설	9	중앙2 빗물펌프장	생연동 826-1일원	-	증) 2,067	2,067	금회 신설	
신설	10	중앙3 빗물펌프장	생연동 818-49일원	-	증) 522	522	금회 신설	
신설	11	상패1 빗물펌프장	상패동 2-29일원	-	증) 625	625	금회 신설	
신설	12	상패2 빗물펌프장	상패동 9-83일원	-	증) 476	476	금회 신설	
신설	13	상패3 빗물펌프장	상패동 20-5일원	-	증) 519	519	금회 신설	
신설	14	보산1 빗물펌프장	보산동 458-3일원	-	증) 504	504	금회 신설	

【그림 V-17】방수설비 변경 총괄도





○ 방수설비 ① : 보산2 배수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보산동 431-58일원	• 면적증가 A = 912㎡ → 1,917㎡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변경
관리 계획 도			

○ 방수설비 ② : 중앙1 빗물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생연동 580-71일원	• 면적증가 A = 548㎡ → 1,524㎡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변경
관리 계획 도			

○ 방수설비 ③ : 상패4 빗물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상패동 56-7일원	• 면적증가 A = 743㎡ → 1,410㎡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변경
관리 계획 도			

○ 방수설비 ④ : 생연1 빗물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생연동 807-1일원	• 면적증가 A = 1,641㎡ → 2,010㎡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변경
관리 계획 도			

○ 방수설비 ⑤ : 생연2 빗물펌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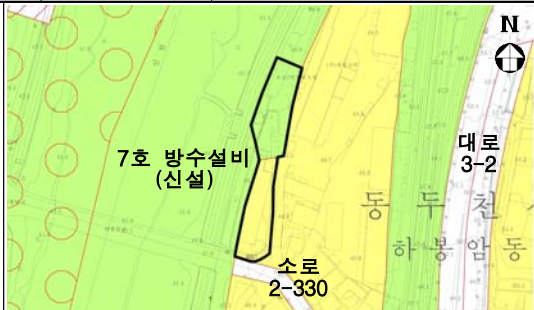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생연동 795-6	• 시설신설 A = 1,486㎡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관리 계획 도			

○ 방수설비 ⑥ : 소요1 빗물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동두천동 531-9일원	• 시설신설 A = 2,799㎡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관리 계획 도			



○ 방수설비 ⑦ : 소요2 빗물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하봉암동 327-40일원	• 시설신설 A = 1,465㎡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 방수설비 ⑧ : 소요3 빗물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하봉암동 131 일원	• 시설신설 A = 1,182㎡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 방수설비 ⑨ : 중앙2 빗물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생연동 826-1일원	• 시설신설 A = 2,067㎡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관리계획도		항공사진	



○ 방수설비 ⑩ : 중앙3 빗물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생연동 818-49일원	• 시설신설 A = 522㎡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관리계획도			

○ 방수설비 ⑪ : 상패1 빗물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상패동 2-29일원	• 시설신설 A = 625㎡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관리계획도			

○ 방수설비 ⑫ : 상패2 빗물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상패동 9-83일원	• 시설신설 A = 476㎡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관리계획도			

○ 방수설비 ⑬ : 상패3 빗물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상패동 20-5일원	• 시설신설 A = 519㎡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관리계획도			

○ 방수설비 ⑭ : 보산1 빗물펌프장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보산동 458-3일원	• 시설신설 A = 504㎡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관리계획도			

## 단계별 집행계획

VI

계획의 개요	1
미집행시설 현황	2
사업비 추정	3
단계별 집행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 VI 단계별 집행계획

###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계획의 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계획 수립
- 기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 비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검토 필요
- 동두천시의 한정된 기반시설 설치 예산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계획 필요

##### 2) 계획의 목적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기반 시설 확보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전 집행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민원 해소

### 2. 미집행시설 현황

#### 가. 미집행시설 판단 기준

- 도시·군계획시설 중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시설을 집행시설로 판정하되, 실시계획인가 고시 누락,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과도한 기간 경과 등을 고려하여 실제 조성현황, 토지소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시설 판정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사업지 내 도시계획시설 등은 집행시설로 판정

#### 나. 집행시설 현황

- 동두천시 내 도시계획시설 총 779개소 중 일부집행시설을 포함한 미집행시설은 1,326,236㎡, 115개소로 미집행률은 12.8%임
- 미집행시설 중 일부집행시설의 미집행구간 면적 756,073㎡, 미집행시설 면적 396,238㎡를 합한 미집행 전체면적은 1,152,311㎡임



【표VI-1】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

(단위 : m<sup>2</sup>, %)

구분	도시계획시설		집행시설		일부집행시설		미집행시설		미집행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779	9,015,880	664	7,689,644	42	929,997	73	396,239	12.8	
교통 시설	소계	600	2,886,933	507	2,315,233	36	470,505	57	101,195	15.3
	도로	576	2,530,083	484	1,958,816	36	470,505	56	100,762	17.4
	주차장	22	36,366	21	35,933	-	-	1	433	1.2
	자동차정류장	1	18,665	1	18,665	-	-	-	-	-
	철도	1	301,819	1	301,819	-	-	-	-	-
공간 시설	소계	93	2,048,294	74	1,322,913	5	432,036	14	293,345	33.3
	광장	12	66,738	5	34,276	-	-	7	32,462	48.6
	녹지	33	220,985	30	161,324	1	54,697	2	4,964	25.9
	공원	44	1,640,246	38	1,010,813	3	376,116	3	253,317	35.9
	유원지	1	116,500	1	116,500	-	-	-	-	-
	공공공지	3	3,825	-	-	1	1,223	2	2,602	93.7
유통 및 공급 시설	소계	15	355,699	15	355,699	-	-	-	-	-
	시장	2	9,709	2	9,709	-	-	-	-	-
	수도공급설비	7	100,474	7	100,474	-	-	-	-	-
	전기공급설비	5	245,344	5	245,344	-	-	-	-	-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계	42	2,274,115	40	2,272,416	-	-	2	1,699	0.1
	공공청사	11	66,958	9	65,259	-	-	2	1,699	2.5
	학교	24	733,863	24	733,863	-	-	-	-	-
	문화시설	1	16,850	1	16,850	-	-	-	-	-
	운동장	1	171,402	1	171,402	-	-	-	-	-
	체육시설	3	1,280,740	3	1,280,740	-	-	-	-	-
	사회복지시설	2	4,302	2	4,302	-	-	-	-	-
방재 시설	소계	20	1,107,803	20	1,107,803	-	-	-	-	-
	하천	3	1,085,141	3	1,085,141	-	-	-	-	-
	유수지	3	4,245	3	4,245	-	-	-	-	-
	방수설비	14	18,417	14	18,417	-	-	-	-	-
보건 위생 시설	소계	3	176,081	2	148,625	1	27,456	-	-	15.3
	의료시설	1	139,770	1	139,770	-	-	-	-	-
	방안시설	1	27,456	-	-	1	27,456	-	-	98.0
	도축장	1	8,855	1	8,855	-	-	-	-	-
환경 기초 시설	소계	6	166,955	6	166,955	-	-	-	-	-
	폐기물처리시설	5	38,807	5	38,807	-	-	-	-	-
	수질오염방지시설	1	128,148	1	128,148	-	-	-	-	-

【표VI-2】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 - 상세

(단위 : m<sup>2</sup>, %)

구분	집행	일부집행			미집행	미집행 전체면적	미집행 행률	
		소계	집행구간	미집행구간				
총계		7,689,644	929,997	173,924	756,073	396,238	1,152,311	12.8
교통 시설	소계	2,315,233	470,505	130,683	339,822	101,195	441,017	15.3
	도로	1,958,816	470,505	130,683	339,822	100,762	440,584	17.4
	주차장	35,933	-	-	-	433	433	1.2
	자동차정류장	18,665	-	-	-	-	-	-
	철도	301,819	-	-	-	-	-	-
공간 시설	소계	1,322,913	432,036	42,696	389,340	293,344	682,684	33.3
	광장	34,276	-	-	-	32,461	32,461	48.6
	녹지	161,324	54,697	2,426	52,271	4,964	57,235	25.9
	공원	1,010,813	376,116	40,028	336,088	253,317	589,405	35.9
	유원지	116,500	-	-	-	-	-	-
	공공공지	-	1,223	242	981	2,602	3,583	93.7
유통 및 공급 시설	소계	355,699	-	-	-	-	-	-
	시장	9,709	-	-	-	-	-	-
	수도공급설비	100,474	-	-	-	-	-	-
	전기공급설비	245,344	-	-	-	-	-	-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계	2,272,416	-	-	-	1,699	1,699	0.1
	공공청사	65,259	-	-	-	1,699	1,699	2.5
	학교	733,863	-	-	-	-	-	-
	문화시설	16,850	-	-	-	-	-	-
	운동장	171,402	-	-	-	-	-	-
	체육시설	1,280,740	-	-	-	-	-	-
	사회복지시설	4,302	-	-	-	-	-	-
방재 시설	소계	1,107,803	-	-	-	-	-	-
	하천	1,085,141	-	-	-	-	-	-
	유수지	4,245	-	-	-	-	-	-
	방수설비	18,417	-	-	-	-	-	-
보건 위생 시설	소계	148,625	27,456	545	26,911	-	26,911	15.3
	의료시설	139,770	-	-	-	-	-	-
	방안시설	-	27,456	545	26,911	-	26,911	98.0
	도축장	8,855	-	-	-	-	-	-
환경 기초 시설	소계	166,955	-	-	-	-	-	-
	폐기물처리시설	38,807	-	-	-	-	-	-
	수질오염방지시설	128,148	-	-	-	-	-	-

## 다. 미집행시설 현황

### 1) 경과기간별 현황

○ 미집행시설 중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은 76개소, 1,056,730㎡이며, 2020년 실효되는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59개소, 999,796㎡임

【표VI-3】경과기간별 현황

(단위 : ㎡)

구분	계		10년 미만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115	1,152,311	39	95,581	10	41,500	7	15,434	59	999,796		
교통시설	소계	93	441,017	27	56,019	10	41,500	6	12,999	50	330,499	
	도로	92	440,584	26	55,586	10	41,500	6	12,999	50	330,499	
	주차장	1	433	1	433	-	-	-	-	-	-	
공간시설	소계	19	682,684	9	10,952	-	-	1	2,435	9	669,297	
	광장	7	32,461	3	3,315	-	-	-	-	4	29,146	
	녹지	3	57,235	2	4,964	-	-	-	-	1	52,271	
	공원	6	589,405	2	1,525	-	-	-	-	4	587,880	
공공문화체육시설	소계	2	1,699	2	1,699	-	-	-	-	-	-	
	공공청사	2	1,699	2	1,699	-	-	-	-	-	-	
보건위생시설	소계	1	26,911	1	26,911	-	-	-	-	-	-	
	보안시설	1	26,911	1	26,911	-	-	-	-	-	-	

### 2) 소유자별 현황

○ 미집행면적의 토지소유자 현황은 국공유지 451,510㎡, 사유지 700,801㎡로 사유지가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음

○ 사유지 면적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은 공원으로 전체 사유지 면적의 73.4%에 해당함

【표VI-4】소유자별 현황

(단위 : ㎡)

구분	미집행구간면적						미집행시설소유자별면적			비고	
	소계		일부미집행		미집행		소계	국공유지면적	사유지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115	1,152,311	42	756,073	73	396,238	1,152,311	451,510	700,801		
교통시설	소계	93	441,017	36	339,822	57	101,195	441,017	276,914	164,103	
	도로	92	440,584	36	339,822	56	100,762	440,584	276,481	164,103	
	주차장	1	433	-	-	1	433	433	433	-	

【표VI-4】소유자별 현황(계속)

(단위 : m<sup>2</sup>)

구분	미집행구간면적						미집행시설소유자별면적			비고	
	소계		일부미집행		미집행		소계	국공유지 면적	사유지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공간 시설	소계	19	682,684	5	389,340	14	293,344	682,684	146,093	536,591	
	광장	7	32,461	-	-	7	32,461	32,461	25,711	6,750	
	녹지	3	57,235	1	52,271	2	4,964	57,235	41,781	15,454	
	공원	6	589,405	3	336,088	3	253,317	589,405	75,023	514,382	
	공공공지	3	3,583	1	981	2	2,602	3,583	3,578	5	
공문 화 체 육 시설	소계	2	1,699	-	-	2	1,699	1,699	1,592	107	
	공공청사	2	1,699	-	-	2	1,699	1,699	1,592	107	
보건 위생 시설	소계	1	26,911	1	26,911	-	-	26,911	26,911	-	
	방안시설	1	26,911	1	26,911	-	-	26,911	26,911	-	

3) 지목별 현황

○ 편입지목은 공원의 영향으로 임야가 가장 많은 643,496m<sup>2</sup>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수  
청구가 가능한 대지는 36,720m<sup>2</sup>로 전체 면적의 3.2%에 불과함

【표VI-5】지목별 현황

(단위 :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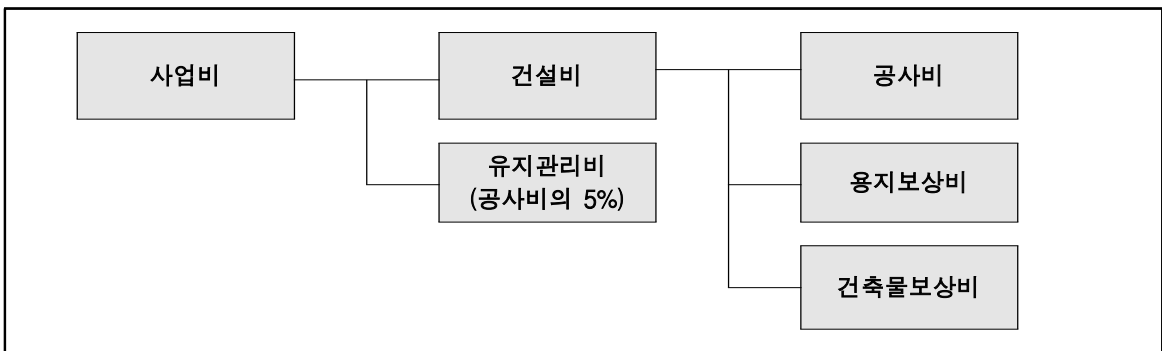
구분	계	전	답	대	임	기타	비고	
총계	1,152,311	162,707	37,131	36,720	643,496	272,257		
교통 시설	소계	441,017	83,718	32,568	27,343	137,379	160,009	
	도로	계	440,584	83,718	32,568	27,343	137,379	159,576
		대로	249,452	36,980	8,380	2,470	113,281	88,341
		중로	72,013	15,375	12,477	5,149	7,979	31,033
		소로	119,119	31,363	11,711	19,724	16,119	40,202
주차장	433	-	-	-	-	433		
공간 시설	소계	682,684	78,989	4,563	8,704	479,206	111,222	
	광장	32,461	2,284	1,205	2,961	1,328	24,683	
	녹지	57,235	8,159	1,148	694	1,956	45,278	
	공원	589,405	68,545	2,208	2,564	475,922	40,166	
	공공공지	3,583	1	2	2,485	-	1,095	
공문 화 체 육 시설	소계	1,699	-	-	673	-	1,026	
	공공청사	1,699	-	-	673	-	1,026	
보건 위생 시설	소계	26,911	-	-	-	26,911	-	
	방안시설	26,911	-	-	-	26,911	-	

### 3. 사업비 추정

#### 가. 사업비 구성

-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비는 크게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로 구성됨
- 건설비 세부 항목은 공사비, 용지보상비, 건축물보상비로 구성됨

【그림VI-1】사업비 세부 항목



#### 나. 사업비 추정의 근거

##### 1) 공사비

- 공사비는 ‘201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에 따른 단위공사비를 적용하여 개략공사비 추정

【표VI-6】기준면적당 공사비 산정

(단위 : 원/㎡)

구분	적용	단위공사비
도로	• 201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면적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 조성비 적용	141,000
녹지	• 201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면적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 조성비 적용	71,000
공원	• 201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면적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 조성비 적용	84,000
기타 기반시설	• 201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면적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 조성비 적용	67,000

##### 2) 용지보상비

- 용지보상비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1.5배하여 산정



3) 건축물보상비

○ 건축물보상비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 2012년 기준)'의 건축물 용도 및 구조에 따른 단가에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70% 적용

【표VI-7】건축물보상비 기준

(단위 : 원/㎡)

구분	구조		급수	보상비		내용년수
					70%적용	
단독주택	일반주택	목조	5	595,000	416,500	35
		조적조	4	816,000	571,200	45
		블록조	5	625,000	437,500	40
		철근콘크리트조	3	1,347,000	942,900	50
	조립식주택	조립식샌드위치판넬	4	481,000	336,700	35
	스틸하우스	철골조	3	1,443,000	1,010,100	45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조적조	3	824,000	576,800	45
		철근콘크리트조	3	1,002,000	701,400	45
	기숙사	철근콘크리트조	2	902,000	631,400	50
근생시설	점포 및 상가	목조	5	506,000	354,200	30
		조적조	5	538,000	376,600	45
		블록조	5	514,000	359,800	40
		철근콘크리트조	5	591,000	413,700	50
		철골조	3	903,000	632,100	45
창고	일반창고	목조	5	277,000	193,900	25
		조적조	5	490,000	343,000	40
		블록조	5	314,000	219,800	35
		철근콘크리트조	5	406,000	284,200	45
		철골조	5	427,000	298,900	40
공장	일반공장	목조	5	365,000	255,500	25
		조적조	4	592,000	414,400	40
		블록조	5	413,000	289,100	35
		철근콘크리트조	5	465,000	325,500	45
		철골조	5	529,000	370,300	40
숙박시설	여관	조적조	5	829,000	580,300	45
		철근콘크리트조	5	859,000	601,300	50
노유자시설	노인시설	철근콘크리트조	5	688,000	481,600	55
주차빌딩	주차빌딩	철근콘크리트조	4	450,000	315,000	45
		철골조	3	648,000	453,600	45
축사	축사	철골조	3	378,000	264,600	40

자료 :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 2012)

## 다. 사업비 추정

### 1) 공사비

- 미집행시설에 대한 공사비 추정 결과 미집행시설 조성을 위해 총 192,52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미집행시설 공사비 중 도로가 134,289백만원, 공원이 49,510백만원으로 두 개 시설이 미집행시설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표VI-8】미집행시설 개략공사비 추정

(단위 : 백만원, m<sup>2</sup>)

구분	개략공사비	미집행면적	미집행		
			일부미집행	미집행	
총계	192,526	1,152,311	756,073	396,238	
교통 시설	소계	134,318	339,822	101,195	
	도로	계	134,289	339,822	100,762
		대로	76,626	249,452	-
		중로	39,959	44,392	27,621
		소로	17,704	119,119	73,141
	주차장	29	433	-	433
공간 시설	소계	56,125	389,340	293,344	
	광장	2,311	32,461	32,461	
	녹지	4,064	57,235	4,964	
	공원	49,510	589,405	253,317	
	공공공지	240	3,583	981	2,602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계	280	-	1,699	
	공공청사	280	-	1,699	
보건위생 시설	소계	1,803	26,911	-	
	봉안시설	1,803	26,911	-	

### 2) 보상비

- 공시지가 및 건축물보상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총 보상비는 235,441백만원이고 그 중 용지보상비는 229,984백만원, 건축물보상비는 5,457백만원으로 추정되어 용지보상비가 전체 보상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표VI-9】보상비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보상비			비고	
	합계	용지보상비	건축물보상비		
총계	235,441	229,984	5,457		
교통 시설	소계	117,463	112,858	4,605	
	도로	계	117,442	112,837	4,605
		대로	23,374	23,374	-
		중로	35,746	34,879	867
		소로	58,322	54,584	3,738
	주차장	21	21	-	
공간 시설	소계	113,134	112,515	619	
	광장	16,168	16,154	14	
	녹지	19,041	18,464	577	
	공원	76,562	76,534	28	
	공공공지	1,363	1,363	-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계	3,698	3,465	233	
	공공청사	3,698	3,465	233	
보건위생 시설	소계	1,146	1,146	-	
	보안시설	1,146	1,146	-	

### 3) 총 사업비 추정

- 동두천시 내 미집행시설의 공사비, 보상비 등을 합한 총 사업비는 427,967백만원이고 그 중 도로 251,731백만원, 공원 126,072백만원으로 두 개 시설이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경과연도별 사업비는 20년 이상 시설의 사업비가 334,257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8.1%를 차지하고 있음

【표VI-10】총 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비고	
	계	공사비	보상비		
총계	427,967	192,526	235,441		
교통 시설	소계	251,781	134,318	117,463	
	도로	계	251,731	134,289	117,442
		대로	100,000	76,626	23,374
		중로	75,705	39,959	35,746
		소로	76,026	17,704	58,322
	주차장	50	29	21	

【표VI-10】총 사업비 추정(계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비고
		계	공사비	보상비	
공간 시설	소계	169,259	56,125	113,134	
	광장	18,479	2,311	16,168	
	녹지	23,105	4,064	19,041	
	공원	126,072	49,510	76,562	
	공공공지	1,603	240	1,363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계	3,978	280	3,698	
	공공청사	3,978	280	3,698	
보건위생 시설	소계	2,949	1,803	1,146	
	봉안시설	2,949	1,803	1,146	

【표VI-11】총 사업비 추정-경과연도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0년 미만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비고	
총계		427,967	71,460	16,104	6,146	334,257		
교통 시설	소계	251,781	51,282	16,104	5,902	178,493		
	도로	계	251,731	51,232	16,104	5,902	178,493	
		대로	100,000	-	-	-	100,000	
		중로	75,705	26,874	11,366	1,788	35,677	
		소로	76,026	24,358	4,738	4,114	42,816	
	주차장	50	50	-	-	-		
공간 시설	소계	169,259	13,251	-	244	155,764		
	광장	18,479	5,365	-	-	13,114		
	녹지	23,104	3,568	-	-	19,536		
	공원	126,073	2,959	-	-	123,114		
	공공공지	1,603	1,359	-	244	-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계	3,978	3,978	-	-	-		
	공공청사	3,978	3,978	-	-	-		
방재시설	소계	2,949	2,949	-	-	-		
	유수지	2,949	2,949	-	-	-		

【표VI-12】미집행시설 사업비

(단위 : m<sup>2</sup>, 백만원)

시설명	미집행 면적	최 초 결정일	경과 연수	사 업 비				
				합 계	공사비	보 상 비		
						소 계	토 지	건축물
대로3-1	249,452	1996-05-22	20	56,551.8	35,172.7	21,379.0	21,300.2	78.8
중로1-6	18,132	1987-05-09	29	9,557.1	2,556.6	7,000.5	7,000.5	-

【표VI-12】미집행시설 사업비(계속)

(단위 : m<sup>2</sup>, 백만원)

시설명	미집행 면적	최 초 결정일	경과 년수	사 업 비				
				합 계	공사비	보 상 비		
						소 계	토 지	건축물
중로1-7	3,803	1987-05-09	29	1,253.3	536.2	717.1	717.1	-
중로1-13	1,587	1996-06-05	20	777.8	223.8	554.0	554.0	-
중로1-32	2,949	2004-01-14	12	1,041.1	415.8	625.3	481.6	143.7
중로1-34	5,539	2004-01-14	12	1,453.4	781.0	672.4	672.4	-
중로1-35	2,553	2004-01-14	12	423.2	360.0	63.3	63.3	-
중로1-38	2,781	2015-06-12	1	686.8	392.1	294.7	294.7	-
중로2-43	2,850	2004-07-19	11	1,024.9	401.9	623.1	623.1	-
중로2-44	6,810	2004-01-14	12	3,237.0	960.2	2,276.8	2,276.8	-
중로2-45	4,566	2004-01-14	12	1,871.8	643.8	1,228.0	975.2	252.8
중로2-46	135	2004-01-14	12	64.9	19.0	45.9	45.9	-
중로2-58	1,090	2007-09-14	8	2,844.7	153.7	2,691.0	2,309.8	381.2
중로3-10	1,444	1988-05-19	28	2,929.9	203.6	2,726.3	2,726.3	-
중로3-20	2,248	1989-08-14	26	1,066.8	317.0	749.9	690.0	59.9
중로3-32	3,476	1997-01-07	19	1,788.0	490.1	1,297.9	1,297.9	-
중로3-50	1,037	1988-05-19	28	832.3	146.2	686.1	686.1	-
중로3-58	11,013	2015-06-12	1	4,029.3	1,552.8	2,476.4	2,447.3	29.1
소로1-7	975	1987-12-02	28	1,048.3	137.5	910.9	910.9	-
소로1-8	2,011	1987-12-02	28	1,253.5	283.6	969.9	969.9	-
소로1-10	969	1987-12-02	28	674.9	136.6	538.3	538.3	-
소로1-19	1,956	1989-08-14	26	1,089.6	275.8	813.8	813.8	-
소로1-20	1,692	1989-08-14	26	1,327.1	238.6	1,088.5	1,088.5	-
소로1-21	5,353	1989-08-14	26	3,725.0	754.8	2,970.3	2,959.4	10.8
소로1-22	208	1989-08-07	26	217.8	29.3	188.5	188.5	-
소로1-28	1,221	1989-08-14	26	1,208.3	172.2	1,036.1	1,036.1	-
소로1-32	2,118	1989-08-14	26	594.7	298.6	296.1	296.1	-
소로1-33	3,057	1989-08-14	26	1,034.7	431.0	603.6	560.8	42.8
소로1-45	631	1987-12-02	28	496.2	89.0	407.2	407.2	-
소로1-48	2,800	1997-01-07	19	1,664.9	394.8	1,270.1	1,235.9	34.3
소로1-61	1,079	1997-01-07	19	562.1	152.1	410.0	410.0	-
소로1-62	4,034	1997-01-07	19	2,860.5	568.8	2,291.7	2,188.8	102.9
소로1-81	1,999	1988-05-19	28	2,382.4	281.9	2,100.6	2,100.6	-



【표VI-12】미집행시설 사업비(계속)

(단위 : m<sup>2</sup>, 백만원)

시설명	미집행 면적	최 초 결정일	경과 년수	사 업 비				
				합 계	공사비	보 상 비		
						소 계	토 지	건축물
소로1-90	934	1987-12-02	28	1,629.1	131.7	1,497.4	1,497.4	-
소로1-100	4,210	2015-06-12	1	1,540.8	593.6	947.2	947.2	-
소로2-14	1,002	1979-10-19	36	1,132.8	141.3	991.5	798.7	192.8
소로2-24	408	1979-10-19	36	383.3	57.5	325.8	325.8	-
소로2-48	559	1987-12-02	28	661.3	78.8	582.5	582.5	-
소로2-49	813	1979-10-19	36	404.1	114.6	289.5	289.5	-
소로2-63	7,321	1987-12-02	28	4,078.9	1,032.3	3,046.6	3,031.5	15.2
소로2-64	908	1987-12-02	28	754.7	128.0	626.6	626.6	-
소로2-67	1,851	1987-12-02	28	1,276.7	261.0	1,015.7	973.9	41.8
소로2-70	725	1987-12-02	28	847.7	102.2	745.4	698.0	47.4
소로2-89	909	2007-07-23	8	1,487.5	128.2	1,359.3	1,359.3	-
소로2-92	548	1987-12-02	28	2,400.4	77.3	2,323.1	2,323.1	-
소로2-94	1,064	1987-12-02	28	1,963.5	150.0	1,813.4	1,521.0	292.5
소로2-96	833	1987-12-02	28	1,054.1	117.5	936.6	936.6	-
소로2-107	1,098	1989-08-14	26	568.4	154.8	413.6	413.6	-
소로2-178	1,403	1997-01-07	19	635.7	197.8	437.9	301.3	136.6
소로2-199	207	1997-03-24	19	251.5	29.2	222.3	222.3	-
소로2-304	4,014	2004-01-14	12	1,548.8	566.0	982.8	653.6	329.2
소로2-309	3,385	2007-05-22	9	1,603.8	477.3	1,126.5	1,057.2	69.3
소로2-310	1,116	2007-05-22	9	614.3	157.4	457.0	403.7	53.3
소로2-312	8,273	2007-12-24	8	4,929.6	1,166.5	3,763.1	3,400.8	362.3
소로2-322	399	1987-12-02	28	1,607.6	56.3	1,551.4	1,132.4	418.9
소로2-325	2,489	2015-06-12	1	444.7	350.9	93.8	93.8	-
소로2-326	134	2015-06-12	1	82.3	18.9	63.4	63.4	-
소로2-327	3,208	2015-06-12	1	2,029.6	452.3	1,577.3	1,577.3	-
소로2-328	1,027	2015-06-12	1	409.0	144.8	264.2	264.2	-
소로2-330	813	2016-06-21	0	172.1	114.6	57.4	57.4	-
소로3-7	1,150	1979-10-19	36	1,109.5	162.2	947.3	907.2	40.1
소로3-19	317	1987-12-02	28	345.0	44.7	300.3	300.3	-
소로3-37	429	1979-10-19	36	237.6	60.5	177.2	177.2	-

【표VI-12】미집행시설 사업비(계속)

(단위 : m<sup>2</sup>, 백만원)

시설명	미집행 면적	최 초 결정일	경과 년수	사 업 비				
				합 계	공사비	보 상 비		
						소 계	토 지	건축물
소로3-45	168	1979-10-19	36	248.1	23.7	224.4	180.2	44.2
소로3-48	591	1979-10-19	36	1,100.0	83.3	1,016.7	824.0	192.7
소로3-79	804	1979-10-19	36	431.3	113.4	317.9	317.9	-
소로3-113	2,400	1987-12-02	28	2,421.8	338.4	2,083.4	2,083.4	-
소로3-120	656	1987-12-02	28	496.7	92.5	404.2	404.2	-
소로3-200	925	1989-08-14	26	754.5	130.4	624.1	602.4	21.7
소로3-201	540	1989-08-14	26	452.7	76.1	376.5	376.5	-
소로3-202	1,031	1989-08-14	26	762.8	145.4	617.5	600.8	16.6
소로3-203	543	1989-08-14	26	432.6	76.6	356.1	356.1	-
소로3-211	521	1989-08-14	26	471.5	73.5	398.0	398.0	-
소로3-223	1,050	1989-08-14	26	177.3	148.1	29.2	29.2	-
소로3-226	480	1989-08-14	26	137.6	67.7	69.9	69.9	-
소로3-247	193	1996-06-05	20	135.3	27.2	108.1	108.1	-
소로3-331	165	2004-02-09	12	73.4	23.3	50.1	50.1	-
소로3-340	463	2007-12-24	8	434.9	65.3	369.6	210.9	158.7
소로3-341	453	2007-12-24	8	510.3	63.9	446.5	211.0	235.5
소로3-342	462	2007-12-24	8	273.2	65.1	208.0	208.0	-
소로3-351	397	2006-11-06	9	1,429.0	56.0	1,373.0	521.6	851.4
소로3-367	1,814	2015-06-12	1	1,271.4	255.8	1,015.6	1,015.6	-
소로3-368	302	2015-06-12	1	274.3	42.6	231.7	219.2	12.5
소로3-369	923	2015-06-12	1	749.5	130.1	619.4	592.2	27.1
소로3-370	11,919	2004-07-19	11	3,115.2	1,680.6	1,434.7	1,434.7	-
소로3-371	5,841	2015-06-12	1	1,733.3	823.6	909.7	881.3	28.4
소로3-372	345	1987-12-02	28	432.8	48.6	384.2	384.2	-
소로3-380	1,268	2016-06-21	0	1,034.6	178.8	855.8	855.8	-
소로3-381	962	2016-06-21	0	1,555.9	135.6	1,420.2	1,420.2	-
소로3-384	673	2016-06-21	0	445.1	94.9	350.2	350.2	-
소로3-385	268	2016-06-21	0	65.3	37.8	27.5	27.5	-
소로3-386	1,312	2016-06-21	0	946.2	185.0	761.2	699.9	61.3
주차장25	433	2016-06-21	0	50.2	29.0	21.2	21.2	-

【표VI-12】미집행시설 사업비(계속)

(단위 : m<sup>2</sup>, 백만원)

시설명	미집행 면적	최초 결정일	경과 년수	사 업 비				
				합 계	공사비	보 상 비		
						소 계	토 지	건축물
교통광장3	1,984	1986-09-20	29	1,241.2	132.9	1,108.3	1,001.0	107.3
교통광장4	7,000	1986-09-20	29	4,435.0	469.0	3,966.0	3,966.0	-
교통광장7	7,107	1996-05-16	20	1,459.4	476.2	983.2	983.2	-
교통광장9	13,055	1996-05-16	20	5,719.7	874.7	4,845.0	4,845.0	-
근린광장15	718	2008-02-04	8	1,189.7	48.1	1,141.6	1,127.5	14.0
근린광장16	1,205	2008-02-04	8	1,948.7	80.7	1,868.0	1,868.0	-
근린광장17	1,392	2006-11-06	9	2,226.8	93.3	2,133.5	2,133.5	-
완충녹지1	52,271	1976-12-18	39	19,536.3	3,711.2	15,825.1	15,771.3	53.8
완충녹지30	2,317	2007-11-19	8	1,744.4	164.5	1,579.9	1,579.9	-
완충녹지33	2,647	2007-11-19	8	1,823.7	187.9	1,635.8	1,112.9	522.9
근린공원2	87,215	1996-07-24	19	11,748.0	7,326.1	4,421.9	4,421.9	-
근린공원14	61,018	1989-08-07	26	7,120.2	5,125.5	1,994.7	1,994.7	-
문화공원1	187,855	1965-11-13	50	64,510.3	15,779.8	48,730.5	48,702.1	28.4
문화공원3	251,792	1979-10-19	36	39,735.3	21,150.5	18,584.8	18,584.8	-
소공원1	519	2010-12-20	5	974.4	43.6	930.8	930.8	-
어린이공원41	1,006	2013-05-02	3	1,984.2	84.5	1,899.6	1,899.6	-
공공공지1	2,435	2001-02-09	15	244.1	163.1	81.0	81.0	-
공공공지5	981	2008-02-04	8	1,181.1	65.7	1,115.3	1,115.3	-
공공공지6	167	2006-11-06	9	178.0	11.2	166.8	166.8	-
공공청사1	852	2015-12-14	0	1,498.1	57.1	1,441.0	1,441.0	-
공공청사11	847	2006-11-06	9	943.5	56.7	886.8	653.5	233.3
봉안시설1	26,911	2010-02-01	6	2,949.4	1,803.0	1,146.4	1,146.4	-

## 4. 단계별 집행계획

### 가. 사업단계 구분

-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개별 시설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사업단계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8-1-1에 따라 1단계(2016년~2018년), 2-1단계(2019년~2020년), 2-2단계(2020년 이후)로 구분
- 미집행시설 중 민간자본에 의해 조성되는 시설의 사업단계는 평가기준 점수와 무관하게 '비재정' 집행으로 분류

### 나. 사업단계 구분의 기준

- 평가인자를 활용하여 사업단계를 구분하고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친환경적 도시개발의 추세를 반영
- 장기미집행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해 미집행기간을 평가인자로 설정하고 각 평가인자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설정

【표VI-13】평가인자 및 가중치

평가인자	주변시설 연계성	시설개설에 따른 수혜도	공사난이도	시설부지 여건	친환경요소	미집행기간	우선사업
가중치	5	3	1	1	2	5	7

【표VI-14】평가기준

우선순위평가인자	계량적 기준			적용여건	
	가중치	등급	점수		
1. 주변시설 연계성	교통시설	5	A(3)	15	지역중심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B(2)	10	지역통과도로(집산도로)
			C(1)	5	단순연결도로(국지도로)
	기타시설		A(3)	15	주변지역 기개발완료
			B(2)	10	보통
			C(1)	5	주변지역 미개발
2. 시설개설에 따른 수혜도	3	A(3)	9	수혜인구가 많은 지역(상업지역)	
		B(2)	6	보통(주거지역)	
		C(1)	3	수혜인구가 적은 지역(자연녹지지역 등)	

【표VI-14】평가기준(계속)

우선순위평가인자	계량적 기준			적용여건
	가중치	등급	점수	
3. 공사난이도	1	A(3)	3	평지, 단위공사비 저렴
		B(2)	2	보통
		C(1)	1	급경사지, 단위공사비 과다
4. 부지 여건	1	A(3)	3	지장물 없음, 용지매수 용이
		B(2)	2	보통
		C(1)	1	지장물 밀집, 용지매수 곤란
5. 친환경 요소	2	A(3)	6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공해, 재해 완화/대비시설, 삶의 질 향상 시설
		B(2)	4	보통(기타시설)
		C(1)	2	환경 저해, 생태계 파괴 시설
6. 미집행기간	5	A(3)	15	20년 이상
		B(2)	10	10년~20년 미만
		C(1)	5	10년 미만
7. 우선사업	7	A(3)	21	시설예정, 사업계획 수립
		B(2)	14	중장기 사업계획
		C(0)	0	사업계획 없음

#### 다. 사업단계 결정

- 현재 동두천시에서 진행중이거나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우선으로 하며, 그 외 시설은 평가기준의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재정분석에 따른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용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 맞춰 단계 구분

#### 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결과 총 사업비는 427,967백만원이고 2020년까지 시행되는 1단계, 2-1단계 시설의 사업비는 174,24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VI-15】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구분	연차	연도별	시설수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115	427,967
1	1~3년차	2016년~2018년	11	14,600
2-1	4~5년차	2019년~2020년	13	159,640
2-2	6~10년차	2020년~2025년	89	250,768
비재정	-	-	2	2,959



【표VI-16】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최초 결정일	집행 단계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사업비						비고
				국비		도비		시비		
				공사비	보상비	공사비	보상비	공사비	보상비	
소계			427,967	93,441	132,229	11,359	31,690	64,125	43,900	
대로3-1	1996-05-22	2-1	100,000	38,313	11,687	-	-	38,313	11,687	사업계획
중로1-6	1987-05-09	2-1	10,000	2,111	2,889	-	-	2,111	2,889	사업계획
중로1-7	1987-05-09	2-1	20,000	5,993	4,007	-	-	5,993	4,007	사업계획
중로1-13	1996-06-05	2-2	778	157	388	45	111	22	55	
중로1-32	2004-01-14	2-2	1,041	291	438	83	125	42	63	
중로1-34	2004-01-14	2-2	1,453	547	471	156	134	78	67	
중로1-35	2004-01-14	1	1,500	-	-	-	-	1,379	121	사업계획
중로1-38	2015-06-12	2-1	20,000	7,269	2,731	-	-	7,269	2,731	사업계획
중로2-43	2004-07-19	1	2,000	-	-	-	-	1,127	873	사업계획
중로2-44	2004-01-14	1	2,000	-	-	-	-	915	1,085	사업계획
중로2-45	2004-01-14	2-2	1,872	451	860	129	246	64	123	
중로2-46	2004-01-14	1	1,500	-	-	-	-	680	820	사업계획
중로2-58	2007-09-14	2-2	2,845	108	1,884	31	538	15	269	
중로3-10	1988-05-19	1	3,000	-	-	-	-	390	2,610	사업계획
중로3-20	1989-08-14	2-2	1,067	222	525	63	150	32	75	
중로3-32	1997-01-07	2-1	1,788	343	909	98	260	49	130	
중로3-50	1988-05-19	2-2	832	102	480	29	137	15	69	
중로3-58	2015-06-12	2-2	4,029	1,087	1,733	311	495	155	248	
소로1-7	1987-12-02	2-2	1,048	96	638	27	182	14	91	
소로1-8	1987-12-02	1	1,200	310	530	89	151	44	76	사업계획
소로1-10	1987-12-02	2-1	300	71	139	20	40	10	20	사업계획
소로1-19	1989-08-14	2-2	1,090	193	570	55	163	28	81	
소로1-20	1989-08-14	2-2	1,327	167	762	48	218	24	109	
소로1-21	1989-08-14	2-2	3,725	528	2,079	151	594	75	297	
소로1-22	1989-08-07	2-1	218	21	132	6	38	3	19	
소로1-28	1989-08-14	2-2	1,208	121	725	34	207	17	104	
소로1-32	1989-08-14	2-2	595	209	207	60	59	30	30	
소로1-33	1989-08-14	2-2	1,035	302	423	86	121	43	60	
소로1-45	1987-12-02	2-2	496	62	285	18	81	9	41	
소로1-48	1997-01-07	2-2	1,665	276	889	79	254	39	127	

【표VI-16】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최초 결정일	집행 단계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사업비						비고
				국비		도비		시비		
				공사비	보상비	공사비	보상비	공사비	보상비	
소로1-61	1997-01-07	2-2	562	106	287	30	82	15	41	
소로1-62	1997-01-07	2-1	1,000	225	475	64	136	32	68	사업계획
소로1-81	1988-05-19	2-2	2,382	197	1,470	56	420	28	210	
소로1-90	1987-12-02	2-2	1,629	92	1,048	26	299	13	150	
소로1-100	2015-06-12	2-2	1,541	416	663	119	189	59	95	
소로2-14	1979-10-19	2-2	1,133	99	694	28	198	14	99	
소로2-24	1979-10-19	2-2	383	40	228	12	65	6	33	
소로2-48	1987-12-02	2-2	661	55	408	16	117	8	58	
소로2-49	1979-10-19	2-2	404	80	203	23	58	11	29	
소로2-63	1987-12-02	2-2	4,079	723	2,133	206	609	103	305	
소로2-64	1987-12-02	2-2	755	90	439	26	125	13	63	
소로2-67	1987-12-02	2-2	1,277	183	711	52	203	26	102	
소로2-70	1987-12-02	2-2	848	72	522	20	149	10	75	
소로2-89	2007-07-23	2-1	1,400	155	825	44	236	22	118	사업계획
소로2-92	1987-12-02	2-1	900	39	591	11	169	6	84	사업계획
소로2-94	1987-12-02	2-2	1,963	105	1,269	30	363	15	181	
소로2-96	1987-12-02	2-2	1,054	82	656	23	187	12	94	
소로2-107	1989-08-14	2-2	568	108	290	31	83	15	41	
소로2-178	1997-01-07	2-2	636	138	307	40	88	20	44	
소로2-199	1997-03-24	2-2	252	20	156	6	44	3	22	
소로2-304	2004-01-14	2-2	1,549	396	688	113	197	57	98	
소로2-309	2007-05-22	2-2	1,604	334	789	95	225	48	113	
소로2-310	2007-05-22	2-2	614	110	320	31	91	16	46	
소로2-312	2007-12-24	2-2	4,930	817	2,634	233	753	117	376	
소로2-322	1987-12-02	2-2	1,608	39	1,086	11	310	6	155	
소로2-325	2015-06-12	2-2	445	246	66	70	19	35	9	
소로2-326	2015-06-12	1	200	52	88	15	25	7	13	사업계획
소로2-327	2015-06-12	2-2	2,030	317	1,104	90	315	45	158	
소로2-328	2015-06-12	1	700	256	234	73	67	37	33	사업계획
소로2-330	2016-06-21	2-2	172	80	40	23	11	11	6	
소로3-7	1979-10-19	2-2	1,109	114	663	32	189	16	95	

【표VI-16】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최초 결정일	집행 단계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사업비						비고
				국비		도비		시비		
				공사비	보상비	공사비	보상비	공사비	보상비	
소로3-19	1987-12-02	2-2	345	31	210	9	60	4	30	
소로3-37	1979-10-19	2-2	238	42	124	12	35	6	18	
소로3-45	1979-10-19	2-2	248	17	157	5	45	2	22	
소로3-48	1979-10-19	2-2	1,100	58	712	17	203	8	102	
소로3-79	1979-10-19	2-1	200	58	82	17	23	8	12	사업계획
소로3-113	1987-12-02	2-2	2,422	237	1,458	68	417	34	208	
소로3-120	1987-12-02	2-2	497	65	283	18	81	9	40	
소로3-200	1989-08-14	2-2	755	91	437	26	125	13	62	
소로3-201	1989-08-14	2-2	453	53	264	15	75	8	38	
소로3-202	1989-08-14	2-2	763	102	432	29	123	15	62	
소로3-203	1989-08-14	2-2	433	54	249	15	71	8	36	
소로3-211	1989-08-14	2-1	800	151	409	43	117	22	58	사업계획
소로3-223	1989-08-14	1	500	319	31	91	9	46	4	사업계획
소로3-226	1989-08-14	1	500	231	119	66	34	33	17	사업계획
소로3-247	1996-06-05	2-2	135	19	76	5	22	3	11	
소로3-331	2004-02-09	2-2	73	16	35	5	10	2	5	
소로3-340	2007-12-24	2-2	435	46	259	13	74	7	37	
소로3-341	2007-12-24	2-2	510	45	313	13	89	6	45	
소로3-342	2007-12-24	2-2	273	46	146	13	42	7	21	
소로3-351	2006-11-06	2-2	1,429	39	961	11	275	6	137	
소로3-367	2015-06-12	2-2	1,271	179	711	51	203	26	102	
소로3-368	2015-06-12	2-2	274	30	162	9	46	4	23	
소로3-369	2015-06-12	2-2	750	91	434	26	124	13	62	
소로3-370	2004-07-19	2-2	3,115	1,176	1,004	336	287	168	143	
소로3-371	2015-06-12	2-2	1,733	577	637	165	182	82	91	
소로3-372	1987-12-02	2-2	433	34	269	10	77	5	38	
소로3-380	2016-06-21	2-2	1,035	125	599	36	171	18	86	
소로3-381	2016-06-21	2-2	1,556	95	994	27	284	14	142	
소로3-384	2016-06-21	2-2	445	66	245	19	70	9	35	
소로3-385	2016-06-21	2-2	65	26	19	8	5	4	3	
소로3-386	2016-06-21	2-2	946	129	533	37	152	18	76	

【표VI-16】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최초 결정일	집행 단계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사업비						비고
				국비		도비		시비		
				공사비	보상비	공사비	보상비	공사비	보상비	
주차장25	2016-06-21	2-2	50	20	15	6	4	3	2	
교통광장3	1986-09-20	1	1,500	-	-	-	-	269	1,231	사업계획
교통광장4	1986-09-20	2-2	4,435	328	2,776	94	793	47	397	
교통광장7	1996-05-16	2-2	1,459	333	688	95	197	48	98	
교통광장9	1996-05-16	2-2	5,720	612	3,392	175	969	87	485	
근린광장15	2008-02-04	2-2	1,190	34	799	10	228	5	114	
근린광장16	2008-02-04	2-2	1,949	57	1,308	16	374	8	187	
근린광장17	2006-11-06	2-2	2,227	65	1,493	19	427	9	213	
완충녹지1	1976-12-18	2-2	19,536	2,598	11,078	742	3,165	371	1,583	
완충녹지30	2007-11-19	2-2	1,744	115	1,106	33	316	16	158	
완충녹지33	2007-11-19	2-2	1,824	132	1,145	38	327	19	164	
근린공원2	1996-07-24	2-2	11,748	5,128	3,095	1,465	884	733	442	
근린공원14	1989-08-07	2-2	7,120	3,588	1,396	1,025	399	513	199	
문화공원1	1965-11-13	2-2	64,510	11,046	34,111	3,156	9,746	1,578	4,873	
문화공원3	1979-10-19	2-2	39,735	14,805	13,009	4,230	3,717	2,115	1,858	
소공원1	2010-12-20	비재정	974	31	652	9	186	4	93	
어린이공원41	2013-05-02	비재정	1,984	59	1,330	17	380	8	190	
공공공지1	2001-02-09	2-2	244	114	57	33	16	16	8	
공공공지5	2008-02-04	2-2	1,181	46	781	13	223	7	112	
공공공지6	2006-11-06	2-2	178	8	117	2	33	1	17	
공공청사1	2015-12-14	2-1	3,034	-	-	-	-	223	2,811	사업계획
공공청사11	2006-11-06	2-2	944	40	621	11	177	6	89	
봉안시설1	2010-02-01	2-2	2,949	1,262	802	361	229	180	115	

## 5. 자원조달계획

### 가. 재정현황

#### 1) 총 재정규모

- 동두천시의 2014년 현재 세입 결산액은 311,733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51,91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0.8%를 차지함
- 과거 5년간 세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7%이며, 동기간 내 일반회계는 -1.7%, 특별회계는 -1.5%가 감소하였음

【표VI-17】재정규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입			세출			잉여 (A-B)
	계(A)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B)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9년	339,458	274,872	64,586	263,057	218,892	44,165	76,401
2010년	329,957	269,596	60,361	270,556	223,422	47,134	59,400
2011년	343,215	294,942	48,273	260,510	223,947	36,563	82,705
2012년	388,013	339,177	48,836	340,390	304,469	35,921	47,623
2013년	391,773	317,183	74,590	329,599	278,463	51,136	62,174
2014년	311,733	251,911	59,822	279,488	238,569	40,919	32,245
연평균증가율	-1.7	-1.7	-1.5	1.2	1.7	-1.5	-15.8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5

#### 2) 1인당 재정규모 변화추이

- 최근 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지만 지방세는 오히려 감소하여 연평균 -2.9%의 증가율을 보임
- 1인당부담액은 2009년 807,088원에서 2014년 664,747원으로 감소하였음

【표VI-18】1인당 세액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인, 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가율
지방세	75,229	63,445	61,409	65,764	59,647	64,876	-2.9
인구	93,211	95,653	96,253	97,175	97,557	97,595	0.9
1인당부담액	807,088	663,283	637,992	676,766	611,407	664,747	-3.8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5



### 3) 세입구조

- 동두천시의 2014년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43,579백만원(17.0%), 의존수입이 213,197백만원(83.0%)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 자체수입의 지속적 감소와 의존수입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표VI-19】일반회계 세입구조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자체수입			의존수입				재정자립도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소계	지방교부세	보조금	기타	
2009년	227,269	60,871	29,950	30,921	166,398	60,635	81,904	23,859	26.8
2010년	267,471	97,578	30,980	66,598	169,893	64,055	84,018	21,820	36.5
2011년	292,627	90,071	29,800	60,271	202,556	69,872	106,484	26,200	30.8
2012년	275,457	53,079	32,920	20,159	222,378	75,516	121,852	25,010	19.3
2013년	290,299	60,801	32,750	28,051	229,498	79,531	124,516	25,451	20.9
2014년	256,776	43,579	33,750	9,829	213,197	80,143	103,072	29,982	17.0
연평균증가율	2.5	-6.5	2.4	-20.5	5.1	5.7	4.7	4.7	-8.7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5

### 4) 세출구조

- 일반회계 세출은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공공질서 및 안전이 연평균 31.7%의 증가율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산업, 중소기업이 연평균 -20.9%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표VI-20】일반회계 세출구조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09년	227,269	100.0	29,201	12.8	2,204	1.0	2,857	1.3	6,714	3.0
2010년	267,471	100.0	19,426	7.3	2,220	0.8	2,515	0.9	8,784	3.3
2011년	292,627	100.0	20,344	7.0	15,130	5.2	3,491	1.2	10,374	3.5
2012년	275,457	100.0	28,284	10.3	33,561	12.2	3,460	1.3	7,986	2.9
2013년	290,298	100.0	36,381	12.5	39,282	13.5	3,181	1.1	12,960	4.5
2014년	256,777	100.0	22,688	8.8	8,744	3.4	3,063	1.2	12,080	4.7
연평균증가율	2.5	-	-4.9	-	31.7	-	1.4	-	12.5	-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5

【표VI-20】일반회계 세출구조(계속)

(단위 : 백만원, %)

구분	환경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09년	13,955	6.1	61,915	27.2	3,662	1.6	9,531	4.2	2,332	1.0
2010년	16,404	6.1	63,956	23.9	4,433	1.7	18,757	7.0	2,822	1.1
2011년	11,228	3.8	66,021	22.6	4,093	1.4	19,885	6.8	665	0.2
2012년	10,479	3.8	71,034	25.8	4,291	1.6	7,816	2.8	1,231	0.4
2013년	12,198	4.2	80,703	27.8	4,774	1.6	7,834	2.7	1,330	0.5
2014년	8,400	3.3	91,653	35.7	5,396	2.1	6,854	2.7	722	0.3
연평균 증가율	-9.7	-	8.2	-	8.1	-	-6.4	-	-20.9	-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5

【표VI-20】일반회계 세출구조(계속)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09년	36,180	15.9	26,134	11.5	-	-	2,135	0.9	30,449	13.4
2010년	66,000	24.7	28,751	10.7	-	-	2,471	0.9	30,932	11.6
2011년	67,081	22.9	41,237	14.1	-	-	744	0.3	32,334	11.0
2012년	42,900	15.6	28,410	10.3	-	-	1,328	0.5	34,677	12.6
2013년	34,570	11.9	19,148	6.6	-	-	1,366	0.5	36,571	12.6
2014년	42,219	16.4	15,467	6.0	-	-	1,236	0.5	38,255	14.9
연평균 증가율	3.1	-	-10.0	-	-	-	-10.4	-	4.7	-

자료 :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 2015

## 나. 재정전망

○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352,818백만원으로 17.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VI-21】세입구조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합계	2,070,165	412,656	405,088	403,441	422,689	426,291	100.0	0.8	
지방세수입	175,373	33,373	34,546	35,233	35,950	36,271	8.5	2.1	
세외수입	177,445	35,549	34,703	34,745	36,173	36,275	8.6	0.5	
경상적세외수입	138,736	25,946	27,484	27,484	28,879	28,943	6.7	2.8	
임시적세외수입	38,709	9,602	7,220	7,262	7,294	7,331	1.9	-6.5	
이전재원	1,521,082	294,166	295,683	297,789	317,379	316,065	73.5	1.8	
보통교부세	435,569	79,269	84,500	88,300	90,700	92,800	21.0	4.0	
특별교부세	9,390	1,850	1,870	1,870	1,900	1,900	0.5	0.7	
부동산교부세	20,500	4,000	4,050	4,100	4,150	4,200	1.0	1.2	
소방안전교부세	1,600	300	310	320	330	340	0.1	3.2	
조정교부금 등	203,100	46,500	37,200	38,400	39,500	41,500	9.8	-2.8	
국고보조금	522,188	92,450	100,734	103,679	119,887	105,438	25.2	3.3	
지연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5,326	13,320	16,166	17,486	18,359	29,995	9.8	22.5	
기금	29,399	12,883	8,235	2,733	2,763	2,785	1.4	-31.8	
시·도비조금조금등	204,012	43,595	42,618	40,901	39,790	37,108	9.9	-3.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96,265	49,569	40,156	35,673	33,187	37,680	9.5	-6.6	

자료 : 동두천 중기지방재정계획(2016~2020)

## 다. 기반시설 설치 예산 추정

○ 2011년~2015년까지의 동두천시의 재정정보를 분석한 결과 기반시설 설치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8.03%)을 근거로 2016년~2020년까지의 기반시설 설치 예산 추정

【표VI-22】기반시설 설치 예산 추정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반시설 설치예산 추정치							기반시설 설치예산 (2011~2015년)				
	2-1단계			1단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계	2020년	2019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금액	39,094	18,730	20,364	72,391	22,142	24,074	26,175	28,460	32,423	27,070	31,029	39,772
증가율	-	-	-	-	-	-	-	-12.22	19.77	-12.76	-21.98	-

- 예산추정 결과 2020년까지 기반시설 설치에 투자가능한 예산은 약1,100억원으로 추정됨

## 라. 기반시설 설치 가능 여부 분석

- 기반시설 설치 예산과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을 분석한 결과 1단계, 2-1단계의 소요사업비는 174,240백만원이고 기반시설 예산 추정치는 111,485백만원으로 62,755백만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표VI-23】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	연도별	소요사업비	기반시설 예산(추정)
계			427,967	111,485
1	1~3년차	2016년~2018년	14,600	72,391
2-1	4~5년차	2019년~2020년	159,640	39,094
2-2	6~10년차	2020년~2025년	250,768	-
비재정	-	-	2,959	-

주 : 2-2단계 기반시설 예산(추정)은 향후 여건 변화 등이 유동적임에 따라 미반영

## 마. 집행순위 결정

- 현재 동두천시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우선으로 하며, 나머지 미집행시설은 우선순위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우선순위 개량화에 따라 시설의 평가 점수가 같을 시, 평가인자 중 우선사업, 시설에 따른 수혜도, 주변시설 연계성, 미집행기간, 시설부지 여건, 공사난이도, 친환경 요소 순으로 평가인자가 양호한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2020년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 VII 부록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95,681,000	-	95,681,000	100.0	
도시 지역	소 계		33,298,502	-	33,298,502	34.8
	주거 지역	계	5,632,586	증) 162,230	5,794,816	6.1
		제1종전용주거지역	21,663	-	21,663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2,039,485	증) 50,277	2,089,762	2.2
		제2종일반주거지역	2,433,641	증) 75,463	2,509,104	2.6
		제3종일반주거지역	943,715	증) 19,546	963,261	1.0
		준주거지역	194,082	증) 16,944	211,026	0.2
	상업 지역	계	1,037,901	증) 4,586	1,042,487	1.1
		일반상업지역	1,037,901	증) 4,586	1,042,487	1.1
	공업 지역	계	996,628	감) 909	995,719	1.0
		일반공업지역	990,253	감) 909	989,344	0.9
		준공업지역	6,375	-	6,375	0.1
	녹지 지역	계	25,631,387	감) 165,907	25,465,480	26.6
		자연녹지지역	25,631,387	감) 165,907	25,465,480	26.6
비도시 지역	소계		62,382,498	-	62,382,498	65.2
	관리 지역	계	21,939,504	-	21,939,504	22.9
		계획관리지역	6,714,725	증) 20,838	6,735,563	7.0
		생산관리지역	1,214,722	증) 328,742	1,543,464	1.6
		보전관리지역	14,010,057	감) 349,580	13,660,477	14.3
	농림지역		40,442,994	-	40,442,994	42.3

## 나. 용도지역(도시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D1	하봉암동 320-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3,143	200% 이하	• 기존 취락 밀집지역(봉암마을)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D2	상봉암동 8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9,117	200% 이하	• 기존 밀집지역 현실화 및 박찬호야구장, 어린이박물관 설치 등 여건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기반시설 설치
D3	상봉암동 132-17 일원	자연 녹지지역	준주거 지역	5,341	500% 이하	• 소요산역 진입부로 현재 건축용도 및 소요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D4	상봉암동 140-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준주거 지역	11,603	500% 이하	• 소요산역 진입부로 현재 건축용도 및 소요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D6	상봉암동 217-2 일원	일반 공업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909	200% 이하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정형화
D11	생연동 222-3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4,586	1,300% 이하	• 「온천법」에 의해 온천보호공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온천개발계획에 맞추어 상업지역으로 변경
D15	생연동 335-5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473	200% 이하	•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도시계획 시설 경계에 맞추어 용도지역 조정
D22	상봉암동 33-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603	200% 이하	•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 다. 용도지역(비도시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4	하봉암동 1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15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5	하봉암동 116-3 일원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2,062	80% 이하	• 용도지역 정형화 및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B6	하봉암동 72-2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69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7	하봉암동 69-7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779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8	하봉암동 70-5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5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10	하봉암동 278-19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86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11	하봉암동 297-2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12	하봉암동 296-8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9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14	하봉암동 338-5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2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16	하봉암동 산119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28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20	안흥동 187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358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27	안흥동 276-2 일원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70,162	80% 이하	• 토지이용현황상 대부분 전답부지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B28	안흥동 307 일원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266,353	80% 이하	• 토지이용현황상 대부분 전답부지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B36	안흥동 404-6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37	상패동 955-2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41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42	상패동 630-2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97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43	상패동 201-24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375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46	상패동 766-3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5,161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B47	상패동 738-9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971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49	상패동 739-7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795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50	상패동 산124-5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2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53	광암동 39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81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65	탑동동 231-4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15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67	탑동동 산163-2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4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소규모 블록으로 주변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B75	탑동동 662-9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95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77	탑동동 산233-2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6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소규모 블록으로 주변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B80	탑동동 651-2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283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B86	탑동동 495-8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8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있는 건축물 및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총괄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3	636,146	7	감) 258,302	8	377,844	
고도지구	소계	5	263,976	5	감) 263,976	-	-	
	최고고도지구	5	263,976	5	감) 263,976	-	-	
방재지구	소계	5	158,900	1	감) 24,000	4	134,900	
	방화지구	5	158,900	1	감) 24,000	4	134,900	
취락지구	소계	1	10,320	1	증) 29,674	2	39,994	
	자연취락지구	1	10,320	1	증) 29,674	2	39,994	
개발진흥지구	소계	1	146,100	-	-	1	146,100	
	개발진흥지구	1	146,100	-	-	1	146,100	
특정용도제한지구	소계	1	56,850	-	-	1	56,850	
	특정용도제한지구	1	56,850	-	-	1	56,850	

### 나. 고도지구

#### 1)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1	동막골 최고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하봉암동 38-2 일원	12m	63,006	경기2청고 제5160호 (2007.11.19)	
폐지	2	먹쟁이골 최고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상봉암동 69-5 일원	12m	29,790	경기2청고 제5160호 (2007.11.19)	
폐지	3	지행동3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지행동 361 일원	12m	118,020	경고 제125호 (1987.5.4)	
폐지	4	지행동4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지행동 361-1 일원	12m	10,750	경고 제125호 (1987.5.4)	
폐지	5	송내동 최고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송내동 329-1 일원	12m	42,410	경고 제125호 (1987.5.4)	

2)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동막골 최고고도지구	• 폐지 A = 63,006㎡ 고도제한 : 12m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대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환경개선을 유도 등 도시발전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
2	먹쟁이골 최고고도지구	• 폐지 A = 29,790㎡ 고도제한 : 12m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대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환경개선을 유도 등 도시발전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
3	지행동3 최고고도지구	• 폐지 A = 118,020㎡ 고도제한 : 12m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대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환경개선을 유도 등 도시발전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
4	지행동4 최고고도지구	• 폐지 A = 10,750㎡ 고도제한 : 12m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대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환경개선을 유도 등 도시발전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
5	송내동 최고고도지구	• 폐지 A=42,410㎡ 고도제한 : 12m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대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환경개선을 유도 등 도시발전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

다. 방화지구

1)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폐지	6	시외버스터미널 방화지구	생연동 417-1 일원	24,000	경고 제114호 (1996.5.16)	

2) 방화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시외버스터미널 방화지구	• 폐지 A=24,000㎡	• 시외버스터미널이 송내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정목적 상실로 폐지

## 라. 취락지구

### 1)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조산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탐동동 915 일원	29,674	금회 신설	

### 2)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조산 자연취락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신설 A=29,67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li> </ul>

### 3.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구역 결정(변경) 총괄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	3,506,986	1	감) 545,557	1	2,961,429	
도시자연 공원구역	소계	3,506,986	1	감) 545,557	1	2,961,429	
	도시자연공원구역	3,506,986	1	감) 545,557	1	2,961,429	

####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 1)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소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상봉암동 산1-1 일원	3,506,986	감) 545,557	2,961,429	경고 제54호 (2014.3.12.)	

##### 2)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소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감소 : 3,506,986㎡ → 2,961,429㎡ [감) 545,557㎡]</li> <li>• 위치변경(대표지번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봉암1근린공원 및 상봉암2역사공원 신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축소 및 위치변경</li> </ul>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 가) 도로 총괄

구 분	기 정			변 경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총 계	595	178,271	2,471,171	576	175,022	2,412,604
대로	소계	7	19,092	7	19,092	496,676
	1류	3	1,676	3	1,676	58,660
	2류	-	-	-	-	-
	3류	4	17,416	4	17,416	438,016
중로	소계	122	75,070	121	73,555	1,280,335
	1류	40	38,615	40	37,994	771,199
	2류	52	25,173	52	22,933	357,425
	3류	30	11,282	29	12,628	151,711
소로	소계	466	84,109	448	82,375	635,593
	1류	77	22,505	65	20,088	206,069
	2류	158	34,329	154	33,437	265,951
	3류	231	27,275	229	28,850	163,573

####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접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5,533	대로3-4	동두천동 교차점광장	일반 도로	소요산역 광장	건고 제272호 (1974.8.14)	
변경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5,533	대로3-4	동두천동 교차점광장	일반 도로	소요산역 광장	건고 제272호 (1974.8.14)	가감차로 변경
폐지	중로	1	12	20	보조 간선	784	안흥동 구역계	중로2-12	일반 도로	안흥동 빨래터	동고 제13호 (1996.6.5)	의회권고
기정	중로	1	34	20	보조 간선	399	중로2-43	대로3-2	일반 도로	승전교	동고 제1호 (2004.1.14)	
변경	중로	1	34	20	보조 간선	392	대로3-2	소로3-370	일반 도로	승전교	동고 제1호 (2004.1.1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5	20	보조간선	437	중로2-46	대로3-2	일반도로	-	동고 제1호 (2004.1.14)	
변경	중로	1	35	12~20	보조간선	420	중로2-46	하봉암동 12-1	일반도로	-	동고 제1호 (2004.1.14)	
신설	중로	1	38	20	보조간선	137	소로1-18	중로2-12	일반도로	-	금회 신설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606	대로3-2	소요공원	일반도로	소요유원지	경고 제387호 (1976.12.18)	
변경	중로	2	5	15	국지도로	606	대로3-2	소요공원	일반도로	소요유원지	경고 제387호 (1976.12.18)	가감차로 변경
기정	중로	2	43	15	보조간선	2,567	중로1-16	중로1-34	일반도로	하봉암교	동고 제31호 (2004.7.19)	
변경	중로	2	43	15	집산도로	326	중로1-16	소로3-370	일반도로	-	동고 제31호 (2004.7.19)	
변경	소로	3	370	6	국지도로	2,238	중로1-34	중로2-43	일반도로	하봉암교	동고 제31호 (2004.7.19)	
기정	중로	2	44	15	보조간선	439	중로2-43	중로2-45	일반도로	-	동고 제1호 (2004.1.14)	
변경	중로	2	44	15	보조간선	440	중로3-55	중로2-45	일반도로	-	동고 제1호 (2004.1.14)	
폐지	중로	3	18	12	국지도로	214	중로1-9	중로1-9	일반도로	지행5통 경로당	경고 제130호 (1988.5.19)	의회권고
기정	중로	3	20	12	보조간선	874	중로2-12	중로1-32	일반도로	신흥고교	경고 제321호 (1987.12.2)	의회권고
변경	중로	3	20	12	보조간선	425	소로1-18	소로1-15	일반도로	신흥고교	경고 제321호 (1987.12.2)	
기정	중로	3	30	12	집산도로	349	대로1-1	소로1-62	일반도로	송라주거	동고 제11호 (1997.1.7)	의회권고
기정	소로	1	62	10	국지도로	477	대로1-1	대로3-1	일반도로	송라주거	동고 제11호 (1997.1.7)	
변경	소로	1	62	10	집산도로	398	대로1-1	대로3-1	일반도로	송라주거	동고 제11호 (1997.1.7)	
기정	중로	3	30	12	집산도로	867	중로3-20	안흥동 산59-7	일반도로	안흥동	동고 제19호 (2002.5.11)	
변경	중로	3	30	12	집산도로	2,313	중로3-20	안흥동 379-2	일반도로	안흥동	동고 제19호 (2002.5.11)	
기정	중로	3	32	12	집산도로	556	대로3-2	대로3-2	일반도로	-	동고 제51호 (1996.12.27)	의회권고
변경	중로	3	32	12	집산도로	554	대로3-2	대로3-2	일반도로	-	동고 제51호 (1996.12.27)	
신설	중로	3	58	12	집산도로	914	중로1-14	동두천동 284-2	일반도로	캠프캐슬	금회 신설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250	중로1-14	중로1-9	일반도로	내행동 사무소	경고 제435호 (1979.10.19)	의회권고
변경	소로	1	6	10	국지도로	124	중로1-14	지행동 273-9	일반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0	10~12	국지 도로	658	중로1-9	중로2-15	일반 도로	지행초교	경고 제321호 (1987.11.24)	의회권고
변경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498	중로2-15	지행동 286-42	일반 도로	지행초교	경고 제321호 (1987.11.24)	
기정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197	중로3-20	소로1-18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가감차로 변경
변경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197	중로3-20	소로1-18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권고관련
폐지	소로	1	16	10	국지 도로	469	중로3-30	소로3-20	일반 도로	안흥동	경고 제228호 (1989.8.14)	의회권고
기정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269	중로3-20	소로1-18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변경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430	소로2-106	안흥동 37-4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폐지	소로	1	24	10	국지 도로	130	중로2-61	소로3-212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의회권고
기정	소로	1	29	10	국지 도로	295	중로1-4	소로2-127	일반 도로	광암 레저피아	경고 제228호 (1989.8.14)	의회권고
변경	소로	2	324	8	국지 도로	295	중로1-4	소로2-127	일반 도로	성지 요양병원	경고 제228호 (1989.8.14)	
기정	소로	1	30	10	국지 도로	215	소로1-29	소로1-82	일반 도로	광암동 우체국	경고 제228호 (1989.8.14)	가감차로 변경
변경	소로	1	30	10	국지 도로	215	소로2-324	소로1-82	일반 도로	광암동 우체국	경고 제228호 (1989.8.14)	
폐지	소로	1	34	10	국지 도로	43	상패동 60	소로1-26	일반 도로	상패동 주공아파 트	동고 제13호 (1996.3.5)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41	10	국지 도로	148	소로1-74	중로2-37	일반 도로	창말주거	동고 제51호 (19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50	10	국지 도로	162	중로2-14	소로1-48	일반 도로	못골	동고 제51호 (19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51	10	집산 도로	434	중로1-10	중로1-10	일반 도로	상패공원 남측	동고 제51호 (1996.12.2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63	10	국지 도로	254	대로1-1	대로3-1	일반 도로	송라주거	동고 제51호 (19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65	10	국지 도로	63	소로1-62	중로3-30	일반 도로	송라주거	동고 제51호 (19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67	10	국지 도로	43	중로3-30	소로1-63	일반 도로	송라주거	동고 제51호 (19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71	10	국지 도로	136	소로1-80	소로3-123	일반 도로	안골주거	동고 제51호 (19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1	79	10	국지 도로	260	중로1-6	대로3-1	일반 도로	-	동고 제41호 (2003.11.3)	의회권고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7	10	집산 도로	394	대로3-1	대로3-1	일반 도로	-	동고 제51호 (1997.1.7)	의회권고
기정	소로	1	88	10	집산 도로	366	소로1-87	안골버스 회차지점	일반 도로	-	동고 제30호 (2007.5.22)	
변경	소로	1	87	10	집산 도로	565	대로3-1	안골버스 회차지점	일반 도로	-	동고 제51호 (1997.1.7)	
신설	소로	1	100	10	집산 도로	419	중로1-4	중로2-17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32	중로3-24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의회권고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46	중로3-24	동두천동 524	일반 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367	소로1-6	중로1-9	일반 도로	에이스 아파트	경고 제435호 (1979.10.19)	의회권고
변경	소로	2	28	8	국지 도로	290	소로1-6	생연동 354-4	일반 도로	에이스 아파트	경고 제435호 (1979.10.19)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231	중로3-24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변경	소로	2	29	8	국지 도로	231	중로3-24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폐지	소로	2	33	8	국지 도로	61	지행동 산2-1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1.24)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34	8	국지 도로	370	중로2-11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변경	소로	2	34	8	국지 도로	370	중로2-11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폐지	소로	2	43	8	국지 도로	80	중로1-14	소로3-82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1.24)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239	중로1-4	중로1-5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1.24)	의회권고
변경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75	중로1-4	소로2-49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1.24)	
기정	소로	2	49	8~15	국지 도로	481	중로1-9	중로1-4	일반 도로	-	경고 제45호 (1979.10.19)	의회권고
변경	소로	2	49	8~15	국지 도로	500	중로1-9	중로1-4	일반 도로	-	경고 제45호 (1979.10.19)	
폐지	소로	2	58	8	국지 도로	103	소로2-40	중로1-3	일반 도로	자동차 학원	경고 제435호 (1979.10.19)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77	8	국지 도로	485	중로1-8	중로2-2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의회권고
변경	소로	2	77	8	국지 도로	402	중로1-8	소로3-151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폐지	소로	2	104	8	국지 도로	210	중로3-20	소로1-16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의회권고
폐지	소로	2	115	8	국지 도로	119	중로1-10	소로1-26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의회권고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356	소로1-34	소로2-115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7)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122	8	국지 도로	272	소로1-82	소로1-29	일반 도로	새마을금고 제2분소	경고 제321호 (1987.12.2)	가감차로 변경
변경	소로	2	122	8	국지 도로	272	소로1-82	소로2-324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폐지	소로	2	179	8	국지 도로	201	대로3-1	소로2-127	일반 도로	광암동 주거	동고 제51호 (1997.1.7)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180	8	국지 도로	105	소로2-179	소로2-127	일반 도로	광암동 주거	동고 제51호 (1997.1.7)	막다른 도로
변경	소로	2	180	8	국지 도로	112	소로2-127	광암동 471-38	일반 도로	광암동 주거	동고 제51호 (1997.1.7)	
폐지	소로	2	181	8	국지 도로	101	소로1-62	중로3-30	일반 도로	송라주거	동고 제51호 (1997.1.7)	의회권고
폐지	소로	2	196	8	국지 도로	237	소로1-41	중로2-37	일반 도로	창말주거	동고 제51호 (1997.1.7)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199	8~12	국지 도로	230	소로2-198	중로1-14	일반 도로	-	동고 제11호 (1997.3.24)	
변경	소로	2	199	8~12	국지 도로	122	소로2-198	생연동 214-4	일반 도로	-	동고 제11호 (1997.3.24)	의회권고
기정	소로	2	311	8	국지 도로	373	중로2-43	중로2-45	일반 도로	봉동 노인회관	동고 제30호 (2007.5.28)	
변경	소로	3	366	6	국지 도로	374	중로3-55	중로2-45	일반 도로	-	동고 제30호 (2007.5.28)	
폐지	소로	2	315	8	국지 도로	47	소로2-90	생연동 710-1	일반 도로		경기2청고 제5075호 (2007.7.23)	의회권고
신설	소로	2	324	8	국지 도로	151	중로3-51	송내동 207-3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2	325	8	국지 도로	308	중로2-4	중로1-14	일반 도로	중앙공원	금회 신설	
신설	소로	2	326	8	국지 도로	15	소로2-34	지행동 292-8	일반 도로	주미노조 2단지	금회 신설	
신설	소로	2	327	8	국지 도로	394	중로1-10	상패동 140-1	일반 도로	상패공원	금회 신설	
신설	소로	2	328	8	국지 도로	124	중로2-17	탑동동 917-1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2	330	8	국지 도로	101	하봉암동 327-50	하봉암동 318-5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폐지	소로	3	61	6	국지 도로	64	중로1-5	소로2-21	일반 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63	6	국지 도로	49	소로1-3	소로2-21	일반 도로	생연공원 남측	경고 제435호 (1979.10.19)	
변경	소로	3	63	6	국지 도로	50	소로1-3	소로2-21	일반 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의회권고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6	6	국지 도로	140	중로2-14	소로1-3	일반 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변경	소로	3	66	6	국지 도로	72	소로1-3	소로2-24	일반 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78	6	국지 도로	113	중로1-9	소로2-34	일반 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변경	소로	3	78	6	국지 도로	47	중로1-9	지행동 272-7	일반 도로	-	경고 제435호 (1979.10.19)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106	6	국지 도로	196	소로1-11	소로1-11	일반 도로	지행동상업 지역서측	경고 제321호 (1987.12.2)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113	6	국지 도로	628	중로1-6	소로2-70	일반 도로	송내공원 동측	경고 제321호 (1987.12.2)	
변경	소로	3	113	6	국지 도로	498	중로1-6	송내동 593-5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변경	소로	3	372	6	국지 도로	47	소로2-70	송내동 588-4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폐지	소로	3	114	6	국지 도로	50	소로3-118	지행동 산135-3	일반 도로	송내동천일 하이츠빌라	경고 제321호 (1987.12.2)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123	6	국지 도로	874	소로1-80	소로1-79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125	6	국지 도로	48	소로1-80	소로3-123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127	6	국지 도로	57	소로1-80	소로3-123	일반 도로	송내공원	경고 제321호 (1987.12.2)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137	6	국지 도로	99	중로1-2	소로2-73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변경	소로	3	137	6	국지 도로	47	중로1-2	소로3-134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142	6	국지 도로	104	중로1-2	소로3-178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변경	소로	3	142	6	국지 도로	45	중로1-2	소로2-74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143	6	국지 도로	169	중로1-2	소로2-8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변경	소로	3	143	6	국지 도로	121	중로1-2	소로2-313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151	6	국지 도로	173	중로1-2	소로3-179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변경	소로	3	151	6	국지 도로	173	중로1-2	소로3-179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경미한 변경
기정	소로	3	159	6	국지 도로	105	중로1-2	소로2-84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변경	소로	3	159	6	국지 도로	105	중로1-2	소로2-84	일반 도로	-	경고 제321호 (1987.12.2)	가각부 변경
폐지	소로	3	190	6	국지 도로	130	중로3-20	소로1-16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의회권고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209	6	국지 도로	60	중로1-10	소로1-22	일반 도로	천성 프라자	경고 제228호 (1989.8.14)	
폐지	소로	3	210	6	국지 도로	106	소로1-24	소로1-23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기정	소로	3	211	6	국지 도로	106	소로1-24	소로1-23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의회권고
변경	소로	3	211	6	국지 도로	79	중로2-61	소로3-369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기정	소로	3	212	6	국지 도로	147	소로1-24	소로1-23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의회권고
변경	소로	3	212	6	국지 도로	72	중로2-61	상패동 47-8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14)	
폐지	소로	3	213	6	국지 도로	87	중로1-10	소로1-26	일반 도로	구세군 영문교회	경고 제228호 (1989.8.14)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215	6	국지 도로	151	소로1-25	소로1-26	일반 도로	-	경고 제228호 (1989.8.7)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218	6	국지 도로	218	중로1-11	소로1-25	일반 도로	조흥 아파트	경고 제228호 (1989.8.14)	
변경	소로	3	218	6	국지 도로	120	중로1-11	소로1-28	일반 도로	조흥 아파트	경고 제228호 (1989.8.14)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460	중로2-37	동두천동 24-5	일반 도로	-	동고 제19호 (2002.5.11)	
변경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564	중로2-37	동두천동 24-21	일반 도로	미래교통	동고 제19호 (2002.5.11)	
폐지	소로	3	278	6	국지 도로	79	중로2-7	중로2-8	일반 도로	시청	동고 제11호 (1997.3.24)	의회권고
기정	소로	3	283	6	국지 도로	860	대로1-1	대로1-1	일반 도로	도뚝천	건고 제144호 (1998.5.16)	
변경	소로	3	283	6	국지 도로	773	대로1-1	송내동 462-2	일반 도로	도뚝천	건고 제144호 (1998.5.16)	의회권고
폐지	소로	3	285	6	국지 도로	464	소로2-159	소로2-312	일반 도로	-	동고 제22호 (2002.6.21)	
기정	소로	3	317	6	국지 도로	196	보산동 431-52	보산동 435-8	일반 도로	-	동고 제10호 (2000.3.8)	
변경	소로	3	317	5~6	국지 도로	196	보산동 431-52	보산동 435-8	일반 도로	-	동고 제10호 (2000.3.8)	
신설	소로	3	367	6	국지 도로	295	중로1-6	중로1-6	일반 도로	송내공원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68	6	국지 도로	46	중로1-6	소로3-367	일반 도로	송내공원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69	4	국지 도로	224	중로1-10	중로2-61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71	6	국지 도로	960	중로2-22	소로2-302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대로3-1 중복
신설	소로	3	380	6	국지 도로	210	대로3-2	상봉암동 84-30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381	6	국지 도로	156	대로3-2	소로3-380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84	6	국지 도로	110	중로1-16	교통광장3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85	6	국지 도로	43	대로3-2	소로3-384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신설	소로	3	386	6	국지 도로	213	대로3-2	중로2-5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2	대로3-2	• 가감차로 설치 A = 98,875㎡ → 99,072㎡	•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감차로 설치
중로1-12	-	• 시설폐지 B = 20m L = 784m	•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노선 폐지
중로1-34	중로1-34	• 노선단축 B = 20m L = 399m → 392m	• 중로2-43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연장축소
중로1-35	중로1-35	• 폭원축소 및 노선단축 B = 20m → 12~20m L = 437m → 420m	• 현도로를 활용한 도로연장 및 폭원축소
-	중로1-38	• 노선신설 B = 20m L = 137m	•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기존 시가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노선신설
중로2-5	중로2-5	• 가감차로 설치 A = 9,090㎡ → 9,043㎡	•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감차로 설치
중로2-43	중로2-43	• 연장축소 및 선형조정 L = 2,567m → 326m	•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폭원축소 및 노선분리
	소로3-370	• 폭원축소 B = 15m → 6m L = 2,567m → 2,238m	
중로2-44	중로2-44	• 노선연장 B = 15m L = 439m → 440m	• 중로2-43호선 선형조정에 따른 노선연장
중로3-18	-	• 노선폐지 B = 12m L = 214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치)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20	중로3-20	• 노선단축 B = 12m L = 874m → 425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국도3호선우회도로와 중복구간에 대해 노선 폐지(시의회권고)
중로3-30 소로1-62	소로1-62	• 폭원축소 및 노선단축 B = 12m, 10m → 10m L = 349m, 477m → 398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축소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폭원축소 및 노선 단축(시의회권고)
중로3-30	중로3-30	• 노선연장 B = 12m L = 867m → 2,313m	• 안흥동 취락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연장
중로3-32	중로3-32	• 노선변경 B = 12m L = 556m → 554m	• 도로선형이 소요연립에 저촉됨에 따라 일부 노선변경
-	중로3-58	• 노선신설 B = 12m L = 914m	• 창말일원에 통행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계획 도로 신설
소로1-6	소로1-6	• 노선단축 B = 10m L = 250m → 124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 폐지(시의회권고)
소로1-10	소로1-10	• 노선단축 B = 10m L = 250m → 124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 폐지(시의회권고)
소로1-15	소로1-15	• 가감차로 변경 A = 1,970㎡ → 1,966㎡	• 중로3-20호선 노선단축에 따른 가감차로 변경
소로1-16	-	• 노선폐지 B = 10m L = 469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국도3호선우회도로와 중복구간이 발생하여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1-18	소로1-18	• 노선연장 B = 10m L = 269m → 430m	•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시가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노선연장
소로1-24	-	• 노선폐지 B = 10m L = 130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1-29	소로2-324	• 폭원축소 B = 10m → 8m L = 295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폭원을 축소하여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폭원축소(시의회권고)
소로1-30	소로1-30	• 가감차로 변경 A = 2,150㎡ → 2,149㎡	• 소로1-29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가감차로 변경
소로1-34	-	• 노선폐지 B = 10m L = 43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1-41	-	• 노선폐지 B = 10m L = 148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노선폐지(시의회권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50	-	• 노선폐지 B = 10m L = 162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1-51	-	• 노선폐지 B = 10m L = 434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1-63	-	• 노선폐지 B = 10m L = 254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1-65	-	• 노선폐지 B = 10m L = 63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1-67	-	• 노선폐지 B = 10m L = 43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1-71	-	• 노선폐지 B = 10m L = 136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1-79	-	• 노선폐지 B = 10m L = 260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1-87 소로1-88	소로1-87	• 노선축소 및 노선합병 B = 10m L = 394m, 366m → 565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소1-87호선)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 폐지(시의회권고) 및 소로 1-88호선과 노선 일원화
-	소로1-100	• 노선신설 B = 10m L = 419m	• 조산마을 일원에 통행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계획 도로 신설
소로2-2	소로2-2	• 노선축소 B = 8m L = 132m → 46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을 축소하여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축소(시의회권고)
소로2-28	소로2-28	• 노선축소 B = 8m L = 367m → 290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 폐지(시의회권고)
소로2-29	소로2-29	• 가감차로 변경 A = 760㎡ → 753㎡	• 소로1-6호선 연장축소에 따른 가감차로 변경
소로2-33	-	• 노선폐지 B = 8m L = 61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2-34	소로2-34	• 가감차로 변경 A = 2,960㎡ → 2,956㎡	• 소로1-6호선 연장축소에 따른 가감차로 변경
소로2-43	-	• 노선폐지 B = 8m L = 80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폐지(시의회권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47	소로2-47	• 노선축소 B = 8m L = 239m → 175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 폐지(시의회권고)
소로2-49	소로2-49	• 노선연장 B = 8~15m L = 481m → 500m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형에 의해 설치 불가능한 노선 일부 조정
소로2-58	-	• 노선폐지 B = 8m L = 103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2-77	소로2-77	• 노선축소 B = 8m L = 485m → 402m	• 건축물(동두천성당)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 폐지
소로2-104	-	• 노선폐지 B = 8m L = 210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국도3호선우회도로와 중복구간이 발생하여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2-115	-	• 노선폐지 B = 8m L = 119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2-116	-	• 노선폐지 B = 8m L = 356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2-122	소로2-122	• 가감차로 변경 A = 2,176㎡ → 2,179㎡	• 소로1-29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가감차로 변경
소로2-179	-	• 노선폐지 B = 8m L = 201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2-180	소로2-180	• 노선연장 B = 8m L = 105m → 112m	• 소로2-179호선 폐지에 따른 노선연장
소로2-181	-	• 노선폐지 B = 8m L = 101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2-196	-	• 노선폐지 B = 8m L = 237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폐지(시의회권고)
소로2-199	소로2-199	• 노선축소 B = 8~12m L = 230m → 122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폐지(시의회권고)
소로2-311	소로3-366	• 폭원축소 및 노선변경 B = 8m → 6m L = 373m → 374m	• 현황도로에 맞추어 폭원 축소 및 노선변경
소로2-315	-	• 노선폐지 B = 8m L = 47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324	• 노선신설 B = 8m L = 151m	• 취락 밀집지역 진입로 확보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선신설
-	소로2-325	• 노선신설 B = 8m L = 308m	• 생연주공아파트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노선신설
-	소로2-326	• 노선신설 B = 8m L = 15m	• 주미노조2단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2-327	• 노선신설 B = 8m L = 394m	• 취락 밀집지역 진입로 확보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선신설
-	소로2-328	• 노선신설 B = 8m L = 124m	• 취락 밀집지역 진입로 확보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선신설
-	소로2-330	• 노선신설 B = 8m L = 101m	•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노선 신설
소로3-61	-	• 노선폐지 B = 6m L = 64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3-63	소로3-63	• 노선변경 B = 6m L = 49m → 50m	• 현황 도로에 맞추어 노선변경
소로3-66	소로3-66	• 노선축소 B = 6m L = 140m → 72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형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노선 일부폐지 및 현황도로에 맞추어 노선 변경(시의회권고)
소로3-78	소로3-78	• 노선축소 B = 6m L = 113m → 47m	• 옹벽에 의해 종로1-9호선에 접속이 불가하여 노선 축소
소로3-106	-	• 노선폐지 B = 6m L = 196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3-113	소로3-113 소로3-372	• 연장축소 L = 628m → 498m, 47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개설이 곤란한 구간에 대한 일부 노선 폐지
소로3-114	-	• 노선폐지 B = 6m L = 196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3-123	-	• 노선폐지 B = 6m L = 874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3-125	-	• 노선폐지 B = 6m L = 48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27	-	• 노선폐지 B = 6m L = 57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3-137	소로3-137	• 노선축소 B = 6m L = 99m → 47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에 의해 개통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 일부 노선 폐지(시의회권고)
소로3-142	소로3-142	• 노선축소 B = 6m L = 104m → 45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에 의해 개통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 일부 노선 폐지(시의회권고)
소로3-143	소로3-143	• 노선축소 B = 6m L = 169m → 121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장물에 의해 개통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 일부 노선 폐지(시의회권고)
소로3-151	소로3-151	• 가감차로 변경 A = 1,038㎡ → 1,011㎡	• 소로2-77호선 연장축소에 따른 가감차로 변경
소로3-159	소로3-159	• 가각부 변경	• 건축물 현황에 따른 가각부 변경
소로3-190	-	• 노선폐지 B = 6m L = 130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국도3호선우회도로와 중복구간이 발생하여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3-209	-	• 노선폐지 B = 6m L = 60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3-210	-	• 노선폐지 B = 6m L = 106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3-211	소로3-211	• 노선축소 B = 6m L = 106m → 79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옹벽에 의해 도로 접속이 어려움에 따라 일부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3-212	소로3-212	• 노선축소 B = 6m L = 147m → 72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축소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축소(시의회권고)
소로3-213	-	• 노선폐지 B = 6m L = 87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3-215	-	• 노선폐지 B = 6m L = 151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3-218	소로3-218	• 노선축소 B = 6m L = 218m → 120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축소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축소(시의회권고)
소로3-221	소로3-221	• 노선연장 B = 6m L = 460m → 564m	• 미래교통일원 교통서비스 향상 및 현황도로에 맞추어 노선연장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78	-	• 노선폐지 B = 6m L = 79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폐지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폐지(시의회권고)
소로3-283	소로3-283	• 노선축소 B = 4m L = 860m → 773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선이 축소되어도 교통 흐름 및 교통서비스에 영향이 없어 노선축소(시의회권고)
소로3-285	-	• 노선폐지 B = 6m L = 206m	• 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시계획도로 폐지
소로3-317	소로3-317	• 폭원축소 B = 6m → 5m L = 196m	• 현황도로에 맞추어 폭원축소
-	소로3-367	• 노선신설 B = 6m L = 163m	• 주거지역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3-368	• 노선신설 B = 6m L = 295m	• 주거지역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3-369	• 노선신설 B = 6m L = 46m	• 주거지역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3-371	• 노선신설 B = 6m L = 960m	• 종이골 일원 통행수요 증가 및 교통서비스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3-380	• 노선신설 B = 6m L = 210m	•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노선 신설
-	소로3-381	• 노선신설 B = 6m L = 156m	•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노선 신설
-	소로3-384	• 노선신설 B = 6m L = 110m	•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노선 신설
-	소로3-385	• 노선신설 B = 6m L = 43m	•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노선 신설
-	소로3-386	• 노선신설 B = 6m L = 213m	•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노선 신설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1	노외주차장	생연동 588-3	-	증) 2,864	2,864	금회 신설	
신설	25	노외주차장	상봉암동 115-36 일원	-	증) 433	433	금회 신설	

나)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노외주차장	• 시설신설 A=2,864㎡	• 중앙시장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기 설치완료된 주차장 1개소 반영(기존시설)
25	노외주차장	• 시설신설 A=433㎡	•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광장

가)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광장	근린광장	보산동 430 일원	3,938	감) 838	3,100	동고 제3호 (2002.1.24)	보산동 미관광장

나)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보산동 미관광장	• 면적축소 A=3,938㎡ → 3,100㎡	• 이상기후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긴급복구계획이 수립된 보산동 일원의 방수설비 (보산-2 빗물펌프장) 증설계획에 따라 광장 변경



2) 녹지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경원선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경원선 철도변	54,568	증) 129	54,697	경고 제387호 (1976.12.18)	
변경	2	준공업지역 완충녹지	완충녹지	대로1-1, 철도변	3,465	감) 1,644	1,821	건고 제405호 (1986.9.20)	
변경	30	상패동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패동 348-1 일원	2,602	감) 285	2,317	경기2청고 제5160호 (2007.11.19)	
변경	33	상봉암2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봉암동 209-2 일원	2,592	감) 55	2,537	경기2청고 제5160호 (2007.11.19)	

나)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원선철도변 완충녹지	• 면적증감 A=54,568㎡→54,697㎡	• 소로2-283호선 폐지로 인한 국도3호선변 완충역활을 위해 완충녹지로 지정
2	동두천동 완충녹지	• 면적감소 A=3,465㎡→1,821㎡ • 시설명 변경 준공업지역 완충녹지 → 동두천동 완충녹지	• 대학교 주변 활성화를 위해 도로변 완충녹지 일부 해제
30	상패동 완충녹지	• 면적감소 A=2,602㎡→2,317㎡	• 기존 공장지역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제척
33	상봉암2 완충녹지	• 면적감소 • A = 2,647㎡→2,592㎡	• 기존 공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을 제척하고, 원인시설인 공장지역으로 완충녹지 일부 선형조정

3) 공원

가) 공원 총괄

구 분	도시계획구역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 후		기정		변경 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44	1,263,185	47	1,667,588	34	110,770	35	110,787
근린공원	9	279,326	10	553,876	4	49,027	4	49,027
문화공원	2	593,616	2	451,712	-	-	-	-
소공원	4	5,636	4	5,636	3	1,688	3	1,688
수변공원	1	6,000	2	7,407	1	6,000	2	7,407
어린이공원	27	59,088	27	57,698	26	54,055	26	52,665
역사공원	-	-	1	271,740	-	-	-	-
체육공원	1	319,519	1	319,519	-	-	-	-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	중앙공원	문화공원	생연동 산36일원	231,209	감) 31,289	199,920	건고 제1983호 (1965.11.13)	
변경	2	생연공원	근린공원	생연동 산53일원	99,226	증) 4,618	103,844	동고 제29호 (1996.7.24)	
변경	3	송내공원	문화공원	송내동 산39일원	362,407	감) 110,615	251,792	경고 제435호 (1979.10.19)	
변경	14	상패공원	근린공원	상패동 산15일원	76,970	감) 3,775	73,195	건고 제106호 (1989.8.7)	
변경	16	상패1공원	어린이공원	상패동 2-29일원	1,500	감) 723	777	경고 제228호 (1989.8.14)	
변경	17	상패2공원	어린이공원	상패동 56-13일원	2,503	감) 667	1,836	경고 제228호 (1989.8.14)	
신설	18	상봉암1공원	근린공원	상봉암동 산21일원	-	증) 273,707	273,707	금회 신설	
신설	19	상봉암2공원	역사공원	상봉암동 산41일원	-	증) 271,740	271,740	금회 신설	
신설	20	못골공원	수변공원	생연동 111일원	-	감) 1,407	1,407	금회 신설	

다)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중앙 문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축소 A = 231,209㎡ → 199,920㎡ 감) 31,289㎡</li> <li>• 시설종류 변경 근린공원 → 문화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 계획」에 맞추어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훼손지는 공원에서 해제하고, 문화공원으로 변경</li> </ul>
2	생연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축소 A = 99,226㎡ → 103,844㎡ 증) 4,6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 계획」에 맞추어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훼손지는 공원에서 해제 및 구축오차 정정</li> </ul>
3	송내 문화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축소 A = 362,407㎡ → 251,792㎡ 감) 110,615㎡</li> <li>• 시설종류 변경 근린공원 → 문화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 계획」에 맞추어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훼손지는 공원에서 해제하고, 문화공원으로 변경</li> </ul>
14	상패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축소 A = 76,970㎡ → 73,195㎡ 감) 3,7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 계획」에 맞추어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훼손지는 공원에서 해제</li> </ul>
16	상패1 어린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축소 A = 1,500㎡ → 77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기후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긴급복구계획이 수립된 상패동 일원의 방수설비(상패-1빗물펌프장) 증설계획에 따라 공원 변경</li> </ul>
17	상패2 어린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축소 A = 2,503㎡ → 1,83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기후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긴급복구계획이 수립된 상패동 일원의 방수설비(상패-4빗물펌프장) 증설계획에 따라 공원 변경</li> </ul>
18	상봉암1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 A = 273,7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기 조성된 산림욕장을 이용한 근린공원 신설</li> </ul>
19	상봉암2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 A = 271,7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기 조성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이용한 역사공원 신설</li> </ul>
20	못골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 A = 1,4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수변공원 신설</li> </ul>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5	소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상봉암동 237-2 일원	15,756	감) 158	15,598	동고 제1호 (2004.1.14)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5	소요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감소 A = 15,756㎡ → 15,59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로2-311호선의 선형 및 폭원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li> </ul>

## 마. 방재시설

### 1) 방수설비

#### 가) 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방수시설	보산동 431-58	912	증) 1,005	1,917	동고 제10호 (2000.3.8)	
변경	2	방수시설	생연동 580-71	548	증) 976	1,524	동고 제3호 (2002.1.24)	
변경	3	방수시설	상패동 56-7	743	증) 667	1,410	동고 제19호 (2002.5.11)	
변경	4	방수시설	생연동 807-1	1,641	증) 369	2,010	동고 제3호 (2002.1.24)	
신설	5	방수시설	생연동 795-6	-	증) 1,486	1,486	금회 신설	
신설	6	방수시설	동두천동 531-9	-	증) 2,799	2,799	금회 신설	
신설	7	방수시설	하봉암동 327-40	-	증) 1,465	1,465	금회 신설	
신설	8	방수시설	하봉암동 131	-	증) 1,182	1,182	금회 신설	
신설	9	방수시설	생연동 826-1	-	증) 2,067	2,067	금회 신설	
신설	10	방수시설	생연동 818-49	-	증) 522	522	금회 신설	
신설	11	방수시설	상패동 2-29	-	증) 625	625	금회 신설	
신설	12	방수시설	상패동 9-83	-	증) 476	476	금회 신설	
신설	13	방수시설	상패동 20-5	-	증) 519	519	금회 신설	
신설	14	방수시설	보산동 458-3	-	증) 504	504	금회 신설	



나) 방수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보산2 배수펌프장	• 면적증가 A = 912㎡→1,917㎡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를 변경
2	중앙1 빗물펌프장	• 면적증가 A = 548㎡→1,524㎡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를 변경
3	상패4 빗물펌프장	• 면적증가 A = 743㎡→1,410㎡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를 변경
4	생연1 빗물펌프장	• 면적증가 A = 1,641㎡→2,010㎡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를 변경
5	생연2 빗물펌프장	• 시설신설 A = 1,486㎡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6	소요1 빗물펌프장	• 시설신설 A = 2,799㎡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7	소요2 빗물펌프장	• 시설신설 A = 1,465㎡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8	소요3 빗물펌프장	• 시설신설 A = 1,182㎡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9	중앙2 빗물펌프장	• 시설신설 A = 2,067㎡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10	중앙3 빗물펌프장	• 시설신설 A = 522㎡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11	상패1 빗물펌프장	• 시설신설 A = 625㎡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12	상패2 빗물펌프장	• 시설신설 A = 476㎡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13	상패3 빗물펌프장	• 시설신설 A = 519㎡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
14	보산1 빗물펌프장	• 시설신설 A = 504㎡	•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설비를 철거 후 증설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로 신설